

2005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농업(축산)구조개선]

총4권중 제3권

2004. 12. .

농 립 부

일 러 두 기

1. 이 지침서는 총4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림부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관 사업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2. 제1권에는 농림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대한 해설과 주요변경사항 및 농림사업 대출안내를 수록하였고, 제2권부터 제4권까지에는 분야별 사업시행지침을 상세하게 수록하였습니다.
3. 이 지침서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까운 시군구, 읍면동, 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 농업기술센터, 농협·산림조합, 농업기반공사지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시행지침의 2005년도 사업비는 정부예산의 국회심의나 김금사업의 계획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5. 각권별 수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권 : 관계규정해설 및 사업별 주요변경사항
 - 제2권 : 농업(식량작물,원예)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3권 : 농업(축산)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4권 : 농촌개발, 임업 및 산촌구조개선 분야사업시행지침
6. 이 지침서의 내용은 인터넷 농림부홈페이지(www.maf.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개별적으로 지침서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적 구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 입 문 의
 - 문의기관명 :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총무과
 - 연락처 : 전화 031-299-8822~5, fax 031-299-8800

차 례

제1권 관계규정해설

I. 농림사업실시규정해설

1. 배경	1
2. 주요골자	2
3. 주요변경사항	5
4. 해설	8
제1장 총칙	8
제2장 농림사업심의위원회	10
제3장 전문가위원회	11
제4장 농림사업	12
제5장 신규사업의 선정절차	19
제6장 보칙	22

II.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해설 23

1. 배경	25
2. 주요골자	26
3. 주요변경사항	30
4. 해설	34

III. 농림사업실시규정 53

IV.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98

V. 농림사업별 주요변경사항 126

VI. 기타주요사항 212

참고1. 농림사업자금 대출안내

제2권 농업(식량작물,원예)구조개선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I. 생산기반확충

1. 영농규모화사업(자율)	222
2. 토양개량사업(자율)	276
3. 주요농작물 원원종 및 원종생산(공공)	286
4. 수리시설개보수(공공)	296
①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97
② 저수지 준설사업	309
③ 저수지 비상대처 지원	327
5. 대·중규모 용수개발(공공)	336
6. 농업생산기반정비(공공)	
① 지하수 자원관리	359
② 농업용수관리자동화	365
③ 해외농업환경조사	385
④ 농업용수 수질조사·연구	389
7. 농지조성(공공)	
① 대단위농업종합개발	394
② 서남해안간척사업	412

II. 농업기계화

8. 농기계구입지원(자율)	433
9. 농기계임대사업(자율)	483
10. 농기계생산지원(공공)	498
11. 농기계사후관리지원(자율)	
① 농기계보관창고설치	514
② 농기계수리용부품·장비지원	526

III. 생산 및 유통개선

541

12.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자금지원(자율)	543
『농업(원예)구조개선』	558
I. 생산기반확충	560
13. 마늘경쟁력 제고지원(자율)	561
II. 원예생산 및 유통개선	615
14. 농산물물류표준화 사업(자율)	
① 물류기기공동이용촉진	617
② 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	629
15. 농산물산지유통활성화사업(자율)	
① 산지유통전문조직지원	682
② 일반조직산지유통활성화지원	694
③ 인삼계열화사업	718
16. 농산물가공원료 구매자금지원(자율)	725
17. 농산물유통시설운영활성화사업(공공)	
① 농산물출하촉진자금지원	737
18. 농산물직거래지원(공공)	746
19. 농축산물 자조금 조성지원(공공)	
① 농산물자조금조성	751
② 축산물자조금조성	761
20. 채소수급안정사업(공공)	
① 계약재배사업(노지채소)	771
② 약정출하사업(시설채소)	778
21.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공공)	785
22. 농산물 해외시장개척(공공)	789
23. 우수농산물지원(공공)	
① 우수농산물지원사업	808
②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운영	815
24. 농산물유통전문교육(공공)	846

Ⅲ. FTA 기금 과수지원사업	871
25. 지방자율계획사업(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자율)	873
①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	920
②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	931
③ 과수전용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960
④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972
⑤ 과수 우량묘목생산 지원사업	1002
⑥ 과실가공시설 현대화사업	1012
26. 과원영농규모화사업(자율)	1027
27. 과수산업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공공)	1047
28. 과원폐원지원사업(자율)	1056

제3권 농업(축산)구조개선

I. 사육기반확충

29. 사료사업지원(자율)	
① 조사료생산기반확충	1070
② 사료사업지원	1100
30.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자율)	1108
31. 축산계열화사업(공공)	
① 가축계열화	1136
② 경주마육성	1149
32. 한우사업지원(공공)	
① 송아지생산안정사업	1156
② 송아지생산기지 조성사업	1167
③ 품질고급화 장려금	1180
33. 가축개량사업(공공)	1194

II. 축산물생산 및 유통개선

34. 축산물 유통개선사업(공공)	
--------------------	--

① 축산물 도축·가공시설 설치지원	1249
② 축산물 도축·가공시설 운영자금 지원	1262
③ 축산물판매시설 현대화	1281
④ 축산물등급판정	1289
⑤ 산지축산물생산·유통지원	1296
⑥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 시범사업	1329
⑦ 축산물브랜드컨설팅지원사업	1335
35. 축산물 안전성검사 및 경영안정(공공)	
① 가축질병근절대책	1350
② 축산물검사	1356
③ 가축방역	1367
④ 가축공제	1389
36. 학교우유급식사업(공공)	1393
37. 축산업등록지원사업(공공)	1403

제4권 농촌개발, 임업 및 산촌구조개선

『농촌개발』	1411
I. 생산 및 유통개선	1413
38. 친환경농업육성(자율)	
① 친환경농업지구조성	1415
② 천적활용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	1434
39. 농업종합자금지원(자율)	1453
II. 기술개발 및 정보화	1474
40. 농업·농촌 정보화 기반확충(자율)	
① 농업경영체 정보시스템 구축	1476
② 농업인 정보화교육지원	1482
③ 농림수산정보망(Affis.net) 운영	1493
④ 출하지원시스템 확충	1504
⑤ 디지털사랑방 설치지원사업	1513
⑥ 농업·농촌 정보화선도자 선정·활용	1527

41. 농림기술개발(공공)	1540
42. 지역특화시범(공공)	1549
43. 기술보급(공공)	
① 새기술보급시범	1556
② 품목별 전문교육	1563
III. 인력육성	1569
44.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율)	
① 창업농지원사업(자율)	1571
45. 농업인자녀지원(공공)	
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1608
②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1620
46. 농업경영컨설팅지원(공공)	1623
IV. 소득보전	1661
47. 농업직접지불제(공공)	
① 경영이양직접지불	1663
② 친환경농업직접지불	1700
③ 논농업직접지불	1715
④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	1752
⑤ 친환경축산직불	1786
⑥ 쌀생산조정제	1827
48. 농업인재해공제(공공)	1852
49.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경감지원(공공)	1859
V. 소득원개발	1877
50.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자율)	
① 농촌관광휴양사업	1879
51. 한계농지정비사업(자율)	1910
52. 농가경영안정지원(자율)	
① 농·축산 경영자금지원	1923
② 농업인경영회생지원	1930

VI. 생활환경개선 1944

53. 폐비닐 수거지원(자율) 1944

『임업 및 산촌구조개선』 1951

I. 경영기반 확충 1953

54. 임업기계지원센터 설치(자율) 1955

55. 영림계획(자율) 1959

56. 사방사업(공공) 1964

II. 생산 및 유통개선 1970

57. 임산소득증대(자율)

① 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1972

② 조경수·분재생산 1986

③ 산림복합경영 1992

④ 산림소득종합자금 1998

58. 목재이용·가공 지원(자율) 2017

59. 산림조합육성(공공) 2028

60. 임산물유통개선 지원(공공)

①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2033

② 임산물 생산자 조직 육성 2070

③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2077

III. 인 력 육 성 2085

61.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 등 육성(자율) 2087

62. 임업전문인력 양성 및 임업기술지도(공공)

① 임업전문인력 육성 2092

② 임업기술지도 2098

③ 사유림협업경영 2102

IV. 산림 복지기능 증진 2107

63. 식물자원 보전관리(공공) 2109

V. 산림자원조성 2115

64. 해외산림투자지원(자율) 2117

65. 조림·숲가꾸기·묘목생산(공공) 2124

I . 사육기반확충

※ 이 사업시행 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경영과(과장 이재용, 사무관 서재호), 축산물위생과(과장 석희진, 사무관 조정래)입니다.

①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1. 목 적

- 초식가축(한우, 젓소, 사슴, 양등) 사육농가에 대한 양질 조사료의 생산이용 확대를 통한 축산물의 생산비 절감 및 품질 고급화로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2. 시행 및 추진방향

- 초식가축 사육농가에 대하여 사료작물 재배를 통한 양질조사료 공급 확대
-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유통체계 구축
- 축분퇴비 및 액비를 이용한 사료작물 생산
- 겨울철 유휴농지를 이용한 답리작 사료작물재배 확대
- 볏짚 등 국내 부존 사료자원의 적극 개발이용
- 목초 및 사료작물 재배용 우량종자 공급체계 확립
- 조사료생산의 기계화로 생산비 절감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낙농진흥법 제3조제3항(낙농진흥계획의 수립 및 사업비지원)
- 초지법 제13조(자금지원)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2	2003	2004	2005	2006이후	
사업량(개소)	253,743	60,908	65,000	65,000		
사 업 비	총사업비	164,316	38,270	33,585	42,458	339,664
	보 조	57,710	9,282	12,187	14,436	115,488
	용 자	46,093	9,151	3,370	5,615	44,920
	지 방 비	4,878	937	1,988	3,510	28,080
	자 부 담	55,635	18,900	16,040	18,897	151,176

5. 2004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지원사업

- 기반시설 : 초지조성에 필요한 진입로개설, 용수개발, 전기시설, 부지정지, 목책시설
- 조사료생산 : 양질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를 위한 초지조성·기성초지보완, 사료작물재배용 종자대, 볏짚 암모니아처리 및 생볏짚 곤포 사일리지사업 등
- 기계·장비 기타 : 곤포사일리지제조 농기계, 트랙터·과종기 등 조사료생산 이용 장비, 사일로시설 등
-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사업 : 곤포사일리지 제조 등 비용 지원
※ 세부지원 사업내용 : <별표1> 참조
-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 : 별도 지침시달

나. 지원대상

(1) 기반시설, 조사료생산 및 기계·장비 기타 사업

- 한우, 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농가
- 영농조합법인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 협업체 : 동일목적 추구를 위하여 자생적으로 모인 조직으로 3인 이상의 사육농가가 회칙(운영규정)을 정하고 협업형태로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단체
- 농업회사법인, 20ha이상 규모의 쌀전업농(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사업에 한함)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축협조합

(2)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사업

- 경종농가 : 사료작물재배 희망농가
 - ① 지역농·축협 등 연결체와 사료작물재배 계약이 되어 있는 경종농가
 - ② 과종, 수확 및 곤포 등 사일리지 제조용 장비를 갖추고 있는 지역 농·축·낙협과 농업기술센터 지역의 경종농가

- ③ 기계화가 가능한 집단화, 규모화 되어 있는 농지를 확보한 경종농가
- ④ 축산농가와 연계를 위해 초식가축 사육규모가 많은 지역과 인접한 경종농가
 - 곤포 1개(500Kg) : 소50마리/1일 섭취량
- 축산농가 : 연결체와 곤포사일리지 공급계약을 체결한 초식가축 사육농가 및 섬유질가공사료업체
 - 사업참여 축산농가에는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 우선 지원
 - 송아지생산기지조성사업에 참여하는 영농조합법인, 한우농가 등이 본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곤포사일리지 공급물량 계약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초지면적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
- 연결체 : 지역 농·축·낙협, 영농법인, 한우회, 낙우회 등

다. 지원 규모 및 조건

(1) 지원규모

(가) 기반시설, 조사료생산 및 기계·장비 기타 사업

- 사업비의 편중 지원 및 과도한 투자방지를 위해 기 용자지원분(농업경영 종합자금 등 축산정책자금)을 포함한 지원 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
 - 개별농가(영농조합법인 및 협업체의 개별농가포함) : 5억원 이내
 - 법인은 자기자본의 200%이내, 축협조합은 자기자본의 400%이내

(나)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사업

- 연결체에는 경종농가와 계약생산한 사료작물을 수확하여 곤포사일리지 제조 및 축산농가까지 운반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톤당 50천원
 - 장거리 운송(30km이상)에 따른 추가 운송비는 연결체와 축산농가와 협의하여 축산농가에서 부담

(2) 지원조건

- 보조 및 용자 지원비율은 <별표 2> 의 『세부사업별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
- 용자 조건 ─ 용자기간 : 10년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 금 리 : 연 4%

라. 사업 시행체계

(1) 기반시설, 조사료생산 및 기계·장비 기타 사업

- 사업신청(사업희망자→시·군) → 사업신청서·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예산요구(시·군 및 시·도) → 시·도별 예산배정(농림부) → 시·군별 예산배정(시·도) → 지원대상자 확정 및 통보(시·군) → 사업대상자

(2)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사업

- 시·도는 시·군을 통해 '05~'06년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서식3, 농림부보고기한 : 3월말)
- 시·도는 수요조사결과를 기초로 지역실정에 맞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시달
 - 지방비 확보 및 시·군별 배정, 사업신청·선정 및 계약체결기간 등 명시
 - 각 도 농촌진흥원에 세부추진계획을 통보하여 농가기술포육지도를 실시토록 조치
- 시·군은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
 - 사업량 및 사업비, 신청 및 선정기간 및 절차, 계약방법 등을 명시
 - ※ 경종농가의 총체보리 재배시 축분 퇴·액비를 사용토록 유도
- 사업참여희망 경종농가는 서식3-1, 축산농가는 서식3-2, 연결체는 서식3-3을 작성하여 시·군에 사업 신청
- 연결체는 경종농가 및 축산농가와 사료작물재배 및 곤포사일리지 제조·공급 계약 체결
 - 신청 및 계약기간(권장) : 9월중순 ~ 10월말
 - ※ 경종농가와 축산농가는 지역 농·축협에 신청 가능
- 연결체는 경종농가 및 축산농가와의 계약서를 첨부하여 시·군에 곤포사일리지 제조·공급 사업물량 신청
- 시·군은 사업대상자 및 사업물량 확정후 시·도 및 농림부에 보고(서식4, 서식4-1)하고 사업추진(농림부 보고기한 : '04.11.10)
 - ※ 초종별 면적당 생산량의 차이를 감안하여 사업물량을 확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지방비 확보

- 시·도지사는 시·군간 조사료 생산 및 공급물량을 조정하고, 잉여물량에 대해서는 농림부에 보고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
 - ※ 시·군간 물량조정은 시·도에서, 시·도간 물량조정은 농림부에서 추진

마. 사업타당성 검토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서의 내용을 사전 검토하고, 가축사육두수 및 사료포 확보면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규모가 적합한 수준인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정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함

바. 2005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축 발 기 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14,436	5,615	20,051	3,510	18,897	42,458

<추진체계>

가. 주관기관 : 시·군(자치구 포함)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축산경영과(02-500-1905)
- 시·도 : 축산담당과
- 시·군·자치구 : 축산담당과

다. 사업시행

(1) 사업계획 및 사업비 배정

- 시·도에서는 농림부에서 배정한 사업비를 시·군별로 배정
- 시·군에서는 배정된 사업비의 범위내에서 자체사업계획을 확정된 후 사업시행
-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 시·도는 농림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의하여 사업대상자별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보조금교부결정을 한 후 서식3-4에 의하여 사업대상자(보조사업자)에게 통지

(2) 사업계획의 변경 및 사업비 지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의 일부 변경 또는 사업포기등 사유로 사업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시·군 사업비 범위내에서는 시장·군수가 승인하여 사업 변경
 - 시·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시·도지사가 승인하여 사업변경
 - 시·도간의 사업계획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
 - 시·군 및 시·도의 조정변경 내용은 직 상위기관에 사후 보고
- 사업비지원
 - 각 시·도 책임하에 시·군에서 사업대상자별 지원
 - 지원단가 및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부담 추진
 - 시장·군수는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대로 추진하지 않는 경우 1회 보완 조치하고, 미보완시는 시·군 판단하에 축산발전기금운영요령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 및 기지원분 회수 조치
 -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사업에 참여하는 연결체는 축산농가로부터 곤포사일리지 공급비용을 수령하여 경종농가에 지급
 - 각각의 농가로부터 수량과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 수령
 - 연결체는 경종농가와 축산농가로부터 받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에 보조금 지급 신청
 - 시장·군수는 연결체의 사업추진실적을 확인하여 시·도(농림부)에 보조금 신청하고 농림부는 시·도 및 농협중앙회에 자금배정 통보

(3) 공사 및 기계·장비 구입 등에 대한 자금집행

-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을 준용

(4) 지방자치단체의 농기계·장비 이용 활성화

-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계·장비를 구입한 후 연결체에 임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강구
- 관내에 보급된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를 가능한 임대 활용하도록 조치
- 연결체가 한우회, 낙우회 등과 계약에 의하여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알선

라. 기타사항

- 지방 자치단체
 - 사업대상자에게 사업추진에 따른 정부시책방향 등에 대한 교육·홍보
 -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인·허가등의 제한사항 해소에 적극 협조
 - 사업의 지도·감독 및 평가실시
 -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사료작물재배 및 이용에 관한 기술지도 실시(사료작물 재배시 축분 퇴·액비를 전량 사용토록 지도)
- 농협중앙회 등 생산자단체
 - 사업수행에 필요한 종자·비료·암모니아가스 등 기자재 구매 알선 및 지도
 - 정책사업용 종자공급은 <별표 1> 세부사업내용에 의하여 추진
- 농촌지도기관 및 관련단체
 - 농촌진흥청(축산기술연구소)은 『농가유형별·경영규모별 조사료확보 보급모델』을 개발하여 시·군단위 행정 및 농촌지도기관을 통해 사업 대상자에게 보급
 - 축산기술연구소는 시도 및 시·군과 협의하여 지역 농·축협 등의 연결체에 대한 곤포사일리지 제조 기술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
 - 축산기술연구소와 작물과학원은 합동으로 사료작물의 파종·시비, 조사료 생산 및 이용, 기계·장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술지도 실시
 - ※ 경종농가의 총채보리 재배시 축분 퇴·액비를 사용토록 유도
 -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조사료생산이용 기술교육 및 경영지도 실시
- 시도 및 시·군은 2005 조사료사업계획(생산·이용)을 <서식1>에 의거 2005.1.31까지 수립하여 추진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 집행 내역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관

- 시·군에서는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여 사업추진 기록장부와 사업진척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용자기관에 통보함과 아울러 매월 소요액을 시·도로 신청하고 시·도에서는 농림부에 신청, 농림부에서는 월별 소요액을 용자기관 및 시·도에 배정하고 용자기관에서는 이에 따라 사업비 지급
 - 시·군에서는 사업대상자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사업진척도를 수시 확인하여 지원자금 집행
- 시·도 및 농협중앙회는 지원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
 -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자부담분 포함)를 구비토록 하고 관련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자금회수 또는 미집행 처리
 -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시 별첨[서식2]에 의거 정산
-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사업에 참여하여 재배한 보리를 경종농가가 곡실용으로 수확하는 경우 정부수매대상 보리에서 제외
 - 경종농가가 생산한 사료작물을 이용하기로 계약한 축산농가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각종 농림사업지원대상 및 수입조사료 쿼터배정시 제외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연결체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 집행내역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관
-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농림사업시행지침 및 관계규정을 적용
- 보조금(용자금)으로 취득한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 준	비 고
	부터	까지		
◦ 초 지 -신규초지조성	보조금 교부일	5년	초지전용	◦ 지진, 산사태 등 천재·지변 및 사업자의 질병 및 사망, 전업·폐업 등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유지·관리가 어려울 경우 시장·군수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13조 준용 처리
-기성초지보완	보조금 교부일	5년	초지전용	
◦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보조· 용자금 교부일	5년	기계장비 양도	

※ 사후관리기간중 전용하는 경우 자금을 회수하고, 전용허가기간내에 사업목적 달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초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허가 취소등의 조치

나. 보고

보고 사항	보고 기 한	비 고
◦ 2005 조사료생산계획 및 실적	계획 : '05. 1.31 실적 : '05.12.31	< 서식 1 >
◦ 2005 조사료생산기반시설사업계획 및 실적	계획 : '05. 2.28 실적 : '05. 12.31	< 서식 2 >
◦ 경종농가와 축산농가를 연계한 조사료생산유통체계 구축사업 실적 및 계획	'05실적 : '05.6.30 '06수요조사 : '05.3.31 '06계획 : '05.11.10	< 서식 4 > < 서식 3 > < 서식 4 >
◦ 2005 사료작물·목초종자 공급계획 및 실적	계획 : '05. 1.28 실적 : 춘과용('05. 5.31) 추과용('05.11.30)	< 서식 5 >

※ ①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보고시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 관한법률』 및 관계규정 등에 의하여 보조금을 집행하고 그 정산결과를 함께 보고하여야 함.

② 사업추진완료 보고시 본사업과 이월사업을 총괄하여 보고

6. 2006년 사업신청 및 대상자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나. 신청자격

(1) 기반시설, 조사료생산 및 기계·장비 기타 사업

- 한우, 젓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농가
- 영농조합법인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 협업체 : 동일목적 추구를 위하여 자생적으로 모인 조직으로 3인 이상의 사육농가가 회칙(운영규정)을 정하고 협업체대로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단체
- 농업회사법인, 20ha이상 규모의 쌀전업농(생뽕짚 곤포사일리지 제조사업에 한함)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축협조합

(2)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유통체계 구축

- 경종농가 : 사료작물재배 희망농가
- 축산농가 : 연결체와 곤포사일리지 공급계약을 체결한 초식가축 사육농가와 섬유질가공사료업체 등
- 연 결 체 : 지역 농·축·낙협, 영농법인, 한우회, 낙우회 등

다. 신청절차

- 사업희망자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사업신청서(공통서식)와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신청기관에 제출

라. 구비 서류

- 농림사업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농림시행지침서의 관련서식)
-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 각 1부

마. 선정 우선순위

(1) 기반시설, 조사료 생산 및 기계·장비 기타사업

< 농 가 >

- 초식가축 사육규모에 따른 초지·사료포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조사료 생산을 규모화·단지화할 수 있는 자
- 답리작 재배 및 옥수수사일리지 이용농가
- 농업경영종합자금지원사업중 한우, 젖소 등 초식가축 대상자의 우선순위자
- 20ha이상 규모의 쌀전업농(생볏짚 곤포사일리지제조사업에 한함)
-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시행하는 농업통계조사 표본농가로서 농업경영정보를 제공하는 자

< 협업체·영농조합법인·축협조합 >

- 집유일원화사업에 참여하는 조합
- 조사료생산사업단, 낙농전문과출사업에 참여하는 조합
- 초지·사료포등 조사료생산기반을 많이 확보한 협업체 및 조합
- 농업회사법인(생볏짚 곤포사일리지제조사업에 한함)

- 조사료생산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협업체 또는 조합
- 공동구매·판매, 경영기록등 사업실적과 조직운영이 좋은 협업체·법인 및 조합
- 시설자동화 및 전산화를 통한 경영기법과 기술수준이 높은 협업체·법인 및 조합
- 여건이 좋고 분뇨처리시설을 갖출 수 있는 협업체·법인 및 조합

(2)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사업

< 경종농가 >

- ① 지역농·축협 등 연결체와 사료작물재배 계약이 되어 있는 경종농가
 - ② 파종, 수확 및 곤포 등 사일리지 제조용 장비를 갖추고 있는 지역 농·축·낙협과 농업기술센터 지역의 경종농가
 - ③ 기계화가 가능한 집단화, 규모화 되어 있는 농지를 확보한 경종농가
 - ④ 축산농가와 연계를 위해 초식가축 사육규모가 많은 지역과 인접한 경종농가
 - 곤포 1개(500Kg) : 소50마리/1일 섭취량
 - 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시행하는 농업통계조사 표본농가로서 농업경영정보를 제공하는 자
- 축산농가 : 연결체와 곤포사일리지 공급계약을 체결한 초식가축 사육농가 및 섬유질가공사료업체

바. 선정절차

- 시·군에서는 사업희망자의 사업계획서 적정여부, 인·허가등 적법성 등을 검토한 후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 사업대상자 선정
- 선정된 사업대상자를 시·군 농정심의회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시·군에서는 사업대상자 우선순위에 의해 선정된 사업대상자를 시·도에 보고
- 시·군에서는 시·군별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사. 기타사항

- 2005년 사업추진요령에 준하되 세부사업별 지원비율, 단가등 지원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

<별표 1>

세부사업내용

1. 조사료생산 기반시설

가. 용수개발, 전기시설, 진입도로·목도 개설

- 용수개발 : 지하수등 수자원이 부족하거나, 초지의 하고현상이 심하여 관정 및 관수시설이 필요한 지역
- 전기시설 : 건조 및 사료작물의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동력원으로 전기 시설이 필요한 목장(초지내 전기시설에 한함)
- 진입로(목로)개설 : 초지의 진입도로·목도 신규개설 또는 기존도로의 확장, 보수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편입부지는 자체부담으로 하며 폭 4m 내외를 기준으로 함

나. 초지·사료작물재배 부지정지

- 초지나 사료작물의 재배지를 단지화·기계화하기 위하여 영세토지 분합, 구릉지의 정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기준 : 총토지면적이 2ha이상인 곳에 대하여 지원하되 2~3개지역으로 분리된 곳도 가능
- 시장·군수는 정지된 토지가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다. 초지용 목책설치

- 경사도 및 요철이 심하고 돌이 많아 트랙터에 의한 채초가 어려운 초지에 대하여 목책을 설치하여 방목에 의한 초지의 경제성제고
- 지원기준
 - 3ha당 1km
 - 2ha 이상 초지에 지원
- 대상시설
 - 초지 외곽 경계목책 및 1ha이상 단위의 대목구목책(소목구 분할목책은 제외)
 - 철재앵글, 시멘트콘크리트 및 나무기둥의 목책지주설치 및 전기차단기, 철선 등의 시설
 - 목구내 수조 및 저수탱크

2. 조사료생산 이용

가. 초지조성

- 초지법 규정에 의한 초지적지조사에 의거 1ha 이상의 초지조성 허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토지등급에 따른 초지조성방법 및 지원단가
 - 경운초지조성 : 토지등급이 1-2급지로서 경운방법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불경운초지조성 : 토지등급이 2-3급지로서 경운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애물 제거, 지표처리 등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임간초지조성 : 산림을 보존하면서 지표처리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의 초지조성

< 토지등급별 판정기준 >

등 급	경사도	유효토심	자갈함량	토성
1급지	20°이하	100cm	5%이하	사양토, 양토
2급지	21 - 30	99 - 50	6 - 20	식양토, 식토
3급지	31 - 35	49 - 30	21 - 30	사토,중점토
4급지	36 이상	29 이하	31 이상	입사질토

- 초지조성지역내에서 생산되는 잡석·잡목 등은 목장내의 축사, 목책 등 부대시설용 자재로 활용하고 목장의 반출 제한(다만, 초지법에 의거 반출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 농촌지도기관에서는 사업대상지구별 초지조성을 위한 기술지도지침서를 작성하여 지도 실시
- 사업비정산
 - 사업비는 지원비율에 따라 보조금과 용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용자금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보조금만을 집행할 수 없음)
 - 초지조성 ha당 단비중 비목별 내역은 지역별 실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조정 가능하며 실투입비만 정산하여야 함
 - 초지조성규정에 의한 목도, 축사부지등 부대시설 면적은 초지면적에 포함

나. 기성초지보완

- 초지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하·중급초지를 중·상급초지로 보완하고자 할 경우에 지원

다. 사료작물(전작·답리작) 재배용 종자공급

종자공급원칙

종자신청 : 사업대상자가 지역축협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신청

종자공급 : 지역축협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가 보조사업대상자에게 공급

종자대지급 : 농가자담분 : 사업대상자가 종자인수전 지역축협조합 등에 납부
보조분 : 시장·군수의 종자공급 완료확인후 보조금 지급

□ 시장·군수

- 사업대상자 명단 통보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신규초지조성 및 기성초지보완, 사료작물재배)를 확정하고 그 명단을 축협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각각 통보
- 종자신청
 - 사업대상자가 직접 지역축협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종자를 신청토록 지도(특히 이중신청이 되지 않도록 지도)
- 종자대 정산
 - 농가자담분 : 종자인수전에 사업대상자가 지역축협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납부토록 지도
 - 보조금 : 지역축협조합과 낙농육우협회로부터 농가의 종자공급실적을 확인(인수증 또는 현지 확인)하고 농협중앙회(도지회)에 촉발기금 지급 요청
- 지역축협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이중으로 신청한 농가에 대하여는 실적을 확인하여 보조지원금액이 적은 1개기관 공급분에 대하여만 지원가능

□ 지역축협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

- 종자관리법에 의한 제반사항 준수
- 종자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종자를 구입
 - 종자구입시 공정성 확보 방안 강구

- 구입된 종자는 사업대상자에게 현물 공급
- 종자신청
 - 시장·군수가 통보한 사업대상자로부터 직접 종자 신청 접수. 단, 지역축협 조합 및 한국낙농육우 협회에 이중 신청금지
 - 이중신청한 경우 지원액이 적은 1개 기관분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사업대상자 명단을 시장·군수로부터 인수
 - 사업대상자가 종자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과 협조하여 전 대상자로부터 신청토록 지도하여 재배면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조치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농가의 신청분은 자담추진
- 종자공급
 - 지역축협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서 신청농가에 직접 공급
 - 농가별 종자공급 실적을 시장·군수에게 보고
- 종자대정산
 - 농가자담분 : 공급자 책임하에 종자 인계전에 사업대상 농가로부터 징수
 - 보조분 : 시장·군수의 축발기금 지급요청 확인후 농협중앙회와 보조금 정산
 - 한국낙농육우협회에서는 종자 수입대금 지불 등을 위하여 필요시 보조 지원분을 농가로부터 선징수후 정산가능(정산시에는 반드시 사업농가 실명계좌에 입금조치)
 - 시장·군수에게 농가별 정산보고

라. 벧짚(보리짚) 처리(암모니아, 곤포사일리지)사업

<벧짚 암모니아 처리>

- 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 처리규격 : 1기단위 3톤기준
- 1기당 소사육두수 기준 : 4두(성우기준)
- 자재공급 : 암모니아가스는 농협중앙회에서 일괄 계약공급
- 농협중앙회장은 다음사항을 포함한 세부추진요령을 수립하여 관계기관에 통보
 - 농가준비사항 : 비닐 및 벧짚준비 등
 - 암모니아가스 및 처리비 단가(일괄계약 체결)
 - 기타 필요한 기술지도 사항 등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 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 처리규격 : 1롤(500kg) 4겹 기준(추가비용은 자부담)
- 1롤당 소사육두수 기준 : 4두(성우기준)
- 자재공급 : 곤포사일리지용 비닐은 농협중앙회에서 일괄 계약공급
- 농협중앙회장은 다음사항을 포함한 세부추진요령을 수립하여 관계기관에 통보
 - 농가준비사항 : 볏짚수거 및 처리 등
 - 곤포사일리지용 비닐 단가(일괄계약 체결)
 - 기타 필요한 기술지도 사항 등
- 시·군, 축협조합과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

3. 기계·장비 기타

가. 지원내용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사업 기계·장비 지원>

- 지원대상 :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사업에 참여한 연결체
- 지원내용 : 곤포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 장비(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 지원
- 지원조건 : 축산발전기금보조 30%, 지방비 30%, 자담 40%

<조사료생산·이용에 필요한 기계·장비 등 지원>

-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제에 등록된 조사료생산농가, 영농조합법인, 협업체, 농업회사법인, 축협조합
- 지원내용
 - 조사료 저장용 사일로 설치
 - 사일로유형 : 철근콘크리트 트렌치, FRP 사일로 등
 - 사일로용량(1기당) : 50톤(78m³)기준으로 하되 농가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음
 - 기타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기계·장비 등
 - 동력원 : 트랙터, 경운기 등
 - 부속작업기 : 경운·쇄토기, 파종기, 비료살포기, 농약살포기, 퇴비살포기, 예취기 등

- 처리장비 : 수확기, 집초기, 절단기 등
- 운반장비 : 로다, 트레일러 등
- 이용장비 : 곤포사일리지 커터 등
- 농기계 및 조사료 보관창고(50평이내)
- 지원조건 : 축산발전기금융자 80%, 자담 20%
- 대상자 선정시 검토사항
 - 2호이상의 농가가 공동체를 구성하여 사업신청시 공동명의로 지원가능
 -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구성원중 70% 이상이 3년 이상 사육경험이 있어야 함(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
 - 공동체의 운영방법은 여건에 따라 달리할 수 있으며 시·군에서 지역 여건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대상자선정시 사업적정성 검토 및 각 농가별 지원한도액 초과제한, 공동 이용여부 등 사후관리를 위해 시·군에서 별도로 관리
 -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농가간 민원발생시 자금회수 조치가가능
 - 공동지원후 한 농가가 소유·개별사용코자 할 경우 자격요건(면적확보, 지원한도액 등)을 확인 및 개별소유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전환해야 함

나. 기계·장비 구입 및 사후관리

- 1년이상 A/S가 되도록 기종선정을 의무화하고 1년미만인 기종은 지원제외
- 농협중앙회는 사업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시·군 또는 축협조합에서 요청할 경우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의 기종별 공급단가 계약을 우수 농기계공급업체와 체결하여 공동구매 알선할 수 있음
-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의 개별구입에 대해 구매알선 병행

4.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유통체계 구축

- 재배작목 : 보리, 호맥, 연맥, 이탈리아안라이그라스 등 지역에 적합한 사료작물
- 곤포사일리지 제조 비용, 운반비 등 지원 : 축산발전기금에서 톤당 30천원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톤당 20천원 이상의 지방비를 지원
- 연결체의 총체보리 생산·공급계약 체결
 - 보리재배 경종농가는 유숙기 또는 황숙기까지 재배하는 조건으로 연결체와 생산 및 단가계약 체결

- 연결체는 보리·호맥 등 품목에 따라 경종농가와 계약된 가격을 축산농가에게 알려서 곤포사일리지 공급계약 체결
 - 연결체는 경종농가 소재 시·군에서 선정(지방비 확보)
 - 공급가격은 kg당 100원 내외로 하여 시·군과 연결체가 협의하여 결정
 - 경종농가는 사료적 가치가 있는 수준의 조사료를 생산하여야 하고, 재배 및 수확과정에서 부패 등 제품이 변질되어 사료적 가치가 없을 경우에는 별도 가격결정 및 인수 제외
 - 축산농가 소재 해당 시·군에 보리재배농가 및 연결체가 없는 경우 인근 지역 연결체와 곤포사일리지 공급계약 체결
- 연결체는 축산농가로부터 곤포사일리지 공급대금을 받아 경종농가에게 지급
- 연결체 운영방법
 - 사료작물재배 경종농가 및 축산농가와 생산·공급 계약 추진
 - 연결체는 사료작물을 예취·곤포 사일리지를 제조하여 축산농가까지 운송
 - 연결체는 곤포사일리지 제조·운송 등의 작업을 민간사업자에게 일체 또는 부분 위탁 가능
 - 자체 보유장비가 없는 경우 기계·장비는 임차하여 사용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보유한 장비를 연결체에 우선 지원
 - ※ 지자체는 지역특화사업 등을 통해 기계 및 장비를 구입하여 연결체에 임대 추진
 - 연결체에는 곤포사일리지 제조비용 및 운반비 등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비에서 현금으로 지원

<별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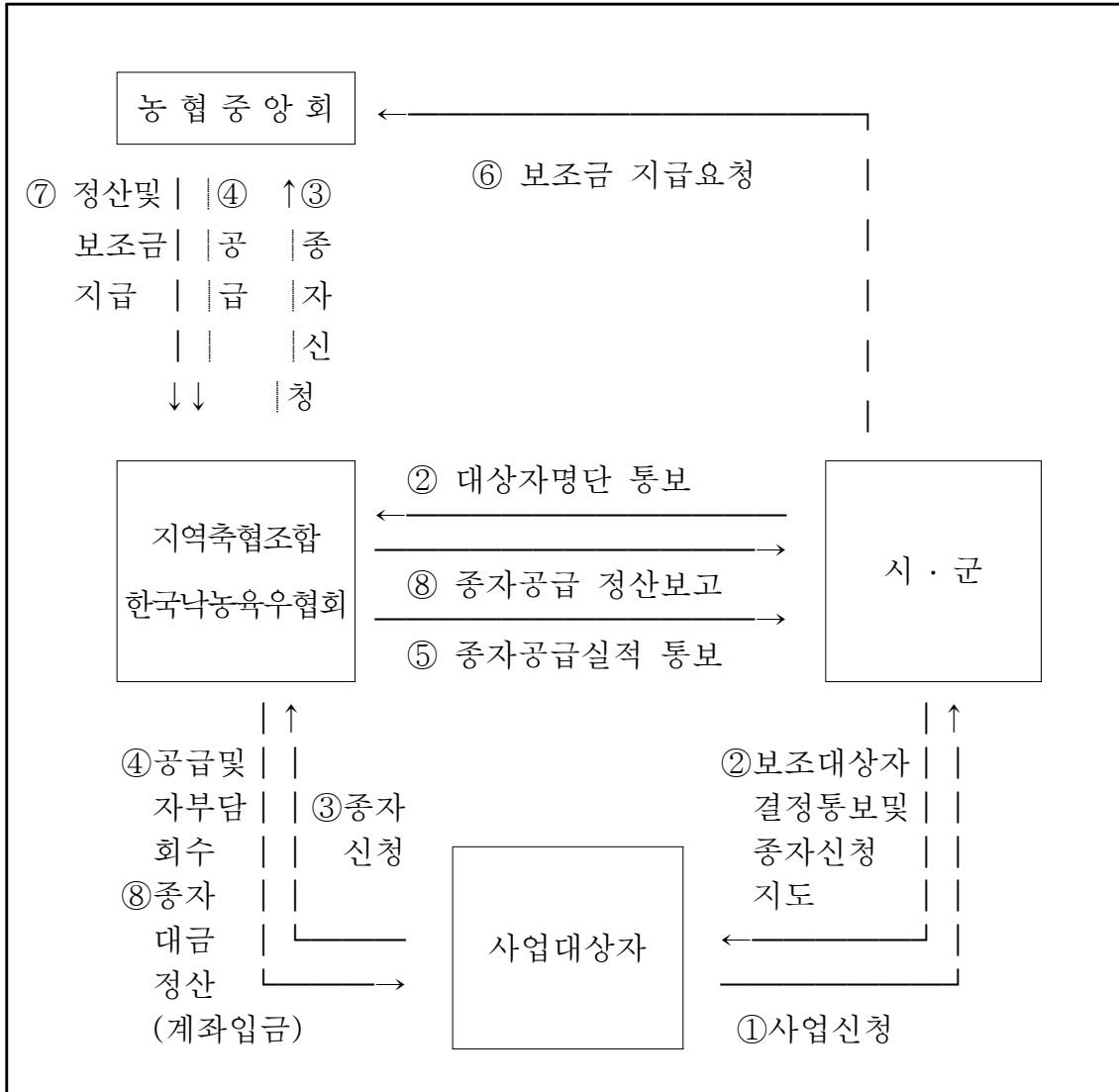
세부사업별 지원기준

세부사업별		지 원 비 율 (%)				지 원 단 가	
		지방비	보 조	용 자	자부담		
기 반 시 설	목도개설	┌ └	-	-	80	20	km당 45백만원(노폭 4m) 공당 30백만원 km당 5.5백만원 ha당 5백만원 1km당 9백만원 km당 100백만원, 선별적 지원(노폭 4m, 포장 3m)
	용수개발						
	전기시설						
	부지정지						
	영구목책시설						
	진입도로개설						
조 사 료 생 산	초지조성	┌ └	-	50	50	60	별도시달 종자대 실소요액 암모니아gas주입비 실소요액 * 비닐구입은 자담 비닐소요액
	기성초지보완						
	사료작물재배용 종자공급						
	벗짚 암모니아처리 생벗짚 곤포사일리 지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유통체계 구축		톤당 50천원 이상 보조지원(축산발전기금 30천원, 지방비 20천원 이상)					
장 비 기 타	조사료생산·이용 기계·장비	30	30		40	20	<별표 4>참고
	-경종농가와연계한 조사료생산사업 참여 연결체						
	-축산농가 등						
	사일로시설 보관창고						

- ※ 세부항목별 지원단가는 지역실정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가 조정할 수 있음
- 단, 초지조성·보완은 별도 고시하는 초지조성비용이하로, 종자·비료 및 벗짚 등 암모니아처리 및 생벗짚 곤포사일리지 제조는 농협중앙회 공급가격(실소요액) 적용

<별표 3>

종자 공급 체계도



※ ① → 은 지역축협조합만 해당됨

② ⑧ 종자대금정산시 계좌입금은 한국낙농육우협회에 한함

<별표 4>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예)

작업명	농기계명	규격	예시가격(천원)	비고	
동력원	농용트랙터	100HP내외	45,000		
경운	플라우	4연	2,250		
정지	로타베이터리	200cm	60~70HP	3,050	
			78~105HP	3,480	
시비	퇴비살포기	4톤	7,500		
파종	파종기	2조	7,000		
		4조	8,000		
방제	동력분무기 (주행형)	400ℓ	2,400		
운반	트레일러	4톤	2,500		
예취	모우어	2.1m	7,900		
집초	레이크	3.0m	3,700		
곤포 장비	결속기	원형베일러	드럼폭 174cm내외	25,000	
	랩피복기	랩피복기		13,500	
	적재기	적재기 (로더포함)		4,500	
합계			135,780		

※ 예시가격은 참고사항이며 지역에 따라 상이함

<서식 3>

‘05 ~ ’06년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사업 수요조사결과

< ○○ 시·도 >

(단위 : ha, 기, 백만원)

시·군	작업비지원		기계·장비지원		계 (A+ B)
	사업량(ha)	사업비(A)	사업량(기)	사업비(B)	
계					

<서식 3-1>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사업 신청서

1. 농가유형 : 사료작물재배농가

2. 사업신청자

- 성 명 :
- 주 소 :
- 연락처 :

3. 사업신청내용

- 재배작물명 : 보리, 호밀, 기타()
- 계획면적 : ha(소수점 1자리까지 표기)
 - 재배예정 농지 지번 :
- 희망판매가격 : 원/kg

위와 같이 '05~'06년도 조사료용 보리재배농가로 신청합니다.

2005년 월 일
(인)

○ ○ 시장·군수 귀하

<서식 3-2>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사업 신청서

1. 구매대상 : 축산농가, 섬유질가공사료업체, 기타

2. 사업신청자

○ 성 명 :

○ 주 소 :

- 사업장 주소 :

○ 연락처 :

3. 사업신청내용

○ 사육두수 : 한우 두, 젓소 두, 기타() 두

○ 섬유질가공사료 생산능력 : 톤/월

○ 구매계획 : 톤

○ 희망구매가격 : 원/kg

위와 같이 '05 ~ '06년도 총체보리 곤포사일리지 구매대상자로 신청합니다.

2005년 월 일

(인)

○ ○ 시장·군수 귀하

<서식 3-3>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사업 신청서

1. 참여대상 : 연결체(농협, 축협, 낙협, 영농조합법인, 한우회, 낙우회)

2. 사업신청자

- 연결체명 :
- 대표자 :
- 주소 :
- 연락처 :

3. 장비확보내용

- 장비보유현황 : 트랙터 대, 베일러 대, 랩핑기 대, 기타() 대

위와 같이 '05 ~ '06년도 조사료용 보리재배 연결체 대상자로 신청합니다.

2005년 월 일
(인)

○ ○ 시장·군수 귀하

<서식 3-4>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서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자

◦ 주 소 :

◦ 성 명(명칭) :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적

◦

◦

나. 사업내용

◦ 재배작물명 : , 재배면적 : ha, 곤포사일리지생산량 : 톤

◦

4. 사업 기간 : 2004. . ~

5. 보조금 신청액 : 천원

6. 보조사업의 보조금 교부 결정액

(단위: 천원)

구 분	사업량	보조금 교부결정액				
		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합 계
		보조금	융자금			
곤포사일리지 제조·운반비용 등	톤(롤)					
계						

7. 첨부서류

가. 보조금 교부조건

나. . . .

위와 같이 '04~'05년 경종농가와 축산농가를 연계한 조사료생산 사업의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지합니다.

200 년 월 일

○ ○ 시장·군수

인

보조금교부조건(예)

1. 보조사업자인 연결체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농림사업실시규정, 농림사업 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04~'05년도 경종농가와 축산농가를 연계한 조사료 생산사업지침 등 관계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본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지원은 2005 조사료생산 기반시설사업지침에 따른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의 사업계획에 따라 경종농가가 재배한 사료작물을 곤포사일리지로 제조하여 축산농가까지 운반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자는 경종농가와 계약한 금액으로 축산농가에 곤포사일리지를 제조하여 공급하고 경종농가와 축산농가로부터 확인을 받아 시장·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한다.
 4.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미리 보조금교부 결정권자(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보조사업과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5.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 등에 의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보조금교부조건에 위반한 경우나 보조금을 지원 받아 생산한 곤포사일리지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교부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보조사업자는 동 법률 제22조의 규정 및 보조금교부조건 위반 등 사유로 보조금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축산발전기금관리자(농협중앙회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6.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보조사업의 재원별 집행내역을 명백히 한 계산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보조금교부결정권자 또는 보조금취급기관에게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7.
 8. ...
- ※ 보조금교부결정권자가 사업목표달성을 위하여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교부조건을 부여

<서식 4-1>

총체보리사업참여 연결체 장비현황

< 시·도 >

시군	연결 체명	작업면적		장비 보유현황						추가장비 지원계획						비고
		'04 ha	'05.P	트랙 터	예취 기	집초 기	결속 기	피복 기	적재 기	트랙 터	예취 기	집초 기	결속 기	피복 기	적재 기	
		ha		대						대						

- * 1. 작업면적은 30ha 이하 수준에서 조정하되 실적등을 감안 조정
 2. 장비는 관련장비 이외는 지원대상이 아님
 3. 연결체별 작성

<서식 5>

2005 사료작물·목초종자 공급계획 및 실적

○○ 사·도

(단위 : kg)

구 분	정 책 지 원 분					자 가 확 보 분			계 (A+B)
	농협 중앙회	낙농 육우협회	종자 관리소	기타	소 계 (A)	자 가 채 종	자 체 구 입	소 계 (B)	
◦ 사료작물종자									
- 옥수수									
- 수단그라스									
- 호밀									
- 이탈리아 라이그라스									
- 연 맥									
- 유 채									
- 기 타									
소 계									
◦ 목초종자									
합 계									

<서식 6>

○○○○사업완료 및 정산서

(시·군 보관)

1. 사업주관기관명 :
2. 작성년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지원대상자 주소·성명 : (주민등록번호)
5. 사업비 집행명세 :

◦ 총괄표

사업명	사업비 집행액(천원)					
	합계	국고			지방비보조	자부담
		보조	용자	소계		
	(100%)	()	()	()	()	()

※ 합계는 세부명세 금액의 합계와 같아야 함

◦ 세부명세

세부시설 (사업)명	소요자재 (인력)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천원)	금액 (천원)	기타
○○○○	계 ○○○○ ○○○○ · · ·						·거래처 및 전화번호 등 필요사항 기재 - 자재구입·인건비 지출 등 각종 관련 증빙서류(영수증 등) 별도 첨부
○○○○	계 ○○○○ ○○○○ · · ·						
합계							

※ 합계는 총괄표 합계와 같아야 함

② 사료사업지원

1. 목 적

- 사료공장 HACCP제도 도입과 광우병(BSE)예방을 위하여 사료 제조시설 개선을 위한 개보수비 지원으로 안전한 사료의 생산·공급
- 반추가축에 섬유질가공사료(풀사료 위주)를 확대 공급함으로써 부존자원 활용도 제고를 통한 양축농가의 사료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도모
- 국제 사료곡물가격, 환율 및 해상운임 상승 등 여건변화에 대비하여 능동적인 대처를 위한 원료구매자금 지원으로 안정적인 원료공급 및 수급안정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사료제조시설 지원으로 안전한 사료 생산·공급 및 생산성 향상
- 사료원료 구매자금 지원을 통한 사료원료의 수급안정

3. 근거법령

- 사료관리법 제3조(사료시책의 수립·시행 및 재정지원)

4. 연도별 지원계획

		2001	2002	2003	2004	2005 (예산안)	2005이후
사 업 량		130	112	20	5	38	
사 업 비	계	38,327	32,176	45,278	31,888	61,738	
	보 조 용 자	-	-	-	-	-	
	지 방 비	38,327	29,896	44,511	31,213	52,333	
	자 부 담	-	-	-	-	-	
		-	2,280	767	675	9,405	

※ 사료제조시설비와 사료원료구매자금 합계(예산기준)

5. 2005년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개요

(1) 사료제조시설

(가) 지원배경

- 2005년부터 사료공장의 HACCP제도도입의 조기정착과, 광우병 예방 등을 위하여 제조라인을 구분하거나 또는 시설을 개보수 하고자 하는 사료제조업체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안전사료 생산기반 구축
- 섬유질가공사료의 공급확대로 가축의 생산성 향상 및 사료비 절감과 부존 자원의 활용도 제고

(나) 지원대상

- 사료공장 HACCP 도입을 위한 시설개보수 : 배합사료제조업등록업체
- 광우병(BSE)예방 관련 제조라인 구분 등 시설개보수 : 사료제조업등록업체
- 섬유질가공사료제조시설 : 일반업체, 농축협·영농조합법인·양축농가
- ※ 양축농가 및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던 자가배합사료제조시설은 2003년부터 “농업종합자금지원사업”으로 지원
- ※ 남은음식물을 사료화 하고자 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 개소당 사업비 : 사업계획에 의거 검토지원

(라) 지원조건 : 융자 70%, 자담 30%, 3년거치 7년상환, 연리 5%

(마) 지원시설의 종류 : 부지 구입비를 제외한 건물, 기계·장비 및 시설비 등 지원

(2) 사료원료 구매자금

(가) 지원배경

- 환율 및 국제 사료원료 가격의 등락 등에 능동적인 대처로, 원활한 사료원료 공급과 사료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

(나) 지원대상자 :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제조업 등록업체

- 지원대상업종 등 세부 지원기준은 농림부장관이 별도로 정함

(다) 개소당 사업비 : 지원요청 업체별 원료사용 실적 등을 감안하여 배정

(라) 지원조건 : 1년거치, 일시상환, 연리 5.5%

-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동 자금을 사료 원료구매의 용도로만 사용

나. 2005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38	61,738	52,333	-	52,333		9,405
·사료제조시설	13	31,350	21,945		21,945		9,405
·사료원료구매	25	30,388	30,388	-	30,388	-	-

다. 추진체계

(1) 사업주관기관

- (가) 사료제조시설지원사업 : 시·도지사
- (나) 사료원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 농림부

(2) 사업담당부서

- (가) 사료제조시설사업
 - 농림부 : 축산물위생과
 - 시·도 : 축산(농정)과
 - 시·군·자치구 : 축산(산업)과
- (나) 사료원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 농 림 부 : 축산물위생과
 - 농협중앙 회 : (주)농협사료
 - 한국사료협회
 - 한국단미사료협회

(3) 사업시행

- (가) 사료제조시설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선정
 - ① 사료공장 HACCP제도도입 및 광우병 예방을 위한 시설개보수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자
 - ② 사업장 부지를 확보한 자
 - ③ 사료 원료의 자체 확보계획 수립 및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 사업타당성 검토

- 시·도지사는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사업추진 가능성, 사업의 효율성 등을 조사하여 타당성 검토

< 사업계획서 내용 >

- 사업자 현황 (대표자 인적사항)
- 사업계획 (시설내용, 사업비조달 및 투자계획, 생산능력, 원료확보 방법, 제조방법, 사업효과 및 운영수지분석, 신용도평가결과, 담보능력 등)
- 부지확보 여부(자기소유의 경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등)
-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함

○ 시·도지사는 사업 타당성 등 검토내용을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사업 대상자 추천

○ 대상자선정

- 농림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추천한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상자 확정

○ 사업계획 수립

- 사업대상자는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
 - ※ 사업추진 공정은 월별로 작성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추진일정에 따라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 및 지도

○ 사업계획 변경 등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에게 승인 요청
-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포기할 경우 즉시 사업주관기관에 통보
- 사업대상자는 사업비 변경, 신축에서 개축 및 대상부지 이전 등 중요한 사업 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변경 승인을 받아 시행

○ 사업비 지원 : 기성고에 따라 자금 배정

○ 사업점검 및 사업비 정산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완료한 경우 이를 사진·증빙서류 등으로 확인(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리스도입 시설비는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정산

(나) 사료원료 구매사업

○ 사업비 지원

- 농림부 : 농협(지역조합 포함), 한국사료협회 및 한국단미사료협회의 당해연도 소요액 및 최근 2년간 양축용 사료(원료) 생산실적 비율을 근거로 사료관련 단체별로 배정 (HACCP인증업체 우선지원)
- 사료관련단체 : 업체별 배정은 사료생산실적 등을 감안하여 자체협의회를 통해 배정

○ 추진일정

- 사료관련단체는 업체별, 월별 지원계획을 농림부에 보고 (2005.1.31)
- 농림부장관은 사료관련단체에 지원금액 배정 (2005.2.20)

라. 행정사항

(1) 사료제조시설

(가) 사업대상자 준수사항

- 장비 등 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 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자가시공을 인정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의 계약으로 사업추진
- 사업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공업체 선정과 계약 체결시 시·군 관계관을 입회하도록 하고, 계약 청약자 및 낙찰자 공개
- 건축, 토목, 기계, 전기분야 등으로 구분입찰할 경우에는 시·군 관계관을 입회하도록 하고, 선정도급업체와 금액을 공개하고 시·군 관계관이 공사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

(나) 사후관리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추진실태를 수시로 현장 점검 및 지도 실시
 - 건설·장비 및 시설 등 추진상황 파악, 부진사유 및 해소방안 강구 등
- 사업계획서 승인내용과 일치하게 세부사업을 추진하였는지 확인
- 자금지원시 담당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기성고 확인후 자금집행 통보
- 사업계획서에 제출한 자부담 집행 여부 확인
- 자금집행 영수증 등 관련증빙자료 비치

- 지원자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지원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시에는 사업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대출기관에 통보하여 대출금을 회수할 것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사항은 보조금에의한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농림사업 실시규정, 농림사업자금집행기본규정 및 축산발전기금운영규정에 따름

(다) 보 고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는 붙임 서식1에 의거 사업완료후 20일 이내(시·도)
 - 사업대상자는 정산보고시 축발기금운영규정에 의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2) 사료원료 구매자금

(가) 사후관리

- 사료관련 단체는 지원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타용도로 사용시 지원자금 회수 등 조치)
- 사업대상자 변경
 - 사료관련 단체의 장은 사업대상자를 변경할 경우 농림부 장관에 승인요청
 - 사업을 포기할 경우 즉시 농림부장관에 보고

(나) 보 고

- 사료관련 단체는 업체별 자금집행 실적과 원료구매실적을 붙임 2서식에 의거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농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료관련 단체에게 이 규정과 관련한 명령을 하거나 보고토록 할 수 있음
- 자금의 대출 및 상환절차 등은 축발기금 운용규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상 사전에 실적 확인이 어려우므로 사업실적 확인없이 대출 가능

6. 2006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안내 : 2005년 지침에 준함

【 붙임 1 】

사료제조시설 사업완료 추진결과

- 1. 사업대상자명 : (주민등록 번호)
- 2. 사업대상자 주소 : (전화번호)
- 3. 작성자 직·성명 :
- 4. 작성년월일 :
- 5. 사업비 집행명세

○ 총괄표

사업계획			집행액			비고
계	응자 (축발기금)	자담	계	응자 (축발기금)	자담	
백만원 (100%)	()	()	()	()	()	

○ 세부명세

세부 시설명	사업계획				집행액				비고 (거래처 및 전화번호등)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단위	수량	단가	금액	
합계									

【 붙임 2 】

사료원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사업 추진결과

1. 사업대상자명 : (주민등록 번호)
2. 사업대상자 주소 : (전화번호)
3. 작성자 직·성명 :
4. 작성년월일 :
5. 사업비 집행명세 (00 분기)

사 업 계 획			집 행 액			비 고
계	응 자 (축발기금)	자 담	계	응 자 (축발기금)	자 담	
백만원 (100%)	()	()	()	()	()	

6. 사료원료 구매 및 생산·판매 실적(분기별)

(단 위 : 톤)

사 료 종류별	구매실적			사 료 종류별	생산 및 판매실적		
	구매량	구매단가	구매금액		생산량	판매량	판매액
대두박 호 밀 · ·				양축용 호 밀 · ·			
합 계				합 계			

※ 구매량은 제조업체 당분기 동안 구매한 실적을 전체를 작성

※ 사료종류는 사료공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료 또는 완제품명을 기재

※ 이 사업시행 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경영과(과장 이재용, 사무관 서호석)입니다.

1. 목 적

- 축산분뇨를 유기질비료 등으로 자원화하여 친환경축산기반 구축
-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방지
 - 축산농가에 대한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보완 확대로 오염원 삭감

2. 시책 및 추진방향

- 축산분뇨는 최대한 퇴비·액비로 자원화하되, 자원화가 어려운 경우 정화방류처리
-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등 특정지역내 축산농가에 축산분뇨처리 시설 우선 지원(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의 4大江 유역과 새만금지역등)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오분법“汚糞法”)에 의거 축산 분뇨처리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99년말 이전에 설치한 농가중 노후기계설비를 보완해야할 농가에 지원
- 나정착촌 지역의 축산분뇨처리 개선 및 경작지에 액비저장조 설치자금 지원
- 액비의 지역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축분비료유통센터 설립을 지원하고 액비 운반차량 및 살포장비 등 지원

※ 汚糞法 제4조의3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지역 등 축산신규입지 제한지역내의 신규지원은 불가 (다만, 기존농가에 대한 축산분뇨처리시설자금은 지원가능)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汚糞法 제25조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조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내지 제29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92~'02	2003	2004	2005	2006~2007
사업량		66,995	1,832	1,904	1,500	3,000
사업비	계	1,033,303	43,929	43,126	36,392	72,784
	보조	444,818	19,209	15,998	16,409	32,818
	용자	443,055	21,080	24,208	16,863	33,726
	자부담	145,430	3,640	2,920	3,120	6,240

5.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개요

(1) 사업대상지역

- 4大江(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 유역의 특정지역 및 새만금지역
- 축산업경쟁력강화사업 지원지구, 축산단지조성 및 축산계열화사업 지역
-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산분뇨처리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산분뇨처리대책 지역
- 나환자 정착촌(농원) 지역

(2) 사업대상자

(가) 단독시설

- 汚糞法에 의하여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설치 해야할 축산농가
 - 汚糞法에 의한 규제강화 또는 사육규모 확대로 추가시설이 필요한 농가는 개소당 한도액에서 기지원분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추가지원 가능
- 축산분뇨처리시설을 1999.12월말 이전에 설치한 농가중 노후시설·기계설비 보완 대상농가
- 4大江(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 유역의 특정지역과 새만금지역에 위치한 축산농가
- 오분법상 신고 규모 미만의 소규모 농가(액비저장조 및 퇴비사)

(나) 공동시설

-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주체(소·돼지·닭),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조합, 『오분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축산 폐수의 수집·운반영업허가를 받은 전문처리업체(농협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99.12월말 이전에 설치한 공동시설중 노후시설·기계설비 보완대상 시설
 - 자금지원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동시설이라 하더라도 부도발생등으로 시설가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양도농가에 대하여 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양수농가에 대하여 노후시설·기계장비의 보완자금 지원가능
- 축분퇴비유통센터로 지정된 농협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 톱밥제조시설
 -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주체(소·돼지·닭),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 ※ 설치자금은 단독·공동시설에서 지원

(다) 정착촌구조개선

- 한센 정착촌의 법인체(영농조합법인 등)·축산농가 및 한빛복지협회, 지방자치단체
 - 법인체·한빛복지협회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시설, 개별 축산농가는 단독시설의 각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내에서 지원
 - 정착촌내 축산분뇨처리시설을 1999.12월말 이전에 설치한 노후 시설·기계설비의 보완대상 포함

(라) 액비저장조설치

- 액비살포에 필요한 초지 또는 농경지면적을 확보하고 축산농가와 분뇨수거 계약을 체결한 경종농가·농협작목반 등
- 자가 경작지를 확보하고 있는 축산농가

(마) 축분비료유통센터

- 농협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대한양돈협회 시·군지부, 농협작목반

(3) 사업내용

(가) 단독시설

- 퇴비·액비화시설 : 축분발효시설(건조식·통풍식·교반식등), 액비화시설, 고속발효액비화시설, 농축액비화시설, 증발건조시설, 퇴비사, 건조장, 젓소운동장의 축산폐수배수로, 액비화전처리시설
- 정화방류시설 : 汚糞法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 부대 기계·장비 : 소형·이동식 톱밥제조기·과쇄기, 왕겨분쇄기·왕겨팽연화 장비, 액비운반탱크(암롤박스), 축분발효기계·장비, 축분이송스크류, 고액분리기, 퇴비·액비살포장비(단, 트랙터, 경운기, 축산분뇨 운반·살포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축사내 유해가스 제거기, 축산폐수탈색장치, 가축음용수 정수장비

(나) 공동시설

- 축분퇴비 및 액비화시설 : 축분발효시설(건조식·통풍식·교반식등), 공동액비화시설, 고속발효액비화시설, 농축액비화시설, 증발건조시설, 공동퇴비사, 축산폐수공공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 액비화전처리시설
- 정화방류시설 : 汚糞法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 부대 기계·장비 : 축분발효기계·장비, 바큇카, 암롤카, 축분·액비운반차량, 적재용 파렛트, 축산분뇨운반탱크(암롤박스), 퇴비·액비살포장비, 스키드로다, 왕겨팽연화장비, 축분퇴비포장기, 고액분리기, 축사내유해가스 제거기, 축산폐수탈색장치
 - ※ 축산폐수탈색장치 개소당 한도액 : 30백만원 이내
 - 액비전문처리업체는 바큇카, 암롤카, 액비살포차량, 암롤박스, 액비살포장비, 이동식액비저장조 지원
- 일반폐사축등 유기성 폐기물처리시설 : 양돈·양계단지, 종돈·종계장 및 나정착촌에 설치가능
 - 악취·가축방역 및 환경오염 방지 차원에서 설치
- 축분퇴비유통센터(농림부로부터 지정받은 조합에 한함) : 비료제조시설, 축산분뇨 운반차량, 암롤카, 바큇카, 파렛트, 운반탱크, 축분퇴비 저장창고, 포장시설 등
- 톱밥제조시설 : 팽연왕겨제조시설(미곡종합처리장에 한함), 공동시설 공급용 톱밥제조시설, 이동식 톱밥제조기

(다) 정착촌구조개선 : 한센 정착촌에 축산분뇨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위의 (가)단독시설 또는 (나)공동시설

(라) 액비저장조 설치지원 : 액비저장조(규격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정) 및 폭기시설(펌프식 교반시설 등)

(마) 축분비료유통센터 : 바큇카, 액비살포차량 및 살포기, 암롤박스 등 액비의 수거·운반·살포에 필요한 장비

(바) 지원규모 및 조건

1) 축종별 축사m²단위당 사업비 적용기준

- 단독시설, 공동시설, 정착촌구조개선은 다음 축종별 축사m²단위당 사업비에 의거 산출하여 적용

- 축종별 축사m²단위당 사업비단가

(단위 : 천원/m²)

축종	돼지	한·육우	젓소	닭	
				평사	케이지
단가	74	30	35	21	34

- ※ ① 축사면적은 건축법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된** 축사면적기준(관리사, 창고면적은 제외)
- ② 젓소운동장의 비가림시설은 축사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리·산양은 닭 평사, 말·사슴은 한우기준으로 각각 지원
- ③ 사업비가 축종별 축사m²단위당 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 자부담
- ④ 위의 축종별 사업비단가 보다 실제 공사단가가 낮을 경우 **시공단가**를 적용
- ⑤ 1999.12월말 이전에 설치한 축산분뇨처리시설의 보안을 위한 지원은 축종별 사업비단가의 50% 범위내에서 노후 시설·기계설비 교체의 실소요액을 산출하여 적용(창고형 건물은 제외)
- ⑥ 나환자 정착촌내 공동시설의 경우 사업비 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 시·도가 확인한 정착촌내 축산농가중 시설운영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실제 이용 농가의 축사면적을 포함하여 적용 가능
- ⑦ 무창돈사(또는 무창계사)의 경우 사육밀도를 감안하여 사업비 단가의 40%를 가산하여 적용가능하고 닭 케이지의 단가는 4단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4단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비례적으로 가감 산출하여 적용
- ⑧ 액비저장조에 투입할 축산분뇨의 전처리시설 지원은 농가별 지원한도(축사 m²단위당 사업비 적용기준) 초과시 축사 m² 단위당 사업비 적용기준 내에서 1회에 한해 추가지원 가능
- ⑨ 가축사육환경개선사업 대상자가 기존 집단 사육지역의 축사를 이전하여 친환경축사를 신축할 경우 지원한도는 신규사업대상자 자격으로 지원할 수 있음

2)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호당·법인체기준)

(단위 : 백만원/개소)

구분	돼지	한우	젓소	닭	
				평사	케이지
단독시설	300	200			
공동시설	1,500	800		1,000	
툽밥제조시설		120			
정착촌구조개선		단독·공동시설에 준함			
액비저장조설치		17(200톤 규모 1기당)			
축분비료유통센터		200			

- ※ ① 사업비에 설계비·공사감리비는 포함되나 부지구입비와 운영비는 포함되지 않음
- ② 나환자 정착촌 : 법인체·한빛복지협회는 공동시설, 개별 축산농가는 단독시설의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을 적용
- ③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와 상기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이 상이할 경우 금액이 작은 사업비를 지원대상 사업비로 산출하여 적용
- ④ 축산분뇨처리시설의 보완을 위한 지원은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의 50% 범위내에서 노후 시설·기계설비의 교체에 따른 실소요액을 산출하여 적용하되, 기존 창고형 건물의 개·보수비는 자부담
- ⑤ 액비저장조설치는 200톤 규모 1기당 기준(예)이므로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은 저장조 설치수량·규격 및 제품재질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저장조 설치수량 및 규격은 농가신청에 의거 사업주관기관이 결정할 수 있음. 다만, 폭기 및 교반시설 미설치시 지원한도는 1기당(200톤기준) 15백만원임
- ⑥ 지자체가 주관하는 익산왕궁지역, 4대강유역 수계의 수변구역지정 관련 지역의 공동시설과 일반 폐사축등 유기성폐기물처리시설지원은 공동시설의 사업비 한도액을 적용하지 않음

3) 부대 기계·장비의 개소당 한도액

- 축산분뇨 퇴비처리 장비 : 10백만원이내(스키드로다 및 고액분리기는 20백만원 이내)
- 축산폐수탈색장치 : 30백만원이내
- 축산분뇨 운반·살포용차량, 축분퇴비포장기 및 왕겨팽연화장비(공동시설용에 한함) : 30백만원이내
- 폐사축등 유기성폐기물처리시설 : 처리용량에 적합한 실비적용(사도지사 결정)
- 축분퇴비유통센터(RPC포함)의 왕겨팽연화시설·장비 : 120백만원 이내

4) 지원조건

- 용자조건
 - 용자기간 : 10년(3년거치 7년균분상환)
 - 금 리 : 연 4.0%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

◦ 지원비율

- 단독시설·공동시설(툽밥제조시설) : 보조 30%, 지방비20%, 용자50%
- 정착촌구조개선 : 보조 70%, 지방비 30%
- 액비저장조설치지원 : 보조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 축분비료유통센터 : 보조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용자 또는 자부담을 지방비로 대체가능하며, 지방비 대체후 발생하는 용자금은 조속히 반납

(4) 2005 사업비 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세부사업별	사업량	사 업 비					
		합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자		
합 계		51,342	33,272	16,409	16,863	14,950	3,120
○축산분뇨처리시설	851㎡	35,742	28,392	11,529	16,863	7,350	-
- 단독·공동시설	803천㎡	33,726	26,981	10,118	16,863	6,745	-
- 정착촌구조개선	48천㎡	2016	1,411	1,411		605	-
○축산분뇨유통및재활용	810개소	15,600	4,880	4,880		7,600	3,120
- 액비저장조설치	800개소	13,600	4,080	4,080	-	6,800	2,720
- 축분비료유통센터	10개소	2,000	800	800	-	800	400

나. 추진체계

(1) 사업주관기관

(가) 단독시설·액비저장조설치(툽밥제조시설)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이하 “시장·군수”)

(나) 공동시설·정착촌구조개선·축분비료유통센터 : 시·도지사(“시장·군수”에게 위임가능)

※ 사업주관기관은 본 지침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신청의 타당성 검토 및 계획조정, 보조사업의 교부결정, 사업계획변경 승인, 자금집행, 사업시행과 그 지도·감독, 사후관리, 평가 및 보고등 본 사업추진상의 제반업무 수행

(2)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축산경영과(02-500-1913 ~ 4)
- 시·도 : 축산담당과
- 시·군·자치구 : 축산담당부서(산업과·축산과·농업기술센터)

(3) 사업기간 : 2005.1.1부터 2005.12.31까지(1년)

(4) 사업 시행체계

- 사업신청(사업희망자 → 시·군)→사업내용검토 및 심의(시·군, 시·도 농정 심의회) → 대상자 선정(시·군, 시·도) → 시·도에 예산배정(농림부) → 시·군에 예산배정(시·도) → 대상자 확정 및 통보(시·군, 시·도) → 보조금 교부신청(사업대상자 → 시·군 → 시·도) → 보조금 교부결정(시·도 → 시·군 → 사업대상자) → 축산분뇨시설 허가·신고(시·군) → 시공업체 선정·착공(사업자) → 준공검사(시·군) → 사업완료 신고·사업비 신청 → 사업비 검정·정산 → 보조금 집행·용자금대출

(5) 사업신청 및 보조금 교부결정 등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부 또는 시·도에서 배정한 예산액 범위내에서 이미 신청한 사업희망자별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2005.1.15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하되, 사업대상자 선정(확정) 전에 신용조사를 추가 실시하여 사업대상자의 대출능력 등 사업비 집행능력을 감안하여 대상자를 선정·통보(추가로 사업신청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2005. 1.31한 선정 통보)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로부터 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제1항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보조금교부신청서와 대출신청 자료를 함께 받아 사업대상자별 세부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시·군 또는 도의 농정 심의회의 공개심의를 거쳐 사업계획 확정
 - 농정심의회의 축산분과위원회에 축산분뇨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시켜 기술자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
- 사업주관기관은 공동시설의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축산 기술 연구소·농협중앙회·농업기반공사의 전문컨설팅팀 또는 민간전문 컨설팅기관(정착촌은 한성협동회 포함)에 협조를 받아 사업타당성을 평가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별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과 타당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계획과 지원금액을 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별지 <서식1>에 의한 보조금교부결정을 하여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별 사업계획을 검토할 때에는 반드시 가축 사육규모, 축산분뇨(세정수포함) 발생량, 처리시설능력, 운영비 부담등의 타당성을 종합 검토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교부결정을 통지할 경우 농림사업 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정한 내용의 보조금 교부조건을 반드시 붙여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보조금교부 신청 및 용자금 신청을 한 경우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교부결정등을 통지시에 대출취급기관에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과 용자한도액을 함께 통지

(6) 사업계획 변경

- 사업주관기관은 원칙적으로 사업대상자가 당초 합리성 있게 검토하여 확정 통지한 보조금교부결정의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게 하되, 부득이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변경조치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에게 사업 계획 변경을 신청하고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목적, 변경사유의 불가피성 및 변경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 승인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변경승인을 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변경사유와 변경승인내용을 시·군은 시·도에, 시·도는 농림부에 각각 보고

(7)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의 허가·신고 및 준공검사

- 사업대상자는 汚糞法 제24조2의 규정에 의거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하는 경우 사업시공전에 허가청(건축·환경담당부서)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이행
- 사업대상자가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완료한 때는 허가청은 汚糞法 제26조에 의한 환경시설의 준공검사후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지체없이 실시

(8) 축산분뇨처리장비등의 정보자료 제공

-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는 협회자체의 축산분뇨처리시설기계품질보증업무 규약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보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축산기술연구소 및 농협중앙회와 협의하여 축산분뇨처리 시설, 기계·장비 등의 종류별 시공 또는 제조·판매업체, 장비의 제원(처리능력·규격·용량 등), 거래가격, 연락처 등에 관한 정보자료를 작성하여 시·도, 시·군, 지역축협조합 등 생산자단체에 배부하여 우량 시공업체와 기계·장비를 적극 알선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신청한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및 자금 계획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에서 통보한 우량 시공업체와 기계·장비를 선정하게 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시설, 기계·장비에 관한 시세조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 농협중앙회,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등에 자료제공을 요청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시 이를 활용하거나 사업대상자에게 알선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예방

(9) 시공업체 등 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기계·장비를 구입할 경우에는 기계·장비의 규격화 촉진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인기관에서 공인한 제품을 구입토록 하고, 상기 (8)항에 의한 우량업체의 기계·장비를 적극 알선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연간사업비가 3천만원 이상인 공동시설 및 단독시설을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 자가시공을 제한하고, 관련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
- 본사업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주관기관은 계약청약자 또는 낙찰자를 공개
- 사업대상자가 축산분뇨처리시설 시공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별지 <서식2>의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도급 표준계약서”나 사업주관기관이 지정한 서식에 의하여 계약서 작성(축산분뇨처리 기계·장비 구입계약시에도 이를 준용)

- 사업주관기관은 제조·시공·판매업체로 하여금 농가에 대한 A/S체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대상농가에게 교부토록 하고 보험증권 사본을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토록 할 것 (소액계약등 사업주관기관이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증보험제출 생략가능)
 - 하자이행보증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계약금액의 20%이상, 보험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 되도록 할 것

(10) 축산분뇨처리시설의 설계, 시공 및 감리

< 설 계 >

- 사업대상자는 축산분뇨처리시설의 설계를 반드시 해야하며, 이 경우 “축산분뇨자원화시설표준설계도”(건설교통부·환경부·농림부, '99.8) 및 “축산폐수정화시설표준설계도”(환경부, '95.11)등을 활용하여 설계비 절감과 건실한 시공 추진(단, 3천만원 미만의 사업대상자는 축산폐수처리시설 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시 첨부하는 서류로 같음)
- 사업대상자는 표준설계도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 농업기반공사 또는 설계전문업체(건축사법에 의한 유자격업체)와 계약하여 설계 의뢰
 - 설계계약은 사업주관기관 축산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사업대상자와 설계업체가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관기관(축산·환경·건축)의 의견을 설계도에 반영

< 착공·시공 >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 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사업계획과 설계도 등에 따라 사업을 착공하게 하되, 사업대상자가 보조금교부결정 통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업착공을 하지 못할 경우 사업대상자 변경 또는 사업비 반납조치
- 사업대상자 또는 시공업체는 사업착공일로부터 준공시까지 시설현장에 현황 안내판을 표시하여 게시

< 공사감리 >

- 사업주관기관은 공동시설에 대하여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농업기반공사 또는 설계전문업체(건축사법에 의한 유자격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
 - 시·도는 공동시설에 대한 “설계및감리업무수행지침”을 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조치
- * 단독시설은 사업대상자(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자체 감리를 하도록 하고, 나환자 정착촌은 농업기반공사 또는 한성협동회에 위탁하여 감리 실시(준공검사시 각각 확인)
- 시공업체는 시공설계도서(도면 및 내역서)와 공정계획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조치
- 사업주관기관 및 공사감리기관은 부실시공 또는 불공정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당해 시공업체에게 공사중지, 하자보수, 재시공 명령을 취하고, 향후 시공업체의 사업참여를 제한토록 조치
- 준공검사는 허가청이 ① 축산분뇨처리시설의 준공검사(환경담당)를 먼저한 후 ② 건축물의 준공검사(건축담당)를 하고, 그 다음 ③ 사업주관기관이 사업 완료검사·정산등 검정(축산담당)을 실시

(11) 기타사항

(가) 사업추진상의 유의사항

- 시·도는 “축분퇴비유통센터” 설치조합으로부터 축분퇴비, 바큇카, 축분퇴비 적재용 파렛트, 운반탱크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2005년 축산분뇨처리 시설사업의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
- 사업대상자는 축산분뇨처리시설의 관리방법 등 기술상담이 필요한 경우 농협중앙회·농업기반공사의 전문컨설팅팀 및 지역축협·업종조합의 축분 처리기술상담실을 활용
- 농협중앙회는 2005년도 본 사업대상자 교육계획을 2005.2월말까지 수립하여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착수 이전에 실시
- 시·도는 가급적 汚糞法에 의거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자원화(퇴비·액비)시설의 설치 권장(신규 정화처리방류시설은 최대한 억제 하되,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가능)

- 액비화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액비화전처리시설 및 고액분리기 우선지원
 - 액비화시설의 경우에는 환경부고시 제1999-110호('99.7.8)에 의거 액비를 살포할 농경지등을 확보(자가 또는 임차농지 포함)한 농가에 한하여 지원
 - 액비저장조 지원대상자에게 악취예방 및 토양환경보전을 위해 환경개선제(발효촉진제 등) 사용 및 시비처방서 발급 각서 징구
 - 슬러리 분뇨는 사전 전(前)처리후 액비저장조에 투입하여 액비의 품질안전성 확보와 악취저감 유도
- 톱밥 등 수분조절재의 공급이 용이하지 않는 지역은 축산기술연구소 또는 농협중앙회등에서 추천하는 톱밥의 사용량 감축 또는 톱밥 대체 수분조절재 사용공법등을 권장
- 표준설계도서 이외의 방법으로 정화방류시설을 설치할 경우 위의 (10)축산 분뇨처리시설의 설계지침에 의하여 汚糞法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도록 처리용량을 설계·시공토록 지도·감독
- 정화방류시설과 저장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위탁처리하는 농가) 설치대상자에게는 축분을 퇴비화 할 수 있는 퇴비사를 반드시 설치토록 지도
- 스키드로다는 축사시설을 개선하여 동 장비의 활용이 가능한 공동시설 등에 지원하되 구입기종은 중기등록 대상이 아닌 중량 2톤 미만의 장비를 선택 하도록 권장
 - 트랙타 부착용 스키드로다는 반드시 트랙타를 보유하고 있는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
- 소형 톱밥제조기, 가공왕겨분쇄기 및 왕겨팽연화장비는 퇴비화시설을 설치한 농가로서 트랙타등 장비를 가동할 수 있는 동력을 보유하고 톱밥원료목 또는 왕겨의 조달이 용이한 대상자에 지원

(나) 축산분뇨처리시설 표준설계도 활용

- 건설교통부·환경부·농림부('99.8)
 - 종류 : 축산분뇨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퇴비사, 저장액비화, 통풍식·교반식 축분발효시설)
 - 열람처 : 시·도 및 사군 축산과(축산담당부서), 지역축협조합 등에 비치분 열람

- 환경부('95.11)
 - 종 류 : 축산폐수정화시설 표준설계도(톱밥토양여과상, 회분식활성오니법, 산화구법)
 - 열람처 : 시·도 환경보호과에 비치분 열람
 - ※ 시·도는 축산분뇨처리시설 표준설계도 이용실적을 매 반기별로 집계보고

다. 사업자금의 집행과 정산

(1) 적용 원칙

- 사업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자금(보조금·융자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 관한법률, 2005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시행지침서, 농림사업실시규정등 관계법·규정과
-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의 제4조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제8조 대여 및 대출의 실행, 제13조 보조금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 하여 사업자금을 집행관리

(2) 기본계획수립 및 예산배정

- 시·군은 축산법 제3조 및 汚糞法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의 축산여건 등을 고려한 시·군의 “축산분뇨처리 및 자원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축산법 제3조 및 汚糞法 제4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시·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축산분뇨처리 및 자원화 기본계획”을 검토 조정하여 시·도의 실정에 맞는 “축산분뇨처리 및 자원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시·도는 시·군의 “축산분뇨처리 및 자원화 기본계획”과 예산요구내용을 기초로 하여 매년 해당 시·군에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의 예산을 배정

(3) 사업자금 배정신청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달말 까지 집행가능한 최소한의 보조금 및 융자한도액을 사업대상자로부터 신청받아 매월 20일까지 농림부(축산경영과)에 자금을 배정요구

- 보조금 및 융자금 구분 기재
- 시·도는 시·군으로부터 자금배정요구를 종합하여 농림부(축산경영과)에 보조금 및 융자한도액을 매월 배정요구
- 시·도는 보조금 및 융자한도액 배정요구를 하였으나 정부의 자금형편상 그 달에 전액이 배정되지 못한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미배정액을 차기분에 포함하여 배정요구
 - 다만, 사업대상자로부터는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신청액중 부족액을 다시 신청을 받지 않고서도 배정요구 가능
- 보조금과 융자한도액은 매달 20일까지 농림부에 도착한 예산요구액에 한하여 다음 달에 배정

(4) 사업자금 집행 및 정산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 실시<서식 3·4 참조>
- 검정 및 정산서에는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융자,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별지 <서식3·4>에 기재된 증거서류와 축산분뇨처리 시설 설치공사도급표준계약서(구비서류 첨부)에 의하여 확인
 - 축산분뇨처리시설설치도급표준계약조건은 농림부 축정51573-79('98.2.6)호 참조
- 사업주관기관은 농협중앙회,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로 부터 제공받은 정보자료, 2개 이상 업체에서 받은 견적서의 가격과 자체적으로 실시한 시세조사결과 등을 근거로 하여 축산분뇨처리의 시설단가와 기계·장비 종류별 공급단가의 타당성과 사실여부를 철저히 검정하여 정산함으로써 지원자금이 실제 시세보다 과다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정산을 철저히 실시
- 사업주관기관은 증거서류에 의심이 갈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거래업체 등에 조회하여 사실여부를 확인
- 위의 방법으로 사실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관계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별로 확정 통지한 보조·융자사업의 축산분뇨처리 시설, 기계·장비의 기종명, 제조업체명, 규격, 수량과 사업비 명세서(국고보조, 지방비 보조, 융자, 자부담으로 구분) 내역등을 대출취급기관에 통지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별 실제 대출금액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실제 사업자금 집행금액을 지원 비율을 지켜 검정 및 정산처리(정산서의 1천원 미만은 사사오입)
- 사업주관기관은 본 사업지침에 의하여 축종별 축사m²단위당 사업비단가와 개소당 사업비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비율을 지켜 정산하여야 하며, 지원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자부담으로 처리(축종별 사업비단가 보다 실제 공사 단가가 낮을 경우는 낮은 가격의 공사단가를 적용)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자별 해당시설 준공 및 장비의 납품이 완료되고, 시공·납품업체가 A/S를 위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면, 사업대상자가 보조금 및 용자금을 지급받아 시공·납품업체에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 사업주관기관의 사업비 집행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을 준수 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조·용자금을 집행할 경우에는 시공·납품업체 통보 및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공사대금 지불영수증 또는 시공·납품업체의 통장에 입금확인서를 제출토록 할 것
 - 지역축협등 대출취급기관에서 동사업비 용자금을 대출시 사료대금 변제 등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과 용자금을 함께 지원할 때 용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하게 하고 보조금만 지원하는 것은 불가
 - 단,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용자금을 대출 받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용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하며, 정착촌구조개선사업등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여 지방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보조지원이 가능함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부동산담보, 제3자담보, 후취담보 및 농림수 산업자 신용보증제도를 적극 활용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에 중복되는 시설과 기계·장비가 투자되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의거 집행토록 조치
 - 시설설치와 관련 객관적 판단이 어려운 인건비는 시·도 및 시·군에 자체 인건비 지급기준을 설정후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
 - 노무비는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제6호의 규정등에 의거 증빙되고, 사업주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산처리
 - 사업대상자(가족 포함)의 자가노력비는 본 사업비의 정산대상에서 제외
- 사업주관기관은 2005.9.30 현재의 사업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예산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대상자 변경 및 자금배정 반납등 필요한 조치 강구

라. 행정사항

(1) 사후관리

(가) 사후관리사항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사업실시규정에 의거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상황 및 이동상태 등을 연 1회 정기점검을 통해 평가를 반드시 실시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 수시 점검평가를 실시하여 지원자금이 사업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사후관리 강화
- 농림사업실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장부를 비치한 후 시설투자비, 운영비, 수익금, 경영성과 등을 기재토록 지도
- 사업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자가 지원자금의 상환완료기간까지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용도의 사용할 때 자금회수 등 적절히 조치

(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재 산 명	사 후 관리기간	처 분 제 한 기 준	법 적 근 거
◦ 축산분뇨 처리시설 및 기계·장비	5년	◦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안됨	◦ 보조금의 예산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35조 등

(2) 보 고

보 고 사 항	보고기한	보고기관	비 고
◦ 2005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대상자선정 결과보고	2005.3.31한	시·군(시·도)→ 시·도(농림부)	보조금의 예산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보고사항별지 <서식 5>
◦ 2005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추진실적보고	2005.6.30한	"	
- 사업추진 중간실적보고	2005.12.31한	"	
- 사업추진실적보고	2005.1.31한	"	
◦ 2004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추진완료·정산보고			
◦ 축산분뇨처리시설 표준설계도 이용실적보고(반기)	2005.6.30한 및 12.31한	시·군(시·도)→ 시·도(농림부)	별지 <서식 6>

6. 200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단독시설·액비저장조설치(뚝밥제조시설) : 시·군·자치구(축산담당부서), 읍·면
- 그외 시설 : 시·군·자치구 경유 시·도

나. 신청자격

(1) 단독시설

- 汚糞法에 의하여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 설치 해야할 축산농가
- 축산분뇨처리시설을 2000.12월말 이전에 설치한 농가중 노후 시설·기계설비 보완 대상농가
- 4大江(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 유역의 특정지역과 새만금지역에 위치한 축산농가
- 오분법상 신고 규모 미만의 소규모 농가(액비저장조 및 퇴비사)

(2) 공동시설

-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주체(소·돼지·닭),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조합, 『오분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영업허가를 받은 전문처리업체(농협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축분퇴비유통센터로 지정된 농협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 뚝밥제조시설은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체(소·돼지·닭),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조합

(3) 정착촌구조개선

- 나환자 정착촌의 법인체(영농조합법인 등) 또는 축산농가

(4) 액비저장조설치

- 액비살포 경지면적을 확보하고 액비를 공급하는 축산농가와 분뇨수거 계약을 체결한 경종농가 및 자가경작지를 확보하고 있는 축산농가

(5) 축분비료유통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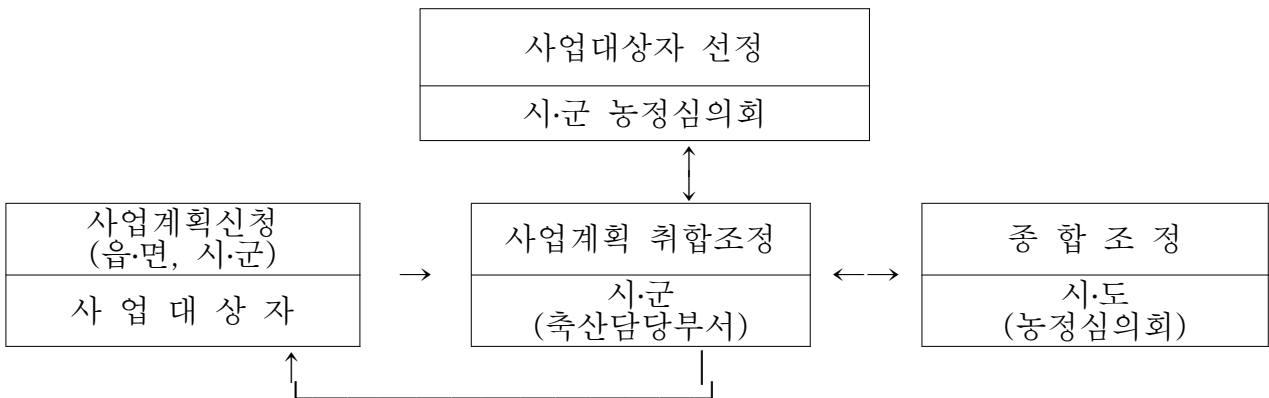
- “축분발효액비 활용지역 협의체”를 구성하여 센터 설치·운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농협법에 의해 설립된 지역조합 또는 양돈협회 시·군 지부, 농협작목반

다. 신청절차

(1) 단독시설·액비저장조 설치(툽밥제조시설)

- 사업대상자는 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제1항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축산 분뇨처리시설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2005.1.20까지 시·군(또는 읍·면장을 경유 시·군)에 제출
- 시·군은 단독시설의 사업신청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에 2005.2월말까지 제출
- 시·도는 2005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에 시·군의 사업물량 및 예산과 이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2005.3월말까지 농림부에 신청
- 농림부는 시·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심사·조정한 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즉시 시·도 및 시·군별 예산배정계획을 시·도에 통보
- 시·도는 확정된 시·군별 예산배정내역을 2005.12월말까지 시·군에 통보
- 시·군은 자체사업 확정후 예산요구서에 제출된 우선 순위에 따라 2006.1.15까지 사업대상자 확정·통보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절차 >



(2) 공동시설·정착촌구조개선·축분비료 유통센터

- 사업대상자는 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제1항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축산 분뇨처리시설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을 경유하여 2005.1월말까지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사업신청서를 심사한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2005.3월말까지 농림부에 신청

- 농림부는 시·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심사·조정한 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예산배정계획을 시·도에 통보
- 시·도는 위의 단독시설의 신청절차에 준하여 세부사업계획서를 늦어도 2005. 10월말까지는 제출받아 대상자를 확정·통보하고 2006.1.15까지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에 보고

라. 지원조건

- 단독시설·공동시설(툰밥제조시설) : 보조 30%, 지방비 20%, 용자 50%
- 정착촌구조개선 : 보조 70%, 지방비 30%
- 액비저장조설치지원 : 보조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 축분비료 유통센터 : 보조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용자조건
 - 용자기간 : 10년(3년거치 7년균분상환)
 - 금 리 : 연 4.0%

마. 구비서류

- 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제1항의 별지 제3호 서식과 첨부서류
 - 사업희망자는 시·군(시·도)에서 정한 경우 사업성검토서, 신용조사서, 부지확보 및 인허가 완료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

바. 사업대상자 선정 : 농림사업실시규정과 본 사업지침에 의함

사. 기타사항

- 2005년도 본 사업지침에 준하되 세부사업별 지원비율, 단가등 지원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
-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허가·신고기관
 - 중 양 : 환경부 생활오수과(02-2110-6825)
 - 시·도 : 환경담당부서
 - 시·군 : 환경담당부서

<서식1>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서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자 : 주 소
 성 명(명칭)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나. 사업내용

4. 사업 기간 :

5. 보조금 신청액 : 원

6. 보조사업의 보조금 교부 결정액

(단위: 원)

구 분	총소요액	국비보조금	융자금(농특회계) 또는 지방비	자 부 담
금 액 부담율(%)				

7. 첨부서류

가. 보조사업의 세부사업별 내역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나. 보조금 교부 조건

다.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서식등

위와 같이 ○○○사업의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지합니다.

2005년 월 일

시장·군수(시·도지사)

인

<서식2>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도급 표준계약서			
계약자	발 주 자(갑)	*법인 명칭 *주소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공사수급자(을)	*상호 또는 법인 명칭 *주소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면허번호
	입회관계자	*상호 또는 법인 명칭 *주소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면허번호
계약내용	사 업 명		
	단위사업내용		
	계약금액	금 원정(W)	총공사금액
	계약보증금	금 원정(W)	총공사금액의 10%
	선 급 금	금 원정(W)	총공사금액의 10%
	지체상금율	1일 계약금의 1/1,000	
	착공년월일		
	준공년월일		
기 타 사 항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의 경우 공종별 구분기재)			
공종	공종별 계약금액	하자보수 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담보 및 A/S 책임기간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p>갑과 을은 상호 대등한 자유의사 입장에서 불입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당사자 및 입회관계자가 기명날인 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불입서류 : 1. 축산분뇨처리시설설치공사도급표준계약조건 1부. 2.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공사내역서, 현장설명서 등) 1부. 3. 공사비 산출내역서(을 작성제출) 1부. 4. 공사입찰유의서(지명경쟁입찰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5. 축분처리시설설치공사계약특수조건(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10px;"> <div style="text-align: right;"> 갑(법인 대표) 을(공사수급인) 입회관계자 </div> <div style="text-align: left;"> 인 인 인 </div> </div>			

<서식3>

○○○○사업(완료, ○○년말) 검정 및 정산서

<기계·장비>

1. 사업주관기관명 :
2. 작성년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지원대상자 주소·성명 : (주민등록번호)
5. 사업비 집행명세

기종명	제 조 회사명	규격 (형식)	제조 번호	수량 (대)	단가 (천원)	사업비 집행액(천원)					영세율적용 여부(○,×)	비 고
						계	국고보조	용 자	지방비 보 조	자부담		
						(100%) ()	()	()	()	()		
						(100%) ()	()	()	()	()		
						(100%) ()	()	()	()	()		
						(100%) ()	()	()	()	()		

< 작성요령 >

- 대상사업 및 사업주관기관명 : 단독시설, 톱밥제조시설, 액비저장조설치(시장·군수), 공동 시설정착촌구조개선축분비료유통센터(사도지사)
- 법인, 공동조직 등의 경우는 지원대상자 주소·성명란에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 하고 그 밑에 구성원 성명을 부기
-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첨부(증빙 서류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는 사업비 집행액 합계와 일치)
 - ①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자필서명 영수증
 - ②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세금계산서
 - ③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계좌입금증 등)
- * 구입대상 신문의 기계·장비가격을 지원대상자의 중고 기계·장비가격과 상계처리하고 지원대상자가 그 차액만 공급자에게 지급할 경우는 당해 중고 기계·장비의 기종명, 제조회사, 규격(형식), 제조번호(제작년도 포함), 가격 등을 기재한 계약서 사본을 자부담금과 관련된 위의 금융기관 거래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 사업별로 1장에 여러 지원대상자를 연속하여 작성 가능

<서식4>

○○○○ 사업(완료, 연도말) 검정 및 정산서

< 시 설 >

1. 사업주관기관명 :

2. 작성년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지원대상자 주소·성명 : (주민등록번호)

5. 사업비 집행명세 :

◦ 총괄표

사 업 명	사 업 비 집 행 액(천원)				
	계	국비보조	용 자	지방비보조	자 부 담
	(100%)	()	()	()	()

◦

세부명세

세부시설명 (사업명)	소요자재 (인력)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천원)	금 액 (천원)	비 고
○○○	계 ○○○ ○○○ · ·						◦거래처 및 전화번호 기타 필요사항 기재
○○○	계 ○○○ ○○○ · ·						
합 계	·						

< 작성요령 >

- 대상사업 및 사업주관기관명
 - 단독시설(시장·군수) : 퇴비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기계·장비 등
 - 톱밥제조시설(시장·군수) : 톱밥제조시설, 이동식 톱밥제조기 등
 - 액비저장조설치지원(시장·군수) : 액비저장조
 - 축분비료유통센터(시·도지사) : 액비 운반차량 및 살포장비 등
 - 공동시설(시·도지사) : 부산물비료(축분퇴비)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기계·장비
 - 정착촌구조개선(시·도지사) : 축분발효시설, 공동액비화시설, 공동퇴비사 등
- 법인, 공동조직 등의 경우는 지원대상자 주소·성명란에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그 밑에 구성원 성명을 부기
-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사업자등록번호 기재)를 첨부(증빙서류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는 각 사업비 합계와 일치)
 - ① 사업자 등록증소지자의 자필서명 영수증
 - ②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세금계산서
 - ③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계좌입금증 등)
 - ④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의 경우는 직접 노무비를 지원대상자가 사업자등록증소지자외의 자(사업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은 제외)에게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서명을 받은 때에는 당해 증빙을 시장·군수가 당해지역의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인정(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제6호의 규정 참조)
 - ⑤ 시설설치시 인부에게 제공한 식사대는 사업비 정산대상에서 제외
- 주요공정 및 완성 사진, 자재수불부, 작업일지, 사업비(보조금·융자금) 금전출납부와 거래통장, 기타 사업추진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
 - 특히, 보조 및 융자사업의 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금전출납부와 통장거래는 따로 개설하여 정산 증빙자료 활용
- 검정 및 정산담당자는 위 세부명세내용 대로 시설이 완료되었는지를 현장에서 대조 확인하여 검정 실시
- 세부시설(사업)명 단위사업의 실체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구분하고, 소요자재(인력)명은 자재, 장비, 인력,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가능한한 상세하게 구분 기재

<서식5>

()년도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추진실적보고

<대상자 선정, 사업추진실적 : 중간·완료 및 정산>

[총괄]

(단위 : 천원)

사업별	사업자수 (개소)	사업계획		사업비										이월액		불용액		비고			
		단위	사업량	계 획				실 적(정산)						국비보조	융자	국비보조	융자				
				국비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국비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단 독 시 설	퇴비화 시 설	계																			
	액비화 시 설	계																			
	정 화 방 류 시 설																				
		계																			
	부대 기계·장비																				
	소 계																				
공 동 시 설	자원화 시 설	계																			
	액비화 시 설	계																			
	정 화 방 류 시 설																				
		계																			
	부대 기계·장비																				
	소 계																				

(단위 : 천원)

사 업 별	사업 자수 (개소)	사업계획		사 업 비										이월액		불용액		비고
				계 획					실 적(정산)									
		단위	사업량	국비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국비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국비보조	융자	국비보조	융자	
정착촌구조개선	퇴비화 시 설	계																
	액비화 시 설	계																
	정 방 시 화 류 설																	
		계																
	부대기계 ·장비																	
	소 계																	
툽밥제조시설																		
액비저장조설치																		
축분비료유통센터																		
합 계																		

- ※ ① 1. 한육우, 2. 젓소, 3. 돼지, 4. 닭, 5. 기타가축(오리·산양·말)별로 각각 구분하여 본 서식에 의하여 별지에 작성 첨부함
- ② 공동시설, 정착촌구조개선(개별·공동시설 구분표시), 툽밥제조시설·이동식툽밥제조기 및 축분비료유통센터는 사업대상자별(농원별) 내역을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함

<서식 6>

축산분뇨처리시설 표준설계도이용실적보고서(반기)

①도서종류 및 명칭	②공고번호 및 연월일	⑤활용실적		비 고
		③수량	④용도	

31	축산계열화 사업(공공)
----	--------------

① 가축계열화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경영과(과장 이재용, 사무관 조병임), 축산물위생과(과장 석희진, 사무관 이흥철)입니다.

1. 목 적

- 전문경영체 중심의 생산·가공·유통의 일관경영으로 양축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하도록 함으로써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등 안정적인 축산경영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수출산업과 연계하여 계열주체를 육성
- 완전, 부분계열화 및 조합형계열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계열 사업 추진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1~'01	'02	'03	'04	2005 (예산안)
돼지	사업량	17	(4)	5(4)	6(5)	7
	금 액	68,671	8,554	28,443	23,653	20,300
닭·오리	사업량	14	(1)	2(1)	2(2)	3
	금 액	67,674	1,920	3,567	15,500	13,300

※ ()내는 기선정 업체수임

5.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설명

- 지원내용 : [별표1] 참조
- 대상축종 : 돼지, 닭, 오리
- 자금지원대상자 : 시·도지사로부터 계열화사업자로 선정된 자
- 지원조건 : [별표 1] 참조

나. 대상자선정

(1) 신청자격

- 축산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신고·허가·등록된 부화업, 종축업 및 도축업, 축산물종합처리장(육가공업 포함), 배합사료제조업을 하는 자, 농업협동조합(지역, 업종) 및 중앙회, 영농조합법인, 유통업체 등
 - 가축별로 다음에 정하는 계열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함
 - 돼지 : 축산물종합처리장 및 동 처리장과 연계하여 계열화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자
 - 닭·오리 : 종계(종오리) 및 부화장, 배합사료공장, 도계(도압)장, 육가공장사업중 2종이상 보유자
 - 기 타
 - 지역주민의 민원발생 소지가 없어야 함
 - 융자금에 대한 담보능력 및 자부담, 운영자금에 대한 자금능력이 있어야 함
 - 육계·오리 신청업체 또는 생산시설이 없는 유통업체의 경우 2년이상 자체 계열화 사업실적(사업신청 직전년도 계약생산 실적이 돼지는 30천두, 육계는 50만수, 오리는 20만수 이상)이 있어야 한다.

(2) 우선순위

-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
 - 축산물종합처리장 및 동 처리장 연계하여 계열화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자
 - 축산단지 등 기존시설과 연계·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자
 - 도축장, 사료공장, 종돈장, 육가공장 및 유통판매 시설중 2종이상을 보유한 계열주체
 - 계열화사업을 지정받은 자로서 재해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자
 - 생산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

(3) 신청절차

- 지원을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사업장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사업희망 전년 1월말까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격요건, 사업장건설에 따른 법적제한 사항등을 검토하여 시·군·구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청(사업희망 전년 2월말까지)
- 시·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는 의견서를 붙여 농림부장관에게 예산신청(사업희망 전년 3월말까지)

(4) 사업타당성 검토

- 농림부 장관은 학계·업계·농협 등 관련 전문가들로 하여금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심사회 개최(농협에서는 심사회 개최협조)
 - 계열화사육비만을 지원신청하는 경우에는 심사회 생략 가능
- 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또는 사업신청자가 심사회에 참석하여 설명등 실시
 - 주요심사내용 : 계열주체 자격요건, 부지확보여부 지역주민민원발생 및 법적제한사항 유무, 계열요소구비사항, 사업계획서 타당성, 계열농가와와의 계약여부, 경영기록사항, 자금상환능력 등

(5) 계열화사업자 지정(별표2)

- 사업주관기관은 자금지원계획이 확정되거나 시·도지사가 계열화사업요건을 갖춘 자라고 인정하는 경우 가축계열화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음.
- 본 사업추진요령 시행이전에 가축계열화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지원받은 자는 본 요령에 의하여 계열사업자로 지정을 받는 것으로 간주.

다. 자금지원방법

- 사업비는 계열주체의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예산규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이미 지원받은 업체는 당초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신규사업 신청절차 및 방법에 의함.
 - 사업완료 예정년도에 추가사업비를 신청할 수 있으나 연말까지 미완료시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민원발생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될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추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사업대상자 지정을 취소하고 민원해결후 다음연도에 예산을 재신청
- 계열농가 생산시설은 축산종합자금사업의 시설자금지원 또는 가축계열화사업에 포함하여 계열주체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계열주체를 통하여 지원할 경우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대상농가를 선정하여야 함.
- 계열농가가 계열주체를 통하여 생산시설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축산종합자금제 시설지원의 일반농가 지원내용과 동일 적용
- 계열주체에게 계열화사육비를 지원할 경우 사업 주관기관은 계열주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자금지원액을 결정하여 지원하되, 기지원업체는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지원액 등 결정(단, 브랜드육성사업 등 타사업을 통해 경영자금 등 사육비와 동일한 성격의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중지원 방지위해 사육비지원 불가)
 - 계열화사육비 집행계획서 작성방법
 - 지원내용 : 계열주체 및 계열농가(축산단지 포함)가 운영하고 있는 축사에서 소요되는 종축입식, 자축구입비, 사료비,약품비, 위탁사육수수료
 - 작성내용 : 계열화 사업체계도, 계열농가명단, 계열농가별 사육형태 및 사육 두수, 월간 및 연간생산·입식·출하두수, 1회전에 소요되는 사료비 및 약품비, 연간 종축입식비, 기타운영사항

라. 2005년도 사업비(예산안)내용

(단위 : 백만원)

축종	사업비	축산발전기금		지방비	자담
		보조	융자		
돼지	29,000	-	20,300	-	8,700
닭·오리	19,000	-	13,300	-	5,700

마.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경우 계열화 요소별로 현재까지 갖춘것, 연도별 새로 갖춘 것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신규 및 보완사업)
 - 정부시책 방향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신청가능
- 계열사업 완성년도, 연도별 계열농가 확보 및 처리두수, 연도별 시설 설치계획, 시설별로 자금투자계획(축발기금, 자부담구분)을 명시
- 사업추진규모
 - 돼 지 : 연간 비육돈 생산·처리능력 45천두(농가는 10호)이상
 - 닭(육계) : 연간 육계 생산·처리능력 4,000천수(농가는 25호) 이상
 - 오 리 : 연간 오리 생산·처리능력 1,000천수(농가는 15호) 이상
- 사업추진 기간내 확보해야 할 사항
 - 돼지 : 상기 규모이상의 비육돈을 생산할 수 있는 모돈 및 자돈생산기반시설 (계약공급의 경우 3년이상 장기계약을 하여야 함)
 - 닭(육계)·오리 : 상기 규모이상의 병아리·새끼오리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종계장·종오리장과 부화장(계약공급의 경우 3년이상 장기계약을 하여야 함)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나. 사업 담당부서

- 농림부 : 축산경영과(02-500-1907, 8 : 닭오리), 축산물위생과(02-500-1923, 4 : 돼지)
- 시·도 : 도 축산과, 광역시 농정과(축산계)
- 시·군·자치구 : 축산과 또는 축산담당(축산계)

다. 사업시행

(1) 사업계획의 수립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에 의한 추진일정을 수립하여 사업 주관기관에 제출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자가 제출한 추진일정에 따라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점검
- 생산한 축산물에 대한 상표등록 또는 품질인증 등을 실시하여 자기상표 (고유 브랜드)로 판매할 수 있어야 함.
- 계열농가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도 요원 확보

- 축산계열대학 졸업자 또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기술지도요원을 2명이상 확보하여야 함.
- 사업계획의 조정 :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계획 조정 및 확정

(2) 계열화업체의 준수사항

- 협의체 구성
 - 사업주관기관은 계열업체와 계열농가 사이에 가축계열화 사업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지도하여야 함
 - 협의체는 지역별 농가수를 감안하여 구성하고 수수료 지급금액, 자재공급, 농가와와의 계약등 주요사항을 계열사업주체와 협의 결정
 - 사업주관기관은 표준계약서 작성을 권고하거나 사고분쟁의 조정, 계약체결, 계약사항의 이행등을 지도
- 계열화 업체의 이행사항
 - 계열사업주체로 지정된자는 계열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사업시행에 관한 정관을 작성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 계열사업주체는 참여농가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열농가의 사육시설 개선을 위한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생산성향상과 품질 개선을 위한 기술지도를 하여야 함.
 -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계열주체를 통하여 축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수매·비축 등의 사업을 할 수 있음.
 - 계열사업주체는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사업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계열주체는 계열농가에서 생산한 가축에 대하여 판매대책(자체구매, 판매알선)을 구체적으로 수립 시행하여야 함.
 - 생산계열사업 위주의 부분계열화 업체는 자체가공·판매시설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축산물종합처리장 및 수출가공업체 등과 계약하여 단계적으로 완전계열화사업 형태로 전환 추진
 - 양돈계열주체는 계열농가 선정시 양돈단지 등을 우선 선정하여 기존시설을 활용하고 규격돈 생산기반을 확보
 - 양돈 계열농가의 사육시설은 일관사육시설을 모돈전문 사육시설 또는 육성돈, 비육돈 전문사육 시설로 개보수,신축시 우선지원
 - 양돈계열업체 가공시설(육가공공장 등) 자금은 기존시설 개보수·합병 또는 축산물

종합처리장과 연계된 가공시설·육가공공장 시설자금에 한하여 지원

< 행정사항 >

가. 지원집행 세부요령(사업주관기관)

- 토목·건축공사는 경쟁입찰(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로 시공업체를 선정토록 하고 시·군에서 입회하여 지도·감독
 - 시공업체 선정·계약시에는 시·군에서 입회하고 응찰업체 및 낙찰업체를 공개하는 등 지도·감독
 - 1개사업이 2~5개로 분리계약될 경우(공정에 따라 분리될 경우)에는 선정 시공업체와 금액을 공개하고 시·군관계관이 공사실적 확인
- 공사감리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에서 준공까지 감리 실시
- 자금지원액에 비례한 자부담집행액의 적정성 여부확인
- 자금지원시 담당기술직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기성고 확인후 자금집행 통보
- 기계, 장비구입비 및 사업비 집행시는 관련 증빙자료 비치(축발기금운영 규정 제14조 제7항에 의함)
- 계열주체가 계열화사육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세부집행실적은 사업 주관기관인 시·도지사(시·군 경우)에게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 자금집행과 정산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 기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자료 비치
- 지원대상자 및 가족의 자가노력비는 사업비 정산대상에서 제외
- 장비, 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의 계약으로 사업시행 토록 지도하여 부실공사를 방지
- 시설설치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금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시설비는 사업비에서 제외

나. 사업계획변경

- 주관기관 : 시·도지사
- 당초 사업계획서를 준수토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범위내에서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와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다. 사후관리

- 사업주관 기관은 '05계열화사업 대상자로부터 사업추진계획을 제출받은 후(별표 3), 반기별 1회이상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함(별표 3)
- 사업주관 기관은 '91년이후 계열화사업자로 지정된 업체에 대하여 매년말을 기준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한 후 익년 1월말까지 농림부에 보고(별표4)
-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기간내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지시(추진중인 사업은 매분기별 1회이상 점검)
- 시정지시
 - 2차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금지원을 중단
 - 3차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열화사업자 지정을 해지하고 지원된 자금을 회수 조치. 다만, 이 경우 계열농가에게 지원된 생산시설자금이 있을 경우에는 축산종합자금사업으로 전환하여 관리하고 회수대상에서 제외

라. 보 고

보고사항	보고체계	보 고 일	서 식
◦'05 사업추진 계획	'05사업대상자→시·도→농림부	1. 31까지	별표3
◦'05 사업추진 실적	“	매반기 익월5일까지	“
◦계열화 지정업체 운영실태	시·도→농림부	1.10일까지	별표4

6. 2006년 사업신청 및 대상자선정 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 신청절차 : 사업계획서 작성→관할 시·군(1월말까지)→시·도(2월말까지)
→예산신청(3월말까지)
- 대상자선정 절차 등은 '05년 사업시행 지침에 준함
- * 단, 계열참여농가 중 축산업 등록대상 농가는 100% 등록하여야 함

<별표1>

가축계열화사업자금 지원대상 및 내용

구 분	지 원 범 위	지 원 조 건	비 고
1.생산기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돈 및 모돈생산시설, 종돈장 시설 ◦중계장·중오리장과 부화장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의 70% 이내 - 연리5%(농·축협등 생산자단체 4%) - 3년거치 7년균분상환 	
2.계열주체사육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열주체직영 비육돈육계·오리 사육시설 - 사무실, 관리사는 자담으로 추진 	"	
3.계열농가생산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사 및 가축사육에 필요한 부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의 70%이내 - 연리 4% 	지원조건은 농업종합자금 지원사업과 동일
4.가공시설(육가공 공장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산물 도축·가공시설설치 지원」 사업과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의 70% 이내 - 연리5%(농·축협등 생산자단체 4%) - 3년거치 7년균분상환 	
5.유통·판매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산물 판매시설 현대화」 사업 내용과 동일 	"	
6.계열화사육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산물종합처리장과 연계된 계열주체 등 ◦자축구입비, 사료비, 약품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사업비의 50%이내 - 연리5.5%, 2년이내상환 	

※ 사료제조시설, 상기 지원내용이외 기타시설 및 재료비는 자부담으로 추진

<별표2>

가축()계열화사업자 지정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사업장소재지			
주사업내용			

위 업체를 가축()계열화사업자로 지정합니다.

2005. . . .

사업주관기관의 장 (인)

<별표3>

계열화사업 추진(계획, 실적) 보고

1. 현 황

- 지정년도 :
- 축 종 :
- 상 호 :
- 대표자성명 :
- 주 소 :

2. 사업장 건설(계획, 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완 료 예정일	총투자계획			'05년 계획			'05년 실적			
			합계	용자	자담	합계	용자	자담	합계	용자	자담	진척도 (%)
생산기반시설 ()												
계열주체사육시설 ()												
계열농가생산시설												
축분처리시설												
도축장												
육가공공장												
계란집하장												
판 매 장												
저장시설												

주) ◦ 축종 및 계열화사업자별로 해당사업명을 선택하여 기재

- 생산기반시설, 계열주체 사육시설란의 ()에는 「별표1」 지원범위를 선택 기재

3. 계열화사업 추진(계획, 실적)

구 분		'05년 계획		실 적			
				상반기		하반기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사업량	금액
계열농가 확 보	호 수						
	총사육규모						
자재공급	자 축						
	사 료						
생 산	계열생산						
	외부구매						
	기 타						
	도 축 량						
판 매	자체유통						
	상인유통						
	기 타						
	수 출						
	합 계						

<별표4>

(양돈,양계)계열화 지정업체 운영실태

상 호										
대표자										
주 소	전화 : 팩스 :									
직영·위탁·계약 농가 상사사육	GGP모돈(원종계)		F1모돈(종계)		비육돈(실용계)		계			
	두(천수)									
계열농가에 종돈·종계 공급 (연간)	직영·계열 자체생산(A)		계열업체가 공동구매·공급 (OEM 등)		계열농가가 개별구입		계(B)		자체공급율 (A/B)	
	두(천수)								%	
생 산 (연간)	위탁농가(호수)			생산두수(연간)						
	번식돈 (종계)	비육돈 (실용계)	계	직영 (C)	위탁 (D)	계 약	일반 구매	계 (E)	자체생산율 (C+D)/E	
	호			두						
사료공급 (연간)	직영·계열업체 생산(F)		공동구매 (OEM 등)		농가 개별구입		계(G)		자체공급율 (F/G)	
	톤								%	
도 축 (연간)	자체시설(H)		외부위탁			계(I)		자체도축율 (H/I)		
	두(천수)					* 생산두수(E)와 같아야 함		%		
판 매 (연간)	자체유통 (J)	상인유통	수 출 (K)	2차가공 (L)	기 타		계(M)		자체판매율 (J+K+L/M)	
	톤								%	
향후 계획	연도	계열 농가수	생산량	자체생산율	자 체 사료생산율	자 체 도축율	자체 판매율			
	2006년	호	두/년	%	%	%	%			
	2007년									
	2008년									

- * 직영 : 계열업체가 자축 및 사육시설을 소유하고 직접생산하는 경우
- * 위탁 : 계열업체가 자축소유, 농가에 위탁사육 수수료 지급하는 경우
- * 계약 : 농가가 자축소유, 계열업체와 농가간 일정물량 공급계약 체결하는 경우

② 경주마육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정책과(축산정책과장 안호근, 사무관 이주영)입니다.

1. 목 적

- 국산 경주마 사육기반 확충 및 질적개량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우수 경주마 생산으로 농가 소득증대

2. 시책 및 추진방향

- 국산 경주마 생산기반 확충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 종합지원
- 경주마 생산농가의 역할 제고로 고부가가치 창출
- 사육농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제주도 및 한국마사회와 연계하여 추진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1	2002년	2003년	2004년	2005	2006이후
사 업 량		1,169두	121두	1,790평	6,860평	50두	
사업비	계	43,594	9,985	3,321	2,702	3,097	
	융 자	66,647	6,862	1,698	1,392	2,468	
	보조(국고)	521	275	368	357	-	
	지 방 비	521	275	368	357	-	
	자 부 담	73,143	2,573	887	596	629	

5.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년
- 지원대상
 - 경주마(제주마 포함)를 1년이상 사육하고 있는 농가
 - 영농조합법인, 농·축협, 경주마(제주마) 생산자협회, 제주도축산진흥원
 - 영농조합법인, 양축농가 및 과잉마를 입식하고자 하는자
- 지원내용
 - 기반시설, 사육시설, 육성조련시설, 장비 및 기타 경주마생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별표1] 참조),
 - 제주마 혈통보전을 위한 종부소, 조련시설, 생산장비 등 지원
- 지원규모([별표 1] 참조)
 - 개별농가 : 호당 3억원 이내
 - 영농조합법인, 경주마생산자협회등 : 자기자본의 200%이내
 - 농가공동육성조련시설 : 개소당 1,000백만원이내(보조 2억원, 용자 3억원)
 - 농·축협등 공공기관 : 자기자본의 400% 이내에서 지원
- 지원조건([별표 1] 참조)
 - 지원조건 : 용자 70%, 자담 30%. 단, 농가공동육성조련시설은 보조 20%, 용자 30%, 지방비 20%, 자담 30%
 - 용자조건 : 연리 4%, 3년거치후 7년 균분상환
(단, 종빈마도입자금은 3년거치 5년균분상환, 연리4%)

나. 2005 사업비(예산)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안			지방비	자부담
			계	용자(기금)	보조(국고)		
계		3,097	2,468	2,468	-	-	629
종빈마 도입	50두	1,500	1,350	1,350	-	-	150
기반시설	1식	120	84	84	-	-	36
사육시설	2,194평	680	476	476	-	-	204
조련시설	3,974평	690	483	483	-	-	207
과잉마입식지원	36두	107	75	75	-	-	32

주 : 예산은 편성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축산정책과(02-500-1898)
- 시·도 : 축산과 또는 농정과
- 시·군 자치구 : 축산과 또는 산업과(축산계)
- 한국마사회 : 마사등록팀

다.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농가 공동육성조련시설은 시·도지사의 사업계획 검토를 받아 시장·군수 주관하에 추진
 - 사업대상자는 분기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업주관기관에 통보
 - 사업주관기관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현지를 조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자금회수등 필요한 조치 강구
- 사업비 지원방법
 - 사업대상자는 사육규모의 확대와 시설개선등에 의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전업양축농가로 육성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소규모의 다수농가에게 소액 분산 지원하여서는 아니됨.
 - 월별 사업비 집행은 농림사업자금집행규정에 의함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현지조사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자금회수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시·도(시·군·구)는 사업추진 실태를 연 1회이상 점검하여 문제점을 개선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이 완료될 경우 붙임 서식에 의거 사업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4조제2항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안됨

나. 보고

- 시·도지사는 다음 사항을 농림부장관에 보고

보 고 사 항	보고기관	보 고 일	서 식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시·도	2월말까지	
·사업추진실적	시·도	반기별	

6. 2006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축산과 또는 산업과

나. 신청자격

- 종빈마를 1년이상 사육하고 있는 자
- 제주도 및 한국마사회와 연계하여 경주마(제주마 포함)를 생산할 수 있는 농가
- 농축협(업종조합 포함), 영농조합법인,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한국내륙말 생산자협회, 제주마생산자협회
 - 영농조합법인은 경주마(제주마 포함) 사육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과잉마 입식지원은 과잉마 입식을 하고자 하는 자(비농업인도 가능)

다. 신청절차

- 사업희망자 사업계획서 제출 → 시·군 축산과 또는 산업과 → 시·군·구 농발심의위원회 심의 후 대상자 선정

라. 구비서류

- 시행지침서에 의한 축산경쟁력 강화사업 통합신청서

마. 선정 우선순위

- 한국마사회의 중부지원계획에 포함된 농가
 - 초지(600평 이상) 및 방목장을 많이 확보한 농가
 - 시·군 농정심의위원회의 지원순위 결정은 자부담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
- ※ 조합, 법인, 협업체등의 구성농가는 개별농가의 신청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동일순위에서는 개별농가의 우선순위(구성농가의 평균사육두수 기준)를 적용

[별 표 1]

경주마 생산사업비 지원기준

구 분	세부사업	지원조건(%)		지원규모		비 고
		용자	자담	호당, 두당	단 가	
◦종빈마	◦종빈마 도입	90	10	신규 5두이내 기존 10두이내	30,000 천원/두	◦자금지원한도 : 27백만원 -도입단가가 3000만원 미만일 경우 투자비율 준수
◦기 반 시 설	◦진입로 ◦목로개설 ◦용수개발 ◦전력인입	70	30		100백만원/ km 45/km 30/1개공 5.5/km	◦노폭 4m, 포장 3m ◦노폭 4m ◦지역실정감안 실비적용 가능 ◦한전산출실비 적용 가능
◦사 육 시 설	◦마 사	70	30	4.5평/두이내	900천원/평	◦사육규모(확보계획 두수포 함)×4.5평이내에서 지원가 능
	◦관리사	70	30	15평/호이내	1,500천원/평	◦사육규모와 관계없이 호당 15평이내만 지원
	◦창 고	70	30	2평/두이내	600천원/평	◦사육규모×두당 지원 규모 범위내에서 지원
	◦패 독	70	30	12평/두이내	100천원/평	◦12평×마방수 범위내에서 지원
◦육 성 조 련시설	◦실내마장	70	30	300평/개소	1,000천원/평	
	◦자동 보행기	70	30	0.17대/두	4,900천원/ 두	◦종빈마 보유두수의 50%규모내에서 지원
	◦약.목욕장	70	30		500천원/평	◦제주도만 지원
	◦주 로	70	30		70천원/평	◦폭 15m
-공동육성조련시설		보조 20, 용자 30, 지방비		20, 자담 30, 자금지원한도 10억원/개소		
◦장 비	◦수송차량	70	30	1대/호	35,000천원/대	◦20두이상 보유시만 지원
	◦그레이더 (주로정지)	70	30	1대/호	1,300천원/대	◦주로 보유시만 지원
	◦트랙터등 기타장비	70	30			
◦과잉마 입식지원	◦도 태 마 구입비	70	30	5두/호이내	3,000천원/ 두	◦경주마생산농가 제외

- ※ 상기 지원기준 및 세부사업 이외에는 지원 불가
- ※ 지원단가 한도를 초과할 경우 자담 추진
- ※ 지방비 보조가 있는 경우 투자비율조정 가능(단, 용자는 70%초과 못함)
- ※ 과잉마입식지원은 20~40개월령의 혈통등록된 더러브렛종 육성마를 승용,관광용,관상용 등
으로 활용할 경우 용도변경후 30일 이내에 마사회가 발행한 「소유권 및 타용도 변경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 ※ 예산편성과정에서 지원기준이 변동될 수 있음

사업추진실적 보고

1. 투자실적

구 분	사업 대상자	계 획				실 적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용자	자담	합계		용자	자담	합계
종빈마도입									
기 반 시 설									
사 육 시 설									
조 련 시 설									
장 비									
합 계									

2. 사육실태

구 분	개별농가		축협, 법인등		합 계	
	현재	추진후	현재	추진후	현재	추진후
초지보유(ha)						
사육두수(두)						
자마생산(두)						
경주마공급(두)						
사업대상자수(명)						

※ 이 사업시행 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경영과(과장 이재용, 서기관 이상수)입니다.

① 송아지생산안정사업

1. 사업 목적

-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정을 유도

2. 시책 및 추진방향

- 한우암소를 사육하는 농가와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계약체결
- 안정기준가격과 평균거래가격과의 차액 일부를 농가에 보전
 - 참여농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일정액의 부담금 납부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26조 (송아지생산안정사업)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98-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사업량	1,272,632두	591,563	552,555	419,850		
사업비	계	32,946	54,222	15,460	16,709	
	보조	21,947	50,550	12,436	15,749	
	지방비	9,236	1,836	1,512	480	
	자부담	9,236	1,836	1,512	480	

5.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대상지역 : 전 국

- 지방자치단체가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나. 사업시행

□ 참여기간 : 2005. 1. 1 - 2005. 12. 31(1년간)

□ 2005년도 계약신청기간 : 2004. 12. 1 - 2005. 5. 31

□ 사업 참여요령

- 계약대상자는 계약신청기간내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축협에 참여계약 신청
- 계약신청을 받은 지역축협은 계약대상자의 적격유무를 확인하고 계약체결

□ 안정기준가격 및 보전금지급 한도액 등

- 2005년도 안정기준 가격 : 별도시달

- 송아지생산안정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이 결정하고
시장·군수 및 지역축협조합장이 공고

- 2005년도 보전금 지급한도액 : 별도시달

- 계약자부담금

- 계약송아지 1두당 1만원

- 직전년도 가입암소로서 보전금을 받지않은 경우 재가입시 부담금 면제

-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 한우암소 사육자가 농협과 계약시 납부한 계약자 부담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참여 계약신청기간 만료후 3개월 이내 납부

다. 사업내용

- 농림부장관은 매년 안정기준가격 등 사업기본방침 확정 발표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기본방침에 따라 세부사업시행요령을 작성하고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
- 사업주관 시장·군수는 지역축협과 함께 사업광고 및 농가홍보 실시
- 지역축협은 안정사업자금계정을 설치하고 시·군별, 재원별 구분계리
- 농가는 지역축협에 사업참여를 신청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자부담금 납입
 - 전년도 사업참여시 보전금을 지급 받지 못한 당해 계약암소의 계약송아지에 대하여 계약자부담금 면제
- 지방자치단체도 계약자부담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역축협에 설치된 안정사업자금계정에 납입
- 계약암소로부터 참여기간내에 송아지가 생산된 때, 농가는 지역축협에 송아지 생산신고
- 농협중앙회장은 매 분기별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을 통보
-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지역축협은 시·군별 보전금 지급 소요액을 계산하여 시·군에 통보
- 시·군은 보전금소요액을 점검 확인하고 정부부담금을 계산하여 지역축협에 통보 (보조금 교부결정)
- 지역축협은 농협중앙회장을 통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자금배정 요청
- 농림부장관은 시·군별 소요자금을 농협중앙회장에게 배정하고 시장·군수에 통보
-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자금을 배정받은 지역축협은 계약농가에게 보전금을 지급하고 시장·군수에게 지급결과 보고

※ 업무추진절차



라. 2005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 합계	예산액(축산발전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보전금	420천두	16,709백만원	15,749	15,749	-	480	480

<추진체계>

가. 사업추진기관

- 사업총괄 : 농림부
 - 사업기본지침 수립 및 시달
 - 재원확보 및 안정기준가격 등 결정
 - 안정사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 사업추진을 위한 교육·홍보
 - 사업시행기관(지역축협) 지도·감독
 - 보전금 지급소요액 확정 및 보전금 지급 교부결정
 -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납부
 - 기준가격의 공고 및 사업추진요령에 의한 보고 등

- 사업시행기관 : 농협중앙회, 지역축협(울릉농협 포함)

◎ **농협중앙회**

- 세부사업 실시요령 작성,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
- 지역축협 사업추진상황 지도·점검
- 안정사업 전산프로그램 관리 및 운용
- 축산발전기금 배정 및 안정사업자금관리 지도
- 분기별 평균거래가격 산출 및 통보
- 안정사업 담당자교육 및 사업홍보
- 기타 안정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지역축협**

- 농가교육·홍보, 기준가격 등의 공고
- 농가계약, 계약암소 및 계약생산송아지 확인·관리
- 보전금 지급액 계산 및 지급
- 계약자·지자체 부담금의 관리 및 운용
- 기타 사업 실시요령에 의한 필요한 사항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축산경영과(02-500-1904)
- 시·도 : 축산담당과
- 시·군 : 축산담당과

다. 세부 추진내용

□ 사업안내

- 농림부장관은 매년도 사업개시전 안정기준가격과 계약송아지 1두당 부담금 등 사업기본 방침을 통보
 - 시·도지사, 농협중앙회를 통해 시장·군수와 지역조합 등에 통보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사업실시요령을 작성,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
-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장·군수는 지역축협과 협조하여 안정사업내용 홍보

□ 사업참여계약 체결 : 매년 체결

-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신청기간 중 사육장 소재지 해당지역 사업시행기관(지역축협)에 계약신청 및 계약체결
- 계약대상자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포함)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축산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업은 제외
- 계약대상우 : 한우 암소
- 참여기간 : 2005. 1. 1 - 2005. 12. 31
 - 계약신청기간 : 2004. 12. 1 - 2005. 5. 31
 - 계약장소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축협
- 계약체결시 계약대상자는 계약자 부담금 납입

□ 송아지생산 신고확인 및 바코드귀표 부착

- 농가는 참여기간 내에 송아지가 생산될 경우 생후 14일 이내에 계약한 조합에 신고
- 지역축협에서는 송아지생후 2개월 이내 확인하고 바코드 귀표 부착

□ 보전금 지급조건

- 계약암소로부터 참여기간내에 태어난 계약생산송아지(귀표부착 완료)가 만 4개월령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4~5개월령 송아지평균거래가격이 계약당시의 안정기준 가격보다 낮을 경우지급

□ 평균거래가격의 산출·공고

- 농협중앙회장은 매분기가 끝난 다음달 20일까지 천원 단위로 평균거래가격 산출
 - 농림부, 시·도(시장·군수), 농협지역본부(지역축협)등에 통보
 - ※ 농·축·수산물 유통통계조사 지침에 의한 지정가축시장에서 해당 분기내 매매된 4~5개월령 송아지거래금액을 거래두수 기준으로 가중 평균하여 암·수 송아지별로 각각 산출한 후 평균하여 산출

□ 보전금 소요액 산출 및 보전금 지급

- 지역축협조합장은 매분기별 평균거래가격을 통보 받은 즉시 시·군별 보전금 지급소요액을 산출하고 시장·군수에 보고
- 지급소요액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보전금 소요액의 적정여부 확인 후 정부 부담금액을 계산하여 지역축협에 통보
 - 정부부담액 = 총소요액 × 정부 부담비율
 - ※ 정부 부담비율 = (두당보전금 지급한도액 - 두당 계약자 및 지자체부담금 합계) ÷ 보전금지급 한도액
 - 이때 시장·군수의 확인통보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같음함
 - 보전금 지급소요액 중 정부 부담액을 제외한 잔액은 농가부담금과 지방자치단체 부담액 중에서 공평 부담
- 시장·군수로부터 보전금 소요액 확인을 받은 지역축협조합장은 농협지역본부를 거쳐 농협중앙회장에게 소요자금 배정 요청
 - 시장·군수는 확인내용을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농협중앙회장은 지역조합으로부터 자금배정요청이 있을 경우 종합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자금배정 요청, 이에 따라 농림부장관은 자금배정
 - 농협중앙회장은 자금이 배정되는 대로 조합별로 배정
- 지역축협조합장은 자금이 배정되는 즉시 시장·군수가 확인통보한 내용에 따라 농가에게 보전금을 지급하고 결과를 시장·군수 및 농협지역본부장에게 보고

□ 보전금 지급제한 등

◦ 지급제한

- 전쟁, 변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시에는 보전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정상 회복시 까지 지급 유보
-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이 정해진 기간내에 납부되지 않았을 경우, 납부시 까지 보전금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음
- 보전금 지급총액이 당해연도 예산액을 초과하거나 WTO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보조금 최소허용 한도액(De-minimis) 초과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

◦ 보전금의 지급 중지 및 회수

- 계약암소 및 계약생산 송아지의 귀표를 조작했거나 다른 것과 교체한 경우
 - 각종 조사표 및 기타 각종 신고(서)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송아지생산신고를 기간내에 하지 않았거나 포기한 경우
 - 계약생산송아지에 바코드귀표 부착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계약암소 또는 계약송아지에 소유권 등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 단, 계약암소의 폐사시 수의사의 검안서 또는 귀표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사체사진 등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음

마. 안정사업자금 관리

□ 2005년도 사업자금 조성

- 계약송아지 두당 계약자 부담금 10천원
- 계약송아지 두당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10천원
- 농림부 : 잔여소요액(축산발전기금)

□ 안정사업자금의 구분관리

- 지역축협에 별도계정 설치
- 계약자부담금과 지자체부담금은 관할 지역축협의 안정사업계정에 납입
- 시·군별, 자원별 별도 구분계리

□ 안정사업자금의 사용·운용

- 안정사업자금은 보전금 지급용도로만 사용
 - 시장·군수의 확인 및 보전금 지급통보에 의하여 지역축협에서 지급
- 보전금으로 지급되지 않은 안정사업자금 잔액은 계속 적립
- 농협중앙회장은 안정사업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세부지침 작성

□ 사업관리 수수료

- 사업관리 비용은 농림부장관이 별도 지급
- 지역축협 : 계약암소 두당 최고 8천원
- 농협중앙회 : 계약암소 두당 최고 400원
 - ※ 한우개량농가 육성사업의 관리암소와 중복 참여하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계약 암소에 대해 지역축협에는 두당 5천원, 농협중앙회는 두당 250원을 최고한도로 지급
 - ※ 관리수수료 소요액 총액은 당해연도 예산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수수료의 두당지급단가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바. 기타사항

-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축산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하여 농협중앙회에 위탁함에 따라 농협중앙회장은 농가계약을 위한 계약서·사업관리를 위한 각종서식 및 작성요령 등 세부실시요령을 작성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기관(시·도, 시·군축협)에 통보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안정사업자금관리 : 지역축협조합장은 안정사업자금 운영현황을 매 분기별로 시장·군수에게 통보
- 시장·군수는 농가의 안정사업보전금 지급사유 발생시 자금소요액의 적정성 검토
- 시·도지사는 농가계약이 끝난 직후 시·군별로 계약암소의 허위계약여부, 지방자치단체 및 농가부담금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2개월내에 점검을 실시하고 익월 15일까지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

나. 보고(통보)사항

- 지역축협 → 시장·군수
 - 매월 계약체결 실적
 - 분기별 보전금 소요액 및 안정사업자금 관리현황보고
 - 보전금 지급결과 통보
- 시장·군수 → 지역축협
 - 분기별 보전금 지급통지
- 지역축협 → 농협중앙회장
 - 농협중앙회에서 필요사항 작성·시행
-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 매월 계약체결 실적보고
 - 반기별 안정사업자금 관리현황 보고
 - 시·군별 자체점검결과 보고(8월)
- 농협중앙회장 → 농림부장관
 - 분기별 보전금 배정요청
 - 안정사업자금 관리 현황(년보)
 - 사업관리수수료 지급신청(9월)

6. 200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사업추진기관 및 사업담당부서

- 2005년과 동일

나. 사업참여기간 및 사업참여 계약 신청기간

- 사업참여기간 : 2006. 1. 1 ~ 2006. 12. 31
- 사업참여 계약 신청기간 : 2005. 12 ~ 2006. 5월
- 계약장소 : 사업장 소재지 지역축협

다. 계약대상자 및 계약 대상우

- 계약대상자 : 한우암소 사육농가중 희망자(법인 포함)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재) 투자기관 및 그 법인이 한우암소 사육자인 경우와 축산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업은 제외
- 계약대상우 : 한우암소

라. 계약자 부담금

- 계약생산 송아지 1두당 1만원
 - ※ 전년도 가입암소로서 보전금을 받지않은 경우 부담금 면제

마. 2006년도 안정기준가격 및 보전금 지급한도액

- 안정기준가격 : 별도시달
- 2006년도 두당보전금 지급한도액 : 별도시달

바.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참여방법 및 추진체계

- 2005년도 사업시행내용 참조

② 송아지생산기지조성사업

1. 목 적

- 초지 등 조사료생산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송아지생산기지를 조성하여 값싸고 우수한 송아지생산·공급

2. 시책 및 추진방향

- 초지에서 방목 등을 실시하여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지역 선정
- 지역축협, 영농조합법인, 전업농 등 다양한 유형의 생산기지 조성
- 저렴한 송아지를 집중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초지 및 기반정비 지원
- 우수등록우 입식, 인공수정 실시 등을 통한 개량사업 추진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4.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92-'01	2002	2003	2004	2005
사 업 량			21개소	23개소	24개소	12개소
사 업 비	계		5,773	7,880	7,880	3,900
	보 조		1,363	1,560	1,560	780
	용 자		2,762	3,168	3,168	1,560
	지방비		1,648	2,364	2,364	1,170
	자부담		-	788	788	390

※ 사업량과 지방비부담액은 세부사업 내용에 따라 변동될수 있으며, 동 사업은 '05년 사업후 종료 예정임

5.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지원대상자 : 농협중앙회 회원조합, 한우영농조합법인(향후 법인을 구성할 농가도 포함), 전업 한우사육농가로서 초지 및 사료포를 10ha 이상 기 확보하고 있는자
- 사업대상지
 - 초지 및 사료포를 10ha이상 기 확보하고 있는 지역으로 방목 등에 의해 송아지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지역
 - 송아지생산기지 조성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등 타 정책사업으로 동일 세부사업에 대해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
- 송아지생산기지 개발 유형

< 공공목장 >

- 개발주체 : 농·축협조합
- 목장운영 주체
 - 지역축협이 직접 운영하거나 한우 번식농가들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에 임대 운영
 - 개발주체가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세부개발계획 추진
- 목장운영을 위한 정관 또는 운영규정을 정하여 추진

< 부업형 목장 >

- 개발주체 : 농업·농촌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영농조합법인
- 목장운영을 위한 정관 또는 운영규정을 정하여 추진

< 전업형 목장 >

- 개발주체 : 전업농가

◦ 지원내용 및 지원단가

- 붙임1 참고

※ 5년이하 사육경력자에게 신규 축사시설에 대한 지원은 제외

◦ 지원조건

- 보조 20%, 용자 40%, 지방비 30% 자부담 10%

* 단, 기계·장비는 용자 80%, 자부담 20%

나. 2005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산액(축산발전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자		
송아지생산 기지	24	<u>3,900</u>	<u>2,340</u>	<u>780</u>	<u>1,560</u>	<u>1,170</u>	<u>390</u>

※ 용자조건 : 3년거치 7년상환, 연리 4%, 단, 사료작물재배는 3년거치 일시상환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세부사업 계획에 따라 변동가능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시·군(자치구 포함)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축산경영과(02-500-1904)

◦ 시·도 : 축산담당과

◦ 시·군·자치구 : 축산담당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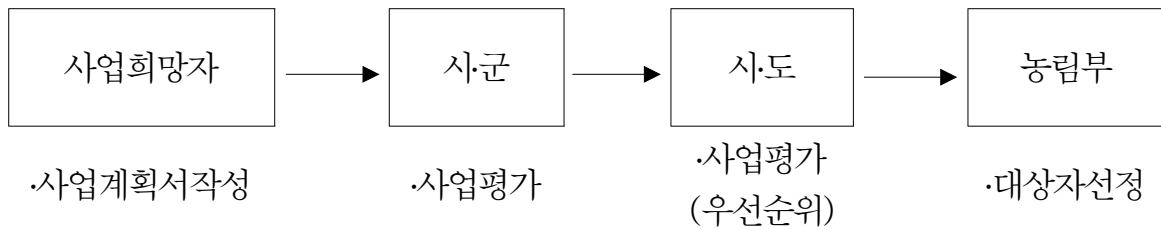
다. 사업시행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송아지생산기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평가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평가 점검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사업평가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의 타당성과 지방비확보 또는 부담여부 등을 확인·점검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 농림부장관은 시·도에서 보고된 대상자를 심의, 선정하여 시·도에 통보

< 사업추진체계도 >



□ 번식우 입식 및 송아지 생산·관리

- 번식우 입식관리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번식우 입식 및 상시사육규모에 따라 번식우 입식 및 상시사육규모에 따라 번식우 입식
 - 입식된 암소는 모두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가입하고 등록되지 않은 암소는 모두 등록 실시
- ※ 번식우 입식비는 동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며 농업경영종합자금등 기타 정책사업을 활용하여 번식우 입식가능
- 우수송아지 생산
 - 암소는 인공수정 실시
 - 생산된 송아지도 모두 등록을 실시하고 귀표부착
 - 지역축협조합은 송아지생산기지의 등록암소 개량사업 적극지원
 - 우수정액 우선공급, 현장후대검정 농가로 우선 선정 등
 - 생산 송아지의 비육후 도체성적을 환원하여 번식우 능력을 평가하고 개량을 위한 선발·도태 지도

- 생산송아지 공급
 - 송아지생산기지를 조성한 자는 생산자단체, 계열주체, 대규모 비육농가 등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송아지 활용·공급

< 송아지활용·공급방법(예시) >

- ① 브랜드업체 등 생산자단체 비육농가 등과 계약 생산
- ② 지역축협이 우수비육농가 등과 매매알선
- ③ 송아지경매시장을 통해 가격차별화
- ④ 자가 일관사육 실시
- ⑤ 기타 지역여건에 적합한 방법으로 공급

라.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조성된 송아지생산기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도지사에게 보고
 - 사업대상자별 관리카드 작성

< 주요 점검사항 >

- 적정사육규모 유지 및 번식우사육두수
- 번식우 종축등록 등 개량 및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여부
- 시·도지사는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 관리
 - 조성사업 준공(완료)일로부터 5년간 관리

마. 기타사항

- 사업대상자의 재원별 사업비 범위(자부담 제외)내에서의 사업계획의 변경은 사업주관기관인 시·군에서 승인하고 그 결과를 즉시 시·도를 통해 농림부에 보고
- 사업대상자 평가기준 등 세부선정계획은 별도 시행

6. 200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 동 사업은 2005년까지만 실시하고 중단함

<붙임 1>

송아지생산기지 조성사업 지원기준

세부사업명		단위	단 가 (천원)	비 고
기 반 시 설	진입로포장	km	100,000	◦ 재원 : 보조(축발기금)20%, 용자 40%, 지방비 30%, 자담 10%
	용수개발	공당	30,000	
	목책시설	km	9,000	
	계 류 장	m ²	60	
	진드기구제장	개소	7,000	
	전기인입	km	5,500	
	부지정지	ha	5,000	
축 사 등 건 축 물	축사시설	m ²	127	◦ 관리사는 100m ² 이내로 함 ◦ 신규축사시설에 대해서는 지원 제외
	관 리 사	m ²	91	
	창고	m ²	91	
	축분뇨처리시설	m ²	30	
기 계 장 비		조		◦ 기계장비는 용자80%, 자담20%
초지조성		ha		
초지보완		ha		
사료작물재배		ha		
초지비배관리		ha	300	◦ 기성초지에 비료(화학비료), 축분퇴비 등 유기질비료 살포 ◦ 야초지 관리(잡관목, 잡석 등 장애물 제거)

※ 초지비배관리는 초지조성·보완·사료작물재배사업과 중복지원할 수 없음

<붙임2>

송아지생산기지조성사업 계획서

1. 사업신청자 현황

가. 신청자

- 성명(법인, 조합명) :
- 주소, 연락처 :

나. 한우사육현황(최근 5년간)

구 분		'00	'01	'02	'03	'04
사육두수	총 두 수					
	번 식 우					
	비 육 우					
송아지 생산두수						
종축등록두수						
안정사업 가입두수		-				

※ 자체목장에서 사육하는 한우에 한함

다. 축사 등 시설현황

시설명	동수(동)	면적(m ²)	비 고
축사 · · ·			(사육가능두수, 비육우·번식우 구분)

※ 비고란에는 건축물의 주요용도, 활용상황 등 기재

라. 조사료

□ 조사료 재배면적

구 분	'00	'01	'02	'03	'04
초 지(ha)					
사료작물(ha)					
총채맥류 신청(톤)	-	-	-		-

□ 생산현황

◦ 초 지

면적(ha)	관리등급	이용형태	초지보완 실적
	(상.중.하)	(방목,건초생산,기타)	

※ 관리등급 : 초지법시행규칙 제6조 별도2의 구분에 따라 상·중·하로 기재,
초지보완실적은 최근 5년이내 보완연도 및 연도별 보완면적 기재

◦ 사료포

- 작부체계 : (시기별 파종작물순으로 기재)
- 조사료 생산량 : 총 생산량, ha당 최근 5년간 연간 생산량(생초기준)

□ 조사료생산 토지

구분	취득형태	면적	임 차 시		
			원소유자	임차기간	연간임차료(천원/ha)
초 지	소 유	ha		년 ~ 년	
	임 차	ha			
사료포	소 유	ha		년 ~ 년	
	임 차	ha			

※ 원소유자 : 국유지, 공유지 및 사유지로 기재

마. 한우 브랜드 경영체 구성(참여) 현황 : 미구성시는 미작성

- 브랜드 경영체명 : (등록일)
-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참여농가수
- 참여 총사육두수 : 번식우 두, 비육우 두
 ※ 브랜드 주체 및 참여농가 사육분 합계
- 연간 출하(판매) 두수('04년도)

(단위: 두)

등 급	암 소	수 소	거세우	계
1등급(A)이상				
2등급				
3등급				
기 타				
계(B)				
1등급 비율(A/B)				

- 연도별 출하두수

	암소	수소	거세우	계
'02				
'03				
'04				

- 판매처별 판매두수

판 매 처	두 수		
	'02	'03	'04
.			
.			
.			

바. 송아지 생산·처분현황

□ 두당 송아지생산비(산출 세부내역 첨부)

	'02	'03	'04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합사료 - 조사료 ◦감가상각비 ◦방역·치료비 ◦인 건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노력 - 고용노임 ◦자본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 유동 ◦기 타 				
계				

□ 생산송아지 활용·처분

	'02	'03	'04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가일관사육 ◦계약농가(추진체) 공급 ◦가축시장 판매(송아지경매) ◦가축시장 판매(일반판매) ◦중간상인 판매 ◦기 타 				
계				

2. 향후사업계획

가. 사육두수(향후 5년간)

	'05	'06	'07	'08	'09
총두수 번식우 비육우 송아지생산					

나. 주요사업 추진계획

다. 송아지생산·공급(향후 5년간)

생산비 절감 목표(항목별)

송아지 활용·처분계획

라. 한우 브랜드 추진계획(향후 5년간)

3. 투융자계획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계
			축발기금 보	지방비	융자	자담	
.							
.							
.							
합 계							
비 율(%)							100%

※ 1개년 사업 추진원칙(2개 이상 사업추진시 연도별 구분 작성)

<붙임3>

송아지생산기지조성사업 관리카드

□ 사업대상자 현황

사업자		주민(법인)번호	
주 소			
전 화	FAX	E-mail	

□ 사업현황

사업연도	대상자선정 : 년	사업완료 : 년	
세부사업명	사 업 전	사 업 후	증 감
축 사	m ²		
창 고	m ²		
초 지	ha		
사 료 포	ha		
총체맥류 신청	톤		

□ 소사육현황

구 분		사업전	사업완료 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사업 계획	번식우						
	비육우						
	합 계						
사육 현황	번식우						
	비육우						
	합계						
	송아지생산						
	안정사업가입두수						
	종축등록두수						

□ 투융자 현황

세부사업명	계 획						실 적					
	사업량	투 자 액					사업량	투 자 액				
		기금	지방비	융자	자담	계		기금	지방비	융자	자담	계

③ 품질고급화장려금

1. 목 적

- 쇠고기 품질고급화를 통한 소 산업 경쟁력제고
- 수소의 거세를 유도하고, 고급육(1등급이상) 생산 농가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농가소득증대 및 고급육 생산기반 확충

2. 시책 및 추진방향

- 고급육 생산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생산자단체를 통한 지역단위 한우사업 추진체계의 활성화도모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사업량(천두)		318	158	17	61	
사업비	계	51,156	22,892	4,092	8,476	
	보조	42,886	20,603	4,092	8,476	
	지방비	8,270	2,289	-	-	

5. 2005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지급대상

- 생산자단체를 통해 생산자확인 증명서를 발급 받은 거세우를 출하하여 1⁺⁺A, 1⁺⁺B, 1⁺A, 1⁺B, 1A, 1B 등급 판정을 받은 생산자

(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 상법상 법인으로 등록된 기업에서 운영하는 목장, 농협중앙회, 수입하여 사육한 소는 대상에서 제외)

- 생산자 단체의 범위
 - 지역 농·축협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시·도지사 및 등급판정소장 포함)으로부터 품질고급화장려금 협조단체로 지정받은 생산자단체
- ※ 품질고급화장려금 협조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는 생산자단체는 영농조합법인, 가축계열화사업법인, 한우협회 시·군 지부 등 임

나. 지급장소 및 금액

- 포상금지급장소 : 지역축협 및 농협
- 지급기간 : 품질고급화장려금 지급통보서 발급일자로부터 2개월 이내
- 지급금액(두당/천원) : (한우) 1⁺⁺A, 1⁺⁺B, 1⁺A, 1⁺B 등급 : 200, 1A, 1B등급 : 100
(육우) 1⁺⁺A, 1⁺⁺B, 1⁺A, 1⁺B, 1A, 1B등급 : 100

다. 2005년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용별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사업비 합계	예산액(축산발전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자		
품질고급화 장려금	60,510두	8,476	8,476	8,476	-	-	-

<추진체계>

가.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축산경영과(02-500-1904)

나. 사업시행기관

- 축산물등급판정소(031-390-5534)

다. 사업시행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농·축협은 서식 9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에 품질고급화장려금 사업참여 계획서를 제출
- 품질고급화장려금협조단체(이하 “협조단체“라 한다)로 지정받고자 하는 생산자단체는 서식 7·8을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
 - 1개시·군 관내 생산자단체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포함)
 - 2개이상 시·군에 걸쳐있는 생산자단체 : 시·도지사
 - 2개이상 시·도에 걸쳐있는 생산자단체 : 축산물등급판정소
- 협조단체를 지정한 시·군·구는 지정현황 및 사업참여 농·축협 명단을 서식 10의 양식에 따라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는 직접 지정한 협조단체와 시·군·구에서 보고된 협조단체 및 사업참여 농·축협 명단을 축산물등급판정소에 통보
 - 협조단체 지정현황 및 농가 변동시 변동사항을 즉시 통보
- 협조단체는 농가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서식8을 참고하여 신규가입·탈퇴 농가를 지정기관에 월단위로 통보
- 생산자단체는 농가 소 출하시 서식1에 따라 해당 농가가 출하축의 생산자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2부 작성하여 등급판정시 1부를 제출(또는 농가로 하여금 제출토록함)하고 1부는 자체 보관·관리
 - 생산자단체장은 생산자 확인 증명서 발급시 증명서 발급 내역을 서식 2에 따라 대장으로 작성 관리
- 지역 농·축협은 조합회원이 아니더라도 업무 관할구역내 농가가 거세 사육을 하고 출하된 소의 생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산자 확인 증명서」 발급. 단, 협조단체로 지정받은 생산자단체는 지정기관에 제출한 참여농가에 대해서만 발급
- 축산물등급판정소는 등급판정 결과 품질고급화장려금 대상축(거세우 중 1⁺⁺A, 1⁺⁺B, 1⁺A, 1⁺B, 1A, 1B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서식 3의 품질고급화장려금 지급 통보서를 출하자와 출하자 주소지의 지역축협 또는 지역농협에 통보

- 농·축협을 통해 계통출한 경우에는 계통출하 농·축협에 통보
- 유통업체가 출하하는 경우 등급판정사는 「생산자 확인 증명서」의 사육농가 기재사항과 등급판정신청서의 사육농가 일치여부를 확인후 장려금 지급을 통보(불일치 하는 경우에는 생산자단체의 장에게 해당 출하축의 생산자 여부를 확인)
- 품질고급화장려금 지급대상자는 서식 3 통보서의 발급일자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해당 지역축협 및 지역농협에 장려금 지급을 신청하고 이를 접수한 지역축협 및 지역농협에서는 우선 자체자금으로 신청 당일 지급
 - ※ 장려금 지급대상자가 통보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이후까지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처리
- 장려금을 지급한 지역농협에서는 서식 5에 따라 지역축협에 자금지급을 신청하고, 지역축협은 10일 간격으로 1개월 이내에 서식 4에 의한 품질고급화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축산물등급판정소에 자금지급 요청
 - 지역축협은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장려금 수령 즉시 지역농협에 지급
- 지역축협으로부터 장려금 지급요청을 받은 축산물등급판정소는 1개월 이내에 송금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시·도(시·군)와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는 반기별로 1회이상 각각 협조단체로 지정한 생산자단체를 수시점검하여 출하축의 생산자 확인 증명서 발급의 적정성 및 대장관리 등을 점검(품질고급화사업 참여 농·축협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년 1회 이상 점검)
- ※ 출하시 생산자 여부를 허위로 확인한 생산자단체는 협조 단체에서 제외하고, 허위로 품질고급화장려금을 지급받은 자는 지급받은 금액을 환수 조치

나. 보고

- 시·도, 시·군, 축산물등급판정소는 품질고급화장려금 시행협조 생산자단체 지정현황 및 사업참여 농축협 현황을 농림부에 1월 15일까지 보고하고, 변동 사항 발생시 월 단위로 보고하되, 시·군은 시·도를 통하여 보고(서식 8)
- 장려금 지급결과 보고 :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월별지급 내역을 익월 10일 이내에 농림부에 보고

6. 200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 안내

가. 사업추진기관

- 축산물등급판정소

나. 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용 등

- 지원대상 : 거세우를 출하하여 1⁺⁺A, 1⁺⁺B, 1⁺A, 1⁺B, 1A, 1B등급 판정을 받은 생산자
- 지원내용 : 2005년도 사업시행 내용 참조

[서식1]

생산자 확인 증명서

발급번호 : 2005-○-○호

구분	생산자명	주 소	주민등록 번호	출하 두수	품종	거세여부	포상금지 급조합명

상기인은 품질고급화장려금 참여 농가임을 확인함

년 월 일

○ ○ 생산자 단체장 (인)

※ 발급번호 작성요령 : 2005(년도)-(월)-(월별 발급연번)

[서식 2]

생산자 확인 증명서 발급대장

발급 번호	발급 날짜	생산자명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출하 두수	품종	출하처

[서식 3]

품질고급화장려금 지급 통보서

등급판정 도축장명	판정 일자	생산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 번호	등급판 정결과	도체 번호	품 종	지급 금액	포상금지 급조합명

년 월 일

축산물등급판정소

지소 판정사

(인)

[서식 4]

품질고급화장려금 신청서

받음 : 축산물등급판정소장

보냄 : ○○축산업협동조합장 (인)

일련 번호	등급판정 도축장명	판정 일자	생산자 성 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 록번호	등급판 정결과	도체 번호	품종	가지급 일 자	지급액
한우	1 ⁺⁺ A, 1 ⁺⁺ B, 1 ⁺ A, 1 ⁺ B				두					원
	1A, 1B				두					원
	소계				두					원
육우	1 ⁺⁺ A, 1 ⁺⁺ B, 1 ⁺ A, 1 ⁺ B, 1A, 1B				두					원
합계					두					원

※ 축산물등급판정소 주소 : 경기도 군포시 당동 424-6 (Tel : 031-390-5534)
우편번호 : 435-010

[서식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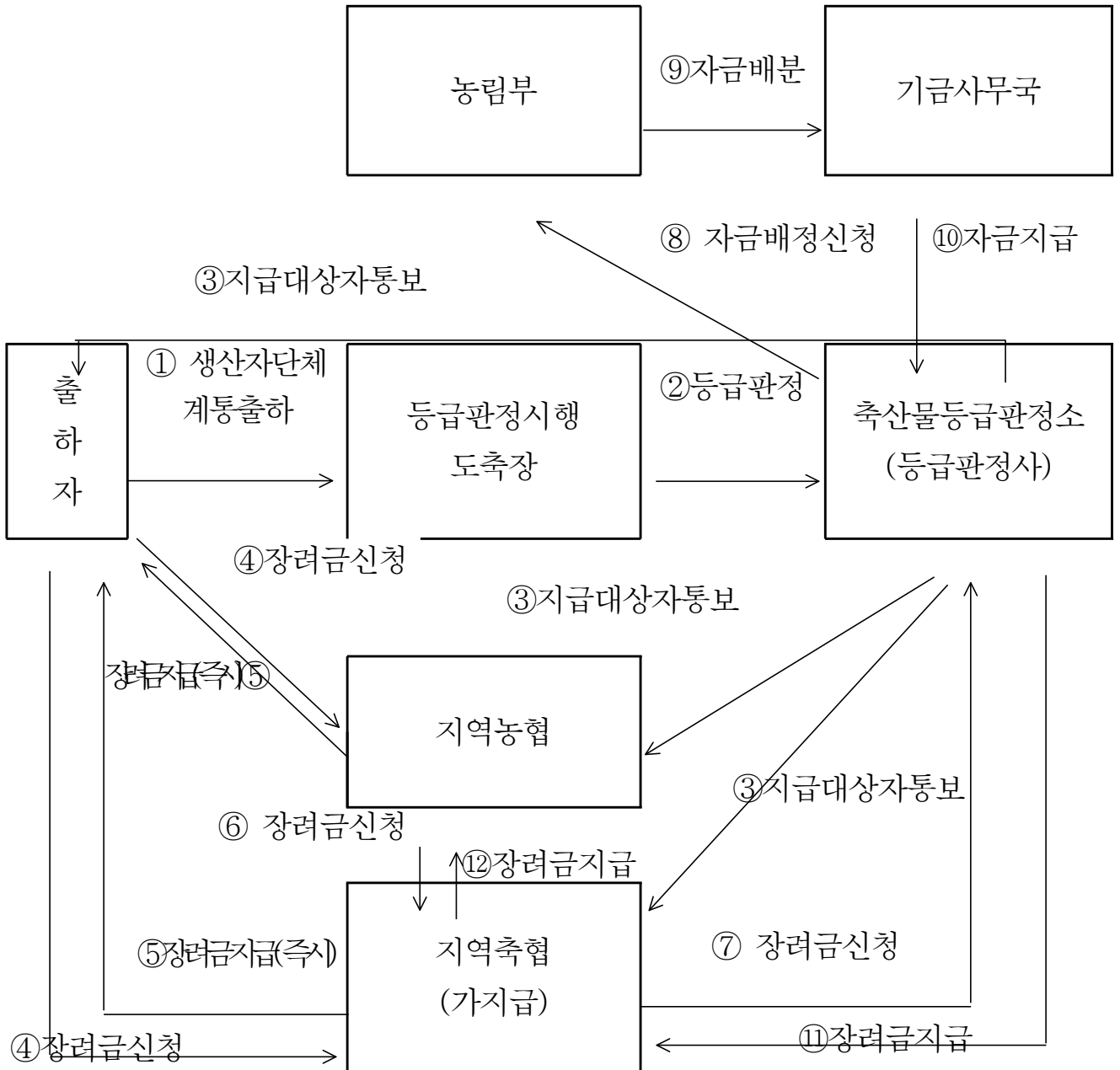
품질고급화장려금 신청서

받음 : ○○축산업협동조합장

보냄 : ○○농협조합장 (인)

일련 번호	등급판정 도축장명	판정 일자	생산자 성 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 록번호	등급판 정결과	도체 번호	품종	가지급 일 자	지급액
한우	1 ⁺⁺ A, 1 ⁺⁺ B, 1 ⁺ A, 1 ⁺ B				두					원
	1A, 1B				두					원
	소계				두					원
육우	1 ⁺⁺ A, 1 ⁺⁺ B, 1 ⁺ A, 1 ⁺ B, 1A, 1B				두					원
합계					두					원

품질고급화장려금 세부 체계도



※ 지역농협에서는 장려금을 자체자금으로 우선 지급한 후 이를 지역축협에 신청하고, 지역축협은 축산물등급판정소에 자금배정을 요구하여 장려금 수령 즉시 지역 농협에 지급한다.

[서식 7]

품질고급화장려금 참여 신청서

○○시장·군수 귀하

우리 ○○(조합·협회·법인 등)는 소사육 농가와 협력하여 자율적으로 거세사업을 실시하고 고급육 생산에 앞장서고자 품질고급화장려금 협조단체 지정을 신청하니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조합·협회 등)

※ 첨부서류

- 참여농가 명단

[서식 8]

참여농가 명단

농가명	주 소	사 육 두 수			서 명 (날인)	전 화	비고
		암소	수소	계			
계							

※ 참여농가 변동이 있을 때 매월 변동사항 보고(비고란에 명기)

[서식 9]

품질고급화장려금 사업참여 계획서

○○시장·군수 귀하

우리 ○○조합은 소사육 농가와 협력하여 자율적으로
거세사업을 실시하고 고급육 생산에 앞장서고자 품질고급
화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 ○ 협동조합장

[서식 10]

품질고급화장려금 협조단체 지정현황

○○도

2005. . .

시·군명 (시·도명)	생산자 단체명	참여농가수	사 육 두 수		
			암소	수소	계

※ 이 사업시행 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정책과(과장 안호근, 서기관 최염순)입니다.

1. 목 적

- 가축의 혈통등록, 능력검정, 유전평가, 종축선발 및 계획교배의 연쇄적 반복 과정을 거쳐 유전적으로 우수한 경제형질을 지닌 개체를 찾아 그 개체의 능력을 널리 이용
- 가축의 생산성을 제고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국제 경쟁력 강화

2. 시책 및 추진방향

- 가축개량을 촉진하여 생산성 향상
- 가축의 혈통등록 및 능력검정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정확한 유전평가를 통해 생산성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 이용
- 국가단위 육종가 평가제를 확립하여 종축선발의 효율성 제고
- 유전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이용한 가축인공수정 및 수정란이식 활성화
- 가축개량기관의 기능조정 및 운영개선을 통한 개량업무의 효율화 유도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 강구) 가축의 개량·증식 등 축산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
- 축산법 제7조(가축의 검정) 가축의 능력·개량정도를 확인·평가하기 위한 검정 실시
- 축산법 제39조(기금의 용도) 가축의 개량·증식사업에 기금의 사용

4. 2005 사업별 지원계획(총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축 발 기 금			지방비	자 담	합 계
		보 조	용 자	계			
한 우 개 량		18,203		18,203		1,300	19,503
젖 소 개 량		7,472		7,472	206	7,244	14,922
돼 지 개 량		380		380		139	519
닭 개 량		230		230		122	352
종축등록 등		241		241		55	296
합 계		26,526		26,526	206	8,860	35,592

5. 세부사업 시행요령

가. 한우개량

(1) 기본방침

- 순수개량에 의한 한우 생산성 향상 및 우량 한우 순수혈통 보전
- 유전적으로 능력이 우수한 한우 보증종모우 선발 활용
- 한우 번식우 사육의욕 고취와 우량 송아지 생산 유도로 사육기반 유지
- 한우개량농가 및 관리 조합의 관리 내실화

(2) 연도별 한우개량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2	'03	'04	'05	'06~'13
사업량 (종)		2	2	2	2	2
사업비	보 조	170,966	19,336	18,501	18,203	150,241
	용 자	45,000				
	지방비	2,250				
	자 담	600	500	1,202	1,300	
계		218,816	19,836	19,703	19,503	150,241

(3) 사업추진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사업내용

가) 한우개량농가육성

◦ 추진배경

- '79년부터 단지 조성, '95년부터 개량농가로 참여 확대, '99년부터 개량농가 중심으로 육성 관리

- 지원대상
 - 12개월령이상된 가임 혈통·고등등록우를 3두이상 사육하는 농가로서 관리조합이 한우개량농가로 지정하여 보조금교부결정을 통지받은 자
- 사업내용
 - 개량농가의 등록우(혈통·고등등록우)와 등록우에서 생산된 암송아지중 심사에 합격된 등록우 관리
 - 추천 종모우에 의한 등록우 계획교배
 - 계획교배에 의한 송아지생산 등록 및 관리
 - 혈통·고등등록우에 대한 발육 및 번식실태 조사
 - 등록우에서 생산된 수송아지 도체성적조사

나) 한우능력검정 및 정액생산 공급

- 당대검정 및 후대검정을 통한 우량 종모우 선발
 - 당대검정 : 고능력 암소와 수소간 계획교배로 생산된 수송아지를 대상으로 후보종모우 선발
 - 후대검정 : 후보종모우의 후대에 대한 산육능력검정 및 도체성적 평가로 보증종모우 선발
- 한우정액생산 공급
 - 보유중인 보증종모우로부터 고품질 정액을 생산하여 개량농가 등 양축 농가에 공급

2) 지원내용

가) 한우개량농가육성

- 한우개량농가의 관리대상 혈통·고등등록우 및 농가검정우(♂) 관리비, 농가조사 사례비 지원

나) 한우능력검정 및 정액생산 공급

- 한우 우량 정액생산 공급을 위한 종모우 사육 및 정액생산시설, 검정축 구입 등 고정투자와 인건비, 재료비 등 소요자금 지원

다) 대상별 지원내역 및 재원

◦ 지원대상

- 한우개량농가 : 관리대상 등록우에서 송아지 생산관리에 따른 농가 조사사례비
- 지역축협, 한우조합, 전국한우협회(홍성, 정읍, 장흥, 김해지부에 한하며, 이하 “관리조합”이라고 함) : 등록우 및 검정우 관리비
-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이하 “가축개량사업소”라고 함) : 한우정액 생산 공급 및 한우능력 검정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 당해년도 가축개량사업보조금지출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조건에 의함

(나) 2005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사업량	사 업 비					
		축 발 기 금			지방비	자부담	합 계
		보 조	용 자	계			
◦한우개량농가육성		5,990		5,990			5,990
- 개량농가지원	60천두	3,000		3,000			3,000
- 관리조합지원	90천두	2,990		2,990			2,990
·등록우관리	80천두	2,880		2,880			2,880
·농가검정우관리	10천두	110		110		1,300	110
◦정액생산·공급	1개소	12,213		12,213			13,513
계		18,203		18,203		1,300	19,503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축산연구소 : 한우개량 총괄
- 시·도 및 시·군 : 한우개량농가 및 관리조합 지도·감독
-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 : 관리조합 지원
- 관리조합 : 한우개량농가 및 등록우의 관리·지원
- 협조기관 : 한국종축개량협회, 전국한우협회 및 축산물등급판정소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정책과(전화 02-500-1894·5)
- 축산연구소 개량평가과(전화 041-580-3335)
- 시·도(시·군·구) 축산담당부서
-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 개량총괄과(전화 041-661-4693, 4695)
- 지역축협, 한우조합
- 한국종축개량협회(전화 02-588-9301)
- 전국한우협회(전화 02-525-1053)
- 축산물등급판정소(전화 031-390-5530)

(다) 사업시행

1) 사업추진계획 수립

가) 한우개량농가육성

- ① 관리조합은 한우개량농가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서식 1>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한우개량농가육성에 관하여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군별 한우산업발전협회의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 후 '05.1.20까지 가축개량사업소에 사업참여 신청. 단, 전국한우협회는 한우산업발전협회에서 기존 관리조합과 협의를 거쳐 시행
 - 2개이상 시·군이 포함된 관리조합은 각 시·군 한우산업발전협회를 주축으로 심의협회를 구성하여 운영
 - 가축개량사업소는 관리조합의 사업참여 신청을 받아 연간 사업계획 물량과 사업비 한도 범위내에서 관리조합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 배정계획을 농림부와 협의를 거친 후 관리조합에 '05.2.10까지 통보
 - 가축개량사업소는 관리조합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 배정할시에는 전년도 사업실적(관리두수, 인공수정두수, 송아지생산두수, 검정참여두수, 지도점검 및 관리실태일제조사 결과 등) 및 한우사육 농가수·두수 비율 등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사업물량 및 사업비 한도범위내에서 계획을 수립

② 관리조합은 위의 ①항에 의하여 당해 관리조합에 배정된 사업물량 및 사업비 계획 범위내에서 '05 본사업 대상자를 확정하여 '05.2월말까지 그 사업 농가에 개별통지하고 그 결과를 가축개량사업소에 보고

③ 사업자금의 집행관리 등

- 사업주관기관은 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2005본사업지침서, 농림사업실시규정,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축산발전기금운영 규정 등 관계법·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보조금교부결정을 통지하여 사업자금의 집행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이행
- 관리조합은 가축개량사업소가 각 관리조합별로 배정한 연간 사업계획 물량과 사업비 한도 범위내에서 집행

④ 가축개량사업소는 본지침에 의하여 관리조합의 2005년도 한우개량농가육성 사업 세부추진계획을 농림부와 협의를 거쳐 관리조합 및 각 시·도(시·군)에 '04.12월말까지 통보

⑤ 2005 사업계획

등록우 관리	송아지 생산	농가검정우 관리
80천두	60천두	10천두

⑥ 등록우관리

- 한우개량농가가 사육하는 12개월령이상 가임 혈통·고등등록우로 첫 인공수정일부터 체계적으로 관리(다만, '05 사업대상자 선정 이전에 관리대상 등록우가 임신된 경우 첫 인공수정일, 종모우, 산차 등을 확인)
- 관리조합은 등록우 관리카드 작성·보존·활용(개체표식은 바코드 귀표 번호로 통일, 개체별 등록우 관리자료를 PC로 작성관리, 개량정보 농가제공 등)
- 귀표부착 : 관리 등록우에서 생산된 송아지 및 기존 귀표 탈락시 지도원이 부착
- 기존 관리우중 자질이 불량한 등록우 및 혈통등록우중 고등등록 심사에서 탈락된 개체와 심사기피 개체는 관리대상에서 제외

⑦ 등록우에 대한 계획교배

- 가축개량사업소는 축산연구소, 한국종축개량협회와 협의하여 시·군별 등록우의 결점 보완 및 근친교배를 방지할 수 있는 최적 종모우를 추천하고 후대검정 교배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조합 및 관련기관에 통보
- 관리조합 및 한우개량농가는 추천종모우에 의한 계획교배 실시와 철저한 수정기록 유지로 정확한 혈통관리(한우개량농가는 정액 및 인공수정 증명서 원본을 보관 관리하고, 관리조합은 그 원본과 대조한 사본을 증빙자료로 활용)
- 등록우에 추천종모우 정액으로 인공수정후 송아지를 생산한 농가는 분만 즉시 생시체중을 측정하여 어미소의 개량자료 조사표<서식 2>에 기재하여 비치하고, 관리조합에 <서식 3>에 의하여 2주 이내 송아지생산 신고
- 관리조합은 어미소의 등록여부(등록증과 사육자 및 등록우 연령, 특징등), 추천종모우 정액에 의한 수정여부, 수정일과 분만예정일 적합여부, 시술자와 수정상황 및 조합 관리대장 정비여부, 농가 개량자료조사표 기재사항의 정확여부 등을 송아지생산 확인시 지도·점검하고 조합의 관리대장 정비
- 관리조합은 한우개량농가의 송아지생산 신고에 의하여 2주 이내 현지 확인하여 바코드귀표를 부착하고, 등록우 관리자료에 생산내역 정보를 전산입력하며, 6개월령 이내에 혈통등록 심사하여 합격축은 전산등록
- 후대검정 교배로 생산된 후대검정용 및 당대검정용 수송아지의 생산 확인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검정에 참여토록 지도

⑧ 한우개량농가의 관리대상 등록우·생산 송아지는 혈통등록이상 상위등록 유도

⑨ 농가검정우 관리 및 자료조사

- 관리조합은 등록우에서 생산된 비육우 출하도체성적 등의 자료를 조사관리

⑩ 등록우 자료조사·이용 및 유전능력 평가

- 가축개량사업소는 발육 및 번식능력조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발육능력조사 : 생시·이유시(3개월령)·6개월령·12개월령·18개월령·24개월령·36개월령시 체중 및 고등등록시 체척 측정(관리대상우 및 생산 송아지에 대하여 관리대상우의 10~15%범위내에서 표본조사)
 - 번식능력조사 : 초종부일령, 초산일령, 번식간격, 수태당 종부회수 등

- 가축개량사업소는 관리 등록우에 대한 번식, 발육 및 도체능력을 평가하여 우량 종빈우를 선정하고 당대 검정용 종빈우로 활용
- 축산연구소는 한우개량농가 관리대상 등록우에 대한 유전능력을 분석 평가

⑪ 개량농가 관리

- 시·군은 연 1회이상 관리조합의 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 계획대 추진실적 및 관리현황을 지도 점검하고, 개량농가 실태를 조사 평가하여 당해 연도 및 익년도 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에 반영(가축개량사업소는 조사요령을 작성 시달)
 - 시·군은 관리조합에 대하여 관리대상 등록우 및 생산 송아지두수와 연계하여 조합관리비 및 농가 조사사례비 지급내역을 반기별로 확인·점검 실시
- 관리조합은 연 1회이상 한우개량농가에 대한 등록우관리실태 일체조사 실시
- 관리조합은 등록우 이동방지과 세대축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행정기관, 도 축산연구소 및 한국종축개량협회 등의 협조를 받아 연 1회이상 한우개량 농가에 대한 사양 및 개량관련 교육실시

⑫ 농가 조사사례비 지원

- 지원대상
 - 한우개량농가 관리대상 등록우에서 계획교배(관리조합에서 지정한 종모우의 정액 사용)로 '05년도에 송아지를 생산한 한우개량농가로서 그 어미소를 1년간('05년도 본사업 대상자로 지정 통지일로부터 계속 1년간 그 등록 어미소를 관리하는 기간을 말함) 사육하는 농가에 조사사례비를 지급
 - 다만, 관리조합은 본사업 대상자가 조사사례비를 지급받은 후 가축개량사업소 또는 관리조합으로부터 2005년도 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 세부추진계획(농협중앙회)의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대상 등록우 사육자 또는 사업내역의 변경 승인을 득했거나 가축전염성 질병 또는 일정회수 이상 산차후 도태로 사업중단 승인을 득한 경우를 제외한 다른 사유로 관리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보조금의 회수등 지체없이 시정조치
- 지원기준 : 혈통 및 고등등록우로서 두당 50,000원 상당의 사료 또는 현금 지급
- 지원방법 : 관리조합은 송아지생산 및 판매의향 신고시 현지확인하여 계획교배로 생산된 송아지임을 확인하고, 개량농가에 사료 또는 현금(온라인 입금) 지급

⑬ 등록우 관리비 지원

- 관리조합의 사업실적에 따라 관리대상 등록우 두당 검정참여조합은 36천원/년, 검정미참여조합은 30천원/년을 지원
 - '05년도 본사업 대상자로 지정 통지일로부터 계속 1년간 관리대상 등록우를 관리하는 조건으로 관리조합에 등록우 관리비를 지급
 - 관리대상 등록우의 조합관리비는 2005년도 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 세부추진계획(농협중앙회)에 의하여 시·군 또는 관리조합이 실시하는 관리대상 등록우의 사육실태에 관한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결과에 따라 감액 또는 회수 조치
 - 다만, 위의 ⑫번 단서와 같이 동 세부추진계획의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개량사업소 또는 관리조합으로부터 승인을 득하여 실제 관리한 개월 수 만큼 관리비를 지급
- 월별 전산입력 결과에 따라 관리비 지원(월별 개체관리기록이 없는 경우 지원 제외)
- 당대·후대검정 참여 관리조합은 사업실적에 따라 관리비 지원
 - ※ 가축개량사업소는 농가 조사사례비 지원, 등록우·검정우 관리비 지원 및 감액기준 등의 세부 절차를 '05.1.20까지 관련조합 등에 시달

⑭ 농가검정우 관리비 지원

- 농가검정우 관리두수에 의거 거세, 출하 및 도체성적 등의 자료관리비 지원(기준 : 두당 11천원/년)

나) 한우능력검정 및 정액생산공급

- ① 가축개량사업소는 검정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 등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② 사업자금의 집행관리 등 : 한우개량농가육성중 “③ 사업자금의 집행관리 등”에 의함
- ③ 검정방법 : 한우검정기준(농림부 고시 제97-18호, '97.3.6)에 의하여 실시

④ 당대검정

- 검정기관 : 가축개량사업소
- 검정목표 : 당대검정 400두, 후보종모우 선발 40두
- 당대검정축 및 당대검정우 생산용 빈우 확보 : 농협 자체생산우, 개량기관 및 개량농가에서 매입 확보(산지평균시세의 130%이내에서 매입)
- 검정기관은 검정 완료시 개체별 검정성적을 축산연구소에 통보
- 축산연구소는 가축개량사업소로부터 협조를 받아 당대검정 성적을 종합분석(유전능력 평가)하여 한우분과실무위원회에서 후보종모우 선발

⑤ 후대검정

- 검정기관 : 가축개량사업소
- 검정목표 : 후보종모우 공시 40두, 후대검정 400두, 보증종모우 선발 20두. 단, 검정목표두수는 한우 보증종모우 선발체계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계획에 의함
- 후대검정용 수송아지(검정대상축) 확보
 - 가축개량사업소는 검정대상축을 확보하되 산지평균시세의 130%이내에서 매입
- 축산연구소는 후대검정 성적을 종합분석(유전능력 평가)하여 가축개량협의회(한우분과)에서 보증종모우 선발

⑥ 당대·후대검정 사료의 생산 공급

- 검정기관은 매월 25일까지 익월분 검정사료 소요량을 가축개량사업소가 지정한 배합사료 제조공장에 신청
- 동 배합사료제조공장은 한우검정요령중 배합사료의 배합비율 및 영양성분 기준을 준수한 검정사료를 일괄 주문생산 공급

⑦ 정액생산 및 공급

- 후보종모우는 수시로 정액채취 훈련 및 정액검사로 정상상태 유지
- 보증종모우는 주당 2회 정액채취를 원칙으로 하되 건강상태, 정액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가감
- 가축개량사업소는 정액 수요 및 재고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정액생산 공급

- 공급된 정액에 대하여는 수시로 공급단계별 품질검사, 수태율, 비정상 송아지(이모색, 비경흑색 등) 생산여부 등에 대해 현지조사 실시로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민원발생 방지

⑧ 사업비 지원

- 가축개량사업소는 분기별, 월별 사업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자금배분을 받아 집행

⑨ 한우 생체단층 촬영

- 사업시행기관 : 가축개량사업소
 - 협조기관 : 지역축협 및 한국종축개량협회
- 측정두수 : 5,000두
 - 가축개량사업소는 한우생체단층촬영을 실시할 단체에 사업계획량을 '05.1월말까지 통보
- 측정대상우 : 당대검정우 및 어미소, 고등등록우, 고등등록대상우 및 현장후대검정우
- 측정형질 : 도체등급판정 부위에 대한 생체 배장근단면적, 등지방두께 및 근내지방도
- 초음파 측정 : 가축개량사업소, 지역축협 및 한국종축개량협회는 대상우에 대하여 <서식 4>에 의거 초음파 측정을 실시
- 화상판독 : 촬영기관은 전산망을 이용하여 <서식 4>와 화상(디스켓저장)을 가축개량사업소에 전송하면 가축개량사업소는 자료를 판독하여 전산 관리하고 결과를 축산연구소와 초음파촬영단체에 <서식 5>에 의거 통보
- 자료활용 : 축산연구소는 초음파측정자료를 이용하여 유전능력분석 후 국가단위 한우유전능력평가 자료로 활용하고 전년도 분석결과를 농림부에 '05.2월말까지 보고
- 사업비지급
 - 지역축협과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전송받은 <서식 5>에 의거 사업비 지급대상축을 확인한 후 사업비를 청구하면 가축개량사업소는 이에 의거 두당 20,000원을 지급

⑩ 도축장 바코드귀표 출현우 도체성적조사

- 사업시행기관 : 가축개량사업소
 - 협조기관 : 축산물등급판정소, 축산물공판장(서울, 부천, 나주, 고령, 김해, 제주) 및 축산물종합처리장(한남중부, 안성축산진흥공사, 박달재 한우마을, 경북 동아축산, 하이마트)
 -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및 시·도는 조사대상 도축장에서 근무하는 축산물 검사원으로 하여금 바코드귀표를 부착한 한우가 출하되는 경우 본 도체성적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조치
- 조사두수 : 40,000두
- 조사대상 : 소산업정보화사업,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 종축등록사업에 참여하여 바코드귀표가 부착된 도축 한우
- 조사도축장 추천 및 선정
 - 시·도는 농협 축산물공판장, 축산물종합처리장 및 지역축협 도축장을 중점관리
 - 시·도는 일반도축장에 대하여 <서식 6>에 의거 신청을 받아 승인하고, 이를 시행기관에 통보
- 수행절차 : 조사도축장은 조사대상축에 대한 바코드번호와 도축번호를 <서식 7>에 의거 조사하여 등급판정소에 제출하고, 등급판정소는 등급판정후 가축개량사업소에 조사대상축의 등급판정자료를 <서식 8>에 의거 가축개량사업소에 전송하면, 가축개량사업소는 전산관리
- 사업비 지급
 - 가축개량사업소는 <서식 8>을 검토하여 사업비 지급대상우를 확정후 조사도축장에 <서식 9>에 의거 통보하고, 조사도축장은 송부 받은 <서식 9>에 의거 가축개량사업소에 조사비를 신청하면, 가축개량사업소는 이에 의거 조사비 두당 1,400원을 지급

2) 기타사항('06년 지원대상 예고)

- 관리조합 및 한우개량농가는 한우개량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자율적 노력 경주
- '06년 지원대상 예고 : 12개월령 이상된 가임 혈통·고등등록우를 5두이상 사육하는 농가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가축개량사업소는 후보종모우·보증종모우의 성실한 관리와 최상의 고품질 정액생산 공급으로 양축가에 대한 서비스 강화
- 축산연구소는 한우능력검정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지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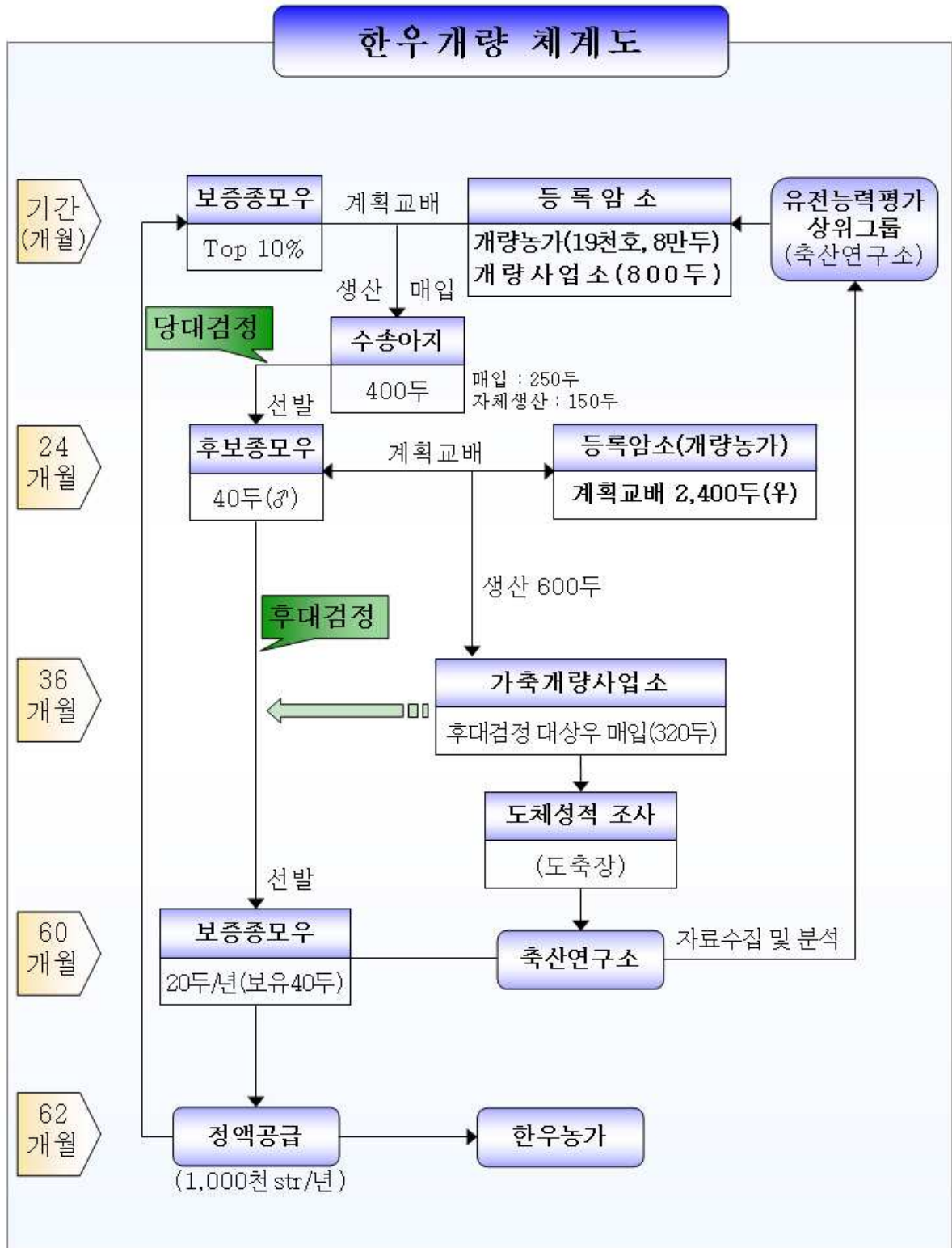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개량농가 운영장비등 취득재산	재산 구입일로부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에 의한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 년수 범위기간 적용	사후관리 기간중에는 처분불가 및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사후관리 기간중에 재산피손등으로 사용 불가시는 조합 자담 으로 대체구입 - 사업중단 및 사업폐기 등으로 재산의 용도가 소멸될 경우 기금관리 자는 관리전환 또는 회수 처분할 수 있음

(나) 보고사항

- 가축개량사업소는 다음 사항을 농림부 및 축산연구소에 기한내 보고

보 고 사 항	보고기한	서식
◦ '05 한우개량 세부사업 추진계획	'05.2월말까지	자체서식
◦ 한우 후보종모우선발 및 매입결과	매입 완료후 1개월이내	자체서식
◦ 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 추진실적 ◦ 한우능력검정 및 정액생산공급사업 추진실적	매분기말 익월 20일까지 (정산보고 : '06.1월말까지)	<서식 10> <서식 11>

<그림 1>



※ 보증종모우 × ♀ → 수송아지 → 후보종모우 × ♀ → 보증종모우 선발
 10월 14월 38월
 (육성6,검정6,평가2) (교배2,임신10,육성10,검정14,평가2)

<서식 1>

한우개량농가 지정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축주	주소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전화		
한우사육 현황(두)	합계		성우		육성우		송아지	
	암	수	계	암	수	암	수	암
조사료 재배면적 (평)	논면적		초지		사료포		기타	
축사 면적(평)	번식우사				비육우사			
등록 우	바코드 귀표번호	혈통등록 번호	생년 월일	송아지생산안정제 가입여부		부모등록번호		
						부	모	
비고	통장 계좌번호 : ○○은행 - - -							

위와같이 한우개량농가 지정 및 보조금교부를 신청합니다.

2005년 월 일

귀하

<서식 2>

개량자료조사표

◦ 작성일 : 2005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

① 등록우 내역	바코드번호		개체번호			등록번호			생년월일			등록구분		
												구분	등록일	
인 공 수 정 내 역														
② 번 식	산 차	1차		2차		3차		4차		5차				
		수정일	종모우	수정일	종모우	수정일	종모우	수정일	종모우	수정일	종모우			
상 황	분 만 내 역						송아지 특징							
	산차	분만일	성별	송아지 바코드번호		생시 체중	분만 상태	모색	비경	이모색	이상 형질	이동 상황		
③ 등록우 발육 상황	구분	조사 일	체중	체고	십자 부고	체장	흉폭	흉심	요각폭	곤폭	좌골폭	고장	흉위	전관위
	생시													
	협동 등록시													
	고등 등록시													

※ 한우를 이동, 판매시는 본 조사표를 구매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개량자료조사표 작성요령

① 등록우 내역

- 바코드번호 : 한우 귀에 부착된 바코드 귀표번호를 확인하여 9~15자리 수를 기재
- 개체번호 : 등록우 관리조합에서 부여한 번호로서 귀표를 확인하여 기재
- 등록번호 : 한국종축개량협회 등록번호로서 해당 개체의 등록증에서 확인하여 기재
- 생년월일 : 해당 개체의 관리카드에서 확인하여 기재
- 등록구분 : 한국종축개량협회 등록시 명시된 기초, 혈통, 고등등록으로 구분하고 등록일자를 기재

② 번식상황

- 인공수정내역(미경산우 최초 수정부터, 경산우 전분만이후 금회 분만까지의 기간)
 - 산 차 : 분만한 회수를 기재 예) 1산, 2산, 3산 등
 - 수정일 : 등록우에게 수정사가 인공수정한 날짜 기재
 - 종모우 : 인공수정시 종모우명 기재
- 분만내역 : 등록우의 송아지 분만 내역 기재
 - 분만일 : 해당 산차에 대한 등록우의 송아지 생산일자 기재
 - 성 별 : 암수로 구분하되 쌍태일 경우는 암2, 수2, 암·수중 선택기재
 - 바코드번호 : 생산된 송아지에 장착된 바코드 귀표번호 기재
 - 생시체중 : 송아지 출생시 체중을 측정하여 기재
 - 분만상태 : 정상분만, 조력분만, 난산, 유산, 사산중 선택 기재
- 송아지 특징(혈통등록증명서 참조)
 - 모색 및 비경 : 송아지의 털색(예 : 담황색, 황색, 갈색)과 코등 색깔(예 : 육색, 중간비, 흑비) 기재
 - 이모색 : 송아지의 털색에 부분적으로 나타난 이색모 기재(예 : 백반, 백모, 흑반)
 - 이상형질 : 생산된 송아지의 유전적 이상형질 기재(예 : 프리마틴, 기형)
 - 이동상황 : 송아지의 자가사육 및 판매 상황 기재

③ 등록우 발육상황

- 조사일 : 체중 및 체위를 측정한 연월일 기재
- 체중 및 체위측정 : 우형기, 체척기, 골반계, 줄자를 이용한 측정값을 기재
 - 생시, 혈통등록시는 체중만 기재하고 고등등록시는 체중 및 체위 등 12개 형질 조사

<서식 3>

한우송아지생산, 자가사육 및 판매의향 신고서

축주	주 소								
	성 명				전 화				
분만암소	바코드번호	생년월일	등록구분	등록번호	최종수정일	종모우명	산차	분만일	
송아지	송아지 바코드번호	분만상황			지급기준 금액	사육 및 판매의향			
		성별	생시체중	분만상태		자가사육	시장판매	문전거래	판매시기
조사사례비 신청 총액		일금	원정(₩)			지원방법	사료() 현금()		

※ 작성요령 : 송아지생산 후 1개월령이내에 작성(자가사육, 시장판매, 문전거래 등은 해당란에 ○으로 표시), 해당사항 없을 경우 공란으로 남김

※ 지급기준금액은 분만일당시 분만암소의 등록구분에 의함

위와 같이 한우송아지 생산, 자가사육 및 판매의향 신고서를 제출하오니 조사사례비를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귀하

<서식 4>

한우 초음파 생체단층 측정 조사표

측정일	측정자	기종명	대상축					측정형질		축 주	
			바코드 번호 (명호)	성별	등록 번호	생년 월일	산차	흉위 (cm)	영양도 (1-9)	성명	주소

※ 성별 : 암소, 거세우, 비거세우 중 택일하여 기재

2005년 월 일

초음파촬영기관 : (인)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장 귀하

<서식 5>

한우 초음파 생체단층 화상판독 결과표

바코드 번호	축 주		판정 일	판정자	판독형질			지급 대상 (유무)
	주소	성명			배최장근 단면적 (cm ²)	등지방 두께 (cm)	근 내 지방도 (1~7)	

2005년 월 일

확인자 : (인)

결과 통보기관 : (인)

귀하

<서식 6>

바코드귀표 장착 한우조사 작업장 신청서

조사작업장		대표자성명	(인)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작업장 주소			
소도축능력(두/년)		전년도 바코드귀표 조사두수(년)	

위와같이 바코드귀표 장착 한우조사 작업장 지정을 신청합니다.

2005년 월 일

조사기관(작업장운영자) : (인)

○○○ 시·도지사 귀하

<서식 7>

바코드귀표 장착 한우 도축 조사서

일련 번호	도축일	도축번호	바코드번호	성별	확인란

* 확인란은 바코드번호 오류 및 중복 확인

2005년 월 일

조사기관(작업장운영자) : (인)

축산물등급판정소장 귀하

<서식 10>

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 추진실적 보고(/4분기)

1. 사업 추진실적

세 부 사 업 명	단위	연간계획 (A)	(/4분기)까지		진 도(%)	
			계획(B)	실적(C)	C/B	C/A
◦등록우 관리 - 관리조합 - 개량농가 ◦송아지 생산 ◦농가검정우관리 - 관리조합 - 사육농가	두 개소 호 두 두 개소 호					

2.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사업 대상 (호, 개소)	사업량			사 업 비																				
		계 획	실 적	%	축발기금			지방비			농협중앙회			자담 등			계								
					계 획	실 적	%	계 획	실 적	%	계 획	실 적	%	계 획	실 적	%	계 획	실 적	%						
◦한우개량농가육성 - 조사사례비 - 등록우관리비 - 검정우관리비																									

한우능력검정 및 정액생산공급사업 추진실적 보고(/4분기)

1. 사업 추진실적

세 부 사 업 명	단 위	연간계획 (A)	(/4분기)까지		진 도(%)	
			계획(B)	실적(C)	C/B	C/A
가. 당대검정						
◦교배	두					
◦수송아지확보	"					
- 사업소(생산)	"					
- 개량농가(매입)	"					
◦검정개시	"					
◦후보종모우선발	"					
나. 후대검정	두					
◦교배	"					
◦검정축 생산	"					
◦검정개시	"					
◦보증종모우 선발	"					
다. 정액생산 공급	두					
◦종모우 사육	"					
- 보증종모우	"					
- 후보종모우	"					
◦정액생산	천str					
- 보증종모우	"					
- 후보종모우	"					
◦정액공급	"					

2.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사업 대상 (호, 개소)	사업량			사 업 비																																										
		계 획	실 적	%	축발기금			지방비			농협중앙회			자담 등			계																														
					계 획	실 적	%	계 획	실 적	%	계 획	실 적	%	계 획	실 적	%	계 획	실 적	%																												
◦한우정액생산및공급																																															
- 인건비																																															
- 운영비																																															
- 자산취득비																																															

나. 젓소개량

(1) 기본방침

- 유전능력이 우수한 젓소 정액을 생산·공급하여 개량촉진 유도
- 젓소산유능력검정(유우군능력검정, 이하 같음)과 젓소정액생산·공급사업을 상호 연계 추진
 - 국내 우량종빈우의 계획교배와 수정란이식을 통한 검정대상 우량송아지 생산
 - 당대·후대검정을 통한 우량종모우 선발 및 우량정액 생산
- 젓소산유능력검정은 검정소 및 참여농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한시적으로 두당 일정액을 보조지원
 - 정확한 개체혈통관리·능력조사 및 기록유지로 젓소 유전평가의 신뢰도 제고

(2) 연도별 젓소개량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 ~ '02	'03	'04	'05	'06 ~ '13
사업량(종)		2	2	2	2	2
사 업 비	보 조	55,380	7,767	8,107	7,472	73,083
	용 자	3,600				
	지방비	910	628	628	206	
	자 담	13,325	5,244	6,082	7,244	
계		73,215	13,639	14,817	14,922	73,083

(3) 사업추진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사업내용

- 젓소산유능력검정
 -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젓소개량부)는 젓소검정기준(농림부고시 제97-19호), 본 지침서 및 당해연도 젓소산유능력검정사업 세부추진계획에 의하여 본사업을 신청한 검정조합·단체 및 검정농가를 심사·선정하여 젓소산유능력검정사업 추진

- 검정성적을 분석하여 농가 사양관리 및 경영개선 지도
 - 각 검정소는 참여농가에 대하여 검정결과 통보, 설명 및 경영지도
- 젓소정액생산·공급
 - 젓소능력검정을 통한 우량 종모우 선발
 - 당대검정 : 고능력 암소와 수소간의 계획교배로 생산된 수송아지에 대한 발육능력 및 외모심사로 후보종모우 선발
 - 후대검정 : 후보종모우의 후손에 대한 산유능력검정으로 보증종모우 선발
 - 보유중인 보증종모우로부터 고품질 정액을 생산하여 양축농가에 공급

2) 사업별 지원대상 및 재원

- 젓소산유능력검정 : 검정참여농가에 검정비용의 일부 보조지원
 - 검정우 유성분 분석 재료 : 우유성분 분석장비 표준화를 위하여 검정조합에 표준용액 공급 지원
- 젓소정액생산·공급 :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이하 “가축개량사업소”라 함)에 시설, 검정축구입, 인건비 및 재료비 등 지원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 당해년도 가축개량사업보조금지출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조건에 의함

(나) 2005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사업량	사 업 비					
		축 발 기 금			지방비	자부담	합 계
		보 조	용 자	계			
◦젓소산유능력검정	140천두	2,374		2,374	206	6,544	9,124
◦젓소정액생산·공급	1개소	5,098		5,098		700	5,798
계		7,472		7,472	206	7,244	14,922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축산연구소 : 젓소개량 총괄
- 시·도(시·군) : 젓소 산유능력검정 지도·감독
-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젓소개량부) : 젓소정액생산·공급 및 젓소산유능력검정
- 한국종축개량협회 : 혈통관리·검정업무 협조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정책과(전화 02-500-18945)
- 축산연구소 개량평가과(전화 041-580-3335)
- 시·도(시·군) 축산담당부서
-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 젓소개량부 (전화 031-965-9588)
- 한국종축개량협회(전화 02-588-9301)

(다) 사업시행

1) 사업추진계획 수립

가) 젓소산유능력검정

- ① 검정조합(검정사업참여 낙협, 지역축협, 종축개량협회, 이하 “검정조합”이라 함)은 젓소산유능력검정농가로 지정 및 보조금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서식 1>에 의하여 사업 신청을 받아 젓소산유능력검정에 관하여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확정한 후 '05.1.20까지 가축개량사업소에 사업 신청
 - 가축개량사업소는 검정조합의 사업참여 신청을 받아 연간 사업계획 물량과 사업비 한도 범위내에서 검정조합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 배정계획을 농림부와 협의를 거친 후 검정조합에 '05.2.10까지 통보
 - 가축개량사업소는 검정조합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 배정시에는 전년도 사업실적(검정참여두수, 송아지생산 및 혈통등록두수, 지도점검 및 관리 실태일제조사 결과 등) 및 젓소사육 농가수·두수 비율 등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사업물량 및 사업비 한도 범위내에서 계획을 수립

- ② 검정조합은 위의 ①항에 의하여 당해 검정조합에 배정된 사업물량 및 사업비 계획 범위내에서 '05 본사업 대상자를 확정하여 '05.2월말까지 그 사업 농가에 개별통지하고 그 결과를 가축개량사업소에 보고
- ③ 사업자금의 집행관리 등
- 사업주관기관은 젓소산유능력검정사업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2005본사업지침서, 농림사업실시규정,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축산발전기금운영 규정 등 관계법·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보조금교부결정을 하고 사업자금의 집행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이행
 - 검정조합은 가축개량사업소(젓소개량부)가 각 검정조합별로 배정한 연간 사업계획물량과 사업비 한도 범위내에서 집행
 - ※ 다만, 검정조합이 농가부담분을 지방비, 검정조합 자체자금으로 지원하거나 검정물량 확대를 위해 자체계획에 의하여 추가 지원하는 경우에 그 실적을 함께 보고
- ④ 가축개량사업소는 본지침에 의하여 검정조합의 젓소산유능력검정사업 세부추진계획을 농림부와 협의를 거쳐 검정조합 및 각 시·도(시·군)에 '04.12월말까지 통보
- ⑤ 사업비 지원방법
- 지원대상 : 검정업무를 수행중인 단체 등 검정소
 - 지원한도 : 검정우 두당 18,600원/년을 축산발전기금에서 보조
 - 지원방법 : 검정소가 검정결과를 전산입력후 검정자료로 처리된 두수를 기준으로 1비유기 두당 18,600원을 월별(매월 1,550원) 분할 지급
 - 검정에 참여한 등록우에 대하여 지원하되, 미등록우가 검정원의 입회하에 첫 검정이 실시된 후 90일이내에 등록된 경우, 미지급된 보조금의 소급 지급 허용
 - 검정원의 입회하에 첫 검정이 실시된 후 30±5일 간격으로 검정이 실시되지 않을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질병치료, 방역, 품평회 등 공식행사 참여 또는 검정입회 간격이 31~35일이 되어 특정 월에 검정이 안될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일시검정 중지우에 대하여는 1비유기중 1회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을 허용

- 다만, 가축개량사업소 또는 검정조합으로부터 2005년도 젖소산유능력검정 사업 세부추진계획(농협중앙회)의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우 사육자 또는 사업내역의 변경 승인을 득했거나 가축전염성 질병 또는 일정회수 이상 산차후 도태로 사업중단 승인을 득한경우를 제외한 다른 사유로 비유기중 2회이상 검정 중지우에 대하여는 그 비유기중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조치 등 시정조치

나) 젖소정액생산·공급

- ① 가축개량사업소는 젖소정액생산 공급에 대한 검정계획 및 사업비 집행 계획 등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국내산 또는 도입한 고능력 정액 및 수정란 이식으로 국내에서 생산한 유전능력이 우수한 송아지를 매입하여 당대검정축 확보
 - 외국산 젖소보증종모우 및 후보종모우(Young Bull)는 도입규격과 농림부의 승인을 받은 별도 심의규정에 의거 전문가로 구성된 검수단이 현지검수 또는 심사하여 가축개량사업소의 자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 도입 추진(심의결과는 1주이내 농림부에 보고)
 - 당대검정 기록, 선대능력, 외모심사 점수, 발육상태, 정액성상등을 감안하여 가축개량협의회 젖소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후보종모우 선발
 - 젖소산유능력 검정우를 활용한 계획교배를 통하여 후대검정용 낭우(검정대상축)를 확보하고, 축산연구소와 도 축산기술연구기관은 각각 독립된 축군(Herd)으로 간주
 - 가축개량협의회 자문 및 후대검정 성적, 외모심사 점수 등을 종합한 유전능력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보증종모우 선발(2~3두)
 - 보증종모우는 주당 2회 정액채취를 원칙으로 하되 건강상태, 정액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증감 가능
- ② 사업자금의 집행관리 등 : 젖소산유능력검정중 “③ 사업자금의 집행관리 등”에 의함
- ③ 인공수정용 정액생산 공급
 - 가축개량사업소는 정액수요 및 재고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정액생산 공급

- 공급된 정액에 대하여는 수시로 공급단계별 품질검사, 수태율, 비정상 송아지(이모색, 유전적 결함 등)생산 여부 등에 대해 현지조사 실시로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민원발생 방지

④ 사업비 지원방법

- 가축개량사업소는 분기별, 월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자금집행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가축개량사업소는 연간 젖소산유능력검정성적을 종합분석하여 각 검정소, 관련기관 등에 제공
- 가축개량사업소는 후보종모우 및 보증종모우의 성실한 관리와 최상의 고품질 정액생산 공급으로 양축가에 대한 서비스 강화
 - 젖소검정기준(농림부고시 제97-19호, '97.3.6)에 의거 관리
- 시·도 및 축산연구소는 능력검정사업의 추진상황 지도 및 감독 실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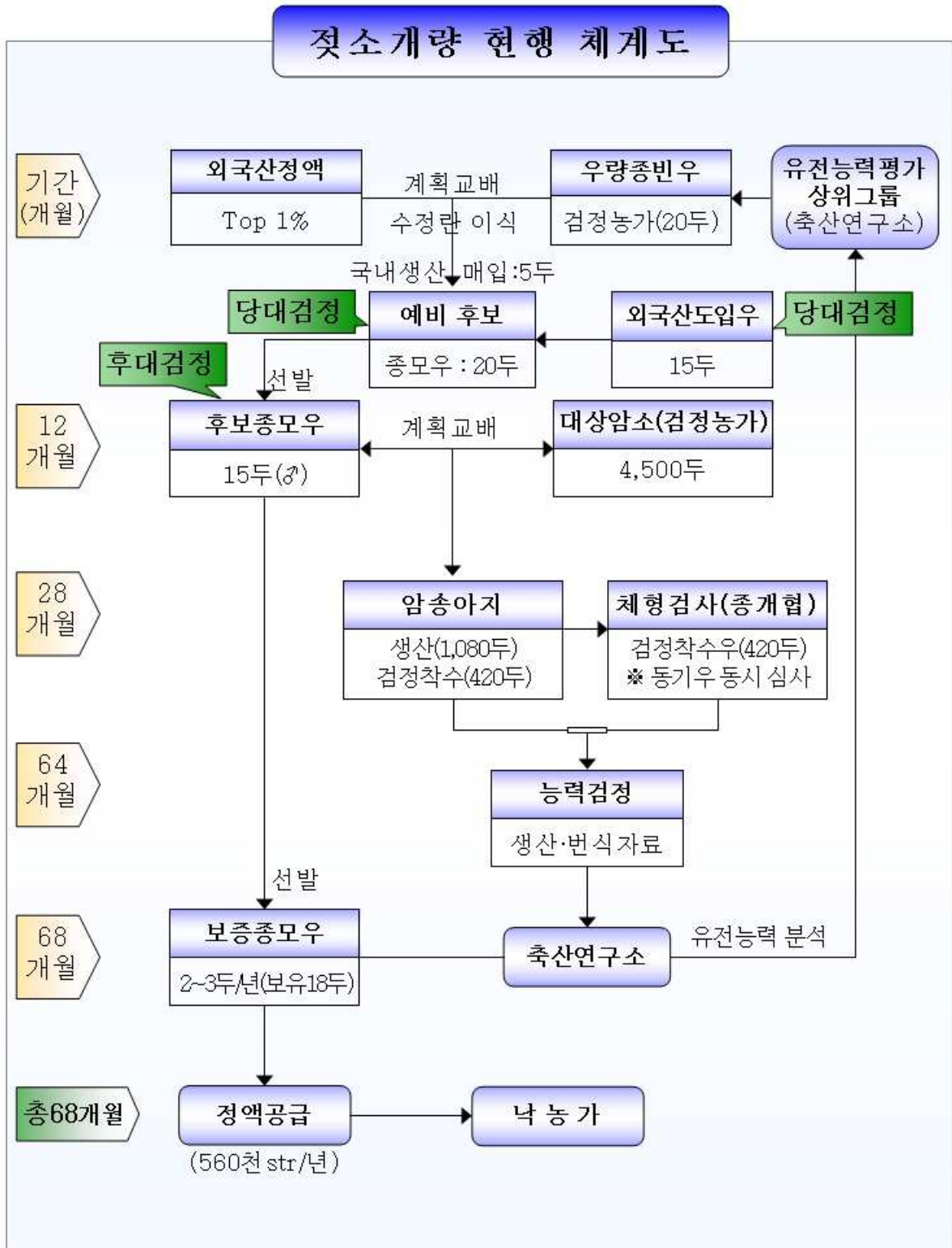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검정용 기구, 기자재 및 차량등 취득재산	재산 구입일로부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에 의한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 범위기간 적용	사후관리 기간중에는 처분불가 및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사후관리 기간중에 재산 파손 등으로 사용불가시는 조합 자담으로 대체구입 - 사업중단 및 사업 폐기등으로 재산의 용도가 소멸될 경우 기금관리자는 관리 전환 또는 회수 처분할 수 있음

(나) 보고사항

◦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농림부 및 축산연구소에 기한내 보고

보 고 사 항	보고기한	서 식
◦'05 젖소개량 세부사업 추진계획	'05.2월말까지	자체서식
◦젖소 후보종모우선발 및 매입결과	매입 완료후 1개월이내	자체서식
◦젖소 보증종모우 선발결과	선발 완료후 1개월이내	자체서식
◦젖소산유능력검정사업 추진실적 ◦젖소정액생산·공급사업 추진실적	매분기말 익월 20일까지 (정산보고 : '06.1월말까지)	<서식 2> <서식 3>

<그림 1>



<서식 1>

젓소산유능력검정농가 지정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축 주	주소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전화		
젓소사육 현황(두)	미경산우		경산우	합계		
조사료 재배면적 (평)	초지		사료포	기타		
축 사 면 적	(평)					
검 정 우	바코드 귀표번호	혈통등록 번호	생년월일	명호	부모등록번호	
					부	모
비 고						

위와같이 젓소산유능력검정농가 지정 및 보조금교부를 신청합니다.

2005년 월 일

귀하

<서식 2>

젖소산유능력검정사업 추진실적 보고(/4분기)

1. 사업 추진실적

세 부 사 업 명	단위	연간계획 (A)	(/4분기)까지		진 도(%)	
			계획(B)	실적(C)	C/B	C/A
◦검정소 운영 ◦검정원 ◦검정농가 ◦검정두수	개소 명 호 두					

2.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사업 대상 (호, 개소)	사업량			사 업 비																
		계획	실적	%	축발기금			지방비			농협중앙회			자담 등			계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젖소산유능력검정 - 검정비 - 재료비																					

<서식 3>

젓소정액생산·공급사업 추진실적 보고(/4분기)

1. 사업 추진실적

세 부 사 업 명	단위	연간계획 (A)	(/4분기)까지		진 도(%)	
			계획(B)	실적(C)	C/B	C/A
가. 후보종모우 확보 ◦정액 도입 ◦종빈우 교배 ◦수정란 생산 ◦수정란 이식 ◦국내산 후보우 확보	str 두 str 두 두					
나. 후대검정 ◦후보우 선발 ◦빈우 선정 ◦낭우 생산 ◦검정두수 ◦보증종모우선발	두 " " " "					
다. 정액생산 공급 ◦종모우사육 - 보증종모우 - 후보종모우 ◦종모우 도입 - 보증종모우 - 후보종모우 ◦정액생산 - 보증종모우 - 후보종모우 ◦정액공급 - 보증종모우 - 후보종모우	두 " " " " 천str " " " "					

2.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사업 대상 (호, 개소)	사업량			사 업 비																																			
		계 획	실 적	%	축발기금			지방비			농협중앙회			자담 등			계																							
					계 획	실 적	%	계 획	실 적	%	계 획	실 적	%	계 획	실 적	%	계 획	실 적	%																					
◦젓소정액생산및공급 - 인건비 - 운영비 - 자산취득비																																								

다. 돼지개량

(1) 기본방침

- 종돈 검정소 검정과 농장검정 병행 추진
 - 능력검정요원의 전문화, 검정방법의 표준화 및 검정시설장비의 현대화
 - 검정결과의 공표를 통한 양축농가의 종돈구입 편의 증진
- 국내 능력검정결과 우수종돈의 정액처리업체 활용 유도
- 종돈장 순종돈 능력검정확대로 국가단위 유전능력 평가 및 핵돈군 육성사업 기반조성
- PSS 유전자발현 물태지를 감소시켜 돼지품질 고급화

(2) 연도별 돼지개량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 ~ '02	'03	'04	'05	'06 ~ '13
사업량(종)		2	1	1	1	1
사 업 비	보 조	3,162	585	361	380	9,900
	용 자	89,709				
	자부담		267	159	139	
계		92,871	852	520	519	9,900

(3) 사업추진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사업내용

- 시·도에 종돈업등록을 필한 농장을 대상으로 검정소 검정과 농장검정 실시
- 종돈업등록을 필한 농장에서 공인 능력검정원을 확보한 경우 자가검정 실시
- 종돈업체 순종돈에 대한 PSS유전자 검사비를 일부 보조

2)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
 - 농장검정(입회) : 대한양돈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 농장검정(자가) : 공인 능력검정원을 확보한 종돈업 등록업체
 - PSS유전자 검사 : 종돈업 등록업체 및 한국종축개량협회
- 지원기준
 - 농장검정비(입회) : 검정완료돈 두당 3,200원
 - 농장검정비(자가) : 검정완료 두당 2,300원
 - 검정대상돈은 혈통등록된 부모로부터 생산된 순종 자돈
 - 검정돈 개체의 산육검정 및 어미의 산자기록을 한국종축개량협회에 D/B화
 - PSS유전자검사비 : 검사완료돈 두당 8,500원(한국종축개량협회 물품구입, 우편발송, D/B구축 등 2,000원 포함)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 당해연도 가축개량사업 보조금 지출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조건에 의함

(나) 2005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사업량	사 업 비					
		축 발 기 금			지방비	자 담	합 계
		보조	용자	계			
◦검정비	50천두	142		142		96	238
- 입회검정	30	96		96		96	192
- 자가검정	20	46		46			46
◦PSS유전자검사비	5천두	43		43		43	86
◦검정소시설비	1개소	195		195			195
합 계		380		380		139	519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축산연구소 : 돼지개량 총괄
 - 축산연구소에서 국가단위 유전능력평가 실시
- 대한양돈협회는 검정소검정을, 한국종축개량협회는 농장검정·농장별 유전능력평가·D/B구축·PSS유전자 검사 사업을 추진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정책과(전화 02-500-1894·5)
- 축산연구소 개량평가과(전화 041-580-3335)
- 대한양돈협회(전화 : 협회 02-571-9751, 제1검정소 031-632-2426)
- 한국종축개량협회(전화 : 02-588-9301)

(다) 사업시행

1) 사업추진계획 수립

-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대한양돈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은 연간 검정계획 및 운영계획 등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2) 사업추진방법

- 검정방법 : 돼지검정기준(농림부고시 제2002-25호, '02.5.25)에 의하여 실시
다만, 농장검정 개시체중은 생시체중을 적용
- 검정관련 자료수집
 - 검정기관 및 종돈업 등록업체에서 생산된 자가검정 자료(혈통·산육·산자 기록)는 한국종축개량협회에 통보하여 D/B구축
 - D/B화된 자료는 한국종축개량협회, 대한양돈협회, 축산연구소의 유전능력 평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금지 다만, 자료를 생산한 종돈업체의 사전 협의를 받은 경우 예외로 함
- 유전능력평가 및 공표
 - 한국종축개량협회 및 대한양돈협회는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D/B화된 혈통 및 검정자료를 이용하여 유전능력 평가후 그 결과를 능력검정 참여 종돈업체에 통보 및 홍보수단을 통해 공표
 - 축산연구소는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D/B화된 혈통 및 검정자료를 통보 받아 국가단위 유전능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홍보수단을 통해 공표
- PSS유전자 검사
 - PSS 유전자 분석 신청 : 종돈업 등록업체(이하 “농장”이라 함) 등은 <서식 3>에 의하여 PSS유전자 분석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종축개량협회에 신청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신청농장 등을 선정하고 자부담 납부 안내와 PSS유전자 분석대상농장 선정현황을 <서식 4>에 의하여 작성하여 관련기관(농장)에 분기별로 통보
 - 선정된 농장등에는 항응고제 함유 채혈관(튜브)을 구입 공급
- 혈액 또는 모근 채취 및 운송
 - 농장등은 종돈의 혈액 또는 모근을 채취하여 튜브에 품종, 개체번호, 등록번호, 농장명, 채취일자를 기입하여 분석기관에 발송
- 분석방법 : PSS유전자 증폭방법에 의한 분자량을 나타내는 Molecular Size Marker 판독
- 결과통보 : 분석기관은 분석결과를 <서식 5> 의하여 작성하여 한국종축개량협회와 해당 농장에 통보
- 자료활용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혈통등록부에 기재하고 D/B를 구축하며, PSS 유전자 발현돈(nn)과 보유돈(Nn)은 도태를 유도
- 축산연구소는 분석이 가능한 대학, 연구소등을 한국종축개량협회에 통보
 -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축산연구소와 협의하여 세부실시계획을 마련 시행

3) 사업비 지원방법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검정기관(한국종축개량협회, 대한양돈협회)·종돈업 등록업체의 능력검정비 지원대상 두수 및 분석기관의 PSS 유전자 검사 결과를 각각 확인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에 제출 다만, 대한양돈협회는 검정소시설비 지원에 대한 관련증빙서류를 갖추어 농림부에 제출
 - 관련서류 : 능력검정비 지원대상종돈 혈통 및 능력검정성적내역<서식 2>, PSS유전자 사업실적, 촉발기금 보조금지급신청서
- 사업자금의 집행관리 등
 - 사업주관기관은 종돈검정, PSS유전자검사, 검정소시설 사업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2005본사업지침서, 농림사업실시규정,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축산발전기금운영규정 등 관계법·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보조금교부 결정을 받아 사업자금의 집행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이행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시설 및 기구등 취득 재산	재산 구입일로부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에 의한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 년수 범위기간 적용	사후관리 기간중에는 처분불가 및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사후관리 기간중에 재산파손등으로 사용불가시는 협회 자담으로 대체구입 - 사업중단 및 사업 폐기등으로 재산의 용도가 소멸될 경우 기금관리자는 관리 전환 또는 회수 처분할 수 있음

(나) 보고사항

- 사업주관기관은 다음 사항을 농림부 및 축산연구소에 기한내 보고

보 고 사 항	보고기한	서식
'05 돼지개량 세부사업 추진계획	'05.2월말까지	자체서식
◦돼지능력검정사업 추진실적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정산보고 : '06.1월말까지)	<서식 1>

<서식 1>

돼지능력검정사업 추진실적 보고(/4분기)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단위	사업량			사 업 비														
		계획	실적	%	축발기금			지방비			자담 등			계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농장 검정 - 입회 ·한국중축개량협회 ·대한양돈협회 - 자가(중돈업체) ◦PSS유전자 검사 ◦검정소 시설																			
계																			

<서식 2>

농장검정비 지원대상돈 혈통 및 검정성적 내역서

검정구분	품종	성별	검정기관 (농장)	검정원 성 명	초음파 모델명	개체 번호	생년 월일	부 혈 통 등록번호	모 혈 통 등록번호

모의 산자 성적			산육검정성적					
산차	총산자수 (두)	생 존 산자수 (두)	검정개시		검정종료		등지방 두께 (cm)	등심 단면적 (cm ²)
			날짜	체중 (kg)	날짜	체중 (kg)		

※ 검정구분 : 입회, 자가, 검정소

<서식 3>

PSS유전자 분석 신청서

품종	성별	개체번호	생년월일	등록번호	혈액 또는 모근 채취 예정일	비고

2005년 월 일

◦ 주소 :

◦ 성명 : (인)

한국종축개량협회장 귀하

<서식 4>

PSS유전자 분석 대상농가 선정현황

품종	성별	개체번호	생년월일	등록번호	혈액 또는 모근 채취 예정일	종돈장		비고
						성명	주소	

2005년 월 일

의뢰기관

귀하

라. 닭개량

(1) 기본방침

- 닭개량을 위하여 검정소 검정과 일반검정을 병행 추진
 - 검정에 의해 유전적으로 우수한 종계를 선발 보급
- 능력검정요원의 전문화, 검정방법의 공정화, 검정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
- 계종 선택지표 제공을 통한 양계농가의 편익 도모

(2) 연도별 닭개량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 ~ '02	'03	'04	'05	'06 ~ '13
사업량(종)		1	1	1	1	1
사업비	보 조 용 자 지방비	2,878	316	267	230	10,000
	자부담	85	137	93	122	
	계	2,963	254	360	352	10,000

(3) 사업추진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사업내용

- 시·군에 종계장 신고를 필한 농장을 대상으로 검정소 검정과 일반검정을 병행하여 추진
 - 검정소 검정 : 44천수(산란계 30, 육용계 14)
 - 농장검정 및 종계 일반검정 : 희망농장 및 물량에 한함

2) 지원내용 및 보조재원

- 검정소 검정시설·장비와 검정사료비 및 질병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대한양계협회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보조
 - 당해연도 가축개량사업보조금지출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조건에 의함

(나) 2005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사업량	사 업 비					
		축 발 기 금			지방비	자부담	합계
		보 조	응 자	계			
◦ 사료비	44천수	180		180		122	302
◦ 질병검사비	15회	30		30			30
◦ 시설비	1개소	20		20			20
계		230		230		122	352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축산연구소 : 닭개량 총괄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정책과(전화 02-500-1894·5)
- 시·도 축산담당부서
- 축산연구소 개량평가과(전화 041-580-3335)
- 대한양계협회(전화 : 협회 02-588-7651, 검정소 031-675-7139)

(다) 사업시행

1) 사업추진계획 수립

- 대한양계협회는 연간 검정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 등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2) 사업추진방법

- 검정방법 : 닭검정기준(농림부고시 제2002-26호, '02.5.25)에 의하여 실시

3) 사업비 지원방법

- 사업자금의 집행관리 등
 - 사업주관기관은 닭개량사업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2005본사업지침서, 농림사업실시규정,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축산발전기금운영규정 등 관계법·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보조금교부결정을 받아 사업자금의 집행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이행

- 대한양계협회의 검정사료(답능력검정에 한함), 질병검사비 및 검정시설 장비에 대한 사업실적에 따라 사업비 집행후 정산실시(필요한 경우 개산급으로 지원후 정산 가능)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능력검정결과는 축산관련 전문지등을 통하여 농장·계종별 검정성적 공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시설 및 기구등 취득재산	재산 구입일로부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에 의한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 년수 범위기간 적용	사후관리 기간중에는 처분불가 및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사후관리 기간중에 재산 파손등으로 사용불가시는 협회 자담으로 대체구입 - 사업중단 및 사업폐기등으로 재산의 용도가 소멸될 경우 기금관리자는 관리전환 또는 회수처분할 수 있음

(나) 보고사항

- 사업주관기관은 다음 사항을 농림부 및 축산연구소에 기한내 보고

보 고 사 항	보고기한	서식
'05 닭개량 세부사업 추진계획	'05.2월말까지	자체서식
◦답경제능력검정사업 추진실적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정산보고 : '06.1월말까지)	<서식 1>

<서식 1>

닭경제능력검정사업 추진실적 보고(/4분기)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단 위	사업량			사 업 비													
		계 획	실 적	%	축발기금			지방비			자담 등			계				
					계 획	실 적	%	계 획	실 적	%	계 획	실 적	%	계 획	실 적	%		
◦검정사료 - 육용계 - 산란계 ◦질병검사 ◦검정시설																		
계																		

마. 종축등록 및 신기술보급

(1) 기본방침

- 종축등록
 - 종축의 등록 및 심사사업 실시
 - 정액혈통관리 및 등록농가에 대한 교육·지도 강화
- 가축능력평가대회 개최를 통한 가축개량 의욕 고취
- 가축개량에 관한 신기술 개발 보급 및 교육
 - 소 수정란이식 등 기술 교육

(2)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 ~ '02	'03	'04	'05	'06 ~ '13
사업량(중)		2	2	2	2	2
사업비	보 조 용 자 지방비 자부담	8,537 718	439	285	241	4,600
	계	9,255	846	332	296	4,600

(3) 사업추진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사업내용

- 종축등록 : 종축등록 희망농가에 대하여 종축(한우·육우·젖소·돼지) 등록, 심사 및 가축능력평가대회등 부대사업 추진
- 가축개량에 관한 신기술 개발 보급 및 교육 : 농림부의 별도 교육계획 (소수정란이식 기술교육 등)에 의함

2) 지원내용

- 종축등록 : 종축등록등에 필요한 사업비, 관리비등 소요자금중 일부 보조지원

- 가축개량에 관한 신기술 보급 : 기술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및 소모성 비용 등 보조 지원
- 지원대상 : 한국종축개량협회(종축등록, 가축능력평가대회),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 대한양돈협회 등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 당해연도 가축개량사업보조금지출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조건에 의함

(나) 2005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축 발 기 금			지방비	자부담	합 계
		보 조	용 자	계			
◦종축등록	1	195		195		55	250
◦신기술보급	1	46		46			46
계	2	241		241		55	296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축산연구소 : 가축개량 총괄
-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 : 신기술보급 사업
- 한국종축개량협회 : 종축등록, 가축품평회 사업을 추진
- 협조기관 : 시·도 축산기술연구기관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정책과(전화 02-500-1894·5)
- 축산연구소 개량평가과(전화 041-580-3335)
- 시·도 축산담당부서 및 도 축산연구소
-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전화 041-661-4691·2)
- 한국종축개량협회(전화 02-588-9301)
- 대한양돈협회(031-632-2426)

(다) 사업시행

1) 사업추진계획 수립

- 종축등록 등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종축등록 및 가축능력평가대회에 관한 사업비 집행계획 등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에 승인 요청
- 가축개량관련 신기술 보급 : 교육내용, 교육시기, 교육장소 및 사업비 집행 계획 등은 농림부의 별도 계획에 의하여 추진

2) 사업추진방법

- 종축등록
 - 축종별 종축등록은 한국종축개량협회 등록규정에 의하여 실시
 - 등록요원, 등록물량 확대에 필요한 위축등록요원 확보
 - 위축등록요원에 대한 지속적인 심사 및 등록업무 교육
- 종축등록증상의 등록번호를 바코드 귀표번호로 대체(종돈 제외)
 - 외국에서 도입된 정액, 수정란 또는 종축은 자신과 선대의 혈통을 외국의 종축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
 - 바코드 귀표장착을 거부하는 농가의 소는 종축등록대상에서 제외
- 가축능력평가대회 : 사업주관기관이 대회개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가축개량에 관한 신기술 개발 보급 및 교육
 - 소 수정란이식 및 가축인공수정 기술교육
 - 교육계획을 농림부에서 별도 수립하여 추진
 - 돼지공인검정원양성교육
 - 교육시행기관 및 협조기관은 세부교육추진계획을 수립·확정 추진
 - 교육대상 : 개량기관 소속직원, 종돈업 등록업체에서 추천한 자
 - 교육이수자에 대하여는 교육기관은 수료증, 축산연구소는 인증서를 발급

3) 사업비 지원방법

- 사업자금의 집행관리 등
 - 사업주관기관은 종축등록 및 신기술보급 사업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예산및 관리에 관한법률, 2005본사업지침서, 농림사업실시규정,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축산발전기금운영규정 등 관계법·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보조금교부결정을 받아 사업자금의 집행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이행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종축등록
 - 등록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등록종축의 활용도 제고
 - 혈통관리의 중요성, 종축의 이동신고 및 등록증의 인수인계 등
 - 정액혈통증명서의 발급, 활용 실태조사 및 지도
- 가축능력평가대회 우수 입상축의 종축활용 및 출품우의 이동에 따른 차단 방역 실시
- 가축개량관련 신기술 보급
 - 반복교육으로 농가에서 실용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관리
 - 자치단체의 역할제고를 위한 자체 프로그램개발 추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교육용 기구, 기자재 및 차량등 취득재산	재산 구입일로부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에 의한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 범위기간 적용	사후관리기간중에는 처분불가 및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사후관리 기간중에 재산과 손등으로 사용불가시는 조합 또는 협회 자담으로 대체구입 - 사업중단 및 사업폐기등으로 재산의 용도가 소멸될 경우 기금관리자는 관리전환 또는 회수 처분할 수 있음

(나) 보고사항

- 사업주관기관은 다음 사항을 농림부 및 축산연구소에 기한내 보고

보 고 사 항	보고기한	서식
◦'05 종축개량 및 신기술보급 세부사업 추진계획	'05.2월말까지	자체서식
◦축종별 가축능력평가대회 개최계획	행사개최 60일 이전	자체서식
◦종축등록사업 추진실적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서식 1>
◦가축개량 신기술보급 추진실적	(정산보고 : '06.1월말까지)	<서식 2>

<서식 1>

종축등록사업 추진실적 보고(/4분기)

1. 사업 추진실적

세 부 사 업 명	단위	연간계획 (A)	(/4분기)까지		진 도(%)	
			계획(B)	실적(C)	C/B	C/A
가. 등 록						
◦한우	두					
- 예비등록	"					
- 기초등록	"					
- 혈통등록	"					
- 고등등록	"					
◦젖소	"					
- 기초등록	"					
- 혈통등록	"					
- 고등등록	"					
◦돼지	복					
- 자돈등기	두					
- 혈통등록	"					
- 고등등록	"					
나. 심 사						
◦한우	"					
◦젖소	"					
◦돼지	"					
다. 한우 번식능력 및 발육조사						
라. F ₁ 모돈증명						
◦자돈등기	복					
◦혈통증명	두					

2.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사업 대상 (호, 개소)	사업량			사 업 비														
		계 획	실 적	%	축발기금			지방비			자담 등			계					
					계 획	실 적	%	계 획	실 적	%	계 획	실 적	%	계 획	실 적	%			
◦소능력평가대회																			
- 한우능력평가대회																			
- 홀스타인품평회																			
◦종축경쟁력제고																			

<서식 2>

가축개량 신기술보급 추진실적 보고(/4분기)

(단위 : 두, 천원)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획	실 적	%	축발기금			지방비			자담 등			계					
				계 획	실 적	%	계 획	실 적	%	계 획	실 적	%	계 획	실 적	%			

Ⅱ. 축산물생산 및 유통개선

34	축산물유통개선사업(공공)
----	---------------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권한은 농림부 축산물위생과(과장 석희진, 사무관 김대균, 사무관 이흥철), 축산물경영과(과장 이재용, 서기관 이상수, 사무관 이범민, 사무관 조병임)입니다.

① 축산물 도축·가공시설 설치지원

1. 목 적

- 위생적인 도축·가공시설 기반확충을 통한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 부분육·냉장육·브랜드육·등급별 축산물 확대로 유통체계 구축
- 시유전문가공시설 설치로 우유 수급안정 및 낙농산업 발전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영세하고, 노후화된 기존 도축장 통·폐합 추진 및 기타가축 도축기반 마련
- 고품질 및 위생적인 축산물 및 가공품 생산을 위한 가공업체 시설자금 지원
- 유제품·시유시설 지원으로 낙농 기반구축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0조 등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	2004	2005(예산안)	2006이후
◦ 사업량	30	25	23	-
◦ 사업비	34,326	51,106	46,126	-
- 축발기금 용자	24,028	35,774	32,288	-
- 지방비	-	-	-	-
- 자부담	10,298	15,332	13,838	-

5.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도축장시설현대화사업]

- 1) 사업대상자 : 2004년 말 현재 운영중인 도축장 2개소 이상을 통합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휴업 또는 영업정지 업체 제외)
 - 인접 시·도(시·군)의 기존도축장 2개소이상 통·폐합을 원칙으로 함
 - 기타가축(소·돼지·닭·오리 외)의 도축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2) 지원용도 : 도축시설, 오·폐수 처리시설 및 기존 영업장 인수 소요자금
등(부지매입비 및 가공장 설치자금은 지원 제외)
- 3) 지원조건
 - 연리 4%,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용자 70%, 자담 30%)
 - 사업기간 : 2~3년(사업계획에 의함)
 - 지원액 : 사업계획에 의거 검토 조정·반영
 - 단, 인수자금은 시설자금 지원액의 20% 범위내
 - ※ 사업완료후 HACCP을 작성·운용하여야 함(정당한 사유없이 작성·
운용하지 않을 경우 지원자금 회수)
- 4) 사업신청시 제출서류 : ①사업계획서(별첨1)②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사본) ③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④자격요건을 입증하는 서류 ⑤사업예정부지의 등기부 등본
및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⑥사업신청자 통합 공증각서 ⑦신용조사서(별첨2)
⑧기타 관련자료 등
 - ※ 신용조사서는 사업자가 대출코자 하는 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
 - 통폐합사업 신청시 지원대상자는 통합 계획서를 제출하되, 통·폐합전 회사의
모든 권리 의무는 통·폐합후 승계하며, 본 사업 완료즉시 기존 도축장
1~2개소 이상 폐쇄 및 도축업 영업허가서를 반납하겠다는 공증각서를 동
시에 제출
 - 시·도지사는 사업완료 즉시 폐쇄대상 도축장의 도축업 영업허가를 취소
하고 동 작업장의 재 가동을 위한 신규허가는 하지 않겠다는 의견서 제출

[도축장 시설보완]

1) 사업대상자 :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부터 HACCP를 지정받거나 시·도지사로부터 HACCP 적용 확인서를 발급받은 도축장 중 기존 도축장의 위생·환경시설 등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도축장 영업자
- 기존 도축장중 사슴 등 기타가축을 도축하고자 시설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도축장 영업자

2) 지원용도 : HACCP시설 보완, 도축·오폐수처리 시설(혈분제조시설 등) 지원

3) 지원조건

- 연리 4%,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융자 70%, 자담 30%)
- 사업기간 : 1~3년(사업계획에 의함)
- 지원액 : 사업계획에 의거 검토 조정·반영

4) 사업신청시 제출서류 : ①사업계획서 ②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사본) ③사업자 등록증 사본 ④자격요건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⑤신용조사서(별첨2) ⑥기타 관련자료 등

※ 신용조사서는 사업자가 대출코자 하는 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

[오리도축장 시설보완]

1) 사업대상자 : 기존 오리도축장의 시설보완(이전을 통한 신축, 기존시설 개보수 등)

2) 지원용도 : 오리 도축시설(가공시설 포함), 오·폐수 처리시설 등(부지매입비 제외)

3) 지원조건

- 연리 4%,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융자 70%, 자담 30%)
- 사업기간 : 1~3년(사업계획에 의함)
- 지원액 : 사업계획에 의거 검토 조정·반영

4) 사업신청시 제출서류 : ①사업계획서 ②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사본) ③사업자 등록증 사본 ④자격요건을 입증하는 서류 ⑤사업예정부지의 등기부 등본 및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⑥신용조사서(별첨2) ⑦기타 관련자료 등

※ 별첨 2의 신용조사서는 사업자가 대출받고자 하는 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

[축산물가공업체]

- 1) 사업대상자 : 고품질·위생적인 국내산 축산물 및 이를 주원료로 하는 축산물 가공제품 생산을 위해 가공·저장시설, 운송·장비 등 시설현대화를 기하고자 하는자 또는 기존업체중 시설증축 및 개보수하고자 하는자
- 2) 지원조건 : 연리 4%,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융자 70%, 자담 30%)
 - 사업기간 : 1~3년(사업계획에 의함)
 - 지원액 : 사업계획에 의거 검토 조정·반영
- 3) 지원내용
 -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및 가공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건물 신축 및 개보수비, 가공·저장시설, 운송·장비 등 생산장비 지원
- 4) 사업신청시 제출서류 : ①사업계획서 ②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사본) ③사업자 등록증 사본 ④자격요건을 입증하는 서류 ⑤사업예정부지의 등기부 등본 및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⑥신용조사서(별첨2) ⑦ 기타 관련자료 등
 - ※ (별첨2)의 신용조사서는 사업자가 대출코자 하는 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
 - 사업계획서내에는 사업개요, 가공장 시설계획, 시설내용과 자금조달 계획, 원료육확보 및 판매계획(직판장 또는 가맹점 설치계획 포함), 사업시행일정, 사업효과 및 운영수지 분석(5개년)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희망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받아 우선순위에 의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농림부에 보고

[계란집하장]

1) 사업대상자

- 계란집하장 설치 : 대규모 산란계농가, 양계관련축협, 영농조합법인, 계란상인
- 계란등급시설 : 계란집하장을 설치하고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

<우선순위>

- ①순위 : 양계관련 업종별 축협조합
- ②순위 : 브랜드계란(품질인증 또는 상표등록받은 것에 한함)을 생산하고 계란등급판정에 참여코자 하는 자
- ③순위 : 계란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유통시키고자 하는 영농조합법인

2) 지원한도액

- 계란집하장 시설 : 개소당 1,500백만원(용자 70%, 자담 30%)
- 계란등급시설 : 개소당 300백만원(용자 70%, 자담 30%)

3) 지원조건

- 연리 5%,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4) 지원내용

- 계란집하장 시설 : 건축물, 운반·보관시설, 각종 기계·장비(부지매입비 제외)
- 계란등급시설 : 계란 인쇄기, 포장, 저장, 운반시설 등

- 5) 사업신청시 제출서류 : ①사업계획서 ②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사본) ③사업자 등록증 사본 ④사업예정부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⑤신용조사서(별첨2)
- ⑥ 기타 관련자료 등

[유제품개발·생산시설]

- 1) 사업대상자 : 유제품개발·생산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유업체 또는 유가공조합
- 2) 지원용도 : 유제품개발·생산시설

3) 지원조건

- 연리 3%,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융자 70%, 자담 30%)
- 사업기간 : 1~2년
- 지원금액 : 사업계획에 의거 검토 조정·반영

4) 사업신청시 제출서류 : ①사업계획서 ②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사본) ③사업자 등록증 사본 ④사업예정부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⑤신용조사서(별첨2) ⑥기타 관련자료 등

※ 사업계획서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제1권에 의한 “자율사업신청서”를 기본으로 하며, 사업개요, 시설설치 계획, 시설내용과 자금조달 계획, 원료확보 및 판매 계획, 사업시행일정, 사업효과 및 운영수지분석(5개년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신용조사서는 사업자가 대출코자 하는 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

[시유전문가공시설]

- 사업대상자 : 시유 생산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유업체 또는 유가공조합
- 지원용도 : 시유 생산시설
- 지원조건

- 연리 3%,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융자 70%, 자담 30%)
- 사업기간 : 2년
- 지원금액 : 사업계획에 의거 검토 조정·반영

◦ 사업신청시 제출서류 : ①사업계획서 ②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사본) ③사업자 등록증 사본 ④사업예정부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⑤신용조사서(별첨2) ⑥ 기타 관련자료 등

※ 사업계획서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제1권에 의한 “자율사업신청서”를 기본으로 하며, 사업개요, 시설설치 계획, 시설내용과 자금조달 계획, 원료확보 및 판매 계획, 사업시행일정, 사업효과 및 운영수지분석(5개년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신용조사서는 사업자가 대출코자 하는 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

나. 2005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산액(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23	46,126	32,288	-	32,288	-	13,838
◦도축시설 ¹⁾	7	9,240	6,468	-	6,468	-	2,772
◦축산물가공시설 ²⁾	15	21,780	15,246	-	15,246	-	6,534
◦시유전문가공시설 ³⁾	1	15,106	10,574	-	10,574	-	4,532

- 주1) 도축시설(용자금 6,468백만원) : 도축장시설현대화 4,018백만원, 도축장 시설보완 1,750, 오리도축장 시설보완 700
- 2) 축산물가공시설(용자금 15,246백만원) : 축산물가공업체, 계란집하장, 유제품개발 생산시설
- 3) 시유전문가공시설(용자금 10,574백만원)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나. 사업담당 부서

◦ 농림부 축산국

- 축산물위생과(02-500-1921 ~ 4) : 도축장시설현대화, 도축장 시설보완, 오리도축장 시설보완, 축산물가공업체
- 축산경영과(02-500-1907 ~ 12) : 축산물가공업체(닭·계란)·계란집하장·유제품개발생산시설, 시유전문가공시설

◦ 시·도 : 담당과(축산과·농정과 등)

◦ 시·군, 자치구 : 축산과 (또는 담당과)

다. 사업신청 및 선정 절차

◦ 사업을 희망하는자는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시·군에 제출

- 사업희망자는 대출취급 희망기관(농축협 등)으로부터 「별첨 2」 서식에 의한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첨부(대상사업 : 도축장시설현대화, 도축장시설보완, 오리도축장 시설보완, 축산물가공업체, 유제품개발·생산시설, 시유전문가공시설)

- 시장·군수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05년 1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신청
- 농림부장관은 사업신청서에 대한 검토를 한 후 대상자 선정
- 사업계획 변경은 사업주관기관에서 검토 승인후 농림부에 결과 보고

라. 사업비 집행

- 사업비는 사업주관기관(사군 협조)의 기성고 확인에 따라 농협중앙회에서 집행
 - 사업주관기관은 기성고에 따라 추진내용을 대출 취급기관에 통보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검정한 후 대출실행
 - 축산발전기금운영규정(농림부훈령 제1091호, '02.3.20)에 의거, 자금집행 요건·절차 및 증빙서를 확인후 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마. 자금집행 세부요령

- 토목 및 건축공사는 경쟁입찰(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을 통하여 시공업자 선정을 투명성 있게 추진
 -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의 계약으로 사업시행
 - 시공업체 선정·계약시에는 시·도 또는 시·군에서 입회하고 응찰 및 낙찰업체 공개 등 지도·감독
 - 계약서 및 자금집행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할 것
 - 1개 사업이 2~5개로 분리 계약될 경우(공정에 따라 분리될 경우) 선정 시공업체와 금액을 공개하고 시·도 또는 시·군 관계관이 공사실적 확인
 - 공사 감리업체를 지정하여 감리 실시
- 자금집행관련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를 비치하여야 함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농림사업 실시규정,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축산발전기금운영규정에 따름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사업추진기간 중 분기별 1회이상 현지 점검 및 지도 실시
 - 사업추진 내용점검 : 사업주관기관은 관리·점검 및 운영지도 실시
 - 건설추진상황(부진시 사유 및 해소방안 강구) 등 정상추진을 위한 제반사항
 - 사업 주관기관은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계획대로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지도하는 한편,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20일내에 이를 확인하여 사업비를 정산하고, 관련규정 등에 의하여 사후관리 실시
- 사업완료 이후는 필요시 현지점검 실시
 - 사업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본 사업자가 관련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금을 사용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지시 또는 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나.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처분제한기준 : 용자금 회수시 까지 사후관리
 - 사후관리 기간내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시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함
다만,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에 농림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내구 년한 경과 등으로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할 경우 대체시설·장비의 구입을 전제로 하되, 여건 변화에 따라 대체시설이 필요 없을 경우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처분

다. 기타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법률제5454호 및 축산발전기금운영규정(농림부훈령 제999호 : '99.9.8) 에 의함

라. 추진상황보고

- 추진실적
 - 시·도지사는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별첨3 서식)

- 완료보고 : 사업완료 후 1개월이내(별첨3서식)

- 시·도지사는 사업완료 보고서 및 정산결과서(사진 첨부 등)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6. 2006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계획은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에 준함

- 사업대상자 신청은 '05.2월말까지 농림부로 보고(기한 경과시 예산확보 지난)

〈별첨 1〉

도축장 통합 사업계획서

1. 도축장 통합신청 개요

- 사업추진 주체·도축장 명 :
 - 통합예정인 기존 도축장 명(허가번호)
- 사업소재지 :
- 사업추진 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
- 신규사업 도축장 총 사업비 : 백만원(용자 , 자부담)
- 신규사업 계획 도축능력(두/일) :
 - 기존 도축장 도축능력(두/일) :
 - 기존도축장의 최근 3년간 도축실적(두/일) :

2. 사업계획

- 사업대상 시설 설치 및 구입계획

시설명	소요금액(백만원)	용 도	비 고
합 계			
◦			
◦			
◦			

- 사업비 산출내역
 - 건설분야 :
 - 시설·장비분야 :
 - 인수자금 :
- 작업장 평면도(첨부)
 - 사업대상시설 설치이전·후 작업장 평면도
- 작업공정흐름도
- 기존도축장 통합추진 세부계획서

3. 기타 관련자료 (첨부 요함)

〈별첨 2〉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 번호	() -
생산자단체등· 회사·기타명칭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인)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신 청	자 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천원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신용보증 後取담보 先取담보					

※ 先取 및 後取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년 월 일
 ()협동조합장 (인)
 ()시군지부장 (인)

〈별첨 3〉

()분기 추진실적(완료) 보고

□ 사업개요

- 사업명 :
- 업체명(사업자 성명) :
- 주소 :
- 사업내용 :

□ 추진(완료)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업 체 명	사 업 계 획	사 업 량			사 업 비						B/A	
			계 획	실 적	%	계 획			실 적				
						계	용자 (A)	자 담	계	용자 (B)	자 담		
가공장 신설(예)		◦가공장 건물 : ◦가공장 기계설비 : ◦냉장·냉동시설 : ◦오폐수 처리시설 : ◦운송장비 :											
			소 계										

※ 실적 중 용자는 사업자의 실제 집행액(대출액)임

□ 기타

- 사업완료시 건축물·시설 사진, 건축물 준공허가서류, 등기서류, 준공된 사업장 평면도 등 첨부

② 축산물 도축·가공시설 운영자금 지원

1. 목 적

- 도축장 위생수준 제고 및 경영개선 도모
- 육가공장 등에 안정적인 원료확보체계 구축 및 판매망 확보를 통한 운영활성화
- 한우고기 고급육 유통체계 구축

2. 시책 및 추진방향

- 도축장 HACCP 운영수준 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 차등 지원
- 계란등급제를 도입하여 계란의 유통구조개선을 위해 등급란 수집 및 판매 자금 지원
- 고품질·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물가공업체에 원료구매자금 등을 지원하여 경영안정 도모
- 한우고기 고급육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한우브랜드경영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유통브랜드경영체에 원료육 구매자금 지원
- 낙농진흥회 소속 농가를 유업체에 이관시 잉여물량에 비례하여 운영자금 지원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 시책의 강구)

4. 연도별 지원계획

(단 위 : 백만원)

구 분	2003	2004	2005(예산안)	2006이후
◦ 사업량	29	60	149	-
◦ 사업비	70,463	93,338	143,378	-
- 축발기금 용자	70,463	93,338	143,378	-
- 지방비	-	-	-	-
- 차부담	-	-	-	-

5. 2004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도축장]

- 1) 사업대상자 : HACCP 적용·운영중인 도축장 영업자로서 도축장 HACCP 운영수준 평가 결과 상위권(33%) 및 중위권(33%)에 해당되는 업체
- 2) 지원조건 : 도축장 HACCP 운영수준 평가결과에 따라 상위권에는 0% 금리, 중위권에는 3% 금리 지원, 1년거치 일시상환(공통)
- 2) 지원금액 : 총 57,832백만원
- 3) 지원단가
 - 가) 정부지원 관리 대상 7개 LPC의 경우 종전 지원기준대로 규모에 따라 지원

구 분	LPC명	지원단가
대규모	안성, 청원, 홍성, 김제, 군위	5,000백만원 이내
중규모	원주, 제천	3,000백만원 이내

- 단, '04년도에 LPC 운영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의 대출원금 상환일이 도축장 HACCP 운영수준 평가 결과가 나오기 이전인 경우에는 동 평가와 무관하게 3% 금리로 해당 대출원금 범위내에서 지원
- LPC내 육가공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활용(임차)하는 육가공업체 및 LPC주체와 컨소시엄 형태를 구성하여 생산·구매·판매 등을 전담하는 유통업체는 도축장 HACCP 운영수준 평가와 무관하게 LPC 규모별 지원 한도액 범위내에서 3% 금리로 지원

나) LPC를 제외한 도축장은 아래 도축물량 실적 세부기준에 따라 지원

- 소돼지를 함께 영업하는 도축장의 경우 소 또는 돼지 1개 축종 기준으로 지원

〈세부 지원기준〉

구 분	도축실적('04년 기준)	지원단가
소	6,000두/년 미만	400백만원 이내
	6,000두/년 이상 ~ 9,000두/년 미만	800백만원 이내
	9,000두/년 이상	1,200백만원 이내
돼지	180천두 미만	400백만원 이내
	180천두 이상 ~ 270천두 미만	800백만원 이내
	270천두 이상	1,200백만원 이내
닭	11,250천수 미만	400백만원 이내
	11,250천수 이상 ~ 16,875천수 미만	800백만원 이내
	16,875천수 이상	1,200백만원 이내

3) 지원용도

- LPC의 경우 자부담 비율을 초과한 건설자금, 고금리 차입금 충당, 원료구매 자금 등으로 사용
- 도매시장·공판장은 출하약정선도금, 경락대금 결제자금으로 사용
- 일반도축장은 인건비, 전기료, 일반관리비 및 HACCP운용 등을 위한 제반 운영자금

4) 사업신청시 제출서류

- LPC : 별표 1
- 도매시장·공판장 : 별표 2
- 기타 일반도축장 : 별표 3

[오리도축·가공장 운영활성화자금]

1) 지원조건

- 연리 5.5%, 1년거치 일시상환

2) 지원대상

- 정부 사업계획에 의하여 건설·운영중인 오리 도축·가공장
- 축산발전기금 지원에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는 제외

3) 지원자금의 용도 및 운용

- 오rido축·가공장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반 운영자금으로 사용(자부담 비율을 초과한 건설자금, 고금리 차입금 충당, 원료구매자금 등)

※ 원료구매자금 지원기준

- 월 원료구매 소요액(월 구매물량 × 전년도 평균 산지가격의 70%)

4) 사업시행

- 사업계획서(자금사용계획 등)를 첨부하여 시·도에 신청(별표 4 서식)
-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의견서를 붙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 농림부에서는 사업계획서 검토 후 자금 지원
 - 사업대상자는 자금집행기관에 용자신청을 하고 관련 규정에 의거 자금집행

[축산물가공업체]

- 1) 사업대상자 : 고품질·위생적인 국내산 축산물을 생산하거나 이를 주원료로 가공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업체 및 생산자단체 등

- 2) 지원액 : 월 원료구매 소요액

- 3) 지원조건 : 연리 4%, 1년거치 일시상환

- 4) 사업주관기관 :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한국육가공협회(2차 육가공업체 중 희망업체가 있는 경우)

5) 사업 시행절차

- 사업희망업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주관기관 중 한 곳에 제출하고 협회는 검토결과를 농림부에 보고
- 농림부는 사업비 배정기준을 마련하여 사업희망업체별로 사업비를 배정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 및 사업주관기관에 통보
 - 단,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이 직접 사업대상자이거나 비농협조합이라도 희망하는 업체는 농협중앙회에서 대출가능(신청업체는 사업계획서에 대출 취급 희망기관 명기)

- 사업대상업체는 지원액 범위내에서 대출취급기관에 대출신청
- 대출취급기관에서는 대출신청 접수 즉시 건별로 정책자금대출관련 규정 및 여신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대출 실시

[계란등급시설]

- 1) 사업대상자
 - 계란집하장을 설치하고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
- 2) 지원한도액
 - 계란등급시설 운영자금 : 개소당 900백만원
- 3) 지원조건 : 연리 5%, 1년 거치 일시상환
- 4) 지원내용 : 계란 수집·판매 등 운영자금

[한우고기 유통브랜드경영체 육성]

- 1) 사업대상자 : 한우고기 고급육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한우브랜드경영체 육성 사업에 참여한 경영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유통업체(농협중앙회 및 농·축협조합 포함)
 - 구매계약을 체결한 한우브랜드경영체의 사육규모는 4,000두 이상이어야 함 (2개소 이상 계약 가능)
 - ※ 한우브랜드경영체에서 자체판매장 또는 가맹점을 운영할 경우 사업대상자에 포함되며 구매계약은 생략 가능
- 2) 지원금액 : 개소당 총 1,000백만원이내(융자 70%, 자담 30%)
- 3) 지원용도 : 원료육 구매자금
- 4) 지원조건 : 연리 4%, 1년거치 일시상환
- 5)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별표 5서식), 구매·공급계약서(별표 6 서식 참고)

[유업체 경영안정자금]

- 1) 지원대상 : 낙농진흥회 잉여물량을 이관하는 유업체
- 2) 지원조건 : 연리 3%,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3) 지원물량 및 지원단가 : 109,500톤(300톤/일×365일), 320원/kg
- 4) 지원용도 : 잉여원유 구입에 필요한 운영자금

나. 2005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산액(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149	143,378	143,378	-	143,378	-	-
◦도축장	88	57,832	57,832	-	57,832	-	-
◦오리도축장	4	1,891	1,891	-	1,891	-	-
◦축산물가공업체	40개소	37,590	37,590	-	37,590	-	-
◦계란등급시설	5	3,150	3,150	-	3,150	-	-
◦한우고기 유통 브랜드경영체	12	7,875	7,875	-	7,875	-	-
◦유업체 경영안정	110천톤	35,040	35,040		35,040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나. 사업담당 부서

- 농림부 축산국
 - 축산물위생과(02-500-1923 ~ 4) : 도축장, 오리도축장, 축산물가공업체
 - 축산경영과(02-500-1907 ~ 12) : 계란등급시설, 한우고기 유통브랜드경영체, 유업체 경영안정, 축산물가공업체(닭·계란)
- 시·도 : 담당과(축산과·농정과 등)
- 시·군, 자치구 : 축산과 (또는 담당과)

다. 사업신청 및 선정 절차

- 사업을 희망하는자는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시·군에 제출
 - 시장·군수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05년 1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신청 (한우고기 유통브랜드경영체는 별표5 서식에 의거 '05.3월말까지 신청)
- 농림부장관은 사업신청서에 대한 검토를 한 후 대상자 선정
- 사업계획 변경은 사업주관기관에서 검토 승인후 농림부에 결과 보고

라. 대출심사 및 대출실시

- 대출취급기관 : 농협중앙회(지역축협 포함)
 - LPC 및 닭·오리 도축장의 경우 농협 및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중 축발기금의 대출을 취급하기 희망하는 금융기관에서 대출가능
- 사업대상자는 지원액 범위 내에서 대출취급기관에 대출신청
 - 지역 축협에 신청 시에는 도 지역 본부와 사전협의
- 대출취급기관에서는 대출신청 접수 즉시 건별로 정책자금 대출관련규정 및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대출실시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사업주관기관(시·도) 책임 하에 사후 관리
 - 사업추진 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 실시
- 사후 관리 중 실시요령을 위배한 경우에는 즉시 기한을 정하여 시정조치하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자금을 회수조치하고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원료구매자금 및 출하약정선도금 등의 집행에 필요한 계약서는 업체자율 서식에 의거 체결토록 함.

나. 기타사항

- 보고(시·도 → 농림부)
 - 사업신청서 제출 : 2005. 1월말(한우고기 유통브랜드경영체는 '05.3월말까지)
 - 사업추진현황(실적)보고 : 매분기 실적을 분기익월 10일 이내에 보고
(LPC : 별표1 서식, 도매시장·공판장 : 별표2 서식, 도축장 : 별표3 서식, 오리도축장 : 별표 4 서식, 그외 사업은 별표7 서식)
- 대출취급기관은 대출실행 내역을 대출 실행즉시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
- 시·도지사는 대출실행 내역을 대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농림부장관에게 보고(별표3 서식)

6. 2006년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계획은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에 준함
 - 사업대상자 신청은 '05.2월말까지 농림부로 보고

<별표 1>

도축장(LPC용) 운영자금 신청서(실적보고서겸용)

1. 신청개요

- 업체명(대표자) : (대표 : 인)
- 주 소 :
- 신청액 : 백만원

2. 계약 계통출하 실적 및 계획

(단위 : 두)

구분	소 (오리)				돼 지				비 고
	농가수	사육두수	계약두수	출하계획두수	농가수	사육두수	계약두수	출하계획두수	
2004실적									
2005계획									

3. 축산물 도축 및 판매계획

축종	단위	2005 계획					2004년 실적	부분육 거래량	
		1/4	2/4	3/4	4/4	연간		두수	%
소 (오리)	두수								
	거래금액								
돼 지	두수								
	거래금액								

4. 정책자금운영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연간소요액	원료구매자금	경영자금	LPC건설부채상환	기 타 ()	기 타 ()
○년도계획						
○년도계획						

5. 축산물 가맹점 및 직판장 확보 실적(계획)

구분	가맹점			직판장			비고
	2004까지	2005계획	2006이후	2004까지	2005계획	2006이후	
당년실적							
누계실적							

※ 업체 연락처 : (담당자 직·성명) (전화)

<별표 2>

도축장(도매시장·공판장용) 운영자금 신청서(실적보고서겸용)

1. 신청개요

- 업체명(대표자) : (대표 : 인)
- 주 소 :
- 신청액 : 백만원

2. 가축출하(원료확보) 계획

(단 위 : 두)

축 종	2004 실적			2005 계획			(A-B)	
	계통출하	기타	계(A)	계통출하	기타	계(B)	두 수	%
소								
돼지								
계								

※ 계통출하 : 생산농가가 농·축협을 통하여 축산물 도매시장(공판장)에 생축을 출하·도축·경매하여 판매하는 것을 말함

3. 축산물 판매(경매) 계획

축 종	단 위	2005 계획					2004 실적 (B)	(A-B)	
		1/4	2/4	3/4	4/4	연간(A)		두수	%
소	두수								
	거래금액(a)								
돼지	두수								
	거래금액(b)								
거래금액(a+b)									

* 주) 두수 및 거래금액은 국내산이며, 수입육 경매는 제외한다

4. 도축 및 등급판정

가. 소

(단 위 : 두)

년 도	도 축			등급판정(D)	(C-D)
	수 탁 경 매	이용도축 및 기타	계(C)		
2004실적(A)					
2005계획(B)					
(A-B)					

나. 돼 지

(단 위 : 두)

년 도	도 축			등급판정(D)	(C-D)
	수 탁 경 매	이용도축 및 기타	계(C)		
2004실적(A)					
2005계획(B)					
(A-B)					

4. 국내산 대금정산 및 판매

(단 위 : 백만원)

축 종	2005 거래대금 지급기간 (예정)	2005 판매 계획			2004 실적		증 감 (C-D)
		1일평균 거래금액 (A)	거래인 외상일수 (B)	외상거래 운영금액 (C=A×B)	거래대금 지급평균 소요기간	연도말 거래인 미수금 잔액 (D)	
소							
돼 지							
계							

주) 거래대금 지급기간 : 경락일로부터 출하조합(농가)에 정산하여 대금 송금일 까지 소요되는 일수(대금정산 및 판매는 국내산에 한함)

5. 판매 및 거래

년 도	거래인수			1일 평균거래금액			외상거래 기간(C) (평균)	운영자금 총소요액 (A×C)+B
	중. 도매인	매참인	계	외상거래 (A)	현금거래 (B)	계		
2004실적 2005전망	명	명	명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일	억원

6. 경영 손익

(단 위 : 백만원)

년 도	수 입				지 출 (B)	손 익 (A-B)
	상장수수료	도살처리수수료	기 타	계(A)		
2004 실적						
2005 전망						

주) 2004년 실적은 결산서 등을 기준으로 작성

7. 자금 집행 실적(년도/분기)

(단 위 : 백만원)

구 분	계획(융자금) (A)	실 적		(B/A)
		()분기	누 계(B)	
금 액				

8. 계통출하 실적(연도/ 분기)

(단 위 : 두)

축 종	계 획(A)		실 적(B)		(B/A)
	()분기	누 계	()분기	누 계	
소					
돼 지					

주) 계통출하에 의한 도축·경매 실적을 기입

9. 도축 및 등급판정 실적(년도/분기)

◦ 소·돼지

(단 위 : 두)

구 분	도축두수			등급판정두수(D)	(C-D)
	수 탁	이 용	계(C)		
계 획(A)					
누계실적(B)					
(A-B)					

※ 총 도축 및 등급판정 실적으로 작성하되, 소·돼지를 각각 별도 작성

10. 출하대금 정산 및 대금지급 소요기간(년도/분기 중 총 출하두수 대상)

(단 위 : 두)

축 종	()분기중 대금정산			누 계		
	2일이내	3일이상	계	2일이내	3일이상	계
소						
돼 지						
계						

※ 경락일로부터 대금 지급일 까지 소요일수

<별표3>

도축장(일반 도축장) 운영자금 신청서(실적보고서검용)

1. 사업개요

- 업체명(대표자) : (대표자 : 인)
- 주 소 :
- 신청액 : 백만원

2. 도축실적

축종	단위	도축실적('04년 기준)						2005년 계획
		1/4	2/4	3/4	4/4	계	1일도축 실적	
	두수							
	두수							

3. 경영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수입			지출(B)	손익(A-B)
	도살·처리 수수료	기타	계(A)		
2004년도 실적					
2005년도 전망					

※ 도축장 주체가 동일부지내 육가공업도 병행하는 경우 포함하여 기재

4. 정책자금 사용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인건비	전기료	일반관리비	기 () 타	계
2004년도실적					
2005년도계획					

※ 업체 연락처 : (담당자 직·성명) (전화)

<별표 4>

오리도축장 운영자금 신청서(실적보고서겸용)

1. 사업개요

- 업체명(대표자) : (대표자 : 인)
- 주 소 :
- 신청액 : 백만원

2. 계약 계통출하 실적 및 계획

(단위 : 두)

구분	오리				비고
	농가수	사육두수	계약두수	출하계획두수	
2004실적					
2005계획					

3. 축산물 도축 및 판매계획

축종	단위	2005 계획					2004년 실적	부분육 거래량	
		1/4	2/4	3/4	4/4	연간		두수	%
오리	두수								
	거래금액								

4 자금운영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연간소요액	원료구매자금	경영자금	건설부채상환	기타 ()	기타 ()
○년도계획						
○년도계획						

5. 축산물 가맹점 및 직판장 확보 실적(계획)

구분	가맹점			직판장			비고
	2004까지	2005계획	2006이후	2004까지	2005계획	2006이후	
당년실적							
누계실적							

※ 업체 연락처 : (담당자 직·성명) (전화)

<별표 5>

한우고기 유통브랜드경영체 사업계획서

1. 신청자

- 업체명 : (대표자 성명 :)
- 주소, 연락처 : (전화 :)

2. 브랜드 현황

- 브랜드명 : (등록일 :)
- 판매장 현황 : (자체매장) 개소, (가맹점) 개소

구 분	매장명	소 재 지	브랜드육 판매두수('03년)			
			암소	수소	거세우	계
자체매장						
가맹점						
계						

3. 판매현황

- 연도별 등급별 판매 두수 (단위 : 두)

등급	2001	2002	2003	계
1등급이상(A)				
2등급				
3등급				
기 타				
계(B)				
1등급 비율(A/B)				

4. 생산브랜드경영체와 공급계약

브랜드 경영체명	소재지	사육두수	계약출하 물량('03년)	인센티브 제도
계				

※ 인센티브제도는 1등급이상 출현시 포상금 지급 등 생산농가(경영체)에 지원 하는 사항 기재

5. 2004년 판매계획

구 분			분기별 판매두수				비 고
			1/4	2/4	3/4	4/4	
판매계획 (두)	브랜드육	자체판매장					
		백화점					
		할인매장 등					
	일반육	자체판매장					
		백화점					
		할인매장 등					
	기 타						
	합 계						

6. 투융자계획

(단위 : 두,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용자	자담	계
원료육 구매자금					

<별표 6>

한우브랜드경영체 구매·공급 계약서(예시)

- 계약명 : 한우브랜드경영체 구매·공급 계약
- 연간 계약두수 : 두
- 계약기간 :

제 1 조[목적] 본 계약은 개방화 시대에 한우산업의 지속적인 발전토대를 구축하고, 한우고급육 생산·유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한우 공급·구매계약] ① 한우브랜드경영체를 운영하는 000기관(이하 "을"이라 한다)과 한우고기 유통브랜드경영체 000기관(이하 "갑"이라 한다)은 연간 한우 000두를 공급·구매계약을 체결 한다.

○ 월별 공급·구매 두수 : 두

제 3 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일로 부터 00개월로 한다.

제 4 조[출하지정일 및 출하장소] ① “갑”은 출하일 00일전까지 출하두수를 정하여 “을”에게 통보하여야하며, “을”은 “갑”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비육우를 출하하여야 하고, 지정된 장소까지의 출하비용은 (“갑”, “을”)이 부담한다.

제 5 조 [대금정산] "갑"은 “을”이 공급한 한우에 대하여 공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산함을 원칙으로 하며 매입가격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_____을 기준으로 정한다

제 6 조 [손해배상] "갑"과 “을”은 월별 공급·구매두수를 준수하여야 하며 쌍방 중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공급·구매두수를 00%이상 준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아래의 위약금을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 위약금 = 계약 미이행두수×직전 1주일 평균 큰소(500kg) 가격×위약금율(%)

제 7 조 [중도해약]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갑"은 "을"은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8 조 [소 송] 본 계약 이행상 쌍방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소송에 대하여는 "갑"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9 조 [기 타] 이 계약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상기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매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 : 년 월 일

갑 (주 소)

(기관명)

(인)

을 (주 소)

(기관명)

(인)

<별표7>

()분기 추진실적(완료) 보고

사업개요

- 사업명 :
- 업체명(사업자 성명) :
- 주소 :
- 사업내용 :

추진(완료)내용

구 분	업 체 명	사 업 계 획	사 업 량 (개소, 두)			사 업 비(백만원)						B/A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	계	용자 (A)	자 담	계	용자 (B)	자 담	

※ 실적 중 용자는 사업자의 실제 집행액(대출액)임

③ 축산물판매시설현대화

※ 이 사업시행 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물위생과(과장 석희진, 사무관 박상연)입니다.

1. 목 적

- 식육소매유통시설을 개선하고 정예화하여 소매단계 유통개선 도모
- 브랜드 축산물 판매망을 구축하여 판매확대 및 판로 확보

2. 시책 및 추진방향

- 식육의 부분육·냉장육 유통활성화, 구분판매제(부위별·등급별 쇠고기 종류별) 및 브랜드화 촉진
- 식육소매유통시설, 브랜드가맹점, 닭고기체인점 사업을 통합하여 종합자금제 형식으로 지원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개소,백만원)

구 분		'93 ~ '01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예산안)	
소매유통 시설	사업량	2,052	75	85	사업량 : 50개소 사업비 : 25,000 (용자 : 17,500,자담 : 7,500)	사업량 : 22개소 사업비 : 10,700 (용자 : 7,500, 자담 : 3,200)	
	사업 비	계	209,326	25,000			21,429
		용 자	187,313	17,500			15,000
		자부담	22,013	7,500			6,429
브랜드가 맹점	사업량	454	125	100	(용자 : 17,500,자담 : 7,500)	(용자 : 7,500, 자담 : 3,200)	
	사업 비	계	99,400	30,000			26,600
		용 자	69,580	21,000			18,600
		자부담	29,820	9,000			8,000
닭고기체 인점	사업량	-	10	20	(용자 : 17,500,자담 : 7,500)	(용자 : 7,500, 자담 : 3,200)	
	사업 비	계	-	9,750			19,500
		용 자	-	6,825			13,650
		자부담	-	2,925			5,850
합 계(축발기금 용자)		256,893	45,325	47,250	17,500	7,500	

5.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내용

□ 식육소매시설개선

◦ 사업대상자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 및 동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한 식육판매업 신고를 한 자로서 법적 권장면적(10평) 이상의 식육판매 점포면적을 보유한 자
- 냉장육을 판매하고 있거나 냉장육 판매시설과 기술이 있는 자로서 식육의 구분판매(부위별·등급별·종류별), 원산지표시, 식육거래기록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타업소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자

※ 식육소매시설 개선사업 제외대상자

- 농·축·수협 판매점(회원조합 매장은 제외) 및 브랜드가맹점, 백화점, 슈퍼마켓, 대형할인매장 등 이미 시설의 현대화와 규모화가 되었다고 인정되는 업소
 - 부도발생 또는 화의 중에 있거나 관계법을 위반하여 계류중이거나 과거(3년이내)에 위법행위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식육판매업소
- 개소당 사업비 : 기금 용자금 기준 20백만원 이상으로서 대상자별 자금소요에 따라 탄력적 운용
- 지원내용
- 냉장육판매·보관·진열시설·장비 및 인테리어 개·보수, 기타 부대시설 등

□ 식육소매시설 및 브랜드가맹점 설치

◦ 사업대상자

- 식육소매시설 : 생산자단체 및 식육판매점(음식점겸업포함)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

- 브랜드가맹점 : 정부 지원의 산지 축산물 생산·유통지원사업(브랜드사업) 대상자 중 직영 판매장이나 생산한 브랜드육을 판매하기 위한 가맹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음식점 겸업 포함)
- 개소당 사업비 : 기금 용자금 기준 개소당 140백만원 이상으로 대상자별 자금 소요에 따라 탄력적 운용

* 규모별 지원기준 예시

(단위 : 백만원)

구분	10평 이상	30평 이상	50평 이상	100평 이상
용자(70%)	140	280	700	1,050
자담(30%)	60	120	300	450
계(100%)	200	400	1,000	1,500

- 지원내용(자금의 용도)
 - 식육판매점포(겸업 음식점 포함) 신규건축, 기존건물의 매입, 건물임차료(용자금의 50%이내)
 - 업소시설 : 냉장, 냉동, 판매(진열장), 포장, 인테리어시설, 운송차량, 음식조리 및 판매장비(겸업 음식점의 경우), 기타부대시설 등
- 시설기준
 - 식육판매점포 면적 10평(33.0㎡)이상
 - 식육판매진열장·냉장숙성실·냉동실·냉장육절기 설치
 - 기타시설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별표10]의 “6.축산물 판매업” 중 식육판매업에서 정하는 시설
 - 겸업 음식점의 경우 면적은 40평(132.2㎡)이상(식육판매장소 포함)으로 하고 음식점은 식품위생법 제21조에 의한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닭고기체인점설치

- 사업대상자 : 닭고기 브랜드 등록이 되어 있고 직영 판매장 또는 가맹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개소당 사업비 : 기금 융자금 기준 개소당 30백만원 이상으로 대상자별 자금 소요에 따라 탄력적 운용
- 지원내용 : 판매장 시설비, 주방설비 및 기기 등 시설비, 점포구입비(임차료 포함)

나. 지원조건

- 브랜드가맹점 및 닭고기체인점 : 연리 5%, 3년거치 5년상환
- 식육소매유통시설 : 연리 5%, 5.5%(일반), 3년거치 5년상환

다. 사업자 준수사항(식육소매유통 및 브랜드가맹점시설)

- 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법,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브랜드 가맹점에서는 브랜드 주체에서 공급한 브랜드육만을 판매
 - 브랜드 주체에서는 가맹점의 설치(인테리어, 간판 등)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시행
 - 브랜드가맹점에서는 브랜드 주체와의 거래증명내역을 1년간 보관

라. 추진체계

-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 사업대상자 추천기관 : 시·군·구, 단, (사)한국계육협회 및 (사)한국치킨외식산업협회 회원은 소속협회 추천으로 가능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물위생과(02-500-1925 ~ 6)
 - 시·도(시·군·구) : 담당과(축산과, 농정과 등)
 - 닭고기 관련협회 : 한국계육협회(031-707-5722), 한국치킨외식산업협회(02-3401-0144)

◦ 사업시행절차

- 사업희망자는 시·군·구, 닭고기 관련협회(이하 ‘추천기관’)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고, 대출추천서(붙임1)를 발급 받아 대출을 받고자 하는 농(축)협 창구에 자금대출 신청
 - 추천기관에서는 사업희망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심사(지역 및 시장 여건을 고려한 사업성, 인허가 및 부지확보 가능성, 사업희망자의 사업추진 의지 등)하여 대출추천서를 발급하고, 사업대상자 대출추천현황(붙임2)을 지체 없이 농림부에 보고(시·군·구는 시도 경유)
 - 사업희망자(닭고기 체인점 제외)는 시설이 설치되는 시·군·구의 대출추천서(붙임1)를 발급 받아 대출을 받고자하는 농(축)협 창구에 대출 신청
 - 추천기관에서는 수시로 사업신청을 받아 농협에 용자금 대출을 추천하되, 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착수가 가능한 사업자를 추천하고, 사업비도 당해 회계연도 중에 집행이 가능한 금액만을 배정(연도별 소요액 배정)하여 이월을 최소화
- 농협에서는 추천기관이 발급한 대출추천서를 확인한 후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절차에 따라 기성금액을 대출
 - 대출상담 및 대출심사 후 총 대출 가능금액을 결정하고 당해 대출 소요액에 대하여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에 자금배정을 요구(붙임3)하고(농업금융부는 농림부 축산물위생과에 수시로 용자한도 배정요청), 자금배정을 받아 대출실행
 - 대출취급기관은 대출실행 후 대출실행결과(붙임4)를 해당 추천기관 및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에 제출
 - 대출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사업자는 자동으로 대상자가 취소됨을 고지하고, 수시로 계통조직을 통해 사업비 반납자 현황(붙임2)을 제출
 - 기성고는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의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서류에 의거 확인(증빙서류 첨부)

- 농림부는 동 사업의 예산 범위를 초과하지 않고 자금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대상자 추천 및 자금집행상황을 수시로 파악
- 추천기관에서는 사업완료상황을 파악하여 업소명, 주소, 사업비 등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음식점점업 별도 표시)
- 사업대상자는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 입찰, 계약 등에 의한 공정한 방법으로 시행(자가 시공은 인정하지 않음)

마. 행정사항

- 추천기관에서는 대상자로 선정된 관할 사업자의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사업자가 준수사항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법령이나 규정을 위배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지시 또는 농협에 통보하여 자금회수 등 조치
- 사업자는 사업장 설치 이후 불가피하게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할 경우, 관할 추천기관에 사전 신고
 - 추천기관에서는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기간(1년 이내)을 정하여 신고를 수리하고, 매 분기 익월 10일까지 이를 취합하여 농림부 장관에게 보고 (시·군·구는 시·도 경유)
 - 지정된 기간 경과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재개를 하지 않을 경우 관계 규정에 의거 지원자금 회수 조치
 - 사업자가 점포를 매도, 임대 등으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휴업·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원자금 회수를 원칙으로 하며, 타인이 지원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 시·군·구를 통하여 시·도(닭고기체인점은 관련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기 지원된 한우고기전문판매점, 식육판매모범업소는 지원 당해연도 사업시행지침에 의하여 사후 관리

6. 200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계획은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에 준함

<붙임1>

축산물판매시설현대화 자금 대출추천서

1. 업체개요

업 소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투자소재지		전화번호	

2. 투자시설 개요

사 업 명	
지원대상시설	판매·보관·가공·진열시설, 장비, 인테리어개보수 및 임차료 등
자금조달	추천금액 : 천원, 자부담 : 천원, 합계 : 천원

3. 대출추천금액 및 상환기간

추 천 금 액	천원
상환기간 및 금리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금리 연 5%, 5.5%
추 천 조 건	농림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사업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4. 추천기관 검토의견

- 사업성 : 지역 및 시장여건을 고려한 사업성 검토의견 기재
- 인허가 및 부지확보 : 대출추천일로부터 3개월이내 사업 착수가 가능한지 등 인허가 및 부지확보 전망 기재
- 사업추진의지 : 회계연도내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중도 포기할 우려가 있는지 등 종합적인 의견 기재

위와 같이 축산물판매시설현대화자금 지원대상자를 추천함

년 월 일

추천기관 :

(인)

(신청자가 희망하는 대출취급기관을 확인하여 기재) 귀하

< 붙임 2 >

축산물판매시설 현대화사업 대상(반납)자 대출추천현황

(단위 : 천원)

시·도	사업명	업소명	대표자	주 소	점포 면적	사 업 비			브랜드 주체	비고
						계	융자	자담		
합계										

- ※ 주) 1. 사업명 : 식육소매유통시설, 브랜드가맹점, 닭고기 프랜차이즈
 2. 브랜드주체 : 브랜드가맹점 및 닭고기체인점시설 설치시 기재
 3. 비고 : 시설설치, 시설개보수, 음식점겸업 등 기재

< 붙임 3 >

축산물판매시설 현대화사업 융자한도액 배분요구서

(단위 : 천원)

시·도	사업명	업소명	대표자	배정현황				비고
				사업비	이미배정	이번배정	잔 액	
합계								

※ 대상자별로 작성하되, 적기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수시로 배정 요청

< 붙임 4 >

축산물판매시설 현대화사업 대출실행 결과

(단위 : 천원)

시·도	사업명	업소명	대표자	대출실행결과			비고
				사업비	배정액	대출액	
합계							

※ 비고란에는 사업비 또는 배정액 잔액에 대한 마감일연장 또는 이월 여부 기재

④ 축산물등급판정

※ 이 사업시행 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물위생과(과장 석희진, 사무관 김연백, 사무관 이상철)입니다.

1. 목 적

〈축산물등급판정〉

-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국내산 축산물을 품질고급화 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국제경쟁력 제고
- 축산물의 등급별 구분판매와 냉장유통 촉진으로 국내산 축산물의 소비 기반 확보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

- 소비자가 요구하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일반 브랜드의 차별화를 위한 축산물브랜드 인증 추진

〈브랜드육 포장재 지원〉

- 우수 브랜드경영체의 부분육 유통에 소요되는 포장재를 지원하여 소매 단계의 생산자브랜드 활성화 촉진

2. 시책 및 추진방향

〈축산물등급판정〉

- 축산물등급제의 조기정착으로 품질고급화 실현
- 쇠고기 등급별 구분판매 정착
- 계란 및 닭고기 등급제 추진
- 등급제 교육 및 홍보 실시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

-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위원회 구성·운영
- 브랜드인증 신청업체 현지실사를 통한 축산물브랜드 인증
- 우수 축산물브랜드 소비홍보대회를 개최하여 인증브랜드 발표 및 홍보

<브랜드육 포장재 지원>

- 우수 축산물브랜드 육성·홍보 및 소매단계 판매연계
-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활성화 도모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시책의 강구), 제28조 및 제29조(축산물등급판정)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예산안)	2006년 이후	
사업량	1	1	2	3		
합 계	76,211	13,492	13,618	14,287		
축산물 등급판정	계	76,211	13,492	13,520	13,887	
	보조 융자	76,211	7,292	7,824	8,515	
	지방비	-	-	-	-	
	자부담	-	6,200	5,696	5,372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사업			98	200	
브랜드육 포장재 지원	계			200		
	보조 융자			98	200	
	지방비			-	-	
	자부담			-	-	
	계			200		
	보조 융자			60		
	지방비			-		
	자부담			140		

5.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

<축산물등급판정>

□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등급판정소운영비를 지원하여 도축단계에서의 소·돼지 등급판정
- 계란 및 닭고기 등급판정 추진

- 소매단계에서 식육의 등급별 구분판매 실시 홍보
- 등급판정 결과를 출하자에 통보
- 등급판정 기술 개선
- 생산농가, 유통업자, 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나. 2005년도 사업비(예산안)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지방비	자부담
		사업비 합계	예 산 액 (축산발전기금)			용 자		
			계	보 조				
계		13,887	8,515	8,515	-	-	5,372	
등급판정소운영	1개소	13,887	8,515	8,515	-	-	5,3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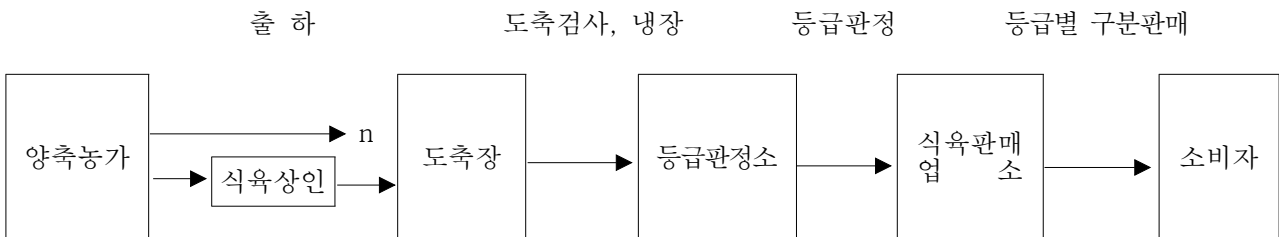
□ 추진체계

가. 사업 주관기관 : 축산물등급판정소

나. 사업 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국 축산물위생과(Tel. 02-500-1917 ~ 9)
- 사업시행기관 : 축산물등급판정소(Tel. 031-390-5500)

다. 등급판정 절차



□ 행정사항

- 축산물등급판정소장은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에 보고
- 시·도에서는 축산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거 도축장 경영자에 대하여 업무감독 실시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

□ 사업개요

가. 주요사업

-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위원회 구성·운영
- 브랜드인증 신청업체 현지실사를 통한 축산물브랜드 인증
- 우수 축산물브랜드 소비홍보대회를 개최하여 인증브랜드 발표 및 홍보

나.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축산물브랜드 경영체
- 총사업비 : 200백만원
 - 지원비율 : 보조 100%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소비자단체

- 협조기관 : 축산물등급판정소

나. 사업 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국 축산물위생과(Tel. 02-500-1921 ~ 2)
- 사업시행기관 : 소비자단체
 - 협조기관 : 축산물등급판정소(Tel. 031-390-5500)

다. 사업추진절차

(1) 축산물브랜드 인증위원회 구성

- 소비자단체 주관하에 축산물브랜드인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증지침 마련
 - 위원회 :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유통업체, 학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

(2) 브랜드 인증절차

① 인증신청	• 브랜드 경영체는 인증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도에 신청
② 시도 확인 및 추천	• 시·도는 인증 신청서를 확인하여 인증기준 등에 합당한지를 확인 • 시·도는 신청서를 제출한 경영체 중 우수한 경영체를 선정하여 소시모에 추천
③ 서류심사	• 위원회에서는 추천된 브랜드 경영체에 대한 서류심사를 실시하여 현지실사 대상을 선정
④ 현지실사	• 현지실사단은 사전예고 없이 현장을 수시방문(3회)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
⑤ 인증심의 및 선정	• 위원회에서는 현지실사단의 평가결과를 심의하여 축산물 브랜드인증 경영체 선정
⑥ 인증브랜드 발표	• 위원회는 “우수 축산물브랜드 소비홍보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축산물 인증브랜드 발표

<브랜드육 포장재 지원>

□ 사업개요

가. 주요사업

-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활성화 도모
- 브랜드축산물의 부분육 등급표시확인 및 규격화 추진
- 포장재 지원으로 우수 축산물브랜드 육성·홍보 및 소매단계 판매연계

나. 사업내용

- 총사업비 : 200백만원(기금보조 60백만원)
 - 지원비율 : 보조 30%, 자부담 70%
- 지원대상 : 한우브랜드 경영체
 - 브랜드사업(산지축산물 생산유통지원사업) 대상 및 브랜드인증 경영체

○ 지원내용

- 지원내역 : 2천원×100천박스×30% = 60,000천원
- 업체당 지원한도액 : 경영체당 10,000천원 이내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축산물등급판정소

나. 사업 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국 축산물위생과(Tel. 02-500-1921 ~ 2)
- 사업시행기관 : 축산물등급판정소(Tel. 031-390-5500)

다. 포장재 지원절차

- 한우브랜드 경영체의 브랜드포장재 사업신청 - 축산물등급판정소
- 축산물등급판정소는 HACCP가공장을 이용여부 등의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대상 경영체를 선정하고 그 결과 통보
- 포장재 지원대상 경영체는 포장재 제작 전에 반드시 속포장, 겉포장 규격 및 가격 등을 축산물등급판정소에 신고한 후 제작
- 축산물부분육등급표시확인 등급판정사는 생산자 브랜드 부분육의 생산·포장·관리와 등급표시 이행 등을 점검
- 포장재 지원 신청자는 매월말 마감후 익월말까지 근거서류와 함께 축산물 등급판정소에 보조금 지급신청
- 축산물등급판정소장은 보조금신청 근거서류 및 축산물부분육등급표시확인 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금집행

□ 행정사항

- 축산물등급판정소장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에 제출

6. 2006년도 사업신청안내

〈축산물등급판정〉

-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2006년 예산을 농림부에 신청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

- 소비자단체 및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200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농림부에 신청

〈브랜드육 포장재 지원〉

-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2006년 예산을 농림부에 신청

⑤ 산지축산물생산·유통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물위생과(과장 석희진, 사무관 이상철)입니다

1. 목적

- 브랜드 축산물의 생산·유통을 통한 시장차별화 및 국내산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
- 규모화·전문화된 생산조직을 중점적으로 육성·지원하여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소득보장

2. 추진방향 : 축산물 브랜드사업 중심으로 사업추진

- 농·축협조합, 영농조합법인 등 전문경영체를 브랜드축산물 생산·유통사업의 핵심주체로 육성
 - 브랜드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기반구축을 구축하고, 품질균일성과 위생·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산지조직화 및 유통체계 연계 추진에 중점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를 부담하는 사업, 지방자치단체·농가·학계 등이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 우선 지원
- 중장기 계획하에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사업추진 및 핵심사업에 역량집중
 - 브랜드사업 초기단계부터 생산·유통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평가실시
 - 현재 브랜드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는 경영체도 사전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브랜드 사업 추진 의지가 분명할 경우에는 지원
- 축협조합경제활성화사업은 중장기발전전략에 의한 비전과 목표가 분명한 경우에 지원
 - 지역축협을 조기에 전문화시키고 경제사업위주로 전환 유도

- 사후관리 및 평가를 강화하여 사업활성화 도모
 - 대상경영체 선정과 평가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사업추진심의회를 구성·운영
 - 축협조합은 우수조합과 부진조합간 차별을 강화하여 사업 동기부여
 - 우수경영체에 대한 무이자인센티브자금은 브랜드사업에 한하여 지원
- '06년 이후 경영체의 회원농가에 대한 자금지원은 축산업등록제 참여농가에 한함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농업협동조합법 제9조제2항(법률 제6018호)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개소수, 백만원)

구 분	'92~'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예산안)
사업량	-	55	40	40	40	-	-
사업비	계	-	101,268	75,000	100,000	100,000	200,955 196,500
	보조	-	-	-	-	-	-
	융자	-	81,014	60,000	80,000	80,000	163,155 (12,155) 163,155 (30,000)
	지방비	-	-	-	-	-	-
자부담	-	20,254	15,000	20,000	20,000	37,800	33,289

※ ()내는 무이자 인센티브자금

5. 2005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 지원규모 : 축산발전기금 1,632억원 (브랜드사업부문 1,232억원, 축협조합 경제활성화사업부문 400억원)
 - 자부담 333억원 (축발기금 80%, 자부담 20% Matching Fund 구성)
- ※ 영농조합법인 등 조합이외의 브랜드 경영체는 기금 지원액의 125%이상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자부담한 것으로 인정
- 지원조건 : 연리 3%, 3년 거치 일시상환 (인센티브 자금 : 무이자, 1년)
- 지원대상
 - 브랜드사업부문 : 농·축협조합, 축산부문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 등 브랜드 전문경영체
 - 지원대상 축종 : 한우, 돼지
 - 축협조합경제활성화사업부문 : 축협조합
- 자금용도 : 운전자금
 - 브랜드사업부문
 - 브랜드축산물의 출하를 위한 출하선급금
 - 브랜드축산물의 매취사업자금 및 원료육매입자금
 - 브랜드사업 추진을 위한 브랜드개발비, 마케팅비, 홍보비 등
 - 가축경영비 또는 회원의 사료통일에 필요한 자금
 - 축사시설, 축산물 가공공장, 판매장 등의 시설 개·보수자금 (사업비의 10%이내)
 - 축협조합경제활성화사업부문
 - 축산물의 출하선급금
 - 축산물 매취사업자금 및 경제사업장 원료육 매입자금
 - 사료선급금 및 사료미수금 등 축협조합 경제사업관련 운전자금
 - 축산물 가공공장, 판매장 등의 시설 개·보수자금 (사업비의 10%이내)

< 추진체계 및 사업시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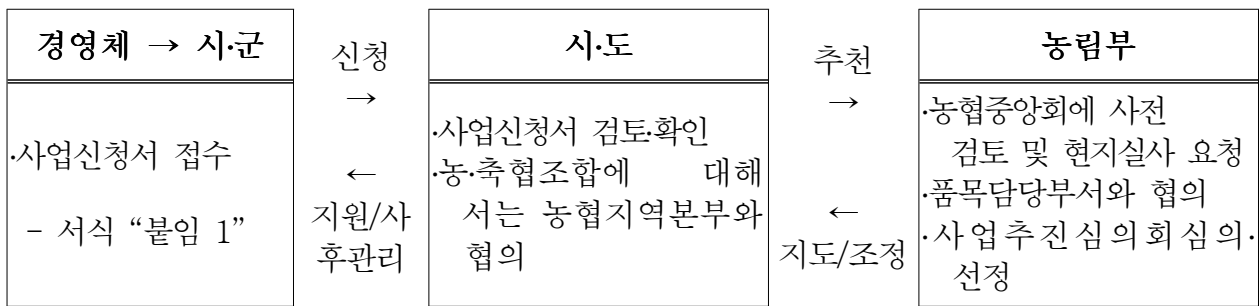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 농협중앙회

나. 사업담당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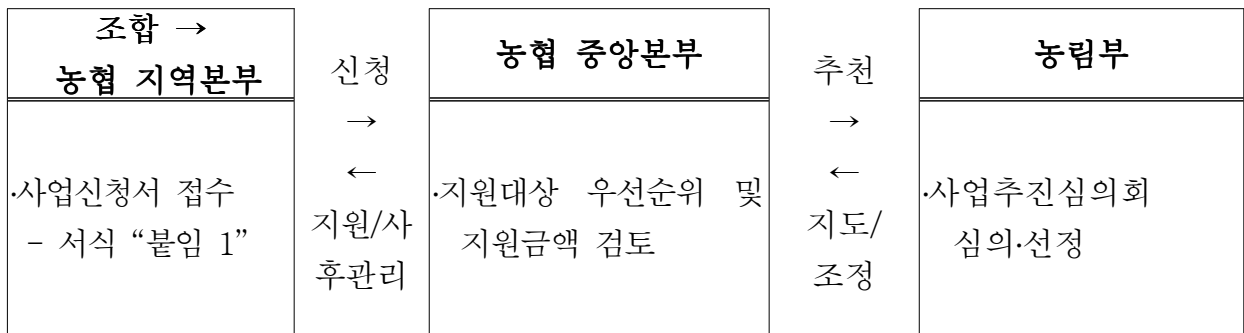
- 농림부 : 축산물위생과(02-500-1921 ~ 2)
- 농협중앙회 : 축산유통부(02-397-7921 ~ 3)
- 시·도 : 축산담당과

다. 사업추진체계

- 브랜드사업부문



- 축협조합경제활성화사업부문



라. 지원대상

1) 브랜드사업부문

- 브랜드사업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부터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영체
- 브랜드사업을 2005년 이전부터 실시하고 있지만 사업의 내실화 또는 확대 추진코자 하는 우수 경영체

※ 사업신청 또는 평가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2) 축협조합경제활성화사업부문

- 계통출하, 사료구매 등 축산농가 소득증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축협조합
- 아래의 조합은 축협조합경제활성화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신청일 현재 과거 3년간('02년 ~ '04년) 지원자금 회수조합·위약금 징수조합·사업평가점수결과 2회 이상의 경고를 받은 조합
 - 대상조합선정 후 사업을 포기한 조합으로서 사업신청일 현재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조합
 - 전년도 평가결과 60점 미만인 조합
 - 농협중앙회 종합경영평가결과가 사업신청일 현재 2년 연속하여 5등급인 조합

마. 지원기준

1) 브랜드사업부문

-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지원하되 축협조합은 경제활성화자금과의 병행 지원이 가능하나 사업내용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 한함
- 농·축협조합의 경우 지원한도는 자기자본의 700% 범위이내
 - 자기자본에 의한 지원한도액이 20억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20억원 범위내
 - 합병조합(또는 조합간 공동연계 사업추진조합)은 30억원 범위내. 다만 조합간 공동연계사업의 경우 사업신청일 현재 농협중앙회의 종합경영평가 결과가 5등급인 조합은 제외
 - ※ 기 지원액이 있는 브랜드경영체에 대한 지원한도액은 지원한도액에서 기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
- 농·축협조합이외의 경영체는 사업내용이 우수하고 담보능력이 있을 경우 50억원 범위이내
- 지원자금의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제 자금소요가 있는 시점에 지원하고, 필요시 지원규모내에서 분할지원도 가능

◦ 세부자금용도별 기준

- 브랜드축산물 출하선급금 : 2005년 출하계획두수 범위내

·'05년 출하계획두수×마리당 단가(한우 400만원, 돼지 20만원)×지원비율(80%)÷2회전 (돼지에 한함)

- 브랜드축산물 매취사업자금 : 2005년 매취계획 금액의 10%이내

·'05년 매취계획두수×마리당 단가(한우 400만원, 돼지 20만원)×지원비율(80%)×10%

- 브랜드사업을 위한 가축경영비(또는 브랜드회원농가의 사료통일자금) : '05년 상시사육 계획두수 범위내

·상시사육두수 ×단가(한우 150만원, 돼지 10만원)×지원비율(80%)÷2회전 (돼지에 한함)

- 브랜드비용(마케팅, 브랜드개발비, 홍보비, 교육비, 컨설팅비 등) : 10억원이내

- 시설개·보수 자금 : 사업비의 10%이내

◦ 세부자금용도별 지원범위

- 가축경영비는 사료가 통일되어 있거나 자금지원일로부터 1년내 사료통일을 계획하고 있는 경영체에 한하여 지원

- 사료통일자금은 사료통일이 되지 않은 회원농가의 사료통일용 자금(외상대금상환)으로 지원하거나 브랜드경영체의 OEM사료 공급용 자금으로 지원

- 자금신청일 현재 브랜드사업의 준비단계(규약을 제정하고 농가를 조직화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경영체는 '05년도에는 출하선급금, 매취자금 불인정

※ 가축계열화사업 자금 중 가축사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영체는 가축경영비, 축산물가공시설운영자금의 원료육구매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영체는 매취사업자금 지원제외

◦ 추가지원은 사업확대 또는 물량증대가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2) 축협조합경제활성화사업부문

-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지원하되, 지원한도는 자기자본의 300% 범위이내
 - 자기자본에 의한 지원한도액이 20억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20억원 범위내
 - 합병조합 또는 조합간 공동연계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30억원 범위내
 - 출하선급금, 사료외상대금결제 등 농가지원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 ※ 기 지원액이 있는 경우의 한도액은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액으로 함
- 세부자금용도별 기준
 - 축산물 출하선급금 : 2005년 출하계획두수 범위내
 - 축산물 매취사업자금 : 2005년 매취계획 금액의 10%이내
 - 사료구매·판매 등 선급금 및 미수금 : 2005년 계획 금액의 10%이내
 - 시설개·보수 자금 : 사업비의 10%이내
- ※ 세부금액별 산출방법은 1)의 브랜드사업을 준용

바.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1) 브랜드사업 부문

가) 사업신청

- 농협중앙회는 사업신청을 안내 ('04년 12월)
- 브랜드 경영체는 “사업신청서“(붙임 1)를 작성(증빙서류 첨부)하여 시·군을 경유하여 시·도에 제출 ('05년 1월 중순)
 - 시·군은 지역축협(또는 농협 시·군지부)의 협조를 받아 조합이외의 브랜드경영체의 여신가능여부를 확인(신청서 확인란에 확인) 제출
 -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을 거쳐(신청서 확인란에 확인) 제출
- ※ 무리한 사업계획 수립시 지원대상자 심사시 불리하거나 탈락될 수 있으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위약금 부과 등의 조치가 있으므로 유의

- 축산부문 영농조합법인 등 조합이외의 브랜드 경영체는 총출자금 1억원 이상이고 브랜드사업 중장기계획, 규약 체결 등 구체적 사업내용과 담보 능력이 있을 때 지원자격 부여

나) 시·도의 브랜드경영체 추천 ('05년 2월 초순)

- 시·도는 사업신청서를 검토·확인하여 지원대상 경영체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림부에 추천
 - 농·축협조합의 경우 농협지역본부의 의견을 첨부

다) 신청서 검토 및 현지실사 ('05년 2월 중순)

- 농림부는 브랜드 경영체의 신청서를 농협중앙회에 검토 및 현지실사 의뢰
 - 농협중앙회는 신청서 검토 후 현지실사를 실시하되 실사팀에 해당 시·도를 포함(농림부는 필요시 참여)

라) 심사 및 지원대상자 확정 ('05년 3월말)

- 농협중앙회는 현장실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경영체 선정기준표 (붙임 2)에 점수를 부여하여 지원대상 경영체 우선순위 및 지원액을 농림부에 추천
 - 농림부는 농협중앙회의 추천의견과 품목담당부서의 의견을 토대로 지원안을 마련하여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업추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경영체와 지원금액을 확정
 - 농·축협조합 및 농·축협조합이외의 브랜드경영체간에 구조적 불균형 발생시 이를 조정하여 심의회에 상정
- ※ 2005년 인센티브자금 지원대상업체도 같은 방법으로 결정 (지원기준은 “아”의 “사업실적평가”에 준용)

마) 지원대상 경영체의 세부사업계획 수립 ('05년 4월)

- 농협중앙회는 세부사업계획의 표준안을 마련하여 지도
- 지원대상경영체는 확정된 지원액과 사업신청서를 기준으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05년 4월 20일까지 시·도와 농협중앙회에 제출
 - 시·도와 농협중앙회는 대상경영체의 사업추진에 대한 지도와 관리실시

2) 축협조합경제활성화사업 부문

가) 사업신청

- 농협중앙회는 사업신청을 안내 ('04년 12월)
- 사업대상자로 선정 받고자하는 조합은 “사업신청서“(붙임 1)를 작성 (증빙서류 첨부)하여 농협중앙회 지역본부에 제출 ('05년 1월 중순)
- ※ 무리한 사업계획수립시 지원대상자 심사시 불리하거나 탈락될 수 있으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위약금부과 등의 조치가 있으므로 유의

나) 농협중앙회 지역본부의 지원대상조합 추천 ('05년 2월 초순)

- 농협중앙회 지역본부는 사업신청서를 검토·확인 및 선정기준표(붙임 2)에 점수를 부여하여 지원대상조합과 금액을 중앙본부에 추천

다) 농협중앙회 중앙본부의 심사 및 추천 ('05년 2월말)

- 사업신청서와 선정기준표를 심사하여 지원대상조합과 금액을 농림부에 추천

라) 농림부 지원대상조합 및 지원액 확정 ('05년 3월말)

- 농림부는 농협중앙회의 추천의견을 토대로 지원안을 마련하여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업추진심의회”에 상정·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조합과 지원금액을 확정

마) 지원대상조합의 세부사업계획수립 ('05년 4월)

- 지원대상조합은 확정된 지원액과 사업신청서를 기준으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05년 4월 20일까지 농협중앙회에 제출
 - 농협중앙회는 세부사업계획의 표준안을 마련하여 지도
- 농협중앙회는 세부사업계획을 통보하고 농림부에 제출

사. 사후관리 및 지도점검

1) 브랜드사업부문

- 시·도는 농협중앙회와 상호 협의하여 사업추진상황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필요시 농림부와 공동으로 실시)
-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에 제출(시·도 → 농림부)

2) 축협조합경제활성화사업 부문

- 농협중앙회는 사업추진상황 등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에 제출

아. 사업실적평가

1) 브랜드사업부문

- 평가대상 : 평가기준일 현재 자금 지원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조합
- 평가대상기간 : 2005. 1월 2005. 12월 (1년간)
- 평가시기 : 2006년 1/4분기
- 평가기준 : 평가기준표 (붙임 3)
- 평가방법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병행
- 평가절차
 - 농협중앙회는 평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에 보고 ('05년12월)
 - 평가대상 경영체는 붙임의 "평가기준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시·군을 경유하여 시·도에 제출 ('06년 1월)
 - 시·도는 평가대상 경영체의 평가기준표를 검토·확인하여 농림부에 제출
 - 평가기준표의 검토 및 현장실사는 "바"의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을 준용
 - 농림부는 제출자료를 검토하여 종합평가심의안을 작성하고, "사업추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 ('06년 3월)
 - 농협중앙회는 평가연찬회 등을 개최하여 우수사례전파 ('06년 4월)

◦ 평가결과 조치

- 우수경영체 : 인센티브자금을 지원

·지원조건 : 무이자, 1년 거치 일시상환

·지원시기 : 평가결과 확정 후 1월 이내

·지원금액 : 평가결과 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내(300억원)에서 지원

- 부진경영체 : 평가결과 40점 미만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자금일부 회수

·회수시기 : 평가결과 확정 후 1월 이내

·회수금액

→ 평가점수 30점 미만인 경우 기금지원액의 20% 회수 및 경고

→ 평가점수 30~35점 미만인 경우 기금지원액의 10% 회수 및 경고

→ 평가점수 35점이상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경고조치

- 사업추진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고 및 자금회수대상에서 제외

2) 축협조합경제활성화사업부문

◦ 평가대상 및 평가대상기간, 평가시기는 1)의 브랜드사업을 준용

◦ 평가기준 : 평가기준표 (붙임 3)

◦ 평가방법 : 서류심사(필요시 현장실사 병행)

◦ 평가절차

- 평가대상 조합은 붙임의 “평가기준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농협 지역본부에 제출

- 지역본부는 평가대상 조합의 평가기준표를 검토·확인하여 중앙본부에 제출

- 농협 중앙본부는 평가기준표를 심사하여 평가결과를 농림부에 보고
(’06년 3월)

◦ 평가결과 부진조합에 대한 조치는 브랜드사업과 동일

자. 자금인정기준

< 인정기준 >

- 자금운용 실적관리는 자금운용 형태별로 인정기준을 정하여 자금운용실적에 따라 제재 및 평가 등에 활용키 위한 것으로
- 자금운용실적은 출하선급금, 매취사업자금, 사업운영자금, 시설개보수자금으로 사용된 금액에 대하여 운용형태별로 가중치를 적용한 합계액으로 함.

1) 브랜드사업부문

- 브랜드축산물에 대한 출하선급금
 - 브랜드경영체를 통한 회원농가의 축산물 출하시 지원하는 선급금으로 출하약정금액, 약정물량, 지원금리, 지원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 약정금액 및 약정물량 : 약정물량(금액)은 선급금 지원금액의 125% 이상으로 함
 - 선급금 운용금리 : 경영체의 여건에 따라 지원금리+2.0% 범위 이내에서 자율운용
 - 지원기간 : 1년이내에서 경영체 자율로 결정
 - 위약금 징구에 관한 사항 : 약정내용에 축산농가의 사업의무 미이행시 제재에 관한 사항을 포함
 - 선급금은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적정시기에 지원하며 출하대금 정산시에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약정기한 내 계속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선급금 잔액 대비 축산농가의 출하가능 물량이 충분하여 회수에 무리가 없을 때는 그 이후 출하대금 정산시에 회수 가능
 - 운용실적 인정 : 사업목적으로 운용된 출하선급금의 차변누계액
- 브랜드축산물 매취사업자금
 - 브랜드회원으로부터 판매·가공원료 등으로 매입한 자금
 - 운용실적 인정 : 사업목적으로 운용된 판매품, 가공원재료 등 차변누계액의 10% 다만, 자체계획에 의거 수매·비축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차변누계액
- 기타 브랜드사업을 위한 자금
 - 브랜드사업을 위한 가축경영비(사료통일자금), 브랜드개발비, 마케팅비 등
 - 운용실적 인정 : 사업목적으로 운용된 자금의 해당 금액의 평잔다만, 브랜드개발비와 마케팅비 등 브랜드사업에 대한 비용성자금은 해당 금액 (자금지급시기부터 자금 상환기일까지 실적으로 인정)

- 시설개·보수 자금
 - 축사시설 및 축산물 가공공장, 판매장 등 시설에 대한 개보수 자금
 - 운용실적 인정 : 사업비의 10% 이내로 사용한 시설개보수 자금(자금 지급시기부터 자금 상환기일까지 실적으로 인정)

2) 축협조합경제활성화사업부문

- 출하선급금
 - 조합을 통한 축산물 출하시 지원하는 선급금
·출하약정금액, 약정물량, 지원금리, 지원기간, 위약금, 대금정산, 1)의 브랜드 사업부문을 준용
 - 운용실적 인정 : 사업목적으로 운용된 출하선급금의 차변누계액
- 축산물 매취사업자금
 - 조합의 판매, 가공 원료매입 자금
 - 운용실적 인정 : 사업목적으로 운용된 판매품, 가공원재료 등 차변누계액의 10% (다만, 자체계획에 의거 수매·비축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차변누계액)
- 기타 경제활성화를 위한 자금
 - 사료선급금, 사료미수금 등
 - 운용실적 인정 : 사업목적으로 운용된 자금의 해당 금액의 평잔

차. 자금운용실적에 따른 제재

- 브랜드경영체(조합)에 대한 제재
 - 위약금 징수 : 연간 자금운용실적이 축발기금 지원금액의 100% 미만인 경우 및 부당운용한 경우에는 미달액과 부당운용액에 대하여 축발기금 대출연체금리를 기준하여 연도말 평가시 위약금 징수
 - ※ 위약금 = 운용실적미달액(부당운용액) × (연체금리 - 정상금리) × 사용일수 / 365
 - 지원자금회수
 - 연도말 평가시 연간자금운용실적이 기금지원액의 25%미만인 경우
→ 지원금액 전액을 회수
 - 연도말 평가시 연간자금운용실적이 기금지원액의 25%미만인 경우
→ 자금지원규모를 조정(※ 조정(회수)금액 = 지원금액 - 운용실적)
 - 자금운용평잔이 사업자금 평잔의 30%미만인 경우 자금규모 조정

- 축산농가 사업의무 미 이행시 제재
 - 농가에 대한 선급금 운용시 계통출하 실적이 계약금액에 미달한 경우 위약금 부과여부에 대해서는 브랜드경영체(조합)이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위약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도 브랜드경영체(조합) 자체적으로 사용
 - ※ 위약금= 【계약금액(선급금지원액×125%)-출하실적금액】 ×(사용일수/365)×(연체금리 - 정상금리)
- 농가에 지원된 선급금은 상환예고 등을 통하여 상환기일에 전액 회수토록 하되 최종상환일까지 미 회수된 자금에 대해서는 자체자금으로 지원한 것으로 하고 연체채권으로 관리
- 위약금 납부절차 및 면제
 - 위약금 납부절차
 - 브랜드경영체(조합)에 대한 위약금(회수자금 포함)은 연간자금운용내역을 익년 사업실적평가지 평가, 중앙회가 징수하여 평가결과확정 1월이내에 촉발기금에 납부
 - 위약금 면제
 - 천재지변, 중대한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농가가 사업실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거나 브랜드경영체(조합)이 사업자금 운용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 브랜드경영체(조합) 또는 축산농가가 자금지원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상환하는 경우
 - 브랜드경영체(조합)에 대한 위약금을 면제 할 때는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유서 및 현장확인서, 현장사진, 행정기관 확인자료 등 증빙자료 첨부
 - ※ 지원 브랜드경영체(조합)가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자금사용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금리부담
 - 30일 이내 상환시 : 조합지원금리
 - 3개월 이내 상환시 : 중앙회 1년 만기 정기에금 금리
 - 3개월 경과 후 상환시 : 조합지원금리 외에 위약금 부담

카. 사업기간중 사업계획 변경

- 브랜드경영체(조합)가 축산물 수급상황등 생산·유통여건변화에 따라 사업 계획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부사업 금액의 $\pm 20\%$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변경
 - 변경시에는 그 내용을 시·도와 농협중앙회 지역본부에 제출하고 지역 본부는 농협중앙회 중앙본부에 분기별 취합보고
- 세부사업금액이 $\pm 20\%$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시·도(지역본부 협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고 지역본부는 승인결과를 농협중앙회 중앙본부에 보고

< 기타행정사항 >

- 본 지침에 의한 세부실시사항(자금인정기준의 계정, 세부사업계획수립지도 표준안, 지도점검서식 등)은 농협중앙회가 정함
- 기타 동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가 농림부와 사전협의 또는 승인을 거쳐 사업을 추진

【붙임 1】

<브랜드사업용>

2005년도 산지축산물 생산·유통지원 사업신청서

(조합용)

1. 일반현황

조합명			조합장		
자본금			조합원수		
경영평가등급			직원수		
담당자	직	성명	근무처	사무실전화	핸드폰
	전무				
	상무				
	담당				

2. 가축사육현황

(단위 : 호/두,수)

구 분	한우		돼 지	
	호수	두수	호수	두수
시(군)전체				
조 합 원				

3. 사업현황

가. 사업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03년	2004년	비 고
경 제 사 업	구 매	매 취			
		자체 계통			
		수 탁			
		계			
	판 매	매 취			
		수 탁			
		계			
		생 활 물 자			
		생 축			
		가 공			
	기타(가축개량, 창고, 이용 등)				
	계				

나. 손익

(단위 : 백만원)

구분	경 제 사 업					조합전체 당기순손익	비 고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관비	영업손익		
2002년							
2003년							
2004년							

4. 보유경제사업장 현황

(단위 : 백만원)

보유사업장	규모(㎡)		설치연도	총투자액	처리능력	실적(두/톤, 백만원)		손익	비고
	부지	건물				물량	금액		

5. 브랜드 축산물 생산·유통현황 (2004년 기준)

가. 브랜드명 : (축종 :)

나. 참여농가 및 상시사육두수 : 농가 , 두

◦ 회원농가 명부 (한우)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육규모				혈통등록두수	축산업등록여부
				암	수	거세	계		
계									

◦ 회원농가 명부 (돼지)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육규모				혈통등록수			축산업등록여부
				종돈	모돈	비육돈	계	종돈	모돈	계	
계											

6. 경제사업관련 자금차입현황

가. 축발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용도	지원 조건	자금내역			상환만료일
			당초차입액	상환액	잔 액	

※ 가축계열화자금, 원료육구매자금은 반드시 기재

나. 기타외부자금(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앙회등)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재원	용도	지원 조건	자금내역			상환만료일
				당초차입액	상환액	잔 액	

7. 2005년도 신청 사업계획 및 자금

가. 사 업 명 :

나. 사업개요

- 사업추진계획 약술

다. 연차별 추진목표

(단위 : 두수/백만원)

구분	2004년 실적	2005년	2006년	2007년
브랜드회원농가의 출하두수(금액)				
소매단계에서의 브랜드육 판매두수(금액)				

라. 주요사업 추진방법

○ 브랜드사업 주요 요소별 추진방안

- 혈통등록, 사료통일, 사양관리통일방안, 물량공급, 브랜드관리방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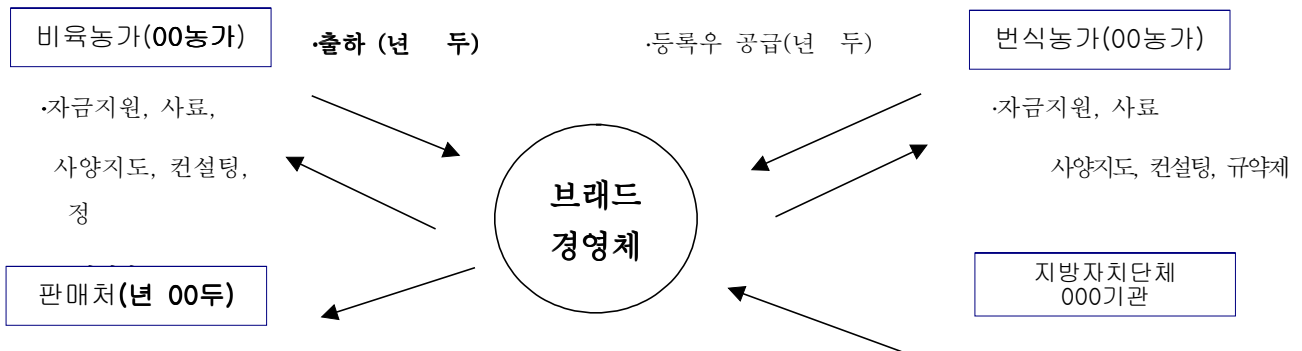
○ 사업참여주체 농가의 자격기준 등

○ 관련기관간 연계성

※ 각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마. 추진체계

<예 시>



· 자체판매장(0개소), ·납품처 (0개소)

·자금지원(년 억원), 행정지원

계통출하 (년 00두), 1등급 출현율 (%)

바. 자금계획

○ 용자신청액 : ()백만원

○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내역 및 용도	년간물량 (농가수)	2005년 계획			자금 소요시기
		용자 (80%)	자부담 (20%)	사업금액 (100%)	
출하선금					
매취사업자금					
기타자금					
계					

○ 소요자금 산출방법

(단위 : 백만원/두/명)

세부내역		'04년 실적	산출기준 (예시)	기 지원액	'05년 사업금액
출하선급금	(예: 한우)		'05년출하계획두수×금액(단가)=		
매취사업자금	(예: 한우)		'05년 회원농가로부터 매취계획×10% =		
사료통일자금	(예: 가축경영비)		'05년상시사육계획두수×단가=		
계					

아. 사업추진시 기대효과

○

자. 기타우수사례

○ 다른 경영체와 차별화되는 특성, 자랑할 수 있는 사항 등

8. 브랜드사업을 위한 로드맵

		2004년 실적	2005년	2007년	2010년	2013년
브랜드사업참여농가수						
축산업등록농가비율						
브랜드회원농가 연간 출하두수						
품 질 균 일 성	혈통등록 (비율)					
	사료통일 (비율)					
	사양 프로 그램	프로그램준수				
		거세시기				
	출하시기					
소매단계에서의 브랜드 물량						
HACCP 적용	HACCP 적용 도축장이용					
	HACCP 적용 가공장이용					
	HACCP 적용 가공장 ·도축장 동일장소이용					
B1등급 (A,B등급)이상 출현율						
브랜드컨설팅 실시계획						
홍보계획						
기타	리콜적용, 적립금운영					
	소비자모니터링					

※ 2004년 실적은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개별 증빙서는 총괄표를 작성하여 제출)

위와 같이 2005년도 산지축산물 생산·유통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며 상기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합장 : 인

※ 지자체, 학계, 연구기관 등과의 공동사업추진계획 또는 지방비 지원이 있을 경우에
사업 내용을 기재하고 확인

위와 같이 00조합이 2005년도 산지축산물 생산·유통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00(조합명)과 연계하여 추진함(지방비지원예정액 : 000백만원)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000 (지방자치단체명) 인

2005년도 산지축산물 생산·유통지원 사업신청서

(영농조합 등 일반법인용)

1. 법인(업체) 명 :

소재지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법인(업체) 현황

대표자 및 연락처	(전화번호)	담당자 및 연락처	(전화번호)
설립일		회원 수	
출자액		전담직원 수	
사업실적(매출액)	2003년 : 백만원,		2004년 : 백만원

2. 가축사육현황

(단위 : 호/두,수)

구 분	한우		돼 지	
	호수	두수	호수	두수
시(군)전체				
회 원				

3. 사업현황

가. 사업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03년	2004년	비 고
구 매			
판 매			
가 공			
기 타 ()			
계			

나. 손익

(단위 : 백만원)

구분	사 업 내 역					당기순손익	비고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관비	영업손익		
2002년							
2003년							
2004년							

다. 경영장부 작성여건

- 복식부기사용여부 (여, 부)
- 법인결산보고서 작성·비치여부 (여, 부)

(이하 서식은 조합용 4. ~ 8. 을 참조)

위와 같이 2005년도 산지축산물 생산·유통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며 상기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 지자체, 학계, 연구기관 등과의 공동사업추진계획 또는 지방비 지원이 있을 경우에
사업 내용을 기재하고 확인

위와 같이 00조합이 2005년도 산지축산물 생산·유통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00(단체명)과 연계하여 추진함(지방비지원예정액 : 000백만원)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000 (지방자치단체명) 인

붙임자료

1. 사업규약(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1. 담보제공가능액 : 경영체가 작성

(단위 : 백만원)

담보물종류	면적	기준시가	선순위액	권리자(연락처)	담보제공가능액

2. 여신가능여부 확인란 (조합 또는 시군지부에서 신청서류에 의거 판단작성)

여신가능여부	가능 (인)	불가능 (인)
가능 추정액	00 백만원	
확 인 자	00 조합장 인 00 시·군지부장 인	

<축협조합경제활성화사업부문>

2005년도 산지축산물 생산·유통지원 사업신청서

1. 조합일반현황

조합명			조합장		
자본금			조합원수		
종합경영평가등급			직원수		
담당자	직	성명	근무처	사무실	핸드폰
	전무				
	상무				
	담당				

2. 가축사육현황

(단위 : 호/두,수)

구분	한우		젖소		돼지		닭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시(군)전체								
조합원								

3. 사업현황

가. 사업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03년	2004년	비고	
경제사업	구매	매취	자체			
			계통			
			수탁			
			계			
	판매	매취				
		수탁				
		계				
	생활물자					
	생축					
	가공					
기타(가축개량, 창고, 이용등)						
계						

주) 1. 비고란에 주요내용(품목) 등을 기재할 것

2. 합계란은 B/S와 일치시킬 것

나. 손익

(단위 : 백만원)

구분	경 제 사 업					조합전체 당기순손익	비고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관비	영업손익		
2002년							
2003년							
2004년							

4. 보유경제사업장 현황

(단위 : 백만원)

보유사업장	규모(평)		설치 연도	총 투자액	처리 능력	실적(두/톤, 백만원)		손 익	비고
	부지	건물				물량	금액		

- 주) 1. 시설현황은 개소수별로 작성하며 “규모” 및 “총투자액”은 2004년을 기준으로 함
 2. “처리능력”은 1일 처리능력 기입
 3. 임대차의 경우에는는 비고란에 “임차”표시

5. 경제사업관련 자금차입현황

가. 촉발기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용도	지원 조건	자금내역			상환만료일
			당초차입액	상환액	잔 액	

※ 가축계열화자금, 원료육구매자금은 반드시 기재

나. 기타외부자금(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앙회등)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재원	용도	지원 조건	자금내역			상환만료일
				당초차입액	상환액	잔 액	

6. 경제사업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

가. 비 전 :

- 각 조합에서 수립한 경제사업중장기발전전략을 참고하여 작성

나. 연차별 경제사업 목표

구분		2004년 실적	2005년	2006년	2007년
경제사업규모(금액)					
000 (중점추진 사업명)	물량				
	금액				

※ 동 서식은 신청사업내용에 따라 변형가능

- 중점추진 경제사업을 사업명을 기재하고, 조합의 특화사업 등과 연계추진

7. 2005년도 신청 사업계획 및 자금

가. 사 업 명 :

나.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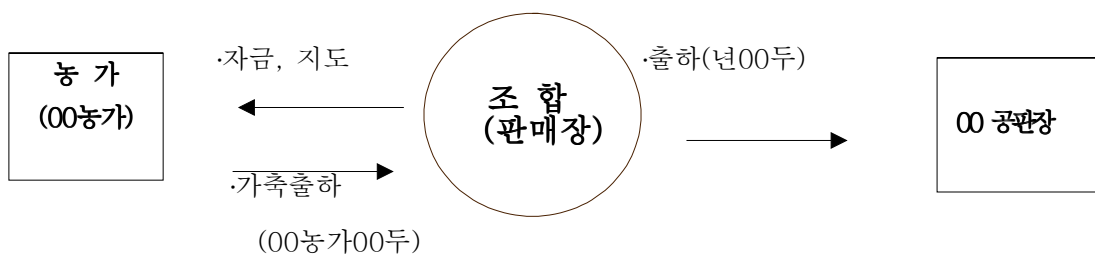
- 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기술

다. 주요사업추진방법

- 조합에서 지원자금으로 추진하는 사업계획(출하, 매취, 구매, 가공 등의 물량)과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방법을 기재

라. 추진체계

< 예 시 >



마. 자금계획

○ 용자신청액 : ()백만원

○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내역 및 용도	년간물량 (농가수)	2005년 계획			자금 소요시기
		용자 (80%)	자부담 (20%)	사업금액 (100%)	
출하선급금					
매취사업자금					
기타					
계					

○ 소요자금 산출방법 (단위 : 백만원/두/명)

세부내역	'04년 실적	산출기준 (예시)	기 지원액	'05년 사업금액
출하선급금 (예 : 한우)		'05년출하계획두수×금액(단가)=		
매취사업자금 (예: 한우)		'05년회원농가 매취계획×10% =		
기타 (예: 사료미수금)		'05년 사료매출 계획×10%=		
계				

바. 사업추진시 기대효과

○ 사업추진시 기대되는 이익(농가 및 조합)을 계량화 등

사. 기타우수사례

○ 다른 조합과 차별화되는 특성, 자랑할 수 있는 사항등

위와 같이 2005년도 산지축산물 생산·유통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며 상기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OO 조합장 : 인

【붙임 2】

< 브랜드사업용 >

지원대상경영체 선정기준표

□ 신청경영체명 : 000

□ 항목별 점수

평가항목		기 준		배점	특점	비고
브랜드 사업계 획 (60)	중축통일 (10)	○ 혈통등록 비율(한우) - 20% 미만 - 20% 이상 - 40% 이상 - 60% 이상 - 80% 이상	○ 동일 GGP, GP에서 생산된 F1의 비율(돼지) - 20% 미만 - 20% 이상 - 40% 이상 - 60% 이상 - 80% 이상	0 4 6 8 10		
	사료통일 (10)	○ 회원의 사료통일비율(한우·돼지) - 70%미만(0), 70%이상(4점), 80%이상(6점), 100%(10점)		0~10		
	사양관리 통일(10)	○ 회원의 사양관리프로그램, 거세시기, 출하시기 통일정도 - 미준수(0점) - 사양관리프로그램 준수 (4점) - 사양관리프로그램 준수 + 거세시기 통일 (6점) - 사양관리프로그램 준수 + 거세시기 통일 + 출하시기 통일 (10점)		0~10		
	회원의 사육규모 (10점)	○ 회원의 상시 사육두수 - 비육우 1,000두(돼지 10천두)미만 - 비육우 2,000두(돼지 20천두)미만 - 비육우 3,000두(돼지 30천두)미만 - 비육우 4,000두(돼지 40천두)미만 - 비육우 4,000두(돼지 50천두)이상		2 4 6 8 10		연합사업 은 2.5배 적용
	도축가공 (10점)	○ HACCP 도축·가공장 이용 - 비 HACCP 도축 및 가공장 이용 - 동일장소내 HACCP 도축·비 HACCP 가공장 이용 - HACCP 도축 후 지육반출, HACCP 가공장 이용 - 동일장소내 HACCP 도축·가공장 이용		0 4 6 10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10)	○ 브랜드사업에 대한 목표와 연차별 추진수단과 방법이 다소 무리 ○ 브랜드사업에 대한 목표와 연차별 추진수단과 방법이 일반적임 ○ 브랜드사업에 대한 목표와 연차별 추진수단과 방법의 실현가능성이 다소 있음 ○ 브랜드사업 연차별 추진수단, 방법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음		0 4 6 10		
지방비 지원금액 (10)	○ 5천만원 이상(2), 1억원 이내(4), 3억원 이내(6), 5억원 이내(8), 5억원 이상(10)		2~10			
사업기반 (20)	○ 사업준비정도 (10) - 규약마련(3점), 상표등록(3점), 외부컨설팅실시(4점) ○ 사업기반구축 (10) - 회원사육규모와 관내사육두수 등 지역여건을 감안한 계획달성 여부 ·무리(0점), 보통 (5점), 가능(10점),		0~20			
가점(10)	○ 축산업등록, 사료통일 의지(자금운용) 등 정책호응도(10)		()			
계						

※ 신규계획은 2004년도의 계획을 기준으로 하고, 실적(계수)은 전년도말을 기준으로 함

※ 이 표에서 규정되지 않은 것은 심의회에서 정함

< 축협조합경제활성화사업용 >

지원대상경영체 선정기준표

□ 신청 조합명 : 000 축협

□ 항목별 점수

평가항목		기 준	배점	특점	비고
경제사 업기반 (30)	사업규모 (15)	◦ 경제사업규모 (금액기준) · 100억원 이하 · 200억원 이하 · 300억원 이하 · 300억원 초과	4 6 8 10		품목조합은 ×2배 기준
	사업여건 (15)	◦ 자기자본액 · 1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 50억원 이하 · 50억원 초과	4 6 8 10		품목조합은 ×2배 기준
경영 여건 (20)	손익(10)	◦ 최근 2년간 연속하여 적자 ◦ 최근 2년 연속적자였으나 적자금액이 줄어들고 있는 경우 ◦ 최근 1년 흑자 1. ◦ 최근 2년 흑자 2. ◦ 최근 3년간 계속하여 흑자	0 4 6 8 10		
	전년도 종합경영평가결과 (10)	◦ 5등급(0), 4등급(4), 3등급(6), 2등급(8), 1등급(10)	0 ~ 10		
사업 계획 (4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① 조합의 중점추진 경제사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② 사업이 1축종으로 전문화되는지의 여부 ③ 사업계획 규모가 현재의 사업규모를 감안하여 적정한지 여부 ④ 조합원 또는 직원 등이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체계가 구축되어있는지 ⑤ 사업자금 신청액 산출의 적정여부 ⑥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조합원 실익증진에 적극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인지 ⑦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지 여부 ⑧ 사업실천에 대한 구체성이 있는지의 여부		적정(5) 보통(3) 미흡(0)	
	가점(10)	◦ 지원자금의 출하선급금, 사료대금결제자금 등 농가 직접 활용 비율(%) ◦ 축산업등록, 합병조합 등 정책호응도	()		
	계				

【붙임 3】

2005년 산지 축산물 생산·유통지원사업
평가기준표

평가대상 업체	000			
평가기준일	00년 12월 31일			
사업담당자	직	성명	근무부서	연락처(사무실, 핸드폰)
	대표		-	
	전무		-	
	상무			
	담당자			

<브랜드사업용 >

평가기준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배점	실적	특점	비고
품질 균일성	중축통일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혈통등록 비율(한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 미만 - 20% 이상 - 40% 이상 - 60% 이상 - 80% 이상 ○ 동일 GGP, GP에서 생산된 F1의 비율 (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 미만 - 20% 이상 - 40% 이상 - 60% 이상 - 80% 이상 	0 4 6 8 10			
	사료통일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의 사료통일비율(한우·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미만(0), 70%이상(4점), 80%이상(6점), 100%(10점) 	0~10			
	사양관리 통일(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의 사양관리프로그램, 거세시기, 출하시기 통일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준수(0점) - 사양관리프로그램 준수 (4점) - 사양관리프로그램 준수 + 거세시기 통일 (6점) - 사양관리프로그램 준수 + 거세시기 통일 + 출하시기 통일 (10점) 	0~10			
고품질	품질수준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우 육질B1등급 출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미만 - 30%이상 - 40%이상 - 50%이상 - 60%이상 ○ 돼지 A, B 등급 출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미만 - 60%이상 - 70%이상 - 75%이상 - 80%이상 	0 4 6 8 10			
품질 관리 효과	회원의 출하물량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대비 회원의 출하물량 성장률 (두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미만(0점), 110%미만(2점), 130%미만(3점), 150%미만(4점), 150%이상(5점) 	0~5			전년실적이 없을 경우 2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200두 미만 - 연간 200두 이상 - 연간 400두 " - 연간 600두 " - 연간 800두 " - 연간 1,000두 " ○ 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10,000두 미만 - 연간 10,000두 이상 - 연간 20,000두 " - 연간 30,000두 " - 연간 50,000두 " - 연간 100,000두 " 	0 1 2 3 4 5			
위생· 안전성	농장위생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 사육환경, 분뇨처리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0), 중(1), 중상(3), 상(5) ○ 동물약품 안전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간 잔류위반실적 0.01%이상(0), 0.01%미만(2), 없음(5) 	0~5 0~5			
	도축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생물오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5CFU/cm² 이상(0), 10^4CFU/cm² 이하(3), 10^3CFU/cm² 이하(6), 10^2CFU/cm² 이하(10) 	0~10			
	가공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CCP 도축·가공장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 HACCP 도축 및 가공장 이용 - HACCP 도축·비 HACCP 가공장 이용 - HACCP 도축 후 지육반출, HACCP 가공장 이용 - 동일장소내 HACCP 도축·가공장 이용 	0 4 6 10			
브랜드 관리	브랜드육 유통물량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대비 소매단계에서의 브랜드육 판매물량 성장치(두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미만(0점), 110%미만(4점), 130%미만(6점), 150%미만(8점), 150%이상(10점) ○ 브랜드육 유통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자브랜드명으로 소매유통 10%미만 - 생산자브랜드명으로 소매유통 10%이상 - 생산자브랜드명으로 소매유통 30% " - 생산자브랜드명으로 소매유통 50% " - 생산자브랜드명으로 소매유통 70% " - 생산자브랜드명으로 소매유통 90% " 	0~10 0 2 4 6 8 10			전년실적이 없을 경우 6점
농가 혜택	지원금리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하선급금, 경영비 등 농가 직접 지원자금 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리 4.5% 이상(1점), 금리 4.0% 이상 (2점), 금리 3.5% 이상(3점), 금리 3.0% 이상 (4점), 금리 3.0% 미만 (5점) 	0~5			농가지원자금이 없을 경우 0점
	농가지원 비율(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금 대비 회원농가에 직접 지원자금(출하선급금 및 사료결제자금으로 지원)으로 활용한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미만(1점), 40%(2점), 60%미만(3점), 80%미만(4점),80%이상(5점) 	0~5			
가점(20)	중간지도 점검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족(2), 미흡(4), 보통(6), 우수(8), 탁월(10) 	2~10			
	정책응답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업등록제 참여 등(10) 	()			
계						

※ 실적치는 증빙서류에 의거 브랜드경영체가 기재함 (예 : 혈통등록비율 25%)

< 축협조합경제활성화사업용 >

평 가 기 준 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배점	실적	득점	비고
경제 사업	전년대비실적 (30)	○ 경제사업매출액 증가율 (당년경제사업매출액/전년경제사업매출액)×100	10		·110%달성기준
		○ 경제사업 영업이익 성장치 (당년경제사업영업이익/전년경제사업영업이익)×100	10		·110%달성기준
		○ 경제사업비중 (경제사업실적/(경제+공제+예수금잔액)×100	10		·50%달성기준
	사업계획(10)	○ 사업계획대비추진실적 (금액기준) (사업추진실적/사업계획)×100 ※ 사업 : 조합에서 지원자금으로 수행한 해당사업	10		·110%달성기준
농가 혜택	지원금리 (10)	○ 출하선금금, 경영비 등 농가지원에 지원자금 금리 - 농가지원 자금의 년 금리 4.5% 이상 - “ “ 금리 4.0% 이상 - “ “ 금리 3.5% 이상 - “ “ 금리 3.0% 이상 - “ “ 금리 3.0% 미만	2 4 6 8 10		·농가 지원 자금이 없을 경우 0점
	농가지원 비율 (10)	○ 사업자금 대비 회원농가에 직접 지원자금(출하선금금 및 사료결제자금으로 지원)으로 활용한 비율 - 20%미만(2점), 40%(4점), 60%미만(6점), 80%미만(8점), 80%이상(10점)	210		
사업 추진 노력	외부전문가 초청자문 (10)	○ 년 1회이상 전문가 초청·자문(중앙회포함) ○ 년 2회 전문가 초청·자문 ○ 년 3회 전문가 초청·자문 ○ 년 4회 전문가 초청·자문 ○ 년 5회 전문가 초청·자문	2 4 6 8 10		·중앙회직원은 “품 목·사업담당부서” 의 임직원에게 한함
	외부컨설팅 (10)	○ 컨설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이거나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 조합의 경제사업에 대하여 컨설팅 실시 ○ 경제사업 컨설팅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 ○ 축협조합경제활성화자금지원 사업에 해당되는 사 업에 컨설팅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	4 6 8 10		·3년을 기준으로 함
자금 운용	자 금 (10)	○ 평잔 (운용자금평잔/사업금액평잔)×100	5		·100%달성기준
		○ 자금운용실적 (농가출하선금금 + 매출자금 + 사업운영자금 + 시설개보 수자금 / 사업금액평잔) × 100	5		·100%달성기준
비례량 (10)	중간지도 점검결과	○ 부족(2), 미흡(4), 보통(6), 우수(8), 탁월(10)	210		
	가점(10)	○ 축산업등록제 참여 등 정책효응도			
계					

※ 실적치는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조합에서 기재

⑥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 시범사업 (공공)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물위생과(과장 석희진, 사무관 박상연)입니다.

1. 이력추적시스템(Traceability) 개념 및 필요성

- 소의 생산·도축·가공·유통 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 문제 발생시 이동경로를 따라 추적 또는 소급하여 신속한 원인규명 및 조치를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
- 최근 미국 광우병 발생 등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여론 고조
 - 문제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 및 조치로 소비자 피해 및 경제적 손실 최소화
 - 소비자들의 알 권리 충족 및 둔갑판매 방지 등으로 국내산 쇠고기 소비확대에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 광우병 등 문제 발생시 전면 도입을 위한 추적시스템 구축
 - 생산·도축·가공·판매단계까지의 이동사항 등을 기록 관리
- 농가의 기록관리 및 자율 신고의식이 미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 시범 사업을 통해 제도정착
 - 우선 우수 브랜드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단계적으로 후발브랜드 및 지역단위로 확대
-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평가하여 법령제정 등 전면 실시 에 대비한 제도는 사전에 완비('08년까지)

3. 근거법령

-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시('04.1.12) 쇠고기 이력관리제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최우선 과제로 도입토록 지시
-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 시범사업 추진계획 장관 방침('04.5.27)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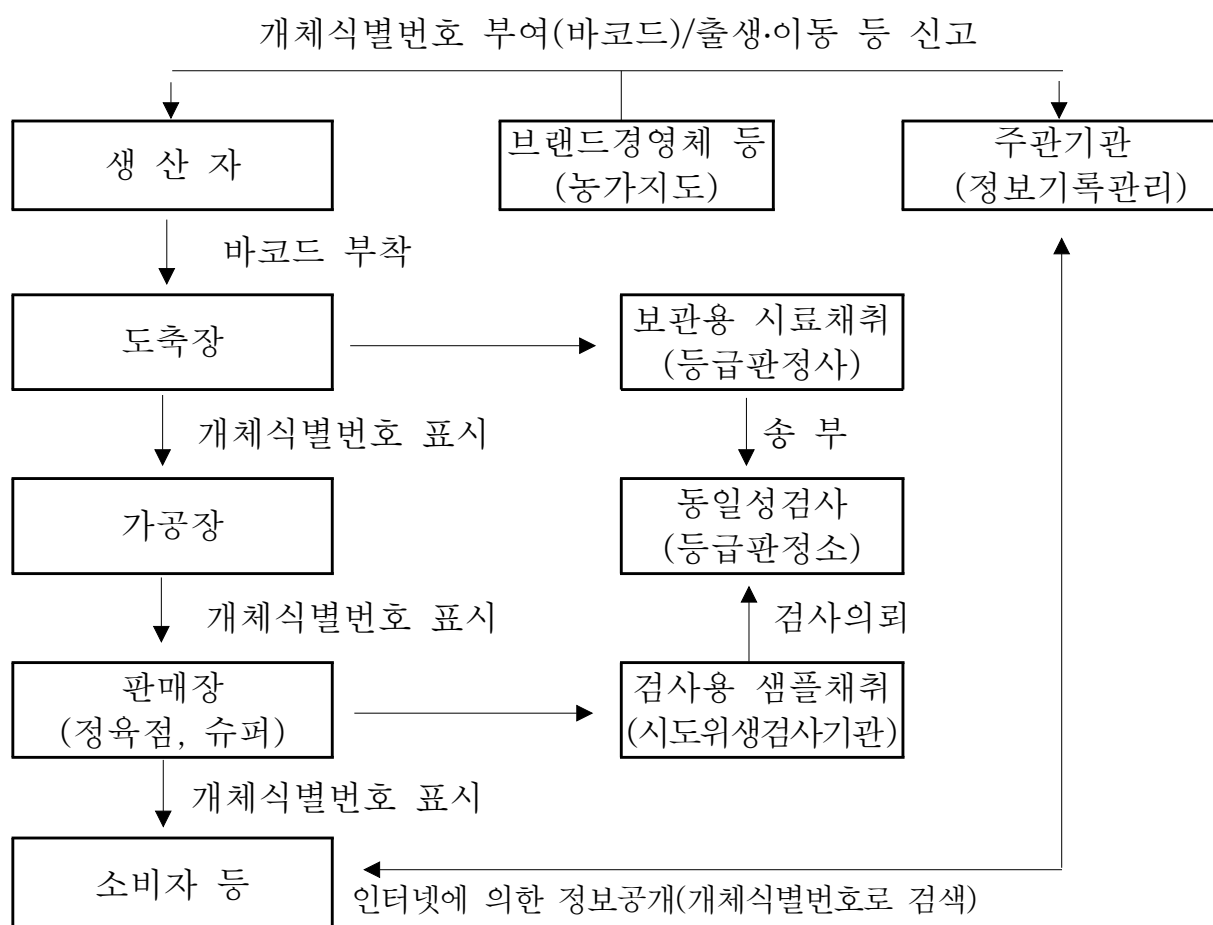
구 분		'92-'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예산안)
사업량		-	-	-	9개소/45천두	9개소/45천두
사 업 비	계	백만원	-	-	1,449	367
	보 조	-	-	-	1,449	367
	용 자	-	-	-	-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

5. 2005년도 시범사업 시행요령

가. 추진체계

- 정부(농림부 축산물위생과)
 -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점검
 - 예산확보 및 집행상황 감독, 법령 제정 등
- 주관기관
 -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농협중앙회(생산단계)와 축산물등급판정소(유통단계)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업무를 분담
 - 등급판정소(총괄) : 전산시스템관리, 예산 편성·집행 등
 - 농협중앙회 : 농가귀표 관리, 농가·브랜드경영체·조합지도 등

< 추진 체계도 >



○ 지역별 협의체(시·군 등)

- 시·군을 중심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조합, 관련협회, 브랜드경영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농가지도 등 담당
- 출생(폐사)·이동 등 농가의 신고내용을 전산 입력할 단체를 지정·운영 하되 농가가 직접 입력할 수도 있음

○ 시·도 위생검사기관

- 도축장에서 귀표 부착 확인 및 도축검사결과 전산입력
- 가축전염병 검진, 혈청검사 등 농가 질병관리 지도
- 판매장에서 동일성검사를 위한 샘플을 채취, DNA 검사기관으로 송부
- 도축자, 가공업자, 판매업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

○ DNA 동일성 검사

- 도축장에서 보관용 시료 채취 : 축산물등급판정소(등급판정사)
- 판매장에서 검사용 샘플 채취 : 시·도 위생시험기관
- 동일성 검사기관 : 축산물등급판정소(본소)

나. 신고내용 DB구축 및 정보공개

- 국가단위에서는 생산농가 등으로부터 개체식별번호에 의한 최소 정보만 신고 받아 관리
 - 생산단계 : 소유자(성명, 주소, 전화, 사육지 등) 및 소유가축(개체식별번호, 출생일, 성별, 축종, 모개체식별번호) 현황
 - 도축단계 : 도축장, 도축일, 등급판정결과
 - 사양관리 및 질병관리 등 위생·안전성 관련 정보는 브랜드경영체 등이 선택적으로 기록·관리 및 제공
- 신고된 자료는 DB를 구축하여 인터넷에 의해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기관(단체)에 대해서는 이를 공유하여 사업추진에 활용

다. 단계별 추진 내용

① 가축식별 시스템 구축(출생에서 도축까지)

- 귀표의 배포와 장착
 - 귀표는 주관기관이 농가의 사육두수 및 기부착 두수 등을 감안, 추가 소요분을 파악하여 사전에 지역축협 또는 브랜드경영체의 신청을 받아 제작 배포(지역축협에서는 귀표 수불관리대장을 작성 보관)
 - 귀표는 한쪽 귀에 1조를 부착(전면 실시시는 양쪽 귀에 부착계획)하되
 - 지역축협이 주체가 되고, 협의에 의하여 브랜드경영체가 할 수도 있음
 - 부착된 귀표가 떨어질 경우 다시 사용할 수 없고, 동일한 개체식별번호의 귀표(민이표)를 부착
- 기존 소의 개체 신고(소 개체식별대장 작성)
 - 현재 소를 사육하고 있는 소유자(성명, 전화번호, 주소, 고유번호, 사육지 등) 및 소유가축(개체식별번호, 생년월일, 성별, 축종, 모개체식별번호) 현황을 신고
 - 신고방법 : 브랜드경영체 또는 농가 등이 웹사이트에 전산 입력

○ 송아지 출생 신고

- 소유자(성명, 전화번호, 주소, 고유번호, 사육지 등) 및 출생한 송아지 현황(개체식별번호, 출생일, 성별, 축종, 모개체식별번호)을 신고
- 신고 시기 및 방법 : 출생 후 2주일 이내, 웹사이트에 전산입력

○ 이동(전출·전입·폐사) 신고

- 양도·양수자, 당해 소의 개체식별번호, 이동사유(전출, 전입, 폐사), 이동일 등을 신고
 - * 폐사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는 것과는 별개로 신고하여함
- 신고 시기 및 방법 : 1주일 이내, 웹사이트에 전산입력

○ 도축 신고

- 도축장 검사관은 귀표 부착 여부 및 도축대상 소를 확인하고 귀표 미부착 소에 대해서는 이력 추적시스템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며, 위생검사결과 합격여부 전산입력
- 도축장 영업자는 도축하는 소의 이력을 전산 조회하여 당해 소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도축 후 개체식별번호, 도축번호 및 도축일 등 도축결과를 전산 입력
- 도축장에 파견된 등급판정사는 당해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하고, 등급판정내역(육질등급 및 육량등급 등)을 전산 입력

② 유통단계 개체식별번호 전달(도축에서 최종 판매단계까지)

○ 도축장

- 도축장 영업자는 당해 소의 지육(내부갈비면)에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라벨을 출력하여 부착하고, 이동에 따른 훼손을 방지

- 해당 도체가 반출될 경우 주관기관 전산망을 통하여 반출자의 인적사항, 상호, 주소를 신고하고, 관계 장부 및 거래내역서(거래명세서, 영수증 등)에 개체식별번호를 반드시 기록

○ 가공장

- 가공장 영업자는 부분육(정육)과 포장에 도축된 소의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라벨을 출력하여 부착
- 부분육 등의 판매 또는 이동시는 상대방의 상호, 주소, 성명, 부위명 등을 주관기관 전산망에 입력하고, 관계 장부 및 거래내역서(거래명세서, 영수증 등)에 개체식별번호를 반드시 기록

○ 판매장

- 판매하는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는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
 - 소비자가 쇠고기의 개체이력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정보전달 검색서비스 제공을 권장
- 음식점 영업자 등이 원할 경우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거래내역서를 발급

○ 음식점

- 브랜드경영체 등이 희망할 경우 시범사업에 포함 실시
- 당해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를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

라. 교육·홍보

- 참여농가, 브랜드경영체, 도축장 등 사업장 및 추진기관 등 교육 실시
- 언론매체, 시연회 등을 통한 홍보 실시

마. 행정사항 등

- 본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실시요령 (축산물위생과-5709, '04.10. 7)에 따름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축산물위생과(02-500-1925 ~ 6)
 - 축산물등급판정소 : 홍보전산부(031-390-5561, 5563)
 - 농협중앙회 : 축산유통부(02-397-7905, 7926)

⑦ 축산물브랜드컨설팅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물위생과(과장 석희진, 사무관 이상철)입니다.

1. 목적

- 브랜드 경영체의 경영, 재무, 마케팅 등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경영체의 시장지향성 강화·경쟁력 제고 및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도모
- 규모화·전문화된 브랜드 경영체를 중점적으로 육성·지원하여 우수 축산물 브랜드 벤치마킹 유도

2. 시책 및 추진방향

- 산지축산물생산유통·지원사업(브랜드사업) 지원 경영체를 우수 브랜드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문컨설팅 지원
- 대부분 브랜드 경영체에서 취약한 경영, 마케팅 등에 대한 관리수준을 높혀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축산업 부가가치 제고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예산안)	2006년이후
사업량		-	-	-	10개소	10개소
사 업 비	계	-	-	-	1,000	1,000
	보 조	-	-	-	500	500
	지방비	-	-	-	200	200
	자부담	-	-	-	300	300

5.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배 경

- 소비자의 기호가 위생·안전·품질로, 유통형태는 지육에서 부분육·소포장으로, 유통경로는 대형할인점 중심으로 변화하는 등 축산물 유통 환경의 급속한 변화가 진행
- 농장에서 식탁까지 브랜드관리가 우수한 브랜드를 중점 육성하여 소비자와 유통업체로부터 신뢰받는 선진화된 축산물 유통체계를 구축

(2) 지원대상

- 브랜드사업(산지축산물 생산유통지원사업) 선정 경영체
- 브랜드경진대회 수상경영체 및 우수브랜드인증 경영체에 우선 지원

(3)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 사업량 : 10개소
- 사업단가 : 1억원 이내(사업비가 초과하는 경우 자부담으로 충당)
- 지원비율 : 기금보조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나. 2005년도 사업비(예산) 내용

(단위: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보 조	지방비	자부담
축산물브랜드 컨설팅 지원	10개소	1,000	500	200	300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국 축산물위생과(전화 : 02-500-1921 ~ 2)
- 시·도 : 축산담당부서(축산과, 축산행정과 등)

다. 사업시행

(1) 지원대상 경영체 선정

- 농림부는 "브랜드컨설팅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원대상 경영체를 공모
- 사업 지원을 원하는 경영체는 컨설팅신청서(별지서식1)를 작성하여 시·도를 경유하여 농림부에 신청
 - 사업신청 경영체는 컨설팅 의뢰 이유 및 목적, 컨설팅 희망 분야 및 과제, 컨설팅 수행을 위한 경영체의 준비사항, 컨설팅을 통한 기대효과 등이 포함된 자율양식의 컨설팅 의뢰신청서를 작성·제출
 - 시·도는 사업신청 경영체 심사평가표(별지서식2)를 작성하고 순위를 결정하여 농림부에 제출
- 농림부는 "브랜드 컨설팅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경영체 선정, 통보

(2) 축산물브랜드 컨설팅업체의 지정

- 농림부는 축산물브랜드 컨설팅업체를 공모
- 사업 지원을 원하는 컨설팅업체는 컨설팅업체지정신청서(별지서식3)를 작성하여 농림부에 신청
 - 컨설팅업체는 컨설팅 전문인력 및 컨설팅 실적 등 컨설팅업체를 심사·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제출
- 농림부는 컨설팅업체 심사평가표(별지서식4)에 의거 “브랜드 컨설팅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컨설팅업체를 지정,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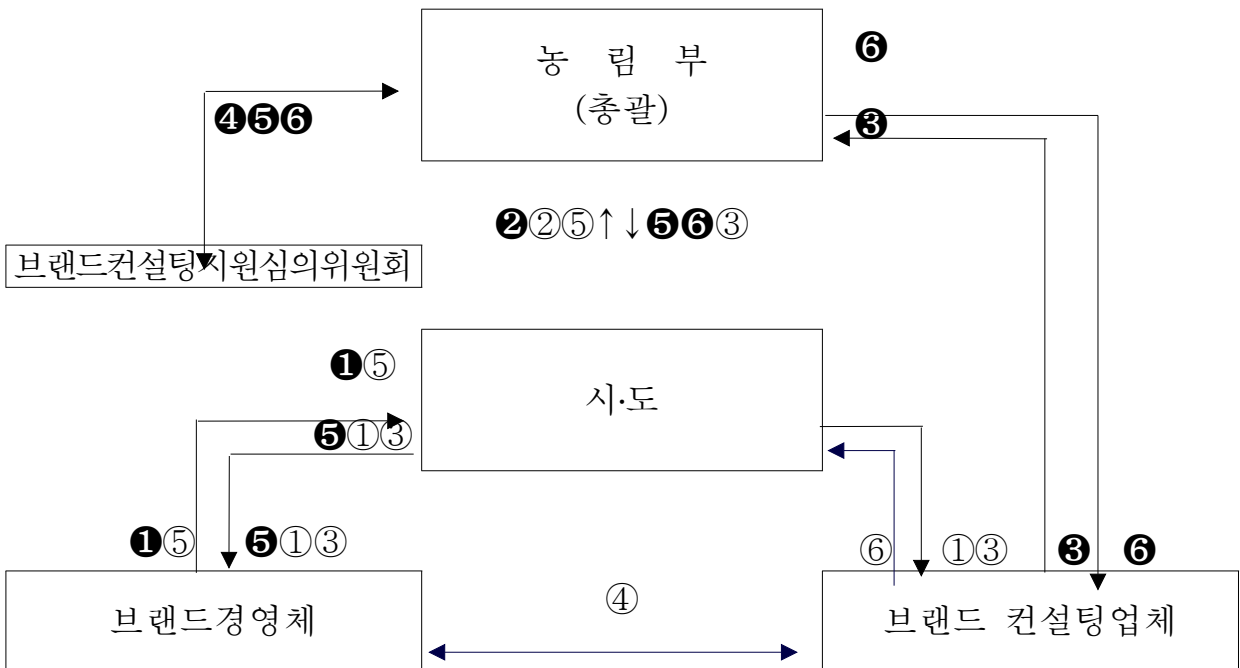
(3) 컨설팅 업체의 선정 및 승인

- 시도에서는 시·도 담당자, 해당 브랜드경영체가 포함된 7인 이상의 브랜드컨설팅심사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운영
- 시·도는 농림부가 지정한 2개 이상의 컨설팅업체가 참여하는 공개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여 컨설팅업체를 선정, 선정결과를 농림부에 보고(1개 업체만 신청한 경우에도 공개 제안설명회를 개최하여 가부를 결정)
 - 공개입찰 진행과정과 컨설팅업체 평가내역 및 선정된 컨설팅업체의 컨설팅제안서 첨부
- 농림부는 컨설팅업체 선정과정이 공정하고 선정된 컨설팅업체의 제안서가 지원대상경영체가 제출한 컨설팅의뢰신청서와 일치하며 그 내용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컨설팅 업체 선정을 승인
 - 진행과정 및 사업내용상 다소의 문제점이 있을 경우 수정·보완 조건을 첨부하여 승인

(4) 컨설팅 계약의 체결 및 시행

- 농림부의 승인을 얻은 지원대상 경영체와 컨설팅업체는 [붙임1]컨설팅 계약서 필수 포함 사항이 명시된 계약서를 체결, 사업 시행
- 농림부는 "브랜드컨설팅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농림부 및 시·도 담당자, 지원대상 경영체, 컨설팅업체가 공동으로 참가하는 Workshop('05.6월)을 개최하여 원만한 사업시행과 컨설팅 관련 기관간의 유기적 협력 및 정보교환을 유도

(4) 사업추진절차



< 사업대상 경영체 선정 및 컨설팅업체 지정 >

- ① 브랜드 경영체 사업신청(브랜드경영체→시·도, '04.12월)
- ② 브랜드 경영체 심사평가표 작성 및 우선 순위 결정 보고(시·도→농림부, '05.1월)
- ③ 브랜드 컨설팅업체 지정신청(컨설팅업체→농림부, '05.1월)
- ④ "브랜드컨설팅지원 심의위원회" 구성(농림부, '05.2월)
- ⑤ 브랜드 경영체 선정, 통보(농림부→시·도→브랜드경영체, 05.2월 말)
- ⑥ 브랜드 컨설팅업체 지정, 통보(농림부→시·도, 컨설팅업체, '05.2월 말)

<컨설팅 계약의 체결 및 사업시행>

- ① 공개 제안설명회 개최(시·도, '05.3월 초)
- ② 컨설팅업체 선정, 보고(시·도→농림부, '05.3월 중순)
- ③ 컨설팅업체 선정 승인(농림부→시·도→브랜드경영체, 컨설팅업체, 05.3월 중순)
- ④ 컨설팅계약 체결 및 컨설팅 시행(브랜드경영체↔컨설팅업체, '05.4월~'06.3월)
- ⑤ 사업완료결과 보고(브랜드경영체 → 시·도 → 농림부)
- ⑥ 사업완료후 컨설팅 결과 보고서 제출(컨설팅업체→시·도)(4) 사업추진절차
- (5) 사업비 집행방법

◦ 시·도는 경영체 자부담이 보조금보다 우선하여 집행토록 조치 및 확인

- 시·도는 지원대상경영체의 동의하에 컨설팅업체에 직접 지급(컨설팅계약체결시 계약서에 명기)
 - 지급시기는 월별·분기별, 사업완료후 등으로 선택하여 지급 가능
 - 시·도는 경영체 사업실적에 따른 보조금 신청시 현장확인 후 지급
- ※ 시·도는 사업비 한도액 배정후 농협 촉발기금사무국에 지급 요청

라. 사업비 정산

- 시·도지사는 회계연도 종료 혹은 계약기간 종료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1) 사후관리기관 :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 경영체 및 컨설팅업체의 시장·군수의 협조를 얻어 [붙임2] 컨설팅 필수 이행항목 등 계약 쌍방의 계약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컨설팅 성과를 점검

(2) 컨설팅 추진상황 및 컨설팅결과 보고

- 컨설팅업체와 지원대상 경영체는 방문·전화·서신·전자우편 기타 방법에 의해 컨설팅을 행할 때마다 그 주요내용을 컨설팅일지(별지서식5)에 기록 관리
 - 시·도지사 등 관련공무원의 열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
- 컨설팅업체는 사업추진이후(계약후) 분기별 추진상황(별지서식6)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사업완료 후에는 15일 이내에 컨설팅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
 - 사업완료후 결과보고서에는 주요 경영지표, 생산성·수익성 등 경쟁력 관련 지표의 변화, 경영개선 달성 정도, 마케팅 개선사항, 경영상 애로 사항에 대한 컨설팅의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3) 사업 취소

1) 지원취소

- 시·도지사는 컨설팅추진상황보고 및 자체 조사를 통해 컨설팅내용이 부실한 경우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촉구하고, 그 후 개선이 없을 때에는,
 - 귀책사유가 컨설팅업체에 있을 경우 실비를 제외한 자금을 회수하고, 귀책사유가 지원대상 경영체에 있을 경우 컨설팅 대상에서 제외 및 컨설팅업체로부터 실비를 제외한 자금을 회수
- 컨설팅 보조지원금을 컨설팅사업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된 경우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컨설팅대상 경영체에서 제외

2) 컨설팅업체의 자격기준 취소

- 컨설팅업체가 사업추진중 자격요건에 흠결이 발생한 경우 지원자금 전액 회수
 - 다만, 흠결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1차 보완을 촉구한 후 후속조치를 취함
- 사업신청시 또는 컨설팅관련 보고시 컨설팅업체가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부담을 받지 않고 컨설팅을 한 경우,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브랜드 컨설팅 참여 제한

나. 보고사항

- 시·도지사는 컨설팅계약체결, 컨설팅사업 추진상황 및 컨설팅결과에 대해 농림부에 보고

6. 200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도 축산담당부서(축산과, 축산행정과 등)

나. 신청자격

- 브랜드사업(산지축산물 생산유통지원사업) 선정 경영체
 - 브랜드경진대회 수상경영체 및 우수브랜드인증 경영체에 우선 지원

[별지서식 1]

브랜드경영체 컨설팅 사업신청서

(브랜드경영체 보관용)

법 인 명		대표자명		
브랜드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일		'04년판매금액		
전화		F A X		
홈페이지		E-mail		
컨설팅신청 핵심과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정책자금 지원현황	연도	자금종류	지원내역	금액(백만원)
			보 조	
			응 자	
			보 조	
			응 자	
			보 조	
			응 자	
			보 조	
		응 자		
컨설팅경험	연 도	컨설팅업체	주요내용	

[별지서식 2]

① 축산물브랜드컨설팅 경영체 심사평가표

평가항목		등급				등급 심사 기준	평점
대분류	중분류	A	B	C	D		
1. 컨설팅 목적 (25점)	자기진단	5	4	3	2	○경영체가 당면한 문제점에 대한 자기진단을 하고 있으며 그 진단이 정확한가?	
	브랜드전략의 적정성	5	4	3	2	○현재 추진하고 있는 브랜드 전략이 경영체 여건과 정책방향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게 설정되었는가?	
	컨설팅목적의 적정성	5	4	3	2	○컨설팅을 요청한 목적이 컨설팅정책방향과 일치하는가?	
	컨설팅 과제의 적정성	5	4	3	2	○컨설팅을 요청한 주요 핵심과제 설정이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적절하게 설정되었는가?	
	컨설팅 준비정도	5	4	3	2	○컨설팅업체와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전담팀(전담자)를 선정하는 등 사전 준비계획이 충분한가?	
2. 생산혁신 실적 및 계획 (20점)	생산기반	5	4	3	2	○브랜드업체로 성장하기 위한 충분한 생산기반을 보유하고 있는가?	
	조직화 정도	5	4	3	2	○안정적 생산을 위한 농가조직화를 추진하고 있거나 향후 조직화를 추진할 계획이 있는가?	
	3통의 정도	10	8	6	4	○혈통, 사료 및 사양관리의 통일 정도는 어떠한가?	
3. 유통혁신 실적 및 계획 (30점)	도축가공시설	5	4	3	2	○LPC등을 통한 위생적인 도축·가공을 하고 있는가?	
	상품화 노력	5	4	3	2	○고품질 등 소비자 신뢰를 반영한 상품화 노력이 충분한가?	
	브랜드 관리	5	4	3	2	○브랜드를 개발하고 소비자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가?	
	판매	10	8	6	4	○대형유통업체 등과 구체적인 판매실적 및 계획이 있는가? 지속적 공급계약을 맺고 있는 거래처 유무·실적	
4. 사업의 성공가능성 (25점)	사업조직의 안정성	10	8	6	4	○사업조직이 축산물브랜드사업을 수행할만한 조직인가? 경영실적 및 운영실태평가 결과는 어떠한가?	
	사업추진의지	10	8	6	4	○축산물브랜드사업 추진의지는 충분한가?	
	전문인력확보	5	4	3	2	○전문경영인, 품질관리, 마케팅 등 전문인력 확보 여부 및 계획	
합 계		100점 만점				점수 계	

[별지서식 3]

축산물브랜드컨설팅사업 참여업체 지정신청서

업 체 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설 립 일						'04년컨설팅계약액		
전 화						F A X		
홈페이지						E-mail		
컨설팅분야								
인력보유현황	박사	석사	학사	유자격자	기타인력	계		
내부전문인력								
외부전문가풀								
주요컨설팅 추진실적								

이상과 같이 농림부가 시행하는 축산물브랜드컨설팅지원사업에 참가하고자 하오니 컨설팅서비스 공급업체로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공급업체명 :

대 표 자 : (인)

- 별첨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회사소개서 1부(자율양식)

※ 회사소개서에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컨설팅 추진실적 반드시 포함

[별지서식 4]

② 축산물브랜드컨설팅 컨설팅업체 심사평가표

평가항목		등급				등급 심사 기준	평점
대분류	중분류	A	B	C	D		
컨설팅 업체 (15점)	조직안전성	5	4	3	2	○설립 5년이상, 3년이상, 1년이상, 1년미만 ○사업자등록여부	
	브랜드컨설팅 전문성	10	8	6	4	○브랜드개발, 홍보전략, 마케팅전략 수립능력 ○조직화, 계열화 전략 수립 능력 ○상품화, 시장조사분석, 경영분석 능력	
컨설팅 제안 (25점)	컨설팅이해	5	4	3	2	○축산물브랜드사업 이해도 ○컨설팅업체의 역할에 대한 포지셔닝	
	컨설팅목적	5	4	3	2	○컨설팅 정책방향과 일치하는가? ○컨설팅 목적이 명확한가?	
	컨설팅과제	5	4	3	2	○컨설팅 핵심과제 설정이 적정한가?	
	컨설팅준비	10	8	6	4	○컨설팅 추진전략과 세부과제 설정 능력 ○경영체와의 협조관계 구축 방안 (회의등) ○생산, 가공, 브랜드, 시장 연계분석 능력	
컨설팅 실적 (30점)	매출실적	5	4	3	2	○'04년 매출 (세금계산서 등 증빙가능 매출, 최근3년) - 6억이상, 4억이상, 2억이상, 2억이하	
	축산부문실적	10	8	6	4	○축산물브랜드경영체 컨설팅 실적(최근3년) - 5개이상, 3개이상, 2개이상, 1개이하	
	경영관리 컨설팅 실적	5	4	3	2	○경영체 경영진단 중심의 컨설팅 실적(최근3년) - 5개이상, 3개이상, 2개이상, 1개이하	
	생산관리 컨설팅 실적	5	4	3	2	○계열화, 사양관리 분야의 컨설팅 실적(최근3년) - 5개이상, 3개이상, 2개이상, 1개이하	
	브랜드마케팅 컨설팅실적	5	4	3	2	○브랜드마케팅 컨설팅 실적(최근3년) - 5개이상, 3개이상, 2개이상, 1개이하	
컨설팅 인력 (30점)	컨설턴트총수	5	4	3	2	○10인이상, 7인이상, 5인이상, 5인이하	
	컨설턴트 전업비율	5	4	3	2	○80%이상, 60%이상, 40%이상, 40%이하	
	컨설턴트경력	5	4	3	2	○컨설턴트 컨설팅 경력 총계 - 20년이상, 15년이상, 10년이상, 10년이하	
	컨설턴트 전문성	10	8	6	4	○생산 및 사양관리, 경영진단, 마케팅관리, 조직관리, 브랜드관리 등 컨설팅 각분야 를 담당할 전문 컨설턴트 보유 여부	
	외부전문가	5	4	3	2	○전문성 보완 외부 전문가 및 기관확보정도	
합 계		100점 만점				점수 계	

[붙임 1]

컨설팅 계약서 필수 포함 사항

구 분	내 용
◦계약금액 및 기간	- 컨설팅 총액 및 계약기간
◦컨설팅 기대효과	- 기대효과에 대한 약정 - 기대효과에 대한 달성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계약 쌍방간 상호검증의 방법
◦컨설팅 내용 및 방법	- 계약 쌍방간 핵심 컨설팅 과제 사전합의 - 월별 정기방문회수, 부정기 방문회수 등 컨설팅 방법에 대한 규정
◦컨설팅 대금 지급방법	- 자부담분 우선 지급 명시 - 계약금, 중도금, 잔금별로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지급자(경영체 혹은 행정기관)를 명시 - 보조금의 경우 지침상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행정기관이 직접 컨설팅기관·업체 등에 지급함을 명시
◦분쟁해결방법	- 계약의 중도해지, 지원결정의 취소에 따른 사업중단시 변상·회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실비’의 범위 - 문제 발생시 책임의 소재에 대한 규정(기관·업체의 부속기관의 경우는 소속기관·업체에 계약이행 책임이 있음을 명시) - 분쟁 또는 이견 발생시 해결방법과 절차에 대한 규정 - 경영체와 컨설팅업체간의 가계약서가 사업주관에 의해 승인 받지 못할 경우 동계약의 당사자간 효력 등에 대한 내용

컨설팅 필수 이행항목

구 분	보고서 내용(필수항목)	비 고
중간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 핵심과제 선정 ◦ 축산물 브랜드사업 실태 조사 및 진단 ◦ 문제점 도출 및 분석 ◦ 해결방안 ◦ 보고회 및 업무협의회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협의회 - 조사 및 분석내용 검토회의 - 진단 및 문제점 분석내용 검토회의 - 해결방안 도출 및 내용 검토회의 - 중간보고회 	
최종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보고서의 내용(필수항목) 포함 ◦ 조합에 제시한 실행 계획 ◦ 조합에서 실행한 사업 내용 ◦ 실행과정상 시행착오 및 지도사항 ◦ 컨설팅 성과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계열화 확대 정도 - 브랜드 축산물 출하확대 ◦ 보고회 및 업무협의회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한 해결방안의 사업성 검토회의 - 조합사업으로 실행여부 검토회의 - 시행착오 및 수정안 검토회의 - 사업추진현황 및 효과 검토회의 - 사업추진실태 점검회의 - 최종보고회 	

[별지서식 5]

컨설팅 일지

연월일	컨설팅방법	컨설턴트명	컨설팅내용	특기사항	서명	
					경영체	컨설턴트
		(총 인)				
		(총 인)				
		(총 인)				
		(총 인)				
		(총 인)				
		(총 인)				
		(총 인)				
		(총 인)				
		(총 인)				
		(총 인)				

컨설팅 추진상황 보고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컨설팅경영체명		컨설팅업체명	
브랜드명		책임컨설턴트	
전 화		전 화	

구 분	컨설팅 주요내용	성과와 문제점
업무협의회		
컨설팅 내용 및 사업반영		
임직원, 조합원 교육·지도		
문 제 점 (건의사항)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의 축산물브랜드컨설팅
추진상황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제출일 : 년 월 일

확인자 : 책임컨설턴트 (인)

 컨설팅대상경영체 (인)

※ 작성기준 : 컨설팅기간 중 매분기별 작성. 다음달 5일 이내 보고

※ 보 고 처 : 시·도 컨설팅 담당부서 경유 농림부 축산물위생과로 보고

① 가축질병근절대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가축방역과(과장 김창섭, 서기관 양흥구), 축산물위생과(과장 석희진, 사무관 이상진)입니다.

1. 목 적

- 민간방역기능 활성화를 통하여 민·관 공동방역체계를 확립,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방역활동 추진 및 선진국형 가축방역체계로 전환
- 구제역·돼지콜레라·조류인플루엔자 등 주요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을 통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방지 및 경쟁력 제고
- 도축장에서 생체·해체검사 및 정밀검사 등을 위한 전문 검사인력 확충을 통한 선진국형 도축검사체계로 전환
- 도축장 출하소의 SRM 제거 및 정밀검사 강화를 통한 국민보건 향상
- 가축방역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성 유도과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평가·포상 실시

2. 시책 및 추진방향

- 민·관 공동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방역단체 운영 지원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운영비·인건비·자산취득비 등 지원
- “전국일제소독의 날”의 정례적 운영 지원
 - 소독약품 및 마을단위 공동방제단(10,355개단) 운영비 지원
- 가축전염병 발생 및 방역규정 위반자 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 사안별로 20~100만원 포상금 지급
- 도축장 출하소의 SRM 제거시설·장비 지원(도축장 2개소 선정)
- 가축방역대책 추진 우수 지자체 평가·포상 실시

3.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및 축산법 제39조(기금의 용도)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예산안)	2006년 이후	
사업량							
사 업 비	계	28,011	20,075	26,052	27,077	34,678	30,500
	보 조	24,755	12,071	18,845	19,437	25,948	23,000
	용 자	-	-	-	-	-	-
	지방비	-	6,300	6,300	7,390	8,530	7,500
자부담	3,256	1,704	907	250	200	-	

5.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운영지원사업
 - 사업내용 : 방역본부 운영비·인건비·자산취득비 등 지원
 - 지원대상 : 본부(19명), 8도본부(32명), 40출장소(방역요원 205명, 도축검사 보조원 100명) 운영비·인건비 및 기자재 지원
 - 지원조건 : 운영비·인건비 및 기자재 100% 보조(단, 출장소 방역요원·도축검사보조원 인건비는 지방비에서 20% 부담)

※ 도축검사보조원 인건비 지원내역(별표 1)

- 전국일제소독의 날 운영지원사업
 - 사업내용 : 매주 수요일을 “전국일제소독의 날”로 지정, 양축농가의 자율적인 일제소독 지도
 - 소독이 상대적으로 소홀한 소규모 농가는 소독약품 공급(30회) 및 공동방제단(10,355개단) 운영(운영비 지원 연 21회)으로 소독 지원
 - 지원대상 : 농협(소독약품) 및 마을단위 공동방제단(운영비)
 - 지원조건 : 소독약품(국비 100%), 공동방제단 운영비(국비 50, 지방비 50)

- 전염병 발생신고·방역관리 위반농가 신고포상금 지급사업
 -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광우병 등 발생신고자, 예방접종·이동제한 등 방역규정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건당 20~100만원, 국비 100%)
- 도축장 출하소의 SRM 제거시설·장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축장 2개소 선정 지원
 - 지원조건 : 기금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가축방역 우수지자체 포상사업
 - 지원대상 39개소(도 3, 시·군 30) 평가 및 포상(국비 100%)

나. 2005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34,678	25,948	25,948	-	8,530	200
방역본부운영지원		12,312	10,705	10,705	-	1,607	-
◦인건비		9,884	8,277	8,277	-	1,607	-
-정규직(본부·도본부)	51명	1,849	1,849	1,849	-	-	-
-비정규직(방역요원)	205명	5,507	4,406	4,406	-	1,101	-
-비정규직(도축검사보조원)	100명	2,528	2,022	2,022	-	506	-
◦운영비·자산비		2,428	2,428	2,428	-	-	-
-운영비		1,623	1,623	1,623	-	-	-
-자산취득비	차량등 174점	805	805	805	-	-	-
채혈기자재	주사기등 750천개	798	798	798	-	-	-
신고포상금	50건	10	10	10	-	-	-
공동방제단지지원	21회	13,046	6,523	6,523	-	6,523	-
전국일제소독약품	30회	6,231	6,231	6,231	-	-	-
가축방역특별포상	39개소	281	281	281	-	-	-
SRM제거시설·장비	2개소	2,000	1,400	1,400	-	400	200

< 추진체계 >

세부사업명	사업주관기관 (담당부서명)	사업시행절차
방역본부 운영지원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역본부 운영비·인건비 및 기자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비 : 본부·도본부·출장소 운영비 인건비 : 본부(19명), 8도본부(32명), 40출장소(305명) 장비 : 방역차량·소독기·컴퓨터 등 방역본부는 사업계획에 의거 농장예찰·채혈, 예방주사·소독지원, 도축검사보조 등 실시
전국일제 소독의 날 운영	시·도 (축산과) 농협중앙회 (축산건설팀부, 축발기금사무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협중앙회에서 지역축협을 통해 공동방제단에 일제 소독의 날 소독약품 구매 공급 소규모농가 소독지원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협중앙회에서 지역축협을 통해 지급(50%) 시·도(시·군)에서 지방비 지급(50%)
신고포상금	시·도 (축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지사는 가축전염병 발생 신고자 및 방역관리 위반 농가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당 지급액 : 20 ~ 100만원
SRM제거 시설·장비	시·도 (축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축장별 출하소 SRM 제거시설·장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2개소 시범운영
가축방역 특별포상	농림부 (가축방역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대상 : 9개도, 가축위생시험소(44개소), 시·군 평가지기 : 12월 평가방법 : 가축방역대책 추진실적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

※ 사업별 세부실시요령은 추후 별도 시달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 주관기관

세 부 사 업	사후관리 주관기관
방역본부 운영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국일제소독의 날 운영지원	농 협
신고포상금	시·도
SRM 제거시설·장비	시·도
가축방역 특별포상	농림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방역지원본부 방역장비 등 취득재산	-재산 구입일로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별표에 의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 적용	-사후관리 기간중 에는 처분불가 및 타용도 사용불가	-사후관리 기간중에 재산파손 등으로 사용불가시는 자담 으로 대체 구입 -사업중단 및 사업 폐기 등으로 재산의 용도가 소멸될 경우 기금관리자는 관리 전환 및 회수처분 할 수 있음

나. 사업실적 보고

- 추진실적 보고기한 및 보고서식 등은 추후 사업별 세부실시요령 시달시
별도 송부 계획
- 사업완료 및 정산 보고
 - 세부사업별 주관기관은 2006. 2월말까지 농림부에 보고
 - 단, 공동방제단 지원사업은 2006. 1월말까지 농협(축발기금사무국)에서
농림부 보고
 - ▶ 시·군은 정산실적을 지역축협에 2006.1.20까지 제출

별표 1. 도축검사보조원 인건비 지원

(단위 : 천원)

시·도	보조원수	도축검사보조원인건비			비 고
		기금	지방비	계	
서울	3	60,666	15,166	75,832	○도축검사보조원 인건비 - 보조원수 : 100명 - 월 2,106,434원/인 (임금, 중식보조비, 퇴직급여금, 4대보험) - 연간 2,527,721천원 - 산출기준 ·1인×2,106,434원/1월×12월(1년) - 지원기준 ·기금 80%, 지방비 20% ○ 검사보조원 배치기준 - 전국 도축장(소·돼지)에 각 1명씩 배치, 도축물량이 많은 서울·경기·충북·충남에 각 1~2명씩 추가 배치
부산	-	-	-	-	
대구	1	20,222	5,055	25,277	
인천	2	40,444	10,111	50,555	
광주	2	40,444	10,111	50,555	
대전	1	20,222	5,055	25,277	
울산	2	40,444	10,111	50,555	
경기	14	283,105	70,776	353,881	
강원	11	222,439	55,610	278,049	
충북	10	202,217	50,555	252,772	
충남	11	222,439	55,610	278,049	
전북	9	181,996	45,499	227,495	
전남	11	222,439	55,610	278,049	
경북	11	222,439	55,610	278,049	
경남	11	222,439	55,610	278,049	
제주	1	20,222	5,055	25,277	
계	100	2,022,177	505,544	2,527,721	

② 축산물검사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물위생과(과장 석희진, 사무관 이상진)입니다.

1. 목 적

- 축산물(식육 및 우유 등)의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생관리 강화로 소비자 신뢰 및 국민위생 수준 제고

2. 시책 및 추진방향

- WTO/SPS 협정에 따라 국내·외 축산물의 차별없는 검사를 위한 축산물 검사장비 현대화 및 노후장비 교체 지원
-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의 생산·처리를 위한 위생검사 및 관리 강화

3. 근거법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축산물의 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축산물의 검사기준)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예산안)	2006년 이후
사업량		-	98점	93점	73점	360점
사 업 비	계	59,526	5,374	5,432	5,515	27,600
	보 조	31,019	3,106	3,135	3,189	16,000
	용 자	-	-	-	-	-
	지방비	28,507	2,268	2,297	2,326	11,600
	자부담	-	-	-	-	-

5.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축산물검사 장비 지원(42종 73점)

- 사도지사 소속 축산물위생검사기관(시·도 축산위생시험소 등)에 축산물 중 잔류물질검사, 미생물검사, 원유검사, 축산물가공품검사 등을 위한 축산물 검사장비 구입예산 지원
- 장비구입 내역(별표 1)
 - HPLC 등 잔류물질 검사장비 11종 15점
 - 지방산분석기 등 축산물가공품 검사장비 6종 8점
 - 체세포수검사기 등 원유 검사장비 3종 6점
 - 미생물분리동정기 등 미생물 검사장비 15종 32점
 - 초음파세척기 등 기타 검사장비 7종 12점

(2) 원유검사보조원 인건비 지원(38명 328,946천원)

- 원유검사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유검사실시기관별 3명씩 (제주도는 2명), 검사물량이 많은 경기·충남·경남에 각 1명씩 추가하여 검사보조원 지원
- 검사보조원 지원내역(별표 2)

(3) 검사장비 유지·보수비(323,400천원)

- 검사성적의 객관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노후화 된 검사장비 및 정밀 검사장비의 유지·보수로 검사의 신속성·정확성을 통한 민원해소 및 축산물 검사의 공정성 확보
- 유지·보수비 지원내역(별표 3)

(4) 검사재료비 지원(863,000천원)

- 도축검사 수행을 위한 도축검인용 색소 구입비 지원
 - 검사대상 : 도축되는 소, 돼지 등
 - 사업량 : 소 610천두, 돼지 16,000천두
 - 검사기관 : 시·도지사 소속 축산물위생검사기관

- 원유검사공영화를 위한 검사재료비 지원
 - 검사대상 : 원유중 세균수, 체세포수, 유지방 등
 - 사업량 : 약 1,360천건
 - 세부검사내용
 - 원유검사 : 원유검사공영화 실시요령 참조
 - 검사기관
 - 원유검사 : 시·도지사 소속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중 원유검사실시기관
 - 검사재료비 지원내역(별표 4)

- 식육중 잔류물질검사
 - 검사대상 : 항생제, 합성항균제, 농약 등 유해잔류물질
 - 사업량 : 약 120천건(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염소고기)
 - 세부검사내용 : 식육중 잔류물질검사요령(농림부 고시) 참조
 - 검사기관 : 시·도지사 소속 축산물위생검사기관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식육중 미생물검사
 - 검사대상 : 일반세균수, 대장균수, 살모넬라균 등
 - 사업량 : 120천건
 - 세부검사내용 : 식육중 미생물검사요령(농림부 고시) 참조
 - 검사기관 : 시·도지사 소속 축산물위생검사기관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시중 유통·판매중인 축산물 수거검사
 - 검사대상 :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등
 - 사업량 : 6천건
 - 검사내용 : 검사기준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역원 고시)” 규정에 따르며, “2005년도 축산물위생감시지침” 참조
 - 검사기관 : 시·도지사 소속 축산물위생검사기관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젖소 유방염 검사
 - 검사대상 : 젖소
 - 사업량 : 49천건
 - 검사내용 : 유방염 감염 젖소의 조기발견과 발생농가에 대한 치료약제를 선정·통보하여 조기치료 유도도 원유의 위생관리 도모 (2005년도 젖소 유방염방제사업 세부실시요령)
 - 검사기관 : 시·도지사 소속 축산물위생검사기관

(5) 지원기준

- 축산물검사장비, 원유검사보조원 인건비, 검사장비 유지·보수비
 - 정률지원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축산물검사 재료비 : 국고보조 100%
- ※ 국고보조가 부족한 경우 지방비로 추가 확보 지원 가능

나. 2005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산액(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5,515	3,189	3,189		2,326	-
축산물검사재료비(1722-215-201)		863	863	863	-	-	-
자치단체경상보조(1722-215-305)		652	326	326	-	326	-
○ 원유검사보조원인건비		328	164	164	-	164	-
○ 검사장비유지보수비		324	162	162	-	162	-
축산물검사장비(1722-215-412)		4,000	2,000	2,000	-	2,000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소속 축산물위생검사기관(보건환경연구원 및 축산위생연구소 등)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물위생과(전화 : 02-500-1930/1931)
- 시·도 : 농수산유통과, 농업행정과, 농정과, 농축산과, 축산과, 축산행정과, 축정과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시·도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대상으로 검사장비운용 실태 등에 대하여 반기별 1회이상 현지점검 실시

나. 사업실적 보고

◦ 추진실적 보고

- 시·도는 사후관리를 위한 상반기 현지점검 결과와 함께 사업추진경과 보고를 '05.7.15까지 농림부에 보고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시·도는 2006.1.31까지 농림부에 보고

6. 200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사업주관 및 시행기관 : 시·도지사

나. 사업내용 : 축산물안전성검사 관련 검사장비 구입 및 원유검사에 필요한 예산 지원 등

별표 1. 2005년 시·도 축산물검사장비 구입 세부내역

(단위 : 점, 백만원)

구분	장비명	구입대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가공품 검사	지방산분석기	1	-	-	-	-	-	-	-	-	-	-	-	-	-	-	1	-
	단백질분해시스템	1	-	-	1	-	-	-	-	-	-	-	-	-	-	-	-	-
	미량성분분석기	1	-	-	-	-	-	-	-	-	-	-	-	-	-	-	-	1
	유해가스배출기	1	-	-	-	-	-	-	-	-	-	-	-	-	-	-	-	1
	정밀정온냉장고	2	1	-	-	1	-	-	-	-	-	-	-	-	-	-	-	-
	검체보관기	2	-	-	-	1	-	-	-	-	-	-	1	-	-	-	-	-
	소계	6종8점	1	-	1	2	-	-	-	-	-	1	-	-	-	-	1	2
잔류 물질	GC	1	1	-	-	-	-	-	-	-	-	-	-	-	-	-	-	-
	HPLC/MS	1	-	-	-	-	-	-	-	-	-	1	-	-	-	-	-	-
	LC/MS/MS	2	-	-	-	-	-	-	-	-	-	-	-	1	-	1	-	-
	잔류물질검사기	1	-	-	-	-	-	-	-	-	-	1	-	-	-	-	-	-
	질소발생장치	1	-	-	-	-	-	-	-	-	-	-	-	-	-	1	-	-
	원심진공농축기	3	-	-	-	1	-	-	-	-	-	-	-	-	-	1	1	-
	시료전처리기	2	-	-	1	-	-	-	-	-	-	-	-	-	-	-	-	1
	교반기	1	-	-	-	1	-	-	-	-	-	-	-	-	-	-	-	-
	조직균질장치	1	-	-	-	-	-	-	-	-	-	1	-	-	-	-	-	-
	호모게나이저	1	-	-	-	-	-	-	-	-	-	-	-	1	-	-	-	-
	원심증발농축기	1	-	-	-	-	-	1	-	-	-	-	-	-	-	-	-	-
	소계	11종15점	1	-	1	2	-	1	-	-	-	2	1	1	1	2	2	1
원유 검사	체세포수유성분검사기	1	-	-	-	-	-	-	-	-	-	-	1	-	-	-	-	-
	세균수검사기	3	-	-	-	-	-	-	-	1	1	-	-	-	1	-	-	-
	체세포수검사기	2	-	-	-	-	-	-	-	-	-	-	-	1	1	-	-	-
	소계	3종6점	-	-	-	-	-	-	-	1	1	-	1	1	2	-	-	-

구분	장 비 명	구입대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미생물검사	미생물분리동정기	3	-	-	-	-	-	-	1	-	-	-	-	-	-	2	-	-
	핵산추출기	1	-	-	-	-	1	-	-	-	-	-	-	-	-	-	-	-
	자동샘플과쇄장치	1	-	-	-	-	1	-	-	-	-	-	-	-	-	-	-	-
	단백질추출분석기	1	-	-	-	-	-	-	-	-	-	1	-	-	-	-	-	-
	ELISA washer	1	1	-	-	-	-	-	-	-	-	-	-	-	-	-	-	-
	ELISA(효소면역관독기)	1	1	-	-	-	-	-	-	-	-	-	-	-	-	-	-	-
	유전자분석기	9	-	1	1	-	1	-	1	1	-	1	-	1	1	1	-	-
	유전자영상분석기	3	-	-	-	-	-	-	-	1	-	1	-	-	-	-	1	-
	동결건조기	2	-	-	-	1	-	-	-	-	-	-	-	1	-	-	-	-
	배양기(혐기, 호기 등)	1	-	-	-	-	-	-	-	-	-	-	1	-	-	-	-	-
	원심분리기	3	-	-	-	-	-	1	-	-	-	-	1	-	1	-	-	-
	고압멸균기	1	-	-	-	1	-	-	-	-	-	-	-	-	-	-	-	-
	가열교반기	1	-	-	-	-	-	-	-	-	-	-	1	-	-	-	-	-
	건열멸균기	3	-	-	-	-	-	1	-	-	-	-	-	-	-	-	2	-
	초순수제조기	1	-	-	-	-	-	-	-	-	-	1	-	-	-	-	-	-
	소계	15종32점	2	1	1	2	3	2	2	2	-	4	3	2	2	3	3	-
기타	초음파세척기	1	-	-	-	-	-	-	-	-	-	-	1	-	-	-	-	-
	실험실자동화장치	1	-	-	-	-	-	-	-	-	-	-	-	-	-	-	-	1
	혈액분석기	2	-	-	-	-	-	-	-	-	-	-	-	2	-	-	-	-
	혈액생화학검사기	2	-	1	-	-	-	-	-	-	-	-	-	1	-	-	-	-
	혈청자동희석분주기	2	-	-	-	-	-	-	-	-	-	-	-	-	-	1	1	-
	초저온냉동고	3	-	-	-	-	-	-	-	1	-	-	-	-	-	1	1	-
	냉동고	1	-	-	-	-	-	-	-	-	-	-	-	1	-	-	-	-
	소계	7종12점	-	1	-	-	-	-	-	1	-	-	1	4	-	2	2	1
총 계	종수/대수	42종73점	4	2	3	6	3	3	2	4	1	6	7	8	5	7	8	4
	금액	4,000	126	114	114	114	114	114	114	460	260	260	460	260	460	260	460	310

※ 축산물검사장비 예산 : 4,00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별표 2. 원유검사실시기관 검사보조원 인건비 지원

(단위 : 천원)

시·도	보조원수	원유검사보조원인건비			비 고
		국비	지방비	계	
서울	-	-	-	-	○ 원유검사보조원 인건비(1인당) - 보조원수 : 38명 - 1일 28,855원 - 연간 328,946천원 - 산출기준 ·1인×28,855원/1일×300일(1년) - 지원기준 ·국비 50%, 지방비 50% ○ 검사보조원 배치기준 - 원유검사실시기관으로 지정된 12개 검사기관에 각 3명씩(제주도는 2명) 배치, 검사물량이 많은 경기·충남·경남에 각 1명씩 추가 배치 ○ 12개 검사기관 현황 - 경기 2, 강원 1, 충북 1, 충남 2, 전북 1, 전남 1, 경북 1, 경남 2, 제주 1개소
부산	-	-	-	-	
대구	-	-	-	-	
인천	-	-	-	-	
광주	-	-	-	-	
대전	-	-	-	-	
울산	-	-	-	-	
경기	7	30,297	30,297	60,594	
강원	3	12,985	12,985	25,970	
충북	3	12,985	12,985	25,970	
충남	7	30,297	30,297	60,594	
전북	3	12,985	12,985	25,970	
전남	3	12,985	12,985	25,970	
경북	3	12,985	12,985	25,970	
경남	7	30,297	30,297	60,594	
제주	2	8,657	8,657	17,314	
계	38	164,473	164,473	328,946	

별표 3.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 유지보수비 지원

(단위 : 천원)

시·도	검사장비유지보수비			비 고
	국비	지방비	계	
서울	5,000	5,000	10,000	○ 검사장비 유지·보수비 - 연간 323,400천원 - 배정기준 ·원유검사기관의 검사장비 과다사용 및 검사공정성 확보차원을 위한 장비 보정 등을 위하여 원유검사기관에 우선 배정 - 지원기준 ·국비 50%, 지방비 50%
부산	5,000	5,000	10,000	
대구	5,000	5,000	10,000	
인천	5,000	5,000	10,000	
광주	5,000	5,000	10,000	
대전	5,000	5,000	10,000	
울산	5,000	5,000	10,000	
경기	16,700	16,700	33,400	
강원	15,000	15,000	30,000	
충북	15,000	15,000	30,000	
충남	15,000	15,000	30,000	
전북	15,000	15,000	30,000	
전남	15,000	15,000	30,000	
경북	15,000	15,000	30,000	
경남	15,000	15,000	30,000	
제주	5,000	5,000	10,000	
계	161,700	161,700	323,400	

별표 4. 축산물검사 재료비 지원

(단위 : 백만원)

시·도	검사재료비		비 고
	국비	계	
서울	21	21	○ 검사재료비 - 연간 863,000천원 - 지원기준 ·국비 100% ※ 국고보조가 부족한 경우 지방비로 추가확보 지원 가능 ○ 검사재료비 내역 - 도축검사 검인용 색소 : 52,000천원 - 식육 잔류물질·미생물검사 : 368,000천원 - 원유검사 : 267,000천원 - 가공품검사 : 51,000천원 - 젓소 유방염검사 : 125,000천원 ※ 검사요령 제정 등에 따른 시·도별 검사물량 확정 후 재료비 배정액은 변동될 수 있음 - 미통지 금액은 검사실적/보고 등에 따라 인센티브 배정 계획
부산	21	21	
대구	21	21	
인천	21	21	
광주	21	21	
대전	21	21	
울산	21	21	
경기	126	126	
강원	60	60	
충북	64	64	
충남	85	85	
전북	66	66	
전남	66	66	
경북	62	62	
경남	62	62	
제주	25	25	
미통지	100	100	
계	863	863	

별표 5. 젓소 유방염 방제사업 보고서

(도)

(단위 : 두)

시험소별	년간계획 두수	검사결과				감염율(%)		비고
		검사목장수 (등외판정)	검사 두수	양성 두수	양성 분방수	임상 두수	준임상 두수	
계								

③ 가축방역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가축방역과(과장 김창섭, 사무관 김태용)입니다.

1. 목 적

- 가축전염병의 발생·만연 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 및 경쟁력 제고
- 인수공통전염병·기생충병 등의 근절 추진으로 국민보건위생 수준 향상

2. 시책 및 추진방향

- 민관 공동으로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재발방지 및 돼지콜레라 조기청정화를 위한 더욱 강도높은 방역시책 추진
- 예방주사, 농장간 차단방역 등은 농가 또는 민간방역단체 책임으로 추진하고 정부는 농가방역 지원을 위한 예방약·검진약품 등 공급과 질병 감염축을 색출·살처분 실시, 국가간 검역강화 등 추진
- 질병예찰 및 검색을 강화하여 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신고(전용전화 1588-4060)와 철저한 긴급방역 추진체계 구축
- 일선 방역행정기관(가축위생시험소 44개소) 인력 및 장비 지원을 확대, 방역 기능 강화
- 방역시책 추진 강화를 위하여 관련법령 및 제도 개선 추진

3.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보상금) 및 제50조(비용의 부담)
- 수의사법 제34조(연수교육)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예산안)	2006년이후
사업비	계	247,499	28,819	36,874	63,309	253,236
	보조	170,122	21,602	27,656	50,482	201,928
	용자	-	-	-	-	-
	지방비	77,157	7,197	9,218	12,827	51,308
	자부담	220	20	-	-	-

5.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긴급방역재료비 : 전염병 발생지역 소독약 및 일제소독에 소요되는 약품 공급 등
- 예방약품 등 공급 : 예방주사·검진·기생충구제, 진단키트 등 약품공급
- 예방접종 시술·채혈비 : 정부지원 예방약 접종시술비 및 소부루세병 검진 채혈비용 지원
- 의사 연수교육 : 대한수의사회의 의사 교육 실시비용 지원
- 살처분보상금 및 도태장려금 : 구제역, 돼지콜레라, 오제스키병 등
-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지원 : 방역보조원, 방역장비 등

나. 사업대상 및 지원기준

- 사업대상 : 시도(군), 가축위생시험소(44개소)
- 지원기준 : 국고 70%, 지방비 30%수준 (세부사업별로 지원기준 상이)
 - 예방주사, 검진 및 기생충구제 등 약품비 : 국비 70%, 지방비 30%
 - 살처분보상금, 혈청검사사업 등 : 국비 100%
 - 가축위생시험소 방역보조원 및 장비 지원 : 국비 50%, 지방비 50%
 - 예방접종 시술검진 채혈비 : 국비 50~60%, 지방비 40~50%

다. 2005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63,399	50,482	50,482	-	12,827	-
긴급방역재료비	-	440	440	440	-	-	-
살처분보상금	1,750천두	30,000	30,000	30,000	-	-	-
수의사연수교육	700명	40	40	40	-	-	-
예방주사 등	1,363백만두	30,855	19,015	19,015	-	11,840	-
방역장비	55점	1,974	987	987	-	987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나. 사업시행기관 : 사도(시군자치구), 가축위생시험소

-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등 : 시장·군수 또는 가축위생시험소장(지소장 포함)
- 검진·혈청검사 등 : 사도 가축위생시험소장(지소장 포함)
- 진단액 생산 공급 및 중앙단위 방역활동 : 수의과학검역원장

다. 사업시행절차

(1) 예방약 지원

- 정부지원 예방약의 종류 : 14종
 - 소 : 탄저·기종저, 전염성비기관염, 유행열, 아까바네병
 - 돼지 : 돼지콜레라, 돼지일본뇌염, 돼지전염성위장염·Rota, 돼지오제스키병
 - 개(소) : 광견병(야생동물 미끼예방약 별도), 진도개 디스토퍼심장사상충
 - 닭 : 뉴캐슬병, 마이코플라즈마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정부조달계약단가에 의거 사업계획물량을 구입한 후 관내 공수의사 등 예방접종요원을 동원, 예방주사 실시

- 지역 공동방역사업단이 구성된 사군의 경우 축종별 해당 예방약품을 사업단에 우선 지원하여 사업단에서 예방접종 실시

(2) 검진

- 정부지원 검진약품 : 6개종
 - 우결핵, 부루세라(MRT), 부루세라(Rose-Bengal), 돼지오제스키병, 추백리(평판), 추백리(ELISA)
- 가축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이 사업계획에 의거 대상농가를 방문, 검진 실시
 - 진단 등 검사결과에 대하여 해당농가 통보 등 조치

(3) 기생충 구제

- 구제사업 내역 : 3종(소진드기, 꿀벌응애류, 꿀벌노제마병)
 - 꿀벌 구제약품은 시·도지사(시장·군수)가 사업계획에 의거 한국양봉협회 시도지회와 협의하여 정부조달계약단가에 의거 구제약품을 구매, 대상 농가에 공급한 후 전국 일제구제 실시

(4) 살처분 및 도태 보상금 지급

- “살처분가축등에대한보상금·장려금지급요령(농림부고시)”에 의거, 살처분 보상금 및 도태장려금 지급대상 가축에 지급

(5) 예방접종시술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정부지원 예방약 공급 사업량중 소는 100%, 돼지는 20% 접종시술비 지원
- 접종시술비 단가
 - 소 : 두당 1,000원 (국비 600, 지방비 400)
 - 돼지 : 두당 500원 (국비 250, 지방비 250)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군별 사육농가 및 규모(두수)를 감안하여 사군별 예방접종 요원을 지정 운영
 - 동 접종요원은 정부지원 예방약으로 농가별 예방접종 실시

(6) 소 부루세라 검진 채혈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한육우를 대상으로 소 부루세라 검진을 위한 채혈비 지원
- 채혈비 단가 : 두당 3,000원(국비 1,800원, 지방비 1,200원)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군별 사육농가 및 규모(두수)를 감안하여 사군별 채혈요원을 지정 운영
 - 동 접중요원은 해당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방역관의 지시에 의거 채혈 실시

(7) 가축위생시험소 방역보조원 지원

- 가축위생시험소 본지소(44개소)에 176명의 일용직 가축방역요원 일용 임금지원
 - 시험소별 사업규모 및 여건 등을 감안, 배정인원 범위내에서 조정가능
- 동 방역보조원은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토록 할 것
 - 담당업무 : 혈청검사, 농가 채혈검사, 농가 감시 지도 등 업무 보조

(8) 광우병 진단키트 비축

- 광우병 발생시 전두수검사를 위하여 신속진단키트 일정분 비축(국립수의과학검역원)

(9) 가축위생시험소 방역장비 지원

- 지원장비종류 : 광우병검사시설·현장예찰용 PDA
 - 광우병검사시설 : 5개도 시험소×1실×366백만원×50% = 915백만원
 - 현장예찰용 PDA : 50대 × 2,870천원 × 50% = 71,750천원

(10) 수의사 연수교육 실시

- 교육 주관 : 대한수의사회
- 교육 인원 : 700명
- 교육 대상 : 공개업 및 임상 수의사 등
- 교육 내용 : 최신 대소동물 질병 진단 및 치료기술 보급 등

※ 세부사업별 사업실시요령과 예방약 및 구제약품 단가는 조달청 단가계약 체결후 별도 시달 계획

<행정 사항>

가. 사후관리

- 1차 책임 : 시장·군수, 가축위생시험소, 2차 책임 :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반기별 1회이상 사업시행기관의 추진상황 점검 평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차량 소독시설, 바이러스 검사 장비 세트, 소각시설 등 취득재산	- 재산 구입일로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별표에 의한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년수 범위기간 적용	- 사후관리 기간중에는 처분불가 및 타용도 사용불가	- 사후관리 기간중에 재산파손 등으로 사용불가시는 자담으로 대체 구입 - 사업중단 및 사업폐기등으로 재산의 용도가 소멸될 경우 자금관리자는 관리 전환 및 회수처분할 수 있음

나. 사업실적 보고

- 분기별 추진실적 : 보고서식 별첨
 - 시도지사는 분기별 익월 15일까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제출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동 실적을 집계하여 분기별 익월 25일까지 농림부 보고
- 사업완료 및 정산 보고
 - 시도지사는 2006.1.30까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제출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2006.2.15까지 농림부에 보고

2005 가축방역사업비 세부내역

(단위 : 천두수·건, 천원)

구분	축종	세부사업명	사업량		2004 국비	2005 사업비		
			'04	'05		계	국비	지방비
예방 주사	소	탄저·기종저	400	400	37,600	75,200	38,800	36,400
		전염성비기관염	300	300	195,000	302,100	201,000	101,100
		유행열	600	600	669,600	1,008,000	684,600	323,400
		아까바네병	300	300	545,100	810,000	556,500	253,500
	돼지	콜레라	43,000	43,000	2,150,000	3,182,000	2,236,000	946,000
		일본뇌염	2,000	2,000	254,000	474,000	262,000	212,000
		전염성위장염·Rota	2,000	2,000	602,000	986,000	620,000	366,000
		오제스키병	740	314	181,300	129,054	79,442	49,612
	개	광견병	1,400	1,420	554,400	887,440	577,940	309,500
		진돗개 방역	20	20	189,000	279,000	194,600	84,400
	닭	뉴캐슬병(부화장)	600,000	650,000	2,400,000	2,600,000	2,600,000	-
		뉴캐슬병(농가)	600,000	650,000	1,200,000	2,600,000	1,300,000	1,300,000
		마이코플라즈마	3,500	3,525	343,000	356,025	356,025	-
야생 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220	220	561,000	577,940	577,940	-	
	살포실시비	-	-	66,000	132,000	66,000	66,000	
소 계		1,254,480	1,354,079	9,948,000	14,398,759	10,350,847	4,047,912	
검진	소	우결핵	454	454	290,560	340,500	295,100	45,400
		부루세라(MRT)	94	100	30,330	37,800	32,800	5,000
		부루세라(RB)	80	350	34,106	225,300	115,500	109,800
	돼지	오제스키병	350	350	481,250	556,500	486,500	70,000
	닭	추백리(평판)	139	85.6	10,008	11,385	6,677	4,708
		추백리(ELISA)	-	17.4	-	45,414	44,457	957
소 계		1,117	1,007	846,253	1,216,899	981,034	235,865	
기생충 구제	소	진드기	1,000	1,000	42,000	62,000	43,000	19,000
		응애류	1,100	1,100	686,400	996,600	696,300	300,300
	꿀벌	노제마병	1,100	1,100	1,155,000	1,683,000	1,178,100	504,900
		소 계		3,200	3,200	1,883,400	2,741,600	1,917,400
가축혈청검사사업		1,419	1,419	548,219	548,219	548,219	-	
예방접종기술비		2,548	2,463	1,197,000	2,031,400	1,175,700	855,700	
소부루세라채혈비		-	260	-	780,000	468,000	312,000	
광우병진단키트		-	30	-	1,800,000	1,800,000	-	
시험소 방역보조원		176명	176명	585,200	1,350,872	675,436	675,436	
긴급방역비		-	-	400,000	440,000	440,000	-	
수의사연수교육(대한수의사회)		700명	700명	40,000	40,000	40,000	-	
살처분보상금·도태장려금		455	1,750	7,800,000	30,000,000	30,000,000	-	
시험소 방역장비				2,917,000	1,973,500	986,750	986,750	
- 광우병 검사시설		9실	5실	1,647,000	1,830,000	915,000	915,000	
- 긴급방역 기동차량		9대	-	270,000	-	-	-	
- 반입가축 검사계류장		1개소	-	1,000,000	-	-	-	
- 현장예찰용 PDA		-	50대	-	143,500	71,750	71,750	
예방약류 구매 조달수수료		-	-	132,840	138,101	138,101	-	
예방약류 구매 본부유보액(조정)		-	-	1,358,151	987,513	960,513	-	
합 계		1,258,802	1,358,538	27,656,063	58,419,863	50,482,000	7,937,863	

<별첨>

2005년 시도별 가축방역사업 세부내역

(1) 사업량 총괄표

(단위: 천두·천수)

구분	총계	예 방 주 사														
		소 계	탄저· 기종저 (혼합)	소 전염성 비기 관염	소 유 행 열	소 아 까 바 네	돼지 콜 레 라	돼지 일 본 뇌 염	돼지 전 염 성 위 장 염 (Rota)	돼지 오 제 스 키 병	광 견 병	진 도 견 디 스 템 퍼	닭 뉴 캐 트 슬 병		닭 마 이 코 플 라 즈 마	야 생 동 물 광 견 병
													부 화 장	농 가		
서울	112.7	73.5	-	-	-	-	3.5	-	-	-	70	-	-	-	-	-
부산	2,815.3	2,769.3	0.7	0.4	0.8	0.4	50	4	4	-	30	-	2,000	675	4	-
대구	962.9	872.7	3.9	2.8	5.7	2.3	190	9	9	-	20	-	-	600	30	-
인천	6,785.5	6,716.3	3.9	2.9	6	1.5	420	19	20	-	70	-	-	6,150	23	-
광주	12,276.6	12,220.6	1	0.6	1.3	0.7	43	3	3	-	4	-	10,000	2,160	4	-
대전	3,878.9	3,832.2	1	0.7	1.3	0.7	20.5	1	1	-	6	-	2,000	1,800	-	-
울산	1,831.6	1,752.1	4.5	3.1	6.2	3.3	258	13	13	-	8	-	-	1,440	3	-
경기	382,941.2	381,794	71	52	104	51	9,400	410	410	154	585	-	214,260	155,187	1,010	100
강원	24,787.4	24,327.7	26	18.5	37	20.2	2,100	88	88	-	320	-	140	21,300	70	120
충북	69,769.7	69,254.8	28	21	41.7	21.1	2,700	120	120	-	70	-	26,000	39,838	295	-
충남	215,674.7	214,740	56	41	82	41	7,900	365	365	100	20	-	120,000	85,000	770	-
전북	315,231.7	314,460.2	36	27	54	28.2	5,025	220	220	60	50	-	174,000	134,000	740	-
전남	127,562.7	126,789.7	51	39	78	41.7	4,100	190	190	-	50	20	28,000	94,000	30	-
경북	145,417.2	144,267.7	71	53	106	47.7	5,490	243	242	-	35	-	66,000	71,500	480	-
경남	44,428.6	43,621.3	46	34	68	36.3	5,300	230	230	-	72	-	6,000	31,550	55	-
제주	7,828	6,606.9	-	4	8	3.9	-	85	85	-	10	-	1,600	4,800	11	-
기타	233	-	-	-	-	-	-	-	-	-	-	-	-	-	-	-
계	1,362,304.7	1,354,099	400	300	600	300	43,000	2,000	2,000	314	1,420	20	650,000	650,000	3,525	220

(단위: 천두·천수)

구분	검진							구제				혈청 검사 · 병성 감정
	소계	우결핵	부루세라 (MRT)	부루세라 (RB)	오제스키	추백리 (평판)	추백리 (ELISA)	소계	진드기	꿀벌 응애	꿀벌 노제마 병	
서울	0.6	0.1	-	0.2	0.3	-	-	36	-	18	18	2.6
부산	3.3	0.8	1	0.5	1	-	-	28	-	14	14	10.8
대구	11.3	3.8	2	2.4	2.1	0.8	0.2	48	-	24	24	12.5
인천	14.8	4.4	3	1.7	5.1	0.5	0.1	8	-	4	4	24.4
광주	3.4	0.7	0.8	1.3	0.6	-	-	38	-	19	19	9.7
대전	1.6	0.2	-	1.1	0.3	-	-	34	-	17	17	7.0
울산	9.3	1.3	1	5	1.9	-	-	38	-	19	19	9.9
경기	326.6	161	38	26	65.7	30	5.9	140	-	70	70	207.9
강원	72.2	19.7	8	27	16	1.2	0.3	170	-	85	85	80.6
충북	89.3	26	7	30	21	4.4	0.9	180	-	90	90	85.8
충남	213	68	16	46	56	22.5	4.5	180	-	90	90	155.7
전북	158.7	34	5	46.2	53	17	3.5	214	-	107	107	153.6
전남	122.1	33	4	49	34	1.7	0.4	240	-	120	120	125.2
경북	159.7	47	8.2	60.3	38	5.1	1.1	474	-	237	237	141.0
경남	123	33	5	39.6	43	2	0.4	300	-	150	150	107.9
제주	48.1	21	1	13.7	12	0.4	0.1	1,072	1,000	36	36	51.0
기타	-	-	-	-	-	-	-	-	-	-	-	232.9
계	1,357	454	100	350	350	85.6	17.4	3,200	1,000	1,100	1,100	1,185.6

(단위: 천두·천수)

구분	예 방 집 중 시 술 비 지 원										소 부루 세라 채혈	가축위생시험소			
	소					돼 지				계		방역 보조원	광우병 시설	현장 예찰용 PDA	
	탄저· 기종저 (혼합)	전염성 비기관염	유행열	아까 바네	소계	일본 뇌염	전염성 위장염 (Rota)	오제 스키병	소 계						
서울	-	-	-	-	-	-	-	-	-	-	-	두	명	실	대
부산	0.7	0.4	0.8	0.4	2.3	0.8	0.8	-	1.6	3.9	0.4	3	-	1	
대구	3.9	2.8	5.7	2.3	14.7	1.8	1.8	-	3.6	18.4	1.3	3	-	1	
인천	3.9	2.9	6	1.5	14.3	3.8	4	-	7.8	22	1.5	4	1	1	
광주	1	0.6	1.3	0.7	3.6	0.6	0.6	-	1.2	4.9	0.6	3	1	1	
대전	1	0.7	1.3	0.7	3.7	0.2	0.2	-	0.4	4	0.8	3	-	1	
울산	4.5	3.1	6.2	3.3	17.1	2.6	2.6	-	5.2	22.3	2	3	-	1	
경기	71	52	104	51	278	82	82	30.8	194.8	472.8	30	26	1	7	
강원	26	18.5	37	20.2	101.7	17.6	17.6	-	35.2	136.9	20.4	20	-	6	
충북	28	21	41.7	21.1	111.8	24	24	-	48	159.8	27	16	-	4	
충남	56	41	82	41	220	73	73	20	166	386	35	20	-	6	
전북	36	27	54	28.2	145.2	44	44	12	100	245.2	47	20	-	5	
전남	51	39	78	41.7	209.7	38	38	-	76	285.7	20	15	-	4	
경북	71	53	106	47.7	277.7	48.6	48.4	-	97	374.7	31	16	-	5	
경남	46	34	68	36.3	184.3	46	46	-	92	276.3	17	16	1	5	
제주	-	4	8	3.9	15.9	17	17	-	34	49.9	26	5	-	1	
기타	-	-	-	-	-	-	-	-	-	-	-	-	-	-	
계	400	300	600	300	1,600	400	400	62.8	862.8	2,462.8	260	176	5	50	

(2) 국비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예 방 주 사															
		소 계	탄저·기종저(혼합)	소 전염성 비기 관염	소 유 행 열	소 아까 바네	돼지 콜 레 라	돼지 일본 뇌염	돼지 전염성 위장염 (Rota)	돼지 오제 스키 병	광 견 병	진도견 디스 템퍼	닭뉴캐슬병		닭마 이코 플라 즈마	야생 동물 광견병	살포 실시비
													부화장	농가			
서울	257,050	28,672	-	-	-	-	182	-	-	-	28,490	-	-	-	-	-	-
부산	73,972	28,318.9	67.9	268	912.8	742	2,600	524	1,240	-	12,210	-	8,000	1,350	404	-	-
대구	117,346	39,277	378.3	1,909.5	6,503.7	4,266.5	9,880	1,179	2,790	-	8,140	-	-	1,200	3,030	-	-
인천	325,726	85,558.3	378.3	1,909.5	6,846	2,782.5	21,840	2,489	6,200	-	28,490	-	-	12,300	2,323	-	-
광주	291,345	53,225.3	97	435.5	1,483.3	1,298.5	2,236	393	930	-	1,628	-	40,000	4,320	404	-	-
대전	68,504	18,863.3	97	435.5	1,483.3	1,298.5	1,066	131	310	-	2,442	-	8,000	3,600	-	-	-
울산	111,241	41,297.2	436.5	2,077	7,074.2	6,121.5	13,416	1,703	4,030	-	3,256	-	-	2,880	303	-	-
경기	3,821,468	2,763,787	6,887	34,840	118,664	94,605	488,800	53,710	127,100	38,962	238,095	-	857,040	310,374	102,010	262,700	30,000
강원	1,193,902	774,323	2,522	12,395	42,217	37,471	109,200	11,528	27,280	-	130,240	-	560	42,600	7,070	315,240	36,000
충북	991,437	538,787	2,716	14,070	47,579.7	39,140.5	140,400	15,720	37,200	-	28,490	-	104,000	79,676	29,795	-	-
충남	2,257,993	1,535,494	5,432	27,470	93,562	76,055	410,800	47,815	113,150	25,300	8,140	-	480,000	170,000	77,770	-	-
전북	2,248,732	1,568,097	3,492	18,090	61,614	52,311	261,300	28,820	68,200	15,180	20,350	-	696,000	268,000	74,740	-	-
전남	1,617,078	1,012,385	4,947	26,130	88,998	77,353.5	213,200	24,890	58,900	-	20,350	194,600	112,000	188,000	3,030	-	-
경북	2,028,378	1,113,884.5	6,887	35,510	120,946	88,483.5	285,480	31,833	75,020	-	14,245	-	264,000	143,000	48,480	-	-
경남	1,492,228	671,155.5	4,462	22,780	77,588	67,336.5	275,600	30,130	71,300	-	29,304	-	24,000	63,100	5,555	-	-
제주	318,090	77,708.5	-	2,680	9,128	7,234.5	-	11,135	26,350	-	4,070	-	6,400	9,600	1,111	-	-
기타	2,787,510																
계	20,002,000	10,350,847	38,800	201,000	684,600	556,500	2,236,000	262,000	620,000	79,442	577,940	194,600	2,600,000	1,300,000	356,025	577,940	66,000

(단위: 천원)

구분	검진							구제				혈청 검사 · 병성 감정	조달 수수료
	소계	우 결 핵	부 루 세 라 (MRT)	부 루 세 라 (RB)	오 제 스 키	추 백 리 (평 판)	추 백 리 (ELISA)	소 계	진 드 기	꿀 벌 응 애	꿀 벌 노 제 마 병		
서울	557.9	65	-	75.9	417	-	-	30,672	-	11,394	19,278	517	683
부산	2,396.4	520	328	158.4	1,390	-	-	23,856	-	8,862	14,994	3,361	591.6
대구	7,410.4	2,470	656	792	2,919	62.4	511	40,896	-	15,192	25,704	3,760	964.4
인천	11,788.5	2,860	984	561	7,089	39	255.5	6,816	-	2,532	4,284	7,386	1,191.3
광주	1,963.9	455	262.4	412.5	834	-	-	32,376	-	12,027	20,349	3,388	873.5
대전	923.2	130	-	376.2	417	-	-	28,968	-	10,761	18,207	2,529	542.2
울산	5,480.5	845	328	1,666.5	2,641	-	-	32,376	-	12,027	20,349	3,087	892.1
경기	234,431.5	104,650	12,464	8,580	91,323	2,340	15,074.5	119,280	-	44,310	74,970	113,731	31,512.6
강원	47,439.1	12,805	2,624	8,910	22,240	93.6	766.5	144,840	-	53,805	91,035	29,479	9,517
충북	60,928.7	16,900	2,296	9,900	29,190	343.2	2,299.5	153,360	-	56,970	96,390	37,089	8,248.5
충남	155,720.5	44,200	5,248	15,180	77,840	1,755	11,497.5	153,360	-	56,970	96,390	75,869	19,284.9
전북	122,924.5	22,100	1,640	15,246	73,670	1,326	8,942.5	182,328	-	67,731	114,597	77,048	19,485.5
전남	87,346.6	21,450	1,312	16,170	47,260	132.6	1,022	204,480	-	75,960	128,520	61,356	12,771.1
경북	109,166.9	30,550	2,689.6	19,899	52,820	397.8	2,810.5	403,848	-	150,021	253,827	70,330	17,699.8
경남	97,122.5	21,450	1,640	13,084.5	59,770	156	1,022	255,600	-	94,950	160,650	44,707	11,484.4
제주	35,432.7	13,650	328	4,488	16,680	31.2	255.5	104,344	43,000	22,788	38,556	14,582	2,359
기타													
계	981,033.8	295,100	32,800	115,500	486,500	6,676.8	44,457	1,917,400	43,000	696,300	1,178,100	548,219	138,100.9

(단위: 천원)

구분	예 방 집 중 시 술 비 지 원										소 부루 세라 채혈비	가축위생시험소			기타 (광우병 진단키트 구입비등)	
	소					돼 지						계	방역 보조원	광우 병 시설		현장 예찰용 PDA
	탄저 · 기종저 (혼합)	전염 성 비기관 염	유행열	아까 바네	소계	일본 뇌염	전염성 위장염 (Rota)	오제 스키병	소 계	계						
서울	-	-	-	-	-	-	-	-	-	-	-	11,513	183,000	1,435		
부산	420	240	480	240	1,380	200	200	-	400	1,780	720	11,513	-	1,435		
대구	2,340	1,710	3,420	1,380	8,850	450	450	-	900	9,750	2,340	11,513	-	1,435		
인천	2,340	1,710	3,600	900	8,550	950	1,000	-	1,950	10,500	2,700	15,351	183,000	1,435		
광주	600	390	780	420	2,190	150	150	-	300	2,490	1,080	11,513	183,000	1,435		
대전	600	390	780	420	2,190	50	50	-	100	2,290	1,440	11,513	-	1,435		
울산	2,700	1,860	3,720	1,980	10,260	650	650	-	1,300	11,560	3,600	11,513	-	1,435		
경기	42,600	31,200	62,400	30,600	166,800	20,500	20,500	7,700	48,700	215,500	54,000	99,781	183,000	10,045		
강원	15,600	11,100	22,200	12,120	61,020	4,400	4,400	-	8,800	69,820	36,720	76,754	-	8,610		
충북	16,800	12,600	25,020	12,660	67,080	6,000	6,000	-	12,000	79,080	48,600	61,403	-	5,740		
충남	33,600	24,600	49,200	24,600	132,000	18,250	18,250	5,000	41,500	173,500	63,000	76,754	-	8,610		
전북	21,600	16,200	32,400	16,920	87,120	11,000	11,000	3,000	25,000	112,120	84,600	76,754	-	7,175		
전남	30,600	23,400	46,800	25,020	125,820	9,500	9,500	-	19,000	144,820	36,000	57,566	-	5,740		
경북	42,600	31,800	63,600	28,620	166,620	12,150	12,100	-	24,250	190,870	55,800	61,403	-	7,175		
경남	27,600	20,400	40,800	21,780	110,580	11,500	11,500	-	22,000	133,580	30,600	61,403	183,000	7,175		
제주	-	2,400	4,800	2,340	9,540	4,250	4,250	-	8,500	18,040	46,800	19,189	-	1,435		
계	240,000	180,000	360,000	180,000	960,000	100,000	100,000	15,700	214,700	1,175,700	468,000	675,436	915,000	71,750	2,787,510	

(3) 지방비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예 방 주 사																
		소 계	탄저·기종저(혼합)	소 전염성 비기 관염	소 유 행 열	소 아까 바네	돼지 콜 레 라	돼지 일본 뇌염	돼지 전염성 위장염 (Rota)	돼지 오제 스키 병	광견 병	진도견 디스 템퍼	닭뉴캐슬 병		닭마 이코 플라 즈마	야생 동물 광견병	살포 실시비	
													부화장	농가				
서울	225,044	15,827	-	-	-	-	77	-	-	-	15,750	-	-	-	-	-	-	-
부산	36,698	11,324	63.7	134.8	431.2	338	1,100	424	732	-	6,750	-	-	1,350	-	-	-	
대구	58,883	18,812	354.9	960.5	3,072.3	1,943.5	4,180	954	1,647	-	4,500	-	-	1,200	-	-	-	
인천	262,758	48,781	354.9	960.4	3,234	1,267.5	9,240	2,014	3,660	-	15,750	-	-	12,300	-	-	-	
광주	221,326	8,635	91	219.1	700.7	591.5	946	318	549	-	900	-	-	4,320	-	-	-	
대전	35,398	7,292	91	219	700.7	591.5	451	106	183	-	1,350	-	-	3,600	-	-	-	
울산	60,159	21,698	409.5	1,044.7	3,341.8	2,788.5	5,676	1,378	2,379	-	1,800	-	-	2,880	-	-	-	
경기	1,518,037	944,757	6,461	17,524	56,056	43,095	206,800	43,460	75,030	24,332	131,625	-	-	310,374	-	-	30,000	
강원	495,341	267,845	2,366	6,234.5	19,943	17,069	46,200	9,328	16,104	-	72,000	-	-	42,600	-	-	36,000	
충북	470,822	239,437	2,548	7,077	22,476.3	17,829.5	59,400	12,720	21,960	-	15,750	-	-	79,676	-	-	-	
충남	912,570	567,341	5,096	13,817	44,198	34,645	173,800	38,690	66,795	15,800	4,500	-	-	170,000	-	-	-	
전북	848,701	528,170	3,276	9,099	29,106	23,829	110,550	23,320	40,260	9,480	11,250	-	-	268,000	-	-	-	
전남	813,564	523,822	4,641	13,143	42,042	35,236.5	90,200	20,140	34,770	-	11,250	84,400	-	188,000	-	-	-	
경북	895,935	463,462	6,461	17,861	57,134	40,306.5	120,780	25,758	44,286	-	7,875	-	-	143,000	-	-	-	
경남	837,685	345,340	4,186	11,458	36,652	30,673.5	116,600	24,380	42,090	-	16,200	-	-	63,100	-	-	-	
제주	236,944	45,371	-	1,348	4,312	3,295.5	-	9,010	15,555	-	2,250	-	-	9,600	-	-	-	
계	7,929,865	4,057,914	36,400	101,100	323,400	253,500	946,000	212,000	366,000	49,612	319,500	84,400	-	1,300,000	-	-	66,000	

(단위: 천원)

구분	검진							구제				혈청검사 · 병성감정
	소계	우결핵	부루세라 (MRT)	부루세라 (RB)	오제스키	추백리 (평균)	추백리 (ELISA)	소 계	진 드 기	꿀벌 응애	꿀벌 노제마병	
서울	93	10	-	23	60	-	-	13,176	-	4,914	8,262	-
부산	378	80	50	48	200	-	-	10,248	-	3,822	6,426	-
대구	1,195	380	100	240	420	44	11	17,568	-	6,552	11,016	-
인천	1,813	440	150	170	1,020	27.5	5.5	2,928	-	1,092	1,836	-
광주	355	70	40	125	120	-	-	13,908	-	5,187	8,721	-
대전	194	20	-	114	60	-	-	12,444	-	4,641	7,803	-
울산	1,065	130	50	505	380	-	-	13,908	-	5,187	8,721	-
경기	35,714.5	16,100	1,900	2,600	13,140	1,650	324.5	51,240	-	19,110	32,130	-
강원	8,352.5	1,970	400	2,700	3,200	66	16.5	62,220	-	23,205	39,015	-
충북	10,441.5	2,600	350	3,000	4,200	242	49.5	65,880	-	24,570	41,310	-
충남	24,885	6,800	800	4,600	11,200	1,237.5	247.5	65,880	-	24,570	41,310	-
전북	19,997.5	3,400	250	4,620	10,600	935	192.5	78,324	-	29,211	49,113	-
전남	15,315.5	3,300	200	4,900	6,800	93.5	22	87,840	-	32,760	55,080	-
경북	19,081	4,700	410	6,030	7,600	280.5	60.5	173,484	-	64,701	108,783	-
경남	16,247	3,300	250	3,965	8,600	110	22	109,800	-	40,950	68,850	-
제주	80,737.5	2,100	50	76,160	2,400	22	5.5	45,352	19,000	9,828	16,524	-
기타												
계	235,865	45,400	5,000	109,800	70,000	4,708	957	824,200	19,000	300,300	504,900	-

(단위: 천원)

구분	예 방 집 중 시 술 비 지 원										소 부루 세라 채혈비	가축위생시험소		
	소					돼 지				계		방역 보조원	광우 병 시설	현장 예찰용 PDA
	탄저· 기증저 (혼합)	전염성 비기관염	유행열	아까 바네	소계	일본 뇌염	전염성 위장염 (Rota)	오제 스키병	소 계					
서울	-	-	-	-	-	-	-	-	-	-	-	11,513	183,000	1,435
부산	280	160	320	160	920	200	200	-	400	1,320	480	11,513	-	1,435
대구	1,560	1,140	2,280	920	5,900	450	450	-	900	6,800	1,560	11,513	-	1,435
인천	1,560	1,140	2,400	600	5,700	950	1,000	-	1,950	7,650	1,800	15,351	183,000	1,435
광주	400	260	520	280	1,460	150	150	-	300	1,760	720	11,513	183,000	1,435
대전	400	260	520	280	1,460	50	50	-	100	1,560	960	11,513	-	1,435
울산	1,800	1,240	2,480	1,320	6,840	650	650	-	1,300	8,140	2,400	11,513	-	1,435
경기	28,400	20,800	41,600	20,400	111,200	20,500	20,500	7,700	48,700	159,900	36,000	99,781	183,000	10,045
강원	10,400	7,400	14,800	8,080	40,680	4,400	4,400	-	8,800	49,480	24,480	76,754	-	8,610
충북	11,200	8,400	16,680	8,440	44,720	6,000	6,000	-	12,000	56,720	32,400	61,404	-	5,740
충남	22,400	16,400	32,800	16,400	88,000	18,250	18,250	5,000	41,500	129,500	42,000	76,754	-	8,610
전북	14,400	10,800	21,600	11,280	58,080	11,000	11,000	3,000	25,000	83,080	56,400	76,754	-	7,175
전남	20,400	15,600	31,200	16,680	83,880	9,500	9,500	-	19,000	102,880	24,000	57,566	-	5,740
경북	28,400	21,200	42,400	19,080	111,080	12,150	12,100	-	24,250	135,330	37,200	61,403	-	7,175
경남	18,400	13,600	27,200	14,520	73,720	11,500	11,500	-	23,000	96,720	20,400	61,403	183,000	7,175
제주	-	1,600	3,200	1,560	6,360	4,250	4,250	-	8,500	14,860	31,200	19,189	-	1,435
계	160,000	120,000	240,000	120,000	640,000	100,000	100,000	15,700	215,700	855,700	312,000	675,437	915,000	71,750

가축방역비 산출단가

(단위 : 원)

구 분	축종	세부사업명	약품비			재료비			국비 (소계)	지방비 (소계)	계
			국비	지방비	소계	국비	지방비	소계			
예방 주사	소	탄저·기종저	97	41	138	-	50	50	97	91	188
		전염성비기관염	670	287	957	-	50	50	670	337	1,007
		유행열	1,141	489	1,630	-	50	50	1,141	539	1,680
		아까바네병	1,855	795	2,650	-	50	50	1,855	845	2,700
	돼지	콜레라	52	22	74	-	-	-	52	22	74
		일본뇌염	131	56	187	-	50	50	131	106	237
		전염성위장염+ Rota	310	133	443	-	50	50	310	183	493
		오제스키병	253	108	361	-	50	50	253	158	411
	개	광견병	407	175	582	-	50	50	407	225	632
		진도견 디스토퍼	9,730	4,170	13,900	-	50	50	9,730	4,220	13,950
	닭	뉴캐슬병(부화장)	4	-	4	-	-	-	4	-	4
		뉴캐슬병(농 장)	2	2	4	-	-	-	2	2	4
		마이코플라스마	101	-	101	-	-	-	101	-	101
	야생 동물	야생동물 광견병	2,627	-	2,627	-	-	-	2,627	-	2,627
		살포실시비	-	-	-	300	300	600	300	300	600
	검진	소	우결핵	550	-	550	100	100	200	650	100
부루세라(MRT)			278	-	278	50	50	100	328	50	378
부루세라(RB)			230	-	230	100	100	200	330	100	430
부루세라(RB-제주)			230	-	230	1,400	5,600	7,000	1,630	5,600	7,230
돼지		오제스키병	1,390	-	1,390	-	200	200	1,390	200	1,590
닭		추백리(평판)	23	-	23	50	50	100	78	50	128
	추백리(ELISA)	2,500	-	2,500	50	50	100	2,550	50	2,600	
기생충 구제	소	진드기	43	19	62	-	-	-	43	19	62
	꿀벌	응애류	211	91	302	-	-	-	211	91	302
		노제마병	357	153	510	-	-	-	357	153	510
구 분			국 비			지 방 비			계		
예방접종기술비(소)			600			400			1,000		
예방접종기술비(돼지)			250			250			500		
소부루세라 채혈비			1,800			1,200			3,000		
가축위생시험소 방역보조원			3,837,715			3,837,715			7,675,430		
광우병 검사시설			183,000,000			183,000,000			366,000,000		
현장예찰용 PDA			1,435,000			1,435,000			2,870,000		
광우병 진단키트			60,000			-			60,000		

※ 약품비는 '04년 단가기준 3%수준 인상하여 추정한 가격임

<별 첨>

2005년 ()분기 가축방역 실적보고

1. 예방약·검진·구제약품 공급 실적

◦ 예방약품

축종	종류별	연간 계획 (A)	당분기 공급		누계	
			공급량 (B)	공급율 (B/A)	공급량 (C)	공급율 (C/A)
		천두				
계	총					

◦ 검진 진단액

축종	종류별	연간 계획 (A)	당분기 공급		누계	
			공급량 (B)	공급율 (B/A)	공급량 (C)	공급율 (C/A)
		천두				
계	총					

◦ 구제약품

축종	종류별	연간 계획 (A)	당분기 공급		누계	
			공급량 (B)	공급율 (B/A)	공급량 (C)	공급율 (C/A)
		천두				
계	총					

2. 가축 혈청검사

(시·도)

축 종	병류별	년간 계획 두수	검사실적		검사결과			검사방법	양성판정 항 체 가
			검사 건수	검사 두수	양성	음성	계		
○○	○○ (농장)	○○ ()	()	()	()	()	()		
	(도축장)	()	()	()	()	()	()		
계									

3. 종돈장·양돈장 돼지 오제스키병 검사결과

(시·도)

종돈장 (양돈장)	성 명	주 소	사육 두수	검사 두수	검사일자	검사결과	
						양성	음성

4. 살처분 보상금 및 도태 장려금 지급실적(월)

(단위 : 호, 두, 천원)

구 분	축 종	전염병명	당 월			누 계			비 고
			농가	두수	금 액	농가	두수	금 액	
살처분									
도 태									
계									

※ 월간 실적은 동 서식으로 우리부에 직접 제출

5.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축 종	전염병명	연간 계획		당분기 실적		누계 실적	
		두수	국 비	두 수	국비지급	두 수	국비지급
소							
	소 계						
돼 지							
	소 계						
계							

6. 소 부루세라 채혈비 지원

구 분	연간 계획		당분기 실적		누계 실적	
	두 수	국 비	두 수	국비지급	두 수	국비지급
한·육우						
계						

7. 지방비 공수의 배치 운영

공수의 배치실적

군별	해 측			위 측						비고	
	성명	동물병원명칭	배치지(읍면)	면허번호	성명	동물병원명칭	배치지(읍면)	지역·수당			위측일자
								지역	수당		
계	지방비 : 일반지역					명					
	특별지역					명					
	계					명					

□ 공수의 업무수행 상황

동물병원 명칭	공수의 성명	면허 번호	배치 지역	예찰 실시회수	사업실적 (예방주사) 두수	업무보고 적정여부	업무평정 실시결과	비고

< 작성요령 >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제외

< 별 표 >

가축방역비 집행실적 보고(/4분기)

(단위 : 천두, 천원)

세 부 사업명	사업비 배정				당분기 집행				집행 누계			
	물 량	국 비	지방비	계	물 량	국 비	지방비	계	물 량	국 비	지방비	계
계												

※ 세부사업 종류

- 예방약 : 축종별 약품별 내역도 기재
- 검진약품 : “
- 구제약품 : “
- 혈청검사·병성감정 : 총괄 작성
- 돼지오제스키병 근절 : “
- 예방접종 시술비 : 축종별 전염병별 내역도 기재
- 소 부루세라 채혈비 : 총괄 작성
- 방역·검사보조원 : 총괄 작성
- 방역장비 지원 : 총괄 작성
- 살처분 보상금 및 도태 장려금 : <별첨> 보고양식 4번 항목 첨부

④ 가축공제

※ 이 사업시행 지침에 대한 해석은 농림부 축산정책과(과장 안호근, 사무관 박홍식)입니다.

1. 목 적

- 자연재해(수해, 풍해 등) 및 화재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시 이를 보상하여 축산 경영의 계획화와 양축가 소득보장
-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재생산 여건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양축기반 조성
- 전염병의 조기 발견 및 축사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등으로 재해예방

2. 추진방향

- 가축공제 가입두수를 확대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안정망 확충 및 공제요율 안정화 도모(공제사업 정착시까지 납입공제료 일부 지원)
- 공제사업에 대한 농가홍보와 교육강화
- 축산경영의 계획화와 양축가 소득보장을 위한 공제상품 개선 및 개발

3. 근거 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 시책의 강구)

4.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천두, 백만원)

구 분		'92~'01까지	2002	2003	2004	2005(p)
사업량	소	294	152	152	215	300
	돼지	1,996	2,464	3,488	4,020	6,000
	말	1	1	0.3	0.4	2.0
	닭		4,000	27,525	29,602	29,706
	계	2,291	2,620	31,165	33,837	36,008
사업비	계	14,886	13,335	20,834	27,907	41,850
	보 조 용 자	7,784	8,618	10,722	14,427	20,925
	지방비 자부담	7,102	6,017	10,112	13,480	20,925

5.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내용>

- 대상 : 소(생후 2개월령 이상), 말(종빈말, 종모말), 돼지, 가금(닭, 오리)
- 공제가입금액 : 가입자 자율결정
- 공제가입기간 : 1년단위(월 단위도 가능)
- 공제요율: 추후 사업시행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공제료에 대한 정부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납입공제료 : 축발기금보조 50%, 가입자 부담 50%
- 공제금 지급수준(보장범위) : 시가(전월평균산지가격)의 80%~100%까지 지급

구 분	보장범위(보상하는 사고)	보장내용 (공제금 지급)	가입대상
소	한우 ◦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사고(풍해수해, 설해등 자연재해, 화재)등으로 인한 폐사	가입금액과 시가중 적은 금액의 80%까지 보상	송아지: 생후 2개월 이상
	육우 ◦ 부상(사지골절, 경추골절, 탈골),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 등으로 인하여 즉시 도살하여야 하는 경우		한육우: 12월~13세 미만 젖소: 8세 미만
소	◦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각종 사고로 인한 폐사 ◦ 부상, 급성고창증으로 인하여 즉시 도살하여야 하는 경우 ◦ 정액생산 능력 저하로 인한 경제적 위협으로 인해 도살하여야 하는 경우	가입금액의 80%까지 보상	정액생산용 숫소

구 분	보장범위(보상하는 사고)	보장내용 (공제금 지급)	비 고
돼지	③ ◦ 질병(TGE,PED,Rota)에 의한 손해	가입금액과 시가중 적은 금액의 80% 까지 보상	제한없음
	◦ 설해, 화재, 풍재, 수재에 의한 손해	가입금액과 시가중 적은 금액의 95% 까지 보상	
	◦ 축산휴지손해 - 각종재해 피해로 인한 경영손실 손해	가입금액 한도내 시가 100% 보상	
	◦ 전기적장치위험담보특약 - 벼락으로 인한 전기장치의 고장에 따른 손해	가입금액 한도내 시가 95%까지 보상	
말	◦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사고로 인한 폐사 ◦ 부상,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으로 인하여 즉시 도살하여야 할 손해 ◦ 불임으로 판정된 경우	가입금액의 80%까지 보상	중빈, 중모마
가금(닭,오리)	◦ 화재, 풍재, 수재에 의한 손해	가입금액과 시가중 적은 금액의 95% 까지 보상	제한없음
	◦ 전기적장치위험담보특약 - 벼락으로 인한 전기장치의 고장에 따른 손해	가입금액 한도로 시가의 95%까지 보상	

< 2005년 사업비 내용>

(단위: 천두, 백만원)

세부사업	사업량 (천두)	사 업 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자		
합 계	36,008	41,850	20,925			20,925
◦ 납입공제료		41,850	20,925			20,925
- 소	300	24,058	12,029			12,029
- 돼지	6,000	12,696	6,348			6,348
- 말	2.0	3,360	1,680			1,680
- 가금(닭등)	29,706	1,736	868			868

<사업 추진 체계>

- 사업주관 기관 : 농협중앙회
 - 지역 농·축협 및 업종조합 공제보험담당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축산정책과
- 사업시행절차
 - 농협중앙회장은 공제료가 농가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공제요율을 설정하고, 사업실시요령에 의한 세부시행계획과 약관 등을 정하여 농림부에 보고
 - 농림부장관은 세부내용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승인
 - 지역조합(업종조합)에서는 공제가입 대상자로부터 공제가입 신청을 받아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제증권을 발급.
 - 농협중앙회는 월별자금 계획에 따라 농림부에 자금배정을 신청
- 교육 및 홍보
 - 농협중앙회는 공제가입 대상 시행기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가입대상농가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

<행정사항>

- 농협중앙회는 선진국의 가축공제 사례를 조사 연구
- 시·도(시·군) 및 생산자단체 등에서는 가축공제 사업 교육 및 홍보에 적극 협조
- 농협중앙회는 가축공제사업 매월 추진실적을 농림부에 보고.

6. 2006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농협중앙회에서 2006년 예산을 농림부 축산정책과에 신청

36	학교우유급식사업 (공공)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경영과(과장 이재용, 사무관 이범민)입니다.

1. 목적

- 학교우유급식을 통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의 식생활개선 및 체력증진
- 우유 소비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

2. 시책 및 추진방향

- 가정 형편이 어려운 초등학생 및 중학생에게 우유급식비 보조
- 어린이와 청소년이 어릴때부터 우유먹는 식습관을 형성하여 장기적인 우유 소비기반 구축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3조(축산발전시책 강구)
- 낙농진흥법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및 동법 시행령 제3조(낙농진흥 계획의 수립과 시행)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천명/일, 백만원)

구 분		'92-'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예산안)	2006 ~ 2007
사업량		210	210	210	279	352
사 업 비	계	82,394	13,005	14,805	20,507	51,744
	보 조	82,394	13,005	14,805	15,380	35,221
	용 자	-	-	-	-	-
	지방비	-	-	-	5,127	15,523
	자부담	-	-	-	-	-

5.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배경 : 성장기 학생에 대한 우유급식을 통해 국민식생활 개선, 체위증진 및 장기적인 우유 소비기반 확보로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 지원대상자 : 279천명(초등학생 210, 중학생 69)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가정 및 모·부자 가정의 초·중학생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지역 여건에 따라 해당 교육 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초·중학생(초·중등 과정이 분리되지 않은 특수학교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포함)
- 지원조건 : 보조 100%(국비 75%, 지방비 25%)
- 지원단가 : 245원/200ml('05.1.1일부터 270원/200ml으로 단가조정 예정)
 - ※ 원유가격 인상(13%)을 반영한 것으로 예산관련 세부추진계획 별도 통보
- 사업기간 : '05.1.1 ~ 12.31(방학중 급식포함 300일 기준)
 - ※ '04.11.1일부터 12.31일까지 공급된 우유 급식비는 국비로 지원

나. 2005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천명/ 일,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축산발전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학교우유급식	279	20,507	15,380	15,380	-	5,127	-

다. 사업비 부담기준 : 국비 75%, 지방비 25%

- 지방비 부담비율은 특별시·광역시 시비 100%, 도는 도비 50%, 시·군비 50%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장·군수·자치구청장과 협의하여 지방비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또는 시·군·자치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축산국 축산경영과(02-500-1909 ~ 10)
- 시·도 : 축산업무 담당과
- 시·군·자치구 : 축산업무 담당과

다. 사업시행 절차

- 사업신청
 - 시·도지사는 해당교육기관(시·도 교육청) 및 시장·군수·자치구청장과 협의, 지원대상 학생을 파악하여 전년도 9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 ※ '05년도 사업량은 축산경영과-3409('04.9.4)호에 의거 보고된 자료로 같음
 - 사업 신청시 시·도지사는 지방비 확보(시·도비 또는 시·군·자치구비) 가능여부 등을 필히 확인 후 신청
-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통보
 - 농림부장관은 시·도별 신청내역 및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자 등을 감안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사업비 조정
 - 매년 10월말까지 시·도별 사업량 및 지방비 부담액 등 통보
 - ※ '05년도 사업량은 축산경영과-3649('04.9.21)호로 통보된 사업량으로 같음
-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변경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해당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보조급식 지원대상자 선정(초등학생과 중학생을 구분하여 선정)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가정 및 모·부자 가정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선정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지역 여건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시·도 또는 각 지역교육청)과 협의하여 가정 형편이 어려운 초등학생 및 중학생 추가 선정 가능(초등과정이 분리되지 않은 특수학교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등 포함)
 - 지원대상 학생이 전학 등의 사유로 대상자 변경 사유 발생시 해당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사업량 조정을 통해 변경 가능

○ 학교우유급식 실시방법

- 유업체 선정 :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학교운영위원회 등)
- 급식우유 공급 : 유업체에서 급식대상 학생에게 지정품목의 우유를 공급
 - ※ 중학교의 학교우유 보조급식은 유상급식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유상급식이 실시되지 않는 학교의 경우 시·도 교육청, 해당 중학교 및 유업체 등과 협의하여 가정으로 배달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시행
- 보조급식 학생에게 우유를 공급하고 실적에 따라 유업체에 보조금 지급
- 일반급식 학생은 자부담으로 실시(용량 및 가격은 보조급식과 동일)
 - ※ 급식대상 우유 : 백색우유 또는 강화우유(원유 100%). 단, 도서·벽지 등 백색우유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국내산 원유 100%로 생산된 제품(멸균유·분유)으로 공급 할 수 있음

○ 방학중 보조급식 공급방법

- 지원대상, 공급품목 및 지원단가 : 학기중과 동일
- 사업주관 기관에서는 해당교육기관(시·도 또는 지역교육청)과 협조하여 급식대상 학생의 가정으로 매일 배달될 수 있도록 조치
- 다만, 기존 공급업체의 가정배달이 어려운 경우 지원단가 범위내에서 가정배달이 가능한 유업체와 방학중 공급계약 가능
- 가정배달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멸균유(원유 100%) 공급이 가능하나 방학전 또는 방학중에 해당 가정으로 배달하되, 1회 배달물량은 15일분을 원칙으로 2회 이상 나누어 공급
- 급식 유업체에서 멸균유를 생산하지 않을 경우 국내산 분유 공급 가능
 - ※ 분유공급 단가 : 5,500원/kg이내(방학기간중 공급량), '05.1.1일부터 6,300원/kg 단가조정 예정

라. 사업비 집행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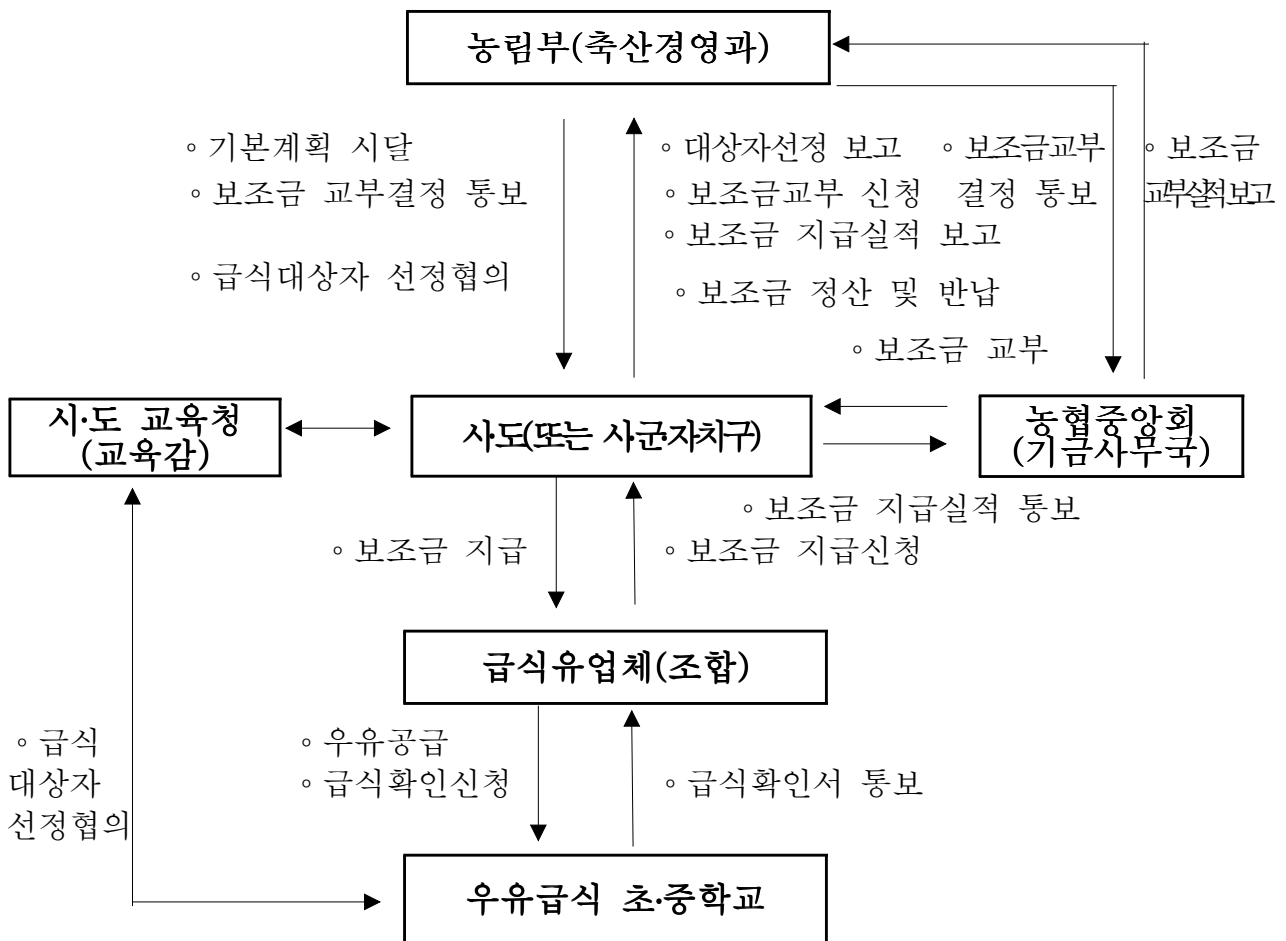
- 보조금 교부신청 : 시·도에서는 월별 또는 분기별 소요액을 농림부에 신청
- 보조금 교부결정 : 농림부에서 시·도 및 농협중앙회(축발기금사무국)로 보조금 교부결정서 통보

- 보조금 교부 : 농협중앙회에서 시·도에 보조금 교부(별도의 계정 설정)
 - ※ 지방비중 시·군·자치구에서도 지방비를 부담할 경우 시·도에서 시·군, 자치구에 보조금을 재교부하여 집행 가능
- 보조금 지급 : 시·도 또는 시·군, 자치구에서 학교우유급식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

마. 사업비 정산

- 시·도지사는 사업 완료시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사업완료 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수입 등을 정산하여 농협중앙회(축발기금사무국)로 반납 조치
 - ※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름

바. 사업추진 체계도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유업체의 급식우유 대상품목 공급 여부 및 급식중단·품목변경 등에 대한 지도·관리 철저
 - 유업체가 임의로 급식을 중단하거나 급식품목을 변경하는 경우, 학교장과 협의하여 급식업체 변경 등 시정 조치
- 농협중앙회장(축발기금사무국장)은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서를 받는 즉시 시·도에 보조금 교부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급식유업체가 제출한 보조금 지급 신청시 증빙서류 등을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보조금이 초과 또는 부당하게 지급되었을 경우 즉시 회수 조치 후 보고

나. 보 고

보 고 사 항	보고기한	보고기관	비고
◦ 학교우유급식 대상자선정 결과보고	2005.3월말	시·도	별표 1
◦ 학교우유급식 실적보고	매분기 익월20일한	시·도	별표 2
◦ 학교우유급식 보조금 지급실적 보고	매익월 20일한	시·도 및 농협	별표 3

6. 200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 2005 요령과 같음

(별표 1)

학교우유급식 대상자선정 결과보고

(○ ○ 시·도)

초등학교

(단위 : 개교, 명/일)

구 분		보 조 급 식		일 반 급 식		합 계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급식 대상							
	합 계						

중학교

(단위 : 개교, 명/일)

구 분		보 조 급 식		일 반 급 식		합 계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급식 대상							
	합 계						

※ 구분의 공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모·부자복지법 등 관련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가정의 학생,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특수학교 학생, 도서벽지 또는 오지로서 급식대상물량이 적어 유업체에서 급식공급을 기피하는 지역의 학생, 일시적 자연재해(준재해 포함)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학생, 기타 시·도지사가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우유보조급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등으로 구분

□ 참여유업체 현황

(단위 : 개교, 명/일)

유업체명	보 조 급 식		일 반 급 식		합 계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합 계						

(별표 2)

학교우유급식 실적보고(분기)

(○ ○ 시·도)

(단위 : 개교, 명, 원)

구 분 월 별		보 조 급 식				일 반 급 식		합 계		
		학교수	학생수	보 조 금 액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계	국비	지방비				
월	초등학생									
	중 학 생									
	고등학생									
	계									
월	초등학생									
	중 학 생									
	고등학생									
	계									
월	초등학생									
	중 학 생									
	고등학생									
	계									
누 계	초등학생									
	중 학 생									
	고등학생									
	합 계									

※ ① 보조금액은 유업체에 보조금 지급액을 기준으로 작성(보조비율 준수)

② 학생수는 당월 및 누계 인원을 해당기간중 누계 개념으로 작성

(별표 3)

학교우유급식 보조금 지급실적 보고(월)

1. 시·도별 보조금 지급실적

(단위 : 개교, 명, 원)

시·도별	당 월			누 계			비고
	학교수	학생수	보조금액	학교수	학생수	보조금액	
합 계							

2. 급식유업체별 보조금 지급실적

(단위 : 개교, 명, 원)

유업체별	당 월			누 계			비고
	학교수	학생수	보조금액	학교수	학생수	보조금액	

※ 이 사업시행 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축산정책과(과장 안호근, 사무관 박홍식)입니다.

1. 목 적

- 축산업등록제 도입에 따라 축산업등록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여 등록제 조기정착 유도 및 지자체 보조인력과 등록제 참여 우수 생산자단체에 교육홍보비 등을 지원하여 축산업등록제의 효율적 추진

2. 시책 및 추진방향

□ 축산업 등록지원

- 일정규모 이상 축산농가의 가축사육시설·면적 및 사육두수 등을 시장·군수에게 등록
- 등록대상 축산업경영자에 대해 등록에 필요한 시설·장비 설치를 위한 소요자금 융자지원

□ 축산업등록 추진지원

- 시·군별 전산보조인력 지원 및 축산업등록 추진 우수 생산자단체에 농가 교육홍보비 보조지원('05년 1년만 지원)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20조(축산업의 등록)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예산안)	
사업량	-	-	-	-	-	
사업비	계	-	-	-	16,250	18,794
	보 조	-	-	-	-	1,322
	용 자	-	-	-	13,000	13,000
	지방비	-	-	-	-	1,222
	자부담	-	-	-	3,250	3,250

5. 2004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대상

- 부화업, 종축업, 계란집하업 및 가축사육업 경영자로서 축산업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대상이 되는 축산업 경영자
- 축산업등록 추진을 위해 전산보조인력을 고용하는 지자체 및 축산업등록 추진을 위해 농가교육 홍보를 시행하는 생산자단체

나. 지원내용

□ 축산업등록지원

- 지원규모 : 13,000백만원
 - 부화업, 종축업, 계란집하업, 백세미용알생산업 : 개소당 100백만원 이내
 - 가축사육업 : 개소당 50백만원 이내
- 지원조건 : 융자 80%, 3년거치 7년상환, 연리 3%

□ 축산업등록 추진지원

- 지원규모 : 1,322백만원
 - 시·군별 전산보조인력 1,222백만원
 - 축산업등록 추진 우수 생산자단체 농가 교육홍보비 100백만원
- 지원조건 :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농협제외) 정액지원

다. 사업내용

□ 축산업등록지원

- 축산업등록시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는데 소요되는 자금지원
- 지원대상 시설·장비 : 별표 참조
 - ※ 축산업등록과 관련없는 시설·장비 구입 등은 지원 제외

□ 축산업등록 추진지원

- 시·군별 전산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및 생산자단체에 대해 축산업등록 관련 교육 홍보비 지원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시·군(자치구 포함)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축산정책과
- 시·도 : 축산담당과
- 시·군 : 축산담당과
- 생산자단체(한우·낙농·양돈·양계)

다. 사업시행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축산업등록지원>

- 축산업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기 위한 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서식1의 지원신청서에 시설장비보완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시설장비보완계획서에는 보완 시설·장비의 구체적인 내역과 보완기간을 명시
- 시장·군수는 지원신청서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도지사를 통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사업비 신청(서식2)
 - '05년 9월까지 매월단위로 신청
- 농림부장관은 시·도별로 소요자금을 배정하고 시·도와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 시장·군수는 배정된 자금의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축산업등록추진지원>

- 축산업등록을 위해 전산보조인력을 고용한 시·군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시·도지사를 통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사업비 신청
- 생산자단체는 축산업등록관련 교육홍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은 후 사업시행시에 사업비 신청

□ 사업비 지원

<축산업등록지원>

- 농림부에서 농협중앙회(축발기금사무국)에 사업자금이 배정되면 농협중앙회는 대출취급기관에 소요자금 재배정
- 대출취급기관은 시장·군수의 대상자 통보내용에 따라 대출심사를 거쳐 기성고에 따라 자금지원

<축산업등록 추진지원>

- 농림부장관이 시·도 및 생산자단체로부터 소요자금 신청을 받아 적정성을 검토하여 정액보조 지원

라. 사후관리

<축산업등록지원>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신청한 시설·장비를 갖추고 축산업등록을 필하였는지 점검

<축산업등록 추진지원>

- 시·도지사는 보조금이 사업목적 등과 다르게 부당하게 사용되는지 여부 등을 점검

<별 표>

지원대상 시설장비 종류

1. 부화업

- 부화장과 계사의 격리(서로 독립된 건물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부화장에 부화실과 병아리방 구비 비용
- 부화실과 병아리방을 다음과 같이 시설할 경우 소요비용
 - 바닥과 내벽의 콘크리트 등 견고한 내구성 재료 사용
 - 배수시설 및 환기시설 구비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소독설비 설치 비용

2. 종축업

가. 종돈업

- 종돈사육시설은 별도의 분만·포유·육성·종돈 선발을 위한 분리(벽, 층 등에 의하여 별도의 방으로 구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된 시설
- 종돈사육시설과 일반돈 사육시설과 격리 설치비용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적합한 축산폐수처리 시설 설치비용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소독설비 설치비용
- 종돈의 방역을 위한 비용
- 종돈사육시설과 정액등처리사업장 격리 설치 비용

나. 종계업

- 계종별, 세대별, 사육단계별 구분사육시설
- 견고한 내구성 자재의 계사 설치비용
- 종란을 위생 관리 및 소독시설
- 종계의 방역을 위한 비용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소독설비 설치비용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적합한 축산폐수처리 시설 설치비용

3. 계란집하업

- 계란집하장을 다음과 같이 시설할 경우 소요비용
 - 견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 천장의 낙진·낙수 방지, 환기시설설치
- 계란의 분류·포장·운반 장비
 - 계란중량선별기, 계란 포장장비, 지게차, 로더, 콘베이어벨트 등 집하된 계란 운반장비
- 사업장 출입자 및 출입차량 소독시설 또는 장비

4. 백세미용 알 생산업

- 견고한 내구성 자재의 계사 설치비용
- 종란을 위생 관리 및 소독시설
- 종계 및 산란계의 방역을 위한 비용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소독설비 설치비용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적합한 축산폐수처리 시설 설치비용

5. 가축사육업

- 가축 두당 최소 가축사육시설 면적확보를 위해 가축사육시설 등을 증·개축 또는 보수하는 경우

[서 식 1]

축산업 등록지원사업비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장	명 칭	(전화번호)				
	소재지					
등록구분	<input type="checkbox"/> 부화업 <input type="checkbox"/> 종축업 <input type="checkbox"/> 계란집하업 <input type="checkbox"/> 백세미용알생산업 <input type="checkbox"/> 가축사육업(한육우, 젓소, 돼지, 닭, 오리)					
신청내용	시설·장비	규격	수량	소 요 금 액 (원)		
				용자신청	자부담	계
	계					
<p>축산업 등록을 위한 시설·장비 보완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붙임 : 시설장비보완계획서 1부						

[서 식 2]

축산업등록지원사업비 신청서

(년 월말 기준)

(단위 : 호, 천원)

축산업종류	당 월		누 계	
	신청농가수	신청액	신청농가수	신청액
◦부화업				
◦종축업				
- 종돈업				
- 종계업				
◦계란집하업				
◦백세미사육업				
◦가축사육업				
- 한육우				
- 젖 소				
- 돼 지				
- 닭				
- 오 리				
합 계				